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

유해미·구자연·정수지·김문정·장경희·신윤정

연구보고 2025-12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

저

자

유해미, 구자연, 정수지, 김문정, 장경희, 신윤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수 지**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장 경 희** (신성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원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5-12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계문사 02)725-521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6865-124-1 93330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를 위한 비용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정 기반의 아동돌봄 지원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가정으로 파견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기관 기반의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가정 내 양육가구의 일시보육과 가정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 수요가 유관 정책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시간,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도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서비스 충복과 상충이 없도록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공식 돌봄 부문의 조부모 돌봄과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총 1,628명을 대상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전반의 이용 경험과 지원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구 총 24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식과 비공식 돌봄 부문의 서비스 운영자 1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실태와 개선요구에 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의 정비 방향과 제도적 기반 및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선결과제를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가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 내 양육가구의 일시보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과정에 참여하여 고견을 주신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께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목차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19
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28
II. 연구의 배경	31
1. 선행연구 검토	33
2.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40
3. 지방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58
4.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72
III. 국외 사례 및 시사점	79
1. 프랑스 사례	81
2. 일본 사례	98
3. 소결	123
IV.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127
1. 응답자 특성	129
2. 양육 실태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전반	134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50
4.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167
5. 소결	204

V. 심층분석: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욕구 분석	211
1. 수요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유형별 수요	213
2. 공급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공급 관련 쟁점과 개선요구	239
3. 소결	261
VI. 정책 제언	267
1.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방향	269
2.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와 제도적 기반 조성	280
3. 기타 정비 사항	286
참고문헌	291
Abstract	301
부록	303
1. 설문조사표	303
2. 면담조사 질문지1: 수요자용	326
3. 면담조사 질문지2: 공급자용	334
4. 부록표	341



표 목차

〈표 I-3-1〉 설문조사 문항	22
〈표 I-3-2〉 면담조사1: 수요자 대상 조사 실시 개요	24
〈표 I-3-3〉 면담조사1: 수요자 대상 조사내용	24
〈표 I-3-4〉 면담조사2: 공급자 대상 조사 실시 개요	25
〈표 I-3-5〉 면담조사2: 공급자 대상 조사내용	26
〈표 II-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 수와 비율(2024)	36
〈표 II-1-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 현황(2024)	36
〈표 II-2-1〉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2007-2025)	40
〈표 II-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2025)	42
〈표 II-2-3〉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기본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율(2025)	44
〈표 II-2-4〉 시간제(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2025)	45
〈표 II-2-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추이(2020-2024)	48
〈표 II-2-6〉 아이돌보미 규모(2020-2024)	49
〈표 II-2-7〉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4.12)	49
〈표 II-2-8〉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설치 및 운영 기준(2025)	51
〈표 II-2-9〉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인력관리 기준 및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지원 조건(2025)	52
〈표 II-2-10〉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교부 내용(2025)	53
〈표 II-2-11〉 시간제보육서비스 독립반/통합반 운영 비교(2025)	54
〈표 II-2-12〉 시간제보육서비스 예약/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방법(2025)	54
〈표 II-2-13〉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제출서류/준비물/급간식(2025)	55
〈표 II-2-1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수/반수/이용아동수 및 비율 추이 (2016-2025.3)	56
〈표 II-2-15〉 시간제보육반 수 추이(2020-2025.3)	57
〈표 II-2-16〉 전국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수 추이(2020-2024)	58
〈표 II-3-1〉 광주광역시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개요	60
〈표 II-3-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61

〈표 II-3-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개요	62
〈표 II-3-4〉 경상남도 손주돌봄 수당 지원사업 개요	63
〈표 II-3-5〉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개요	64
〈표 II-3-6〉 전라남도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사업 개요	65
〈표 II-3-7〉 서울 서초구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개요	66
〈표 II-3-8〉 전국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추진 현황(2025. 8)	68
〈표 II-3-9〉 서울특별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70
〈표 II-3-10〉 서울 서초 아이돌보미/서초구 119아이돌보비 지원사업	71
〈표 II-4-1〉 부모급여/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단가(2025)	77
〈표 III-1-1〉 프랑스 3세 미만 영아의 주된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 비중(2021)	83
〈표 III-1-2〉 프랑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금액: 부부 가족(2025)	85
〈표 III-1-3〉 프랑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금액: 한부모 가족(2025)	85
〈표 III-2-1〉 일본의 보육아동수 비교(2014/2024)	99
〈표 III-2-2〉 일본 “신엔젤플랜(1999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100
〈표 III-2-3〉 일본 “저출생 대책 플러스 원(2002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101
〈표 III-2-4〉 일본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2002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101
〈표 III-2-5〉 일본 “아동·영유아 양육비전(2010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102
〈표 III-2-6〉 일본 “1억 총 헬약플랜(2016년)”의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 및 목표 수치	104
〈표 III-2-7〉 일본 지역영유아양육거점사업 개요	105
〈표 III-2-8〉 일본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 거점 종사자의 연수과목 및 내용(2019)	107
〈표 III-2-9〉 일본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 수혜 가구의 경험담(2025)	108
〈표 III-2-10〉 일본의 베이비호텔 및 자택방문형 보육사업 현황(2025)	109
〈표 III-2-11〉 일본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자의 연수과목 및 시간	111
〈표 III-2-12〉 일본 보육소 등의 정원충족율· 대기아동 현황 추이 (2010/2015/2020/2022/2024)	114
〈표 III-2-13〉 일본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의의	115

〈표 III-2-14〉 일본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개요	116
〈표 III-2-15〉 일본의 일시보육시설 종류 및 내용	118
〈표 III-2-16〉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효과	122
〈표 IV-1-1〉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전체 가구	129
〈표 IV-1-2〉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31
〈표 IV-1-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32
〈표 IV-1-4〉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의 근로특성_경제활동 가구	133
〈표 IV-1-5〉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의 근로특성	134
〈표 IV-2-1〉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현황_전체 가구	135
〈표 IV-2-2〉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이외 추가돌봄 기관/인력 현황(중복응답) 전체 가구	136
〈표 IV-2-3〉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_전체 가구	137
〈표 IV-2-4〉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이유_시간제보육 미이용가구	138
〈표 IV-2-5〉 어린이집 등하원시각/희망 등하원시각_어린이집 이용가구	139
〈표 IV-2-6〉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병행 이용 시간: 어린이집 이용가구 시작 시간대	141
〈표 IV-2-7〉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병행 이용 시간: 어린이집 이용가구 종료 시간대	142
〈표 IV-2-8〉 유치원 등하원시각/희망 등하원시각_유치원 이용가구	143
〈표 IV-2-9〉 조부모/친인척 돌봄 사유_전체(1순위/1+2순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44
〈표 IV-2-10〉 조부모/친인척 돌봄 사유(1순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44
〈표 IV-2-11〉 조부모/친인척돌봄 이용 비율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46
〈표 IV-2-12〉 주중 조부모/친인척 돌봄시간_시작 시각	147
〈표 IV-2-13〉 주중 조부모/친인척 돌봄시간_종료 시각	148
〈표 IV-2-14〉 조부모/친인척 돌봄 월 평균 지불비용 및 부담 정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49
〈표 IV-2-15〉 조부모/친인척 돌봄 예정 기간(자녀연령)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50

〈표 IV-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1
〈표 IV-3-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1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2
〈표 IV-3-3〉 근로특성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1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3
〈표 IV-3-4〉 주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시작 시각	155
〈표 IV-3-5〉 주중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종료 시각	156
〈표 IV-3-6〉 상황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전체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7
〈표 IV-3-7〉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전체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8
〈표 IV-3-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59
〈표 IV-3-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1순위)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60
〈표 IV-3-10〉 주중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_시작 시각	162
〈표 IV-3-11〉 주중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_종료 시각	163
〈표 IV-3-1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전체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64
〈표 IV-3-1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 전체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65
〈표 IV-3-14〉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166
〈표 IV-3-15〉 시간제보육시설 이동 소요시간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166
〈표 IV-3-16〉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경험 유무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167
〈표 IV-4-1〉 자녀돌봄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및 추가출산 경험_전체 가구	168
〈표 IV-4-2〉 가구특성별 자녀돌봄 어려움에 따른 유경험 비율_전체 가구	169
〈표 IV-4-3〉 근로특성별 자녀돌봄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및 추가출산 경험_전체 가구	171
〈표 IV-4-4〉 주중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_전체 가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174
〈표 IV-4-5〉 주말(토요일)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_전체 가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176
〈표 IV-4-6〉 휴일(일요일 등)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_전체 가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178
〈표 IV-4-7〉 돌봄서비스 필요도(전체)_전체 가구	180

〈표 IV-4-8〉 가구특성별 돌봄서비스 필요도_전체 가구	180
〈표 IV-4-9〉 근로특성별 돌봄서비스 필요도_전체 가구	181
〈표 IV-4-1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방식의 동의 정도: 전체_전체 가구	183
〈표 IV-4-11〉 부모급여 수령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 전체_부모급여 수급 가구	184
〈표 IV-4-12〉 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_긍정 응답 비율	185
〈표 IV-4-13〉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	187
〈표 IV-4-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속 이용 사유	187
〈표 IV-4-15〉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 돌봄인력/시설 이용 중단 의향 _어린이집 및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가구	188
〈표 IV-4-16〉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 중단 사유	189
〈표 IV-4-17〉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에도 추가돌봄 인력/시설 지속 이용 사유	189
〈표 IV-4-18〉 재원 유치원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 돌봄인력/시설 이용 중단 의향 _유치원 및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가구	190
〈표 IV-4-19〉 정책 변화에 따른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중단/축소 의향(전체) 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91
〈표 IV-4-20〉 정책 변화에 따른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중단/축소 의향 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192
〈표 IV-4-21〉 정책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축소 의향(전체) 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93
〈표 IV-4-22〉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축소 의향 _가구특성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95
〈표 IV-4-23〉 정책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축소 의향_근로특성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97
〈표 IV-4-24〉 유관 정책의 변화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이용 사유: 아이돌봄서비 스 이용가구	198
〈표 IV-4-25〉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의향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99
〈표 IV-4-26〉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의향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00

〈표 IV-4-27〉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중단/축소 의향: 전체 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201
〈표 IV-4-28〉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중단/축소 의향 _가구특성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202
〈표 IV-4-29〉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중단/축소 의향 _근로특성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203
〈표 V-1-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214
〈표 V-1-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215
〈표 V-1-3〉 면담조사 참여자 특징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216
〈표 V-1-4〉 면담조사 참여자 특징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217
〈표 V-1-5〉 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특징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218
〈표 V-1-6〉 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특징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219
〈표 V-2-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40
〈표 V-2-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2: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240
〈표 V-2-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3: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41
〈표 V-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근로와 자녀돌봄 현황	263
〈표 V-3-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근로와 자녀돌봄 현황	264
〈표 VI-2-1〉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	282



그림 목차

[요약그림 1] 연구 절차 및 추진체계	2
[요약그림 2] 연구범위	3
[요약그림 3] 공식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10
[요약그림 4]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비 방향과 선결과제 및 제도적 여건 조성	11
[그림 I-2-1] 분석내용: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18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추진체계	27
[그림 I-4-1] 연구범위	28
[그림 II-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변화(2024-2025)	43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도(2025)	46
[그림 II-2-3]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2025)	47
[그림 II-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추이(2020-2024)	49
[그림 II-2-5]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아동 수 추이(2016-2024)	57
[그림 II-4-1] 유보통합 실행 계획_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기본8+추가4)(2024)	72
[그림 II-4-2] 어린이집 보육시간(2025)	74
[그림 II-4-3]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시간(2025)	74
[그림 II-4-4] 유보통합 실행 계획_충분한 이용일수 보장(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2024)	75
[그림 II-4-5]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5)	77
[그림 III-1-1] 프랑스 주중 3세 미만 아동의 주된 돌봄자 변화(2002-2021)	82
[그림 III-1-2] 프랑스 Pajemploi 서비스 홈페이지	88
[그림 III-2-1] 일본의 영유아 양육가정 현황(2017)	112
[그림 III-2-2]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사업내용	121
[그림 III-2-3]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운영체계	121
[그림 IV-2-1]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비율_전체 가구	138
[그림 IV-3-1]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대별 이용률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54
[그림 IV-3-2] 주중/주말/휴일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61
[그림 IV-4-1]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가능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중단 의향	186
[그림 VI-1-1]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270
[그림 VI-1-2] 공식 돌봄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273
[그림 VI-2-1]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비 방향과 선결과제 및 제도적 여건 조성	285



부록표 목차

〈부록표 1〉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 내용	341
〈부록표 2〉 민간 육아도우미 불만족 내용	342
〈부록표 3〉 시간제보육서비스 불만족 내용	344
〈부록표 4〉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친인척 돌봄 지속 사유	344



요약

1. 서론

- 가정내 양육지원은 '다양한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관 중심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므로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최근 들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여 양육지원 관련 유관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서비스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임.
-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유관 정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위한 정비 사항을 도출함.

나. 연구내용

-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비공식 돌봄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함.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관 정책 현황 및 변화를 검토하고, 서비스 공급에 관한 합의를 모색함.
- 프랑스와 일본의 가정내양육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쟁점을 파악함.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고유한 수요와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 방향과 정비 방향을 제시함.
-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목표와 기대효과, 유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 방향, 선결 과제,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기타 정비사항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 사례분석: 외국의 가정내양육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분석

- 프랑스의 인가 보육사 지원 등과 일시보육서비스 등 일본의 가정 내 양육가구 돌봄서비스 지원내용을 조사하고 정책 시사점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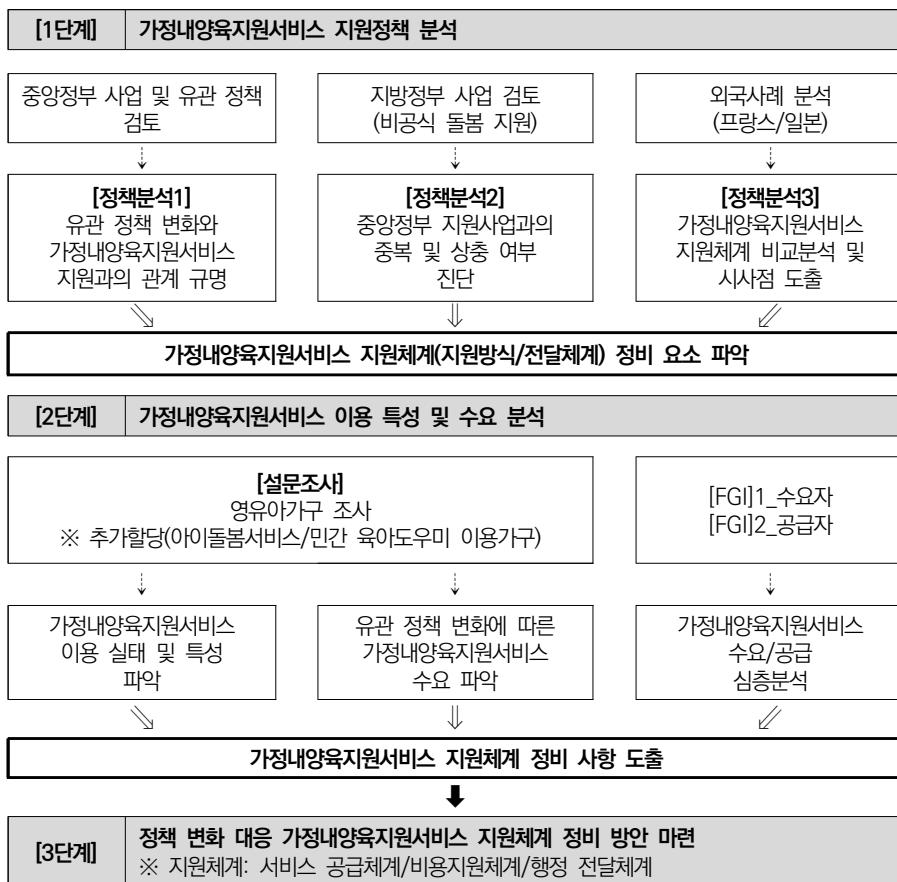
□ 설문조사

- 영유아 가구 총 1,628명(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49명,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356명 포함)을 대상으로 가정내양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를 조사함.

□ 면담조사

- 수요자 조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유아 가구(총 9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영유아 가구(총 9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영아가구(총 6인)를 대상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함.

[요약그림 1] 연구 절차 및 추진체계



- 공급자 조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총 4인),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 기관 운영자(총 5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자(총 4인)를 대상으로 가정내양 육지원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함.

라. 연구범위

- 돌봄 인프라 유형에 따라 '가정 기반' 서비스와 '기관 기반' 서비스로 구분하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을 포함하여 다룸.
-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에는 서비스 공급 대상 즉, 지원대상의 적정성, 비용 지원 여부 및 비용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다룸.

[요약그림 2] 연구범위



주: 1) 일부 지방정부에 한함.

2) 민간업체 등록제도 도입 관련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25.4.2.) 및 시행일자(2026.4.23.) 반영(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_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

2.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검토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는 아동 및 이용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동기, 이용 실태 및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나.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이용 절차, 지원대상 규모 및 추이를 살펴봄.
-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운영 기준, 인력 기준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이용 방법, 지원대상 규모 및 추이를 살펴봄.

다. 지방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내용을 검토함.
- 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서초아이돌보미 및 서초119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함.

라.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충분한 이용시간과 일수 보장 영역), 부모급여제도 도입 및 확대,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강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가정내양육 지원서비스 수요 변화 측면에서 함의를 모색함.

3. 국외 사례 및 시사점

가. 프랑스 사례

- 시설보육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정 기반의 인가 보육사, 가정 양육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국가에 등록된 인력에 한하여 지원하되, 자부담 상한선을 규정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함.

- 일시보육시설은 근로하지 않는 전업모가 주로 활용하며, 오전 혹은 오후 몇 시간 동안만 자녀를 시설에 맡겨서 부모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생후 3개월부터 취학 전 연령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소득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됨.

나. 일본 사례

- 합계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독박 육아, 육아 불안 등이 제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저출생 대책에서 다양한 가정 내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함.
- 지역영유아 양육지원센터와 일시보육은 엔젤플랜에서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해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정부는 2004년까지 각각 3,000개소를 확충한다고 명시함.
- 일본 정부는 저출생대책 “미래아동 전략”(2023년 12월)에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보호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0~2 세아가 기관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7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보육소에 입소할 수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자녀,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가정에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육소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육하는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다. 소결

- 가정내양육서비스 지원 목적은 시설보육의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하기 힘든 가구의 양육지원과 고립 육아 해소임.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기관보육에 대한 비용지원체계를 반드시 고려하여 중복지원 금지 이외에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용지원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자부담 상한선을 두어 이용비용 부담을 완화함.
-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정부 신고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비용도 이들 인력에 한하여 지원됨.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4.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가. 양육 실태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전반

- 전체 영유아의 낮 시간대 주양육자는 어린이집 이용 52.0%, 유치원 이용 22.9%, 부모 직접돌봄이 17.0%를 차지하는 가운데, 공공 아이돌보미 1.0%, 민간 육아도우미 0.8%, 시간제보육기관의 경우는 0.3%로 조사됨.
-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 응답 비율이 52.0%로 가장 높고,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 응답 비율은 35.3%로 조사됨.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
 -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등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8시 53분이고, 희망 시각은 평균 8시 44분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시간은 주중(월~금요일)에는 오전 9시 이전 이용 비율이 40~50%선이고, 오후 5시 이후 이용 비율이 60~80%선으로 조사됨.
 - 유치원 이용가구의 등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8시 54분이고, 희망 시각은 평균 8시 50분으로 조사됨.
-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가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조부모 돌봄 가구에게 돌봄 사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긴급할 때 자녀돌봄이 용이해서’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62.2%로 주된 사유로 파악됨.
 - 조부모 돌봄 가구(682 사례)는 주중 이용 비율이 평균 71.4%이고, 주말과 휴일은 각각 34.9%와 22.5%로 조사됨.
 - 조부모 돌봄 가구의 월 평균 지불비용은 327,000원으로 조사됨.

나.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대상 이용 사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긴급할 때 (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30.7%,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25.4%,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17.6% 순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주중에는 86.9%, 주말과 휴일에는 20.9%와 12.2%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서 최근 1년 기준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이용 빈도는 발생한 적이 없다 25.2%, 한 달에 2~3회 18.5%, 한 달에 1회 15.4%, 연간 1~2회 10.9% 순으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49점(5점 만점)이고,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수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대상 이용 사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23.9%, '긴급할 때(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19.7%,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8.0% 순으로 조사됨.
- 서비스 이용 비율은 주중에는 88.2%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18.3%와 12.6%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임.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서 최근 1년 기준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이용 빈도는 발생한 적이 없다 28.7%, 한 달에 1회 14.9%, 한 달에 2~3회 13.8% 순으로 조사됨.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신속한 서비스 연계와 이용시간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4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이용 사유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 61.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시설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도보의 경우 평균 24.6분, 차량 이용의 경우 평균 8.5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읍면지역에서 도보는 평균 38.9분, 차량은 평균 11.1분으로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27.1%이고, 해당 비율은 육아 종합지원센터 부설 기관에서 35.1%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다.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전반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주중 기준으로 시작 시각이 7시 30분 이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둘다 상용근로가구 25.8%, 임시·일용직 가구 23.2%. 새벽근로 가구 29.8%이고, 종료 시각이 오후 7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둘다 상용근로가구 29.8%, 자영업가구 30.2%, 야간근로 가구 35.1%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체계 정비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기관을 이용하지만 장시간 이용이 힘든 아동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한다(매우 찬성+찬성)고 응답한 비율이 71.5%(평균 3.9, 5점 만점)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임.

□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 부모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거나 수급하는 가구의 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양육 방식 변화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예정보다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시기를 늦추게 되었다’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26.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추가돌봄 인력이나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674 사례)에게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로 조사됨.
-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추가돌봄 인력이나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269 사례)에게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로 조사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용시간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나타남.

라. 소결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추가 돌봄의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반 돌봄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지원대상의 차별화가 요구됨.
-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시간제돌봄의 경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즉, 긴급돌봄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파악됨.
-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하여 차별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조부모 돌봄 수요는 다양하므로 공적 돌봄 지원 측면에서 수요를 선별할 필요가 있음.

5. 정책 제언

가.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방향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지원 목표와 지원대상 정교화
-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방향
 - 아이돌봄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한 정비, 시간제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비, 긴급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급 방식의 정비에 관하여 제안함.
- 서비스 비용지원체계 정비 방향
 - 공식 돌봄 부문과 비공식 돌봄(조부모 돌봄 가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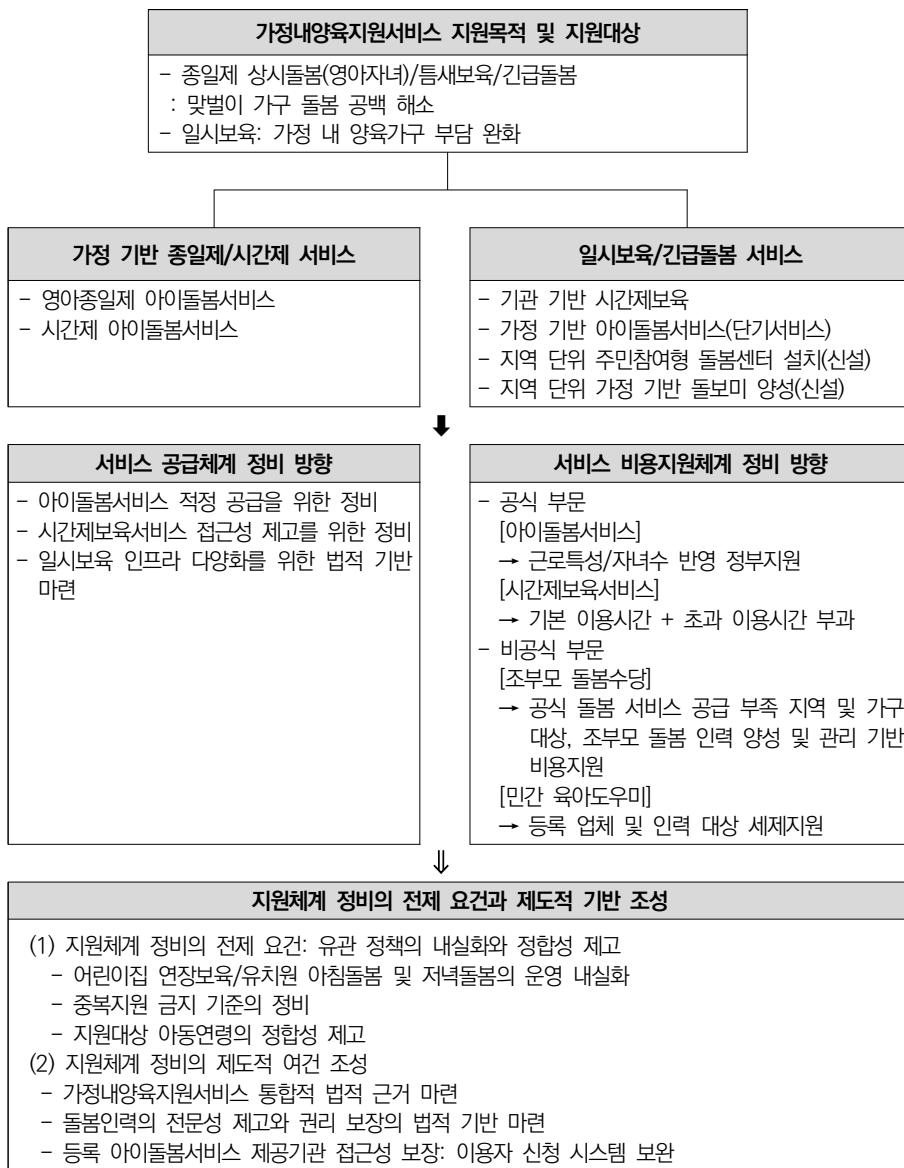
[요약그림 3] 공식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구분	서비스 지원대상	공식 돌봄 부문 정부지원 서비스 유형
가구 특성	<p>[맞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근로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야간/주말/휴일근로 - 불규칙한 근로시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한 출근시각/퇴근시각 - 이용기관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낮은 가구 (12시간 이용가능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연장보육 : 유치원 아침돌봄/저녁돌봄 	
	<p>[맞벌이+홀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2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p>[맞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 가정내양육 선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제도 이용 힘든 가구 등 - 모든 홀벌이 가구 - 육아휴직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보육서비스
아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보육 힘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및 경계선 아동, 영아자녀 등 - 기관 적응 힘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포함 - 기관이용 질병감염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필요 가구 및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가구 및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보육서비스

나.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와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 유관 정책의 내실화와 정합성 제고
- 지원체계 정비의 제도적 여건 조성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통합적 법적 근거 마련,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보장 등을 제안함.

[요약그림 4]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비 방향과 선결과제 및 제도적 여건 조성



I

서 론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02 연구 내용

0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0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I. 서론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범위를 제시하고,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정 내 양육지원은 ‘다양한 육아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관 중심의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가족주의를 추구하고 가정 내 양육가구의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이 점차 다양화되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확장되는 상황이므로 가정내 양육에 대한 수요는 점차 복합적인 구조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내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지닌다. 그러나 그 지원 배경 및 세부내용, 정책적 중요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 돌봄에 관한 각 국의 문화적 인식 이외에도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가 시설 기반 돌봄서비스 지원과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등 유관 양육지원과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보완적 역할과 대체적 역할에 따라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을 차등지원하며,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므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유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양육지원 관련 유관 정책의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서비스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맞고 있다. 급변하는 유관 정책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의 확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제도는 관할 부처가 달라서 종합

적 판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정부조직법」개정,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제도 등 시간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비공식 돌봄에 해당하는 조부모 돌봄 가구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 제도와의 상충이나 충돌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2025년에 지원가구를 12만 가구(2024년 11만 가구)로 늘릴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475,02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5b: 8; 여성가족부, 2025b: 49).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정부지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및 지원 비율 상향,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등(국정과제 88)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었다(국정기획위원회, 2025: 134). 이에 앞서 올해 4월 22일자로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내년 4월 23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 시간제보육의 경우도 2023년 1,000개반에서 2024년 12월에 2,315개 반 까지 늘렸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24: 1), 2025년에 관련 예산으로 280억원을 배정하는 등(교육부, 2025b: 38) 확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향후 예고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강화는 급변하는 유관 정책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원 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돌봄서비스를 위주로 다루고, 이를 지원체계는 서비스의 공급체계와 비용지원 체계, 그리고 행정 전달체계를 위주로 논의한다. 또한 공식 돌봄 이외에도 비공식 돌봄 부문을 포괄하여 다룬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가 포함되는 공식 부문 이외에도 손자녀돌봄과 민간 육아도우미를 다루고, 가정내양육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적 설계와 제도적 기반을 모색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살펴보았다. 즉,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로 지원체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지원내용, 돌봄 인력 양성 및 자격 기준, 행정 전달체계(서비스 이용 및 신청 절차 등 포함)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비공식 돌봄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자체 차원의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및 상충에 관하여 진단하였다.

셋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관 정책 현황 및 변화를 검토하고, 서비스 공급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제도 등 자녀돌봄시간지원제도 강화, 유보통합 추진,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와 시간제보육기관 확충 등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변화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프랑스와 일본의 가정내양육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쟁점을 파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의 목표, 지원대상 및 수준, 민간을 포함하는 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고유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관 정책의 변화 등 수요를 종합하여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서비스 공급 방향을 제안 한다. 이때 부모 수요와 더불어 서비스 운영자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목표와 기대효과, 유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공급 방향, 제도적 여건의 조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공식 돌봄 부문을 위주로 기타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하에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관하여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I-2-1]과 같다.

[그림 I-2-1] 분석내용: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서비스 수요 변화 예측

유관 정책 및 주요 변화 내용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p>[기관보육·돌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간 운영 원칙 일원화 : 아침/저녁돌봄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일수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방학 수요 대응 	<p>⇒ [공식 돌봄] [비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 민간 육아도우미/조부모 돌봄 수요(↓) : 이용기관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가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요 규모 감소 예상
<p>[부모급여 제도 도입 및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1개월: 매월 100만원 - 12~23개월: 매월 50만원 	<p>⇒ [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 종복수급 금지에 따른 영아종일제 돌봄 수요 감소 : 가구소득 확보를 위한 영아시간제 돌봄 이용시간 감소 : 서비스 비용 확보에 따른 영아시간제 돌봄 수요 증가 <p>[비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 : 서비스 비용 확보에 따른 영아시간제 돌봄 수요 증가 - 조부모 돌봄 수요(↓) : 서비스 비용 확보에 따른 수요 감소
<p>[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급여 상향 조정 : 휴직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유연근무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p>⇒ [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 영아종일제 돌봄 수요 감소 <p>[비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육아도우미/조부모 돌봄(↓) : 영아종일제 돌봄 수요 감소 <p>⇒ [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 틈새보육(등하원시각) 수요 감소 <p>[비공식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 - 조부모 돌봄 수요(↓) : 틈새보육(등하원시각) 수요 감소

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이 연구의 분석 방법과 추진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 문헌연구 및 온라인 자료 조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관한 정책 현황과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 정책 자료 조사 및 검토: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가정내양육지원의 방향과 서비스 지원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정책 자료와 사업 지침 등 검토
- 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주요 변인의 도출을 위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관련 주요결과 검토
- 온라인 자료 조사 및 검토: 지방정부의 조부모 돌봄 수당 등 비공식 돌봄 지원 내용 검토

나)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유형별 이용 및 공급 실태 분석

공식 돌봄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공급 추이를 조사하여 서비스 유형별 공급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사례분석: 외국의 가정내양육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분석

프랑스와 일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기관 기반의 보육·돌봄서비스 위주의 북유럽국가들과는 달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실 수요를 중심으로 기관보육을 지원하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강화의 배경과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기관보육의 공급 부족

에 따른 부모 선택권 보장이 강조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내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표가 보다 강조된다.

가) 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가정 기반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인가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보육사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이나, 정규시설보육과의 구분되므로 다름), 가정 양육 도우미(Aide à domicile), 숙식 제공 도우미(Salarié au pair: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보상을 지불하는 육아도우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가정 내 양육가구의 긴급돌봄이나 일시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보육서비스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나) 일본 사례

일본의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이외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한다(유해미 외, 2023: 102). 이들 중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거택방문형서비스’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일시보육 등을 위한 국가보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유해미 외, 2023: 103) 해당 내용을 검토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유아를 둔 가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분석하고, 서비스 유형별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전반의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를 약 300사례 수준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의 참여자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3회와 5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선정하였다. 이하에서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및 규모(총 1,628명)

- 본 조사: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약 1,000명(아동연령/지역별 비례할당),¹⁾ 맞벌이 가구 50%선 할당²⁾
- 부스터 샘플: 약 600명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모(母): 449명(목표: 300사례 할당)
 - ※ 최근 3개월 이내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3회 이상 이용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모(母): 356명(목표: 300사례 할당)
 - ※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이용, 단, 조부모(또는 친인척) 비용지원 가구 제외

나) 조사내용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잠재수요 파악(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등),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 서비스 수요 변화(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 등),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 등

1) 아동 연령별 × 지역별 조사대상 배분(안)

연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계
0세	59	67	24	150
1세	57	67	24	148
2세	62	73	25	160
3세	66	77	27	170
4세	67	81	29	177
5세	75	88	32	195
계	386	453	161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5년 1월 기준)

2) 18세 미만 자녀(막내자녀 기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

구분	유배우 가구(수)	맞벌이 가구(수)	맞벌이 가구(%)
계	4,095,000	2,326,000	56.8
6세 이하	1,590,000	818,000	51.5
7-12세	1,496,000	876,000	58.6
13-17세	1,010,000	632,000	62.6

자료: 2023 지역별 고용조사

다)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조사업체 패널 활용, 연령 등 할당에 따른 무작위)

〈표 I-3-1〉 설문조사 문항

조사 영역	세부 항목	조사대상	
		전체 영유아 가구	서비스 이용 가구
I. 자녀양육 실태 및 수요 전반	<p>[전체 응답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 시간 주양육자/추가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전반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방식 동의 정도 • 자녀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이직/출산 기피 및 포기 경험 여부 <p>[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기관 유형 및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이용시간/희망 이용시간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시간 <p>[가정양육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여부/미이용 사유 • 서비스 이용 실태: 접근성, 최초 이용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 부모급여 도입의 영향 정도 <p>[조부모 돌봄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대체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미이용 사유 • 월평균 지불비용 및 부담 정도 	◎	◎
II.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동기 •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시간대 • 자녀돌봄 공백 발생 빈도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유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중단 의향 및 사유 	-	◎
II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동기 •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시간대 • 자녀돌봄 공백 발생 빈도 • 민간 육아도우미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유관 제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중단 의향 및 사유 	-	◎
IV. 돌봄서비스 수요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 돌봄 공백 경험 여부 • 부모급여 수급 여부 및 양육방식 변화 • 돌봄서비스 필요도 •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동의 정도 	◎	◎
V. 응답가구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자녀 변인: 자녀 유무, 총 자녀수, 출생순위 • 응답자 취업 여부 및 직업 • 결혼 상태/맞벌이 여부 • 가구소득 • 거주지역 규모 	◎	◎

4) 면담조사

가) 수요자 대상

수요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아동 및 가구 특성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은 주요 서비스 유형별로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3)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로 구분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실수요층에 부합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이용, 민간 육아도우미는 최근 3개월 기준 10회 이상 이용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경우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 연령을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고, 상시 근로자와 비전형적 근로시간 가구를 포함하였으며, 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기관 유형도 고르게 할당하였다. 영아 가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할당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유아 가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가구로 구분하고,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는 연장보육 이용 여부,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에 따라 고르게 할당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하에서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및 규모: 총 24인

- 조사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유아 가구의 모(母)(총 9인: 2개 그룹)
 - ※ 조사참여자 요건: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이용가구
 - ※ 할당: 영아/유아 × 맞벌이 가구 근로특성 × 기관 이용 여부(영아)/기관 유형 및 이용시간(유아)
- 조사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영유아 가구의 모(母)(총 9인: 2개 그룹)
 - ※ 조사참여자 요건: 최근 3개월 이내 10회 이상 이용가구
 - ※ 할당: 영아/유아 × 맞벌이 가구 근로특성 × 기관 이용 여부(영아)/기관 유형 및 이용시간(유아)
- 조사3: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영아가구의 모(母)(총 6인: 1개 그룹)

※ 조사참여자 요건: 최근 3개월 이내 5회 이상 이용가구

※ 할당: 영아 자녀 각 세별(0세/1세/2세)

(2) 조사내용

- 서비스 유형별 이용 동기, 이용 실태, 대체 서비스 이용 의향, 유관 정책 변화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의향 및 해당 사유 등

〈표 I-3-2〉 면담조사1: 수요자 대상 조사 실시 개요

조사대상	할당1	할당2	할당3	조사 규모	실시 일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영아	(맞벌이 가구1) 40시간 이상 상시근로 가구	어린이집 이용 여부	4인	'25. 5.28
	유아	(맞벌이 가구2) 비전형근로시간 근로가구 ※ 7:30~19:30 근로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5인	'25. 5.27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영아	(맞벌이 가구1) 40시간 이상 상시근로 가구	어린이집 이용 여부	4인	'25. 5.30
	유아	(맞벌이 가구2) 비전형근로시간 근로가구 ※ 7:30~19:30 근로	-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 여부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5인	'25. 5.29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가구	0세 / 1세 / 2세			6인	'25. 5.28

〈표 I-3-3〉 면담조사1: 수요자 대상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녀 연령 및 총 자녀수 부모 근로특성: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기관이용 현황: 이용 여부, 이용기관 유형 및 이용시간 지녀돌봄시간지원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등) 이용 가능성 이용기관 외 돌봄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여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 여부 	
본조사	I. 자녀 및 가구 특성 등 (응답자 확인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특성에 따른 기관돌봄 서비스 이용 어려움 부모 근로 특성에 따른 기관돌봄 서비스 이용 어려움 지역 특성에 따른 기관돌봄 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
	II.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동기 및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서비스 이용 동기 및 필요성

구분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 변화 내용 •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최초 이용 시기, 이용시간, 이용비용/인력 전문성 등 만족도
III.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용절차 등 포함) • 서비스 개선요구: 이용시간, 이용비용, 사후관리 등
IV.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돌봄(유보통합) 접근성 보장에 따른 수요 변화 및 사유 •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강화에 따른 수요 변화 및 사유 •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 및 사유 • 선호하는 양육방식

나) 공급자 대상

공급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지원체계 전반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은 주요 서비스 유형별로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2)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 운영자, 3)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주체별로 고르게 할당하였다. 즉, 민간 육아서비스 기관의 경우는 소개업체와 정보제공업체를 포함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고르게 할당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규모 및 조사내용은 다음 <I-3-4>와 같다.

〈표 I-3-4〉 면담조사2: 공급자 대상 조사 실시 개요

조사대상	할당	조사규모	실시 일자	
			1차 서면조사	온라인/대면 면담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자	육아종합 지원센터	2인	'25.7.22.-28.	'25.7.29
	어린이집	2인		'25.7.30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지역규모 (※ 군 지역 포함)	4인	'25.7.24.-31.	'25.8.6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 운영자	소개업체	3인	-	'25.8.5
	정보제공업체	2인		'25.8.7

〈표 I-3-5〉 면담조사2: 공급자 대상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 항목	기관 및 응답자 특성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정책에 따른 이용가구 특성 변화 - 운영 주체 유형별 서비스 공급 특성 및 애로사항 -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개선 필요사항(이용 절차 등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필요성 및 필요사항(수요자 특성 및 서비스 내용 차별화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관 위탁체 유형/업체유형 -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현 기관(업체) 재직 기간, 유관 분야 총 경력, 기관(업체) 등록 돌봄인력 수/운영 반수, 직원 규모, 기관(업체) 소재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정책에 따른 이용가구 특성 변화 - 서비스 공급 방향 및 적정 공급 관련 의견 - 지역특성에 따른 공급의 차별화된 방향성 및 전략, 어려움 - 수요자 불만 및 민원사항 - 사업 전반의 개선 필요사항(지원대상 및 수준 등 포함) - 서비스 제공 관련 개선 필요사항 - 공공 부문의 역할과 지원체계 관련 개선과제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 및 대응 전략 - 업체 특성 및 주요 운영관리 사항 - 공공 부문 연계 관련 필요성 인식과 요구사항 - 등록제도 도입 관련 의견 -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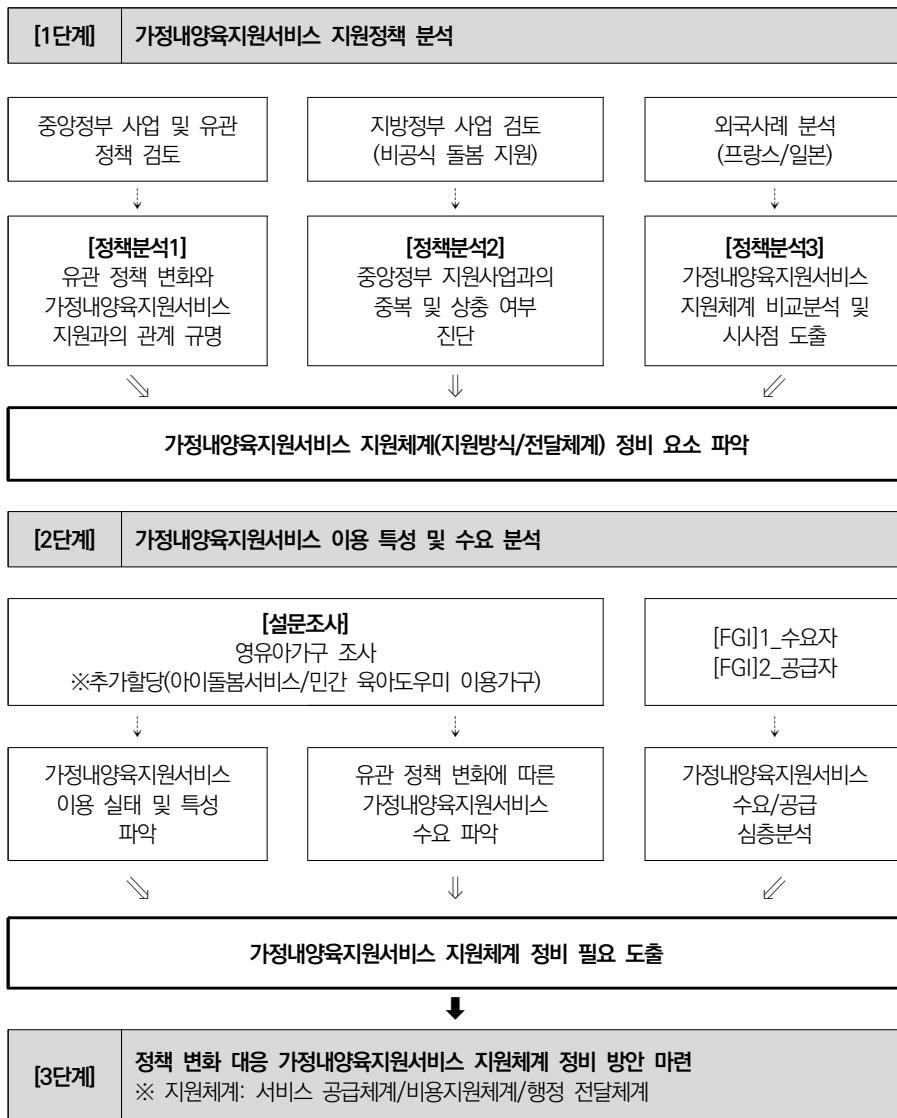
5)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도출한 서비스 공급 및 비용지원의 방향성과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세부과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나. 연구 절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내용과 추진절차를 제시하면 [그림 I-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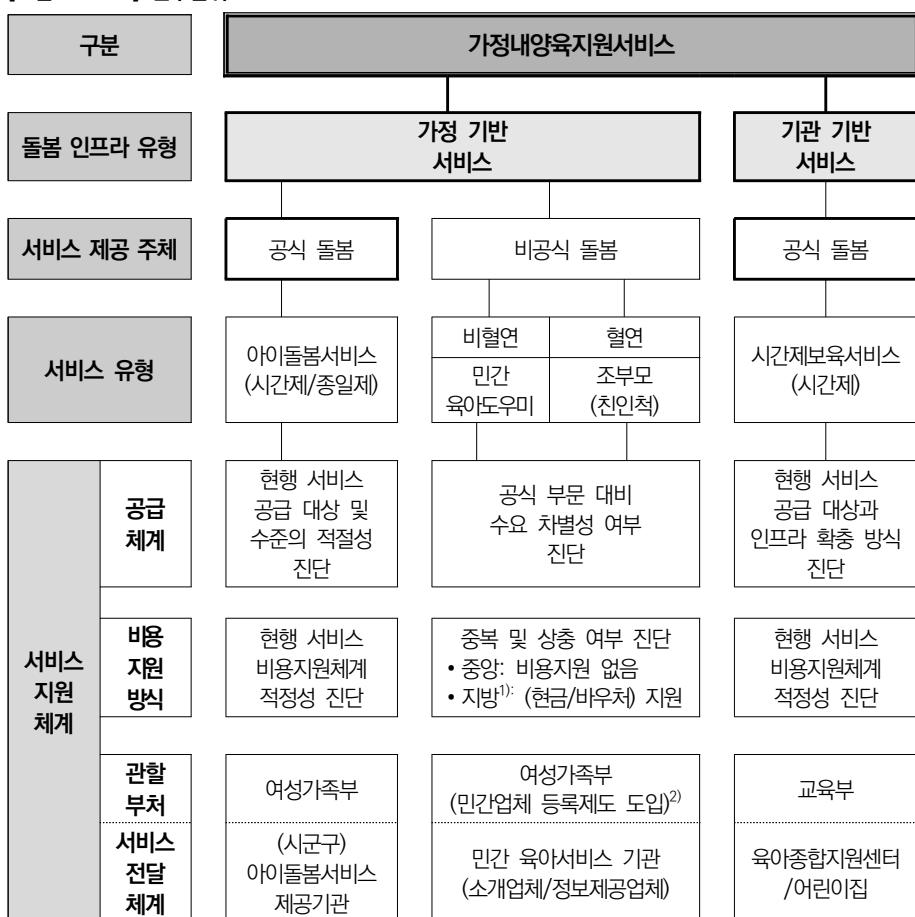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추진체계



4. 연구범위와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선 돌봄 인프라 유형에 따라 ‘가정 기반’ 서비스와 ‘기관 기반’ 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때 ‘가정 기반’ 서비스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보육과는 달리 1:1로 제공되는 개별서비스를 말한다. ‘기관 기반’ 서비스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일시보육이 포함된다.

[그림 I-4-1] 연구범위



주: 1) 일부 지방정부에 한함.

2) 민간업체 등록제도 도입 관련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25.4.2.) 및 시행일자(2026.4.23.) 반영(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_아이돌봄 지원법, <https://www.law.go.kr>)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차원에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으로 구분된다. 비공식 돌봄의 정의와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OECD 자료에서는 조부모 혹은 친척, 친구, 이웃 등이 무급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OECD, 2021: 1). 구체적으로는 통상적인 주중 기준으로 아동이 부모 또는 주보호자를 제외한 조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받은 시간이 적용된다(OECD, 2021: 5). 그러나 호주 등에서는 비공식 돌봄을 무급에 한정하지 않고 유급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공식 돌봄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서비스 공급 대상 즉, 지원대상의 적정성, 비용지원 여부 및 비용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 전달체계의 보완 과제를 모색하였다. 즉,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관할 정부부처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범위를 제시하면 위의 [그림 I-4-1]과 같다.

II

연구의 배경

- 01 선행연구 검토
- 02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 03 지방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 04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공식 부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과 지방 정부의 비공식 돌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에 해당하는 유관 정책 현황 및 변화를 다루었다. 이에 앞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선행연구 검토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는 아동 및 이용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 이용 동기, 이용 실태 및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별로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및 부모의 근로특성,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여부 등이 주요 변인으로 확인된다.

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동기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동기는 가구의 보육·교육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단독이용 동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에서 기관과의 병행 이용 동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용 동기를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가구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024 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서 결과에 의하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가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66.2%로 주를 이루며, 그 다음으로는 '희망기관에 대기자 많음'이 6.7%,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

로움'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 이용가구의 자녀 연령은 대부분 0세와 1세에 해당하였다(최효미 외, 2024: 466-467).

또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주된 동기는 '가정돌봄 선호'가 1순위 기준으로 44.0%,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96.1%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22: 230). 2023년에 영아자녀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관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가 59.0%,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17.1%, '현재 (어린이집, 학원, 기타 기관) 신청하여 대기 중'이 13.1%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이정원 외, 2023: 243-244).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를 살펴보면,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은 1세 미만 자녀에서 97.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1세~2세 자녀에서 53.6%로 나타났다. 2세 미만에서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은 변함없이 나타났으나, 2~3세는 11.1%로 하락하며, 해당 수요는 2018년(43.95%), 2021년(27.0%)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최효미 외, 2024: 150-151).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정내양육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정 돌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 중인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집 폐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보육·교육기관과 병행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영아 자녀의 단독 이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과 병행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이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기관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45.3%로 가장 많았다(1+2순위 응답률: 62.0%). 그 다음으로는 '출근 이후 기관 등원시각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34.8%(1+2순위 응답률: 38.2%)로 확인된다(유해미 외, 2022: 68). 이러한 결과는 기관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가 가정내양육서비스의 실수요자임을 알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병행 이용 사유는 자녀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영아 자녀인 경우는 '자녀가 종일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조사되었다

(유해미 외, 2022: 68). 맞벌이 가구에서는 ‘출근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등원 시간까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2: 69).

다른 한편 기관을 연장하여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양육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에의하면, ‘연장보육 필요 없음’(73.8%)을 제외하면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안 좋음’이 21.7%로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4: 336). 이로써 기관 이용가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주목하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기관에서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것인지 장시간 보육 기피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추이와 이용가구 특성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 추이

2024년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병행 이용가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2015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해당 비율은 2015년에 10.9%였으나 2018년에 16.3%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11.5%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18.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최효미 외, 2024: 461). 구체적으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을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15.2%로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영아가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6.4%로 나타났으며, 기관 병행 이용 비율은 유아 가구에서 17.3%로 영아 가구(1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 수와 비율(2024)

단위: 명(%)

구분	2024년			2021년	2018년	2015년	2012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581	1,426	3,007	3,471	3,775	3,560	3,343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c+d)	289	250	539	398	614	387	1,243
비율(b/a)	(19.4)	(17.3)	(18.3)	(11.5)	(16.3)	(10.9)	(37.2)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94	-	94	102	176	86	379
비율(c/a)	(6.4)	-	(3.2)	(2.9)	(4.7)	(2.4)	(11.3)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 아동(d)	195	250	445	296	438	301	864
비율(d/a)	(13.0)	(17.3)	(15.2)	(8.5)	(11.6)	(8.5)	(2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최효미 외(202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아동조사. p. 461. 〈표 IX-1-1〉.

같은 조사에서 돌봄인력 유형별로는 조부모 돌봄 비율이 8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비동거 조부모 79.5%로 다수이고, 다음으로는 동거 조부모 10.4%, 공공 아이돌보미 5.3%, 민간 육아도우미 4.9%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효미 외, 2024: 464). 조부모 돌봄은 특히 0~1세아의 비동거 조부모 의존도가 두드러지나 이후 연령대에서도 70~80%선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1-2〉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 현황(2024)

단위: %,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이웃 /자인	기타 비혈연	(수)
전체	10.4	79.5	0.5	2.7	5.3	4.9	0.7	0.2	(539)
생활연령									
0세	13.8	78.3	2.9	8.5	5.6	7.7	2.0	-	(29)
1세	5.3	80.8	-	1.8	6.3	4.8	-	-	(96)
2세	10.0	76.4	1.8	3.2	4.6	7.2	1.8	-	(85)
3세	12.5	77.0	0.3	4.0	6.8	5.7	-	-	(79)
4세	6.7	83.2	-	1.0	3.8	8.3	-	-	(90)
5세	13.9	79.6	-	2.2	5.2	1.1	0.8	0.7	(160)
2021년	19.9	65.3	2.6	3.6	5.1	6.4	2.7	-	(398)
2018년	22.8	61.8	0.6	3.2	3.9	9.0	1.6	-	(607)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최효미 외(202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p. 464 〈표 IX-1-5〉 재구성.

한편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과 자녀연령, 그리고 가구소득에 따라 부모 자부담 수준이 차이를 보이므로 양육비 부담 원화 측면에서 이들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서비스 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으로 민간 육아도우미가 평균 142만8천원로 월등히 높고,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지불 비용은 평균 67.4만원, 공공 아이돌보미는 46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최효미 외, 2024: 485). 자녀 연령별로는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조사에서 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지불한 비용은 영아 73만4천원, 유아 60만5천원으로 영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경우, 영아 114만2천원, 유아 67만3천원으로 높았다(최효미 외, 2024: 477). 또한 경기도 거주 영유아 가구 조사 결과에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은 평균 8만원, 400만원대는 평균 20만원, 600만원대는 평균 75.1만원, 800만원 이상은 평균 85.9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돌봄 비용이 부담된다(다수 부담됨+매우 부담됨)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김지현 외, 2024: 75-77).

2) 서비스 이용가구 특성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는 부모의 근로시간 및 근로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서비스 이용가구의 근로특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70.6%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2: 62-63). 아버지 취업 중이 90.4%, 어머니 취업 중이 80.7%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2: 61). 이들 중에서 불규칙하게 출근하는 비율은 남성이 20.7%, 여성이 19.3%로 나타난다. 또한 평균 근로시간은 20시간 미만과 40시간 초과인 경우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두드러진 이용률을 보여서 전 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여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상용근로자 이외에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근로자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들 가구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그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

성은 8.5%, 여성은 21.0%에 불과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남성은 12%, 여성은 46.9%에 그쳤다(유해미 외, 2022). 저소득층 가구에서 자녀 돌봄 시간지원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의 이용 가능성이 저조한 반면, 월 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제도 전반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유해미 외, 2022: 152). 이처럼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서 돌봄 공백의 발생 우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1) 서비스 유형별 이용 의향: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비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살펴보면,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유해미 외, 2022: 137).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중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한 이유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율 기준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가 40.9%로 조사되었다(유해미 외, 2022: 160).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 육아도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 비용으로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 중인 어린이집 연장보육 또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로 조사되었다. 해당 응답률은 어린이집 이용가구와 36개월 미만 영아 자녀에서 31.8%와 3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유해미 외, 2022: 172-17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에서 ‘정부지원 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이고, 해당 비율은 비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와 영아 가구에서 각각 34.0%와 34.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비공식 돌봄 부문의 민간 육아도우미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김소영 외, 202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비율은 공공 아이돌보미 5.3%, 민간 육아도

우미 4.9%로 유사한 수준이다(최효미 외, 2025: 463). 또한 비혈연 양육자 중에서는 공공 아이돌봄이 47.8%, 민간 육아도우미가 44.2%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한 이용 규모를 보인다(최효미 외, 2025: 479). 민간 육아도우미는 원하는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육아 외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원정 외, 2022: 24-25).

2)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평일, 야간 및 주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일에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이용시간 전후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7시~9시 30%, 오후 4시~8시 40%가 희망하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가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에 대해서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6~17시가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7~18시가 17.8%로 조사되었다. 종료 시간의 경우는 18~19시 30분이 69.1%, 19시 30분 이후가 21.6%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돌봄 기관을 이용할 때, 정규 보육 및 교육시간이 끝난 시점인 오후 4~5시부터 부모의 퇴근 시점인 오후 6~7시까지 추가돌봄 요구가 많음을 보여준다(유해미 외, 2022: 249-25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대다수가 서비스 이용 동기로 기관 등·하원 시 돌봄 공백이라고 응답하여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김소영 외, 2022: 30).

야간 및 주말의 긴급돌봄 수요를 살펴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7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가 높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요를 보였다(유해미 외, 2021b: 229).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영아자녀의 경우는 가정 돌봄을 선호하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있는 반면, 유아자녀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원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자녀 연령과 기관 병행 이용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비공식 돌봄 부문에서는 조부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고 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이용하며 서비스 내용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수요가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와 구분되는지를 면밀하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추이는 2023년을 기점으로 급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용가구 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특히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유관 정책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1조에 따르면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 목적은 첫째, 부모의 출장,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고, 둘째,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 부모에게 가정 내 영아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25a: 15).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2007년 실시 된 이래 점차 사업이 다양화되고, 사업대상과 정부지원 시간 및 비용이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II-1-1>과 같다.

〈표 II-2-1〉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2007-2025)

연도	추진 경과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규 실시
200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20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2010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2011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최소 이용시간 변경(160시간→120시간)
201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모든 취업부모)

연도	추진 경과
2014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연령 확대(만12개월→만24개월)
2017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연령 확대(만24개월→만36개월)
2018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5%p)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600시간)
2019	정부지원 확대 -중위소득 120%→150%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율 상향(기존 각5%p 증가, 신규지원 15~20%)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720시간)
2021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연 720시간→840시간)
2023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연 840시간→960시간)
2024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정부지원 비율 상향(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20%→30%)
2025	-정부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이하→200%이하 -정부지원 비율 상향(0~5세 중위소득 120%~150%: 20%→30%, 6~12세 중위소득 75%~120%: 30%→40%, 6~12세 중위소득 120%~150%: 15%→20%) -정부지원 신설(0~5세 중위소득 150%~200%: 15%, 6~12세 중위소득 150%~200%: 10%)

자료: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6-17.

2023년에 발표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위한 다양한 기관보육돌봄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1-2).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자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정부에 등록한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의 긴급돌봄에 대응하는 일시연계서비스를 4시간 이내 신청 시에도 제공하고,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3: 8).

1) 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³⁾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5a: 18). 서비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양육 공백의 기준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서비스 유형은 총 4종으로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가 있다(여성가족부, 2025a: 18).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만 이용이 가능하고, 1회 3시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이용 가능하고, 1회 2시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종합형은 아동 돌봄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의 돌봄 대상, 이용시간,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등은 다음 <표 II-2-2>와 같다.

<표 II-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2025)

구분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기본)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최소 30분 단위
활동 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기본형)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종합형)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야간(오후10시~오전6시),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할증: 기본요금의 50% 증액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200%이하인 경우(가,나,다,리형),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기타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Guide> (2025. 3. 5. 인출)

3)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양육 부담 가정(여성가족부, 2025: 38-4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가'~'라' 형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25a: 20). 또한 가구특성(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지원이 추가된다. 한편 중위소득 200% 초과인 가구의 경우(마형)는 정부지원 없이 본인이 이용료를 100% 부담한다. 이때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구와 부모급여 수급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영아종일 제서비스 지원금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되고, 시간제서비스 지원금은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어린이집: 평일 9-16시, 유치원: 평일 9-13시)에는 지원이 제한된다(여성가족부, 2025a: 41).

2025년에는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중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약 12만 가구가 지원 받을 예정이고, 영아(36개월 이하)돌봄 시에는 추가수당을 신설하여 새롭게 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 4). 또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등·하원 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림 II-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율 변화(2024~2025)

'24년 지원율(요금 11,63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 ~ 5세	6 ~ 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30%		
다	120%~150%	20%	15%		
라	150% 초과	-	-		

'25년 지원율(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 ~ 5세	6 ~ 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40%		
다	120%~150%	30%	20%		
라	150%~200%	15%	10%		
마	200% 초과	-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 p. 1.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금 비율은 이하의 〈표 II-2-3〉과 같다. 일반가정 중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의 2018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15~85% 지원을 하며 2018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는 10~75% 지원을 한다(여

성가족부, 2025a: 68, 72). 한부모, 장애부모 등의 취약계층 가정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각각 15~90%, 10~80% 지원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의 0~1세 아는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90%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5a: 69, 72, 73).

〈표 II-2-3〉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기본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율(2025)

구분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기본형 A형)				시간제서비스(기본형 B형)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부모 0~1세 가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85%	15%	90%	10%	75%	25%	80%	20%	90%	10%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60%	40%	60%	40%	40%	60%	40%	60%	90%	10%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30%	70%	30%	70%	20%	80%	20%	80%	90%	10%
리형 (중위소득 200%이하)	15%	85%	15%	85%	10%	90%	10%	90%	90%	10%
마형 (중위소득 200%초과)	-	100%	-	100%	-	100%	-	100%	-	100%

주: 시간제서비스 대상 중 A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해당되며, B형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가 해당됨.

자료: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68-69, 72-73.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중 종합형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별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의 〈표 II-2-4〉와 같다. 일반가정 중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의 2018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는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약 11.5~65.4% 지원을 하며 2018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는 약 7.7~57.7% 지원을 한다(여성가족부, 2025a: 72). 한부모, 장애부모 등의 취약계층 가정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각각 약 11.5~69.2%, 약 7.7~61.6% 지원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부모의 0~1세는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약 69.2%를 지원 한다(여성가족부, 2025a: 72, 73).

〈표 II-2-4〉 시간제(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시간당 단가)(2025)

단위: 원

구분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가정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10,354	5,476	9,136	6,694	10,962	4,868	9,744	6,086	10,962	4,868
나형 (중위소득 120%이하)	7,308	8,522	4,872	10,958	7,308	8,522	4,872	10,958	10,962	4,868
다형 (중위소득 150%이하)	3,654	12,176	2,436	13,394	3,654	12,176	2,436	13,394	10,962	4,868
라형 (중위소득 200%이하)	1,828	14,002	1,218	14,612	1,828	14,002	1,218	14,612	10,962	4,868
마형 (중위소득 200%초과)	-	15,830	-	15,830	-	15,830	-	15,830	-	15,830

주: 1) 시간당 단가는 15,830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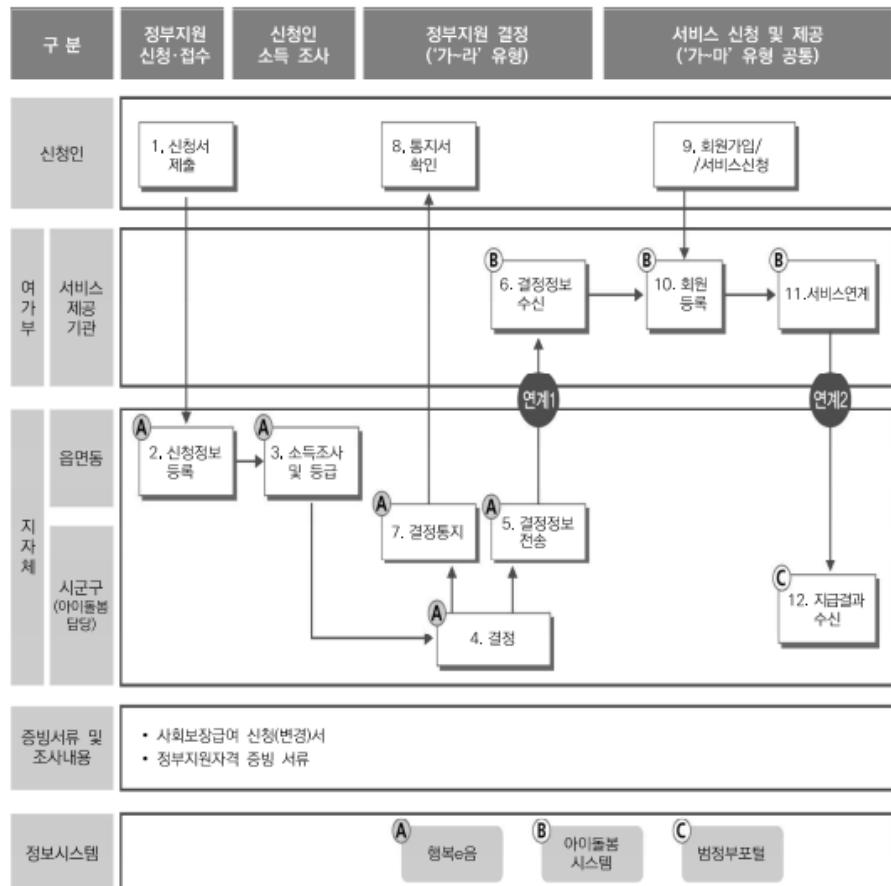
2) 시간제서비스 대상 중 A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해당되며, B형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가 해당됨.

자료: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72-73.

2) 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정부지원 대상인 ‘가’~‘라’형에 해당되는 가구는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해당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여성가족부, 2025a: 22). 한편 ‘마’형에 해당되는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여성가족부, 2025a: 22). 즉, 이용 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의하면, ‘가’~‘라’형 가구는 1번부터, ‘마’형 가구는 9번부터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2025a: 23).

[그림 II-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도(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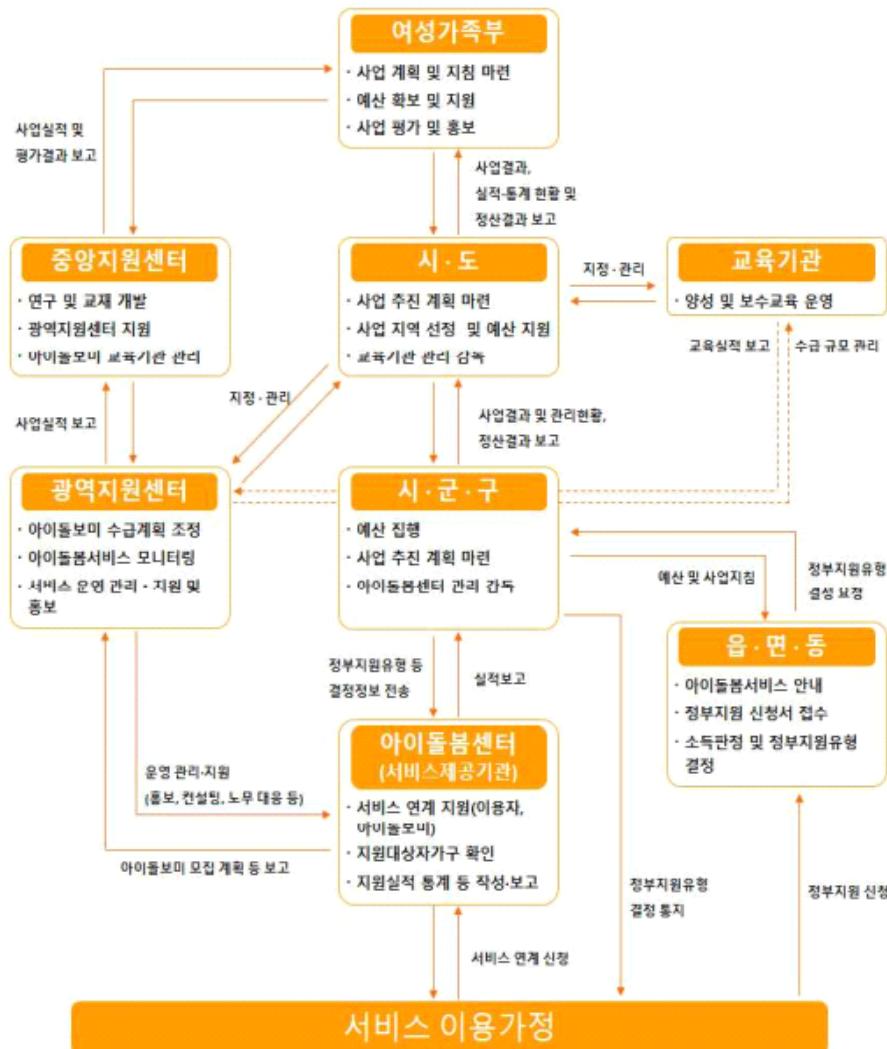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23.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⁴⁾에서 회원 가입 후에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은 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한다(여성가족부, 2025a: 28, 55).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한다(여성가족부, 2025a: 28).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본인부담금 선입금한 후에 이용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5a: 28). 이상의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II-2-3]과 같다.

4) <https://idolbom.go.kr> (여성가족부, 2025a: 55)

[그림 II-2-3]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2025)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24.

3) 지원대상 규모 및 추이⁵⁾

2020~2024년 동안의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이용가구 수를 살펴보면 2020년 59,663가구에서 2024년 118,126가구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5)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사업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2025.3.5. 인출)

출현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서비스 이용가구가 70,021가구로 가장 많으며 종일제 이용가구는 1,155가구, 기타 서비스(단기서비스, 기관연계 등)는 46,950가구였다. 2020~2024년 동안의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제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56,525가구에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종일제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3,138가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4년에는 2020년의 약 3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긴급돌봄을 위한 단기서비스는 2021년 8,533가구에서 약 5.3배 증가하여 2024년 45,606가구가 이용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기관연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1,256가구에서 2023년까지 1,406가구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4년 다소 감소하여 1,344가구가 이용하였다.

〈표 II-2-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가구 계	59,663	71,789	78,212	86,100	118,126
정기서비스	시간제	56,525	59,383	61,138	66,515
	종일제	3,138	2,617	2,760	1,155
단기서비스	-	8,533	12,939	16,289	45,606
기관연계서비스	-	1,256	1,375	1,406	1,344

자료: 여성가족부(2025c). 내부자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이용시간을 2020~2024년간 살펴보면, 2020년 87.4시간에서 2021년 87.9시간으로 약간 증가했다가 2022년 83.1시간으로 감소한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24년 88.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주: 기타에는 단기서비스,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이 포함됨.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사업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2025.5.30. 인출)

아이돌보미 수는 2020년 24,46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29,635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다.

〈표 II-2-6〉 아이돌보미 규모(2020-2024)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469	25,917	26,675	28,071	29,635

자료: 여성가족부(2025c). 내부자료.

2024년 12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가·다가 통합센터, 지자체 직영, 여성단체여성인력센터 등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가·다가 통합센터가 총 173개소이다. 즉, 전체 231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약 7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II-2-7〉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4.12)

단위: 개소

계	건가·다가 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센터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자활 센터	기타
231	157	12	4	6	12	3	5	32

주: 기타-YWCA/YMCA,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법인 및 단체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5c). 내부자료.

나. 시간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 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3).

한편 교육부는 2024년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전 년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1).

1) 설치 및 운영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또는 그 밖의 보육 관련 시설⁶⁾을 지정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5: 31).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5: 272).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운영된다. 독립반의 정원은 1개반 기준 3명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교육부 외, 2025: 31). 통합반은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반이 혼합반으로 편성되어 운영할 경우 시간제보육 통합반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출생연도 기준으로 반을 편성한다(교육부 외, 2025: 31). 0세·1세반은 정원이 1명, 1세·2세반은 2명이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은 각각 1:3, 1:5이다(교육부 외, 2025: 31, 40).

6)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 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교육부 외, 2025: 31)

〈표 II-2-8〉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설치 및 운영 기준(2025)

구분	독립반	통합반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1개반 기준) <p>※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연도 기준으로 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1명, 1세반: 2명, 2세반: 2명, - 0세·1세반: 1명, 1세·2세반: 2명 <p>※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p> <p>※ <u>기본보육반이 혼합반으로 반편성되어 운영 시 시간제보육 통합반 지정 가능</u></p>
교사 대 영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p>※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p> <p>※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1:3, 1세반 1:5, 2세반 1:7, <u>0~1세 반 1:3, 1~2세반 1:5</u> <p>※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p> <p>※ <u>기본보육반이 혼합반으로 반편성되어 운영 시 시간제보육 통합반 지정 가능</u></p>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p. 31, 40.

2) 인력 기준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독립반과 통합반 유형별 인력관리 기준과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인력 채용조건은 모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이며 담당업무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으로 동일하다(교육부 외, 2025: 39).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전반적으로 직전 1년(전년도 3월~당해연도 2월 까지)동안의 월 평균 이용시간(1개반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 까지 차등 지원을 한다(교육부 외, 2025: 46).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독립반 운영시에만 지원을 하며,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1년간 지원하며,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대표자·원장 등이 교사겸직 할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한다(교육부 외, 2025: 46). 운영비의 경우 독립반은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80시간 이상이거나,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이면서 전월 실적(80시간 이상) 총족 시 운영비를 지원한다(교육부 외, 2025: 46). 통합반의 경우는 전월 실적이 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교육부 외, 2025: 46).

〈표 II-2-9〉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인력관리 기준 및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지원 조건(2025)

구분	독립반	통합반
인력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경력: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 <p>※: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고시), 도서벽지, 농어촌 및 준농 어촌은 보육업무 경력 2년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p>- 기본보육반 교사 채용 조건과 동일</p>
인력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p>※ 보조교사를 채용한 경우, 시간제보육 아동 등·하원 지원, 이용료 수납, 담임교사 휴게 시간 및 보육활동 지원 등의 업무 담당</p>	
인건비 /운영비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직전 1년(전년도 3월~당해연도 2월까지)동안의 월 평균 이용시간(1개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 까지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지원기준) 독립반만 해당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지원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간 미지원 (운영비 지원기준)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80시간 이상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지원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전월 실적(80시간 이상) 충족 시 운영비 지원 직전 1년 반당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간 미지원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 등이 교사 겸직 할 경우,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운영비 지원기준) 전월 실적이 있을 경우 운영비 지원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p. 39, 46.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반의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제공 기관 유형에 따라 호봉별 단가 또는 4호봉을 지원한다(교육부 외, 2025: 47). 독립반은 추가로 교사 수당 20만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만원을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교육부 외, 2025: 48). 통합반의 경우는 교사 수당만 10만원을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교육부 외, 2025: 48). 운영비의 경우는 두 유형 모두 지원조건에 따라 1개반 기준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표 II-2-10〉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인건비/운영비 보조금 교부 내용(2025)

구분	지급항목	금액	비고
독립반	인건비	육아종 및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조건에 따라 호봉 지원 또는 미지원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별도 지원
		민간, 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지원조건에 따라 4호봉 지원 또는 미지원
	교사 수당	200,000원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 - 일반 보육교직원 예산 에서 지급 -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
		26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운영비	지원조건에 따라 월 300,000원 지원 또는 미지원	1개반 기준
통합반	교사 수당	100,000원	교사 개인계좌로 지급
	운영비	지원조건에 따라 월 300,000원 지원 또는 미지원	1개반 기준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 48.

3) 이용 방법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로 이용 대상 및 시간을 보면, 독립반의 경우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이용 가능하며, 9:00~18:00 사이 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123). 통합반은 어린이집에서만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6개월~2세반⁷⁾ 영아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연령을 적용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5: 3). 오전(9:00~12:00), 오후(13:00~16:00), 종일(9:00~16:00)로 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123).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은 독립반과 통합반 합산하여 월 60시간이며, 이용 단가는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2천원)이다(교육부 외, 2025: 123). 단,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시간당 5천원).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2-11〉과 같다.

7) 2세반 출생일 기준: '22.1.1~'22.12.31.까지

〈표 II-2-11〉 시간제보육서비스 독립반/통합반 운영 비교(2025)

구분	독립반	통합반
운영시간	9:00~18:00	9:00~16:00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시간대 단위 예약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독립반/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교사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대상	6~36개월 미만 영아 (내/외국인) (혼합)	6개월~2세반 영아 (내/외국인)
보육료(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2천원) ※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인건비/운영비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인건비·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수당 지급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수당 지급

주: 2세반 출생일 기준은 '22.1.1~22.12.31'까지임.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p. 40, 123.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⁸⁾에서 아동등록 후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5: 42). 사전 예약은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가능하며, 독립반의 경우 서비스 이용 당일에도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42). 서비스 유형에 따른 예약 시간 변경과 취소 방법 및 기간은 이하 〈표 II-2-12〉와 같다. 예약 시간 단축, 연장의 변경은 독립반의 경우 전화로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43).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통합반의 경우 변경은 불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43). 예약 취소 및 초과 이용 시 별점제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5: 43).

〈표 II-2-12〉 시간제보육서비스 예약/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방법(2025)

구분	독립반	통합반
사전예약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 전화 신청(1661-9361)	-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사전예약 기간	-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24:00)까지	-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1일 전(24:00)까지

8) <http://www.childcare.go.kr>

구분	독립반	통합반
당일예약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온라인) - 전화 신청(1661-9361) 	불가능
당일예약 기간	-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예약시간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 <p>※ 단, 이용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별점 없이 예약취소 가능</p>	
예약변경 (단축,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p>※ 단,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 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p>	불가능
예약 취소 시 처리방법: 별점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약 시간 전: -1점 - 예약 시간 내(예약시간 내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경우): -2점 - 미이용(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점 - 초과이용(사전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4점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p. 42-43.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시에는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은 개별로 준비해야 하고, 급·간식은 독립반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통합반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부모가 2,200원을 부담해야 한다(교육부 외, 2025: 42, 43). 그 외에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할 수 없고, 통합반의 경우 견학 및 특별활동은 시간제보육 예약 시간 내에 진행되는 활동에 한하여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5: 42).

〈표 II-2-13〉 시간제보육서비스 유형별 제출서류/준비물/급간식(2025)

구분	독립반	통합반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확인) <p>※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p>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급·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p>※ 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부모부담 2,200원(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결제 또는 방문 결제) <p>※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에서 통합반 예약 시 선택 가능</p>

구분	독립반	통합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원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학 및 특별활동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청 후 참여 가능. 단 시간제보육 예약 시간 내에 진행되는 활동에 한하며,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건학 및 특별활동은 참여 불가. 건학 및 특별활동 비용은 실비로 적용하되,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출처: 교육부 외(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pp. 42-43.

4) 지원대상 규모 및 추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 반 수, 이용아동 수는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공기관 수는 2016년 347개소 대비 2024년에는 1,675개소로 약 4.8배 증가하였고, 반 수도 2016년 382개에서 2024년 5.3배 증가하여 2,033개이었다. 이용 아동 수도 2016년 13,377명에서 2024년 31,921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 시간제보육서비스의 대상아동인 0~2세 인구 수 대비 이용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1.05%에서 2024년 4.41%로 약 4.2배 증가하였다.

〈표 II-2-1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수/반수/이용아동수 및 비율 추이(2016~2025.3)

단위: 개소, 개반, 명, %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기관 반수	이용아동 수	0~2세 주민등록인구수	0~2세 인구수 대비 이용아동 비율
2016	347	382	13,377	1,274,601	1.05
2017	382	437	18,115	1,198,543	1.51
2018	370	437	18,437	1,090,535	1.69
2019	402	490	20,388	989,002	2.06
2020	578	681	10,187	901,344	1.13
2021	740	857	10,434	834,699	1.25
2022	796	946	19,702	786,567	2.50
2023	827	1,000	28,177	746,070	3.78
2024	1,675	2,033	31,921	724,298	4.41
2025.3.	1,610	1,927	11,143	719,84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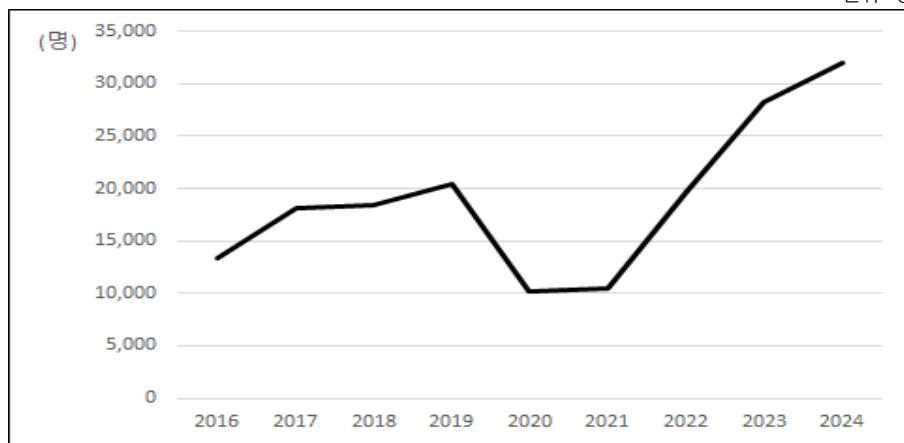
주: 1) 2020,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정기간 시간제보육 운영 중단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 저조
2) 이용아동 수는 종복 이용 제거한 수치임.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25). 내부자료

2)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 (2025.5.8. 인출)

[그림 II-2-5]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아동 수 추이(2016-2024)

단위: 명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5). 내부자료.

2020~2024년 동안의 시간제보육반 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681개 반 대비 2024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2,033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시간제보육 반 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이 2020년 534개에서 2024년 약 3.5배 증가하여 1,862개로 전체 시간제보육 반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15〉 시간제보육반 수 추이(2020-2025.3)

단위: 개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
어린이집	534	702	787	834	1,862	1,754
육아종합지원센터	146	155	159	166	171	173
기타*	1	-	-	-	-	-
계	681	857	946	1,000	2,033	1,927

주: 기타는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천호점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5). 내부자료.

2020~2024년의 전국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수는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는 2.9배, 시·도별로는 1.9~5.2배 증가하였다. 경북 지역이 5.2배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제주 지역이 4.4배, 인천과 경기 지역이 공히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세종시는 증가율이 가장 낮아서 1.9배에 그쳤다.

2024년 기준으로 0~2세 인구수 대비 시간제보육 서비스 반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100을 곱한 값), 영아 1인당 약 0.002~0.007개 반이며, 전국 평균 약 0.003개 반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주시는 0.007개로 공급 수준이 높은 편이고, 나머지 시·도의 공급 수준은 0.002~0.005개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 II-2-16〉 전국 시·도별 시간제보육반 수 추이(2020~2024)

단위: 개반, 명

시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년 0~2세 주민등록인구수	2024년 인구수 대비 반수
서울	125	134	140	171	296	117,564	0.003
부산	76	102	100	101	177	40,277	0.004
대구	40	44	51	56	117	30,889	0.004
인천	30	39	35	50	121	46,814	0.003
광주	32	37	47	58	80	19,817	0.004
대전	25	62	59	64	91	22,440	0.004
울산	26	25	34	25	61	15,589	0.004
세종	13	13	12	12	25	8,851	0.003
경기	91	99	134	114	366	221,984	0.002
강원	23	30	35	42	71	20,677	0.003
충북	31	41	40	42	76	22,934	0.003
충남	23	28	38	38	65	30,164	0.002
전북	25	24	25	29	61	20,641	0.003
전남	39	56	58	63	92	23,874	0.004
경북	27	46	62	62	141	31,172	0.005
경남	40	52	46	52	127	40,542	0.003
제주	15	25	30	21	66	10,069	0.007
계	681	857	946	1,000	2,033	724,298	0.003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25). 내부자료.

2)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 (2025.5.8. 인출)

3. 지방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앞서 다룬 중앙정부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조부모 수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아이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을 지원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자체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기준으로 15년째 사업을 수행 중이며, 울산광역시는 가장 최근에 조부모 수당을 신설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부모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도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로,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이다. 조부모가 7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소득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부모는 20시간 이상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손자녀와 부모는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가족돌보미 수당은 종일제돌봄과 시간제돌봄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종일돌봄은 조부모가 1일 8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때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시간제돌봄은 조부모가 1일 4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광주광역시여성단체 협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자녀 가족돌보미 수당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사업 예산은 광주광역시가 100%를 담당하고 있다.

〈표 II-3-1〉 광주광역시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손자녀 가족돌보미
시행시기	- 2011년
추진근거(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70세 초과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기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요건: 집합 교육 20시간 이상 -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월 30만원(1일 8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시간제돌봄: 월 20만원(1일 4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신청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팩스, 이메일로 신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기간: 최대 3년 - 사업예산: 광주시 100%

자료: 1) 광주광역시(2011). 2011년도 손자녀돌보미 사업지침. p. 3, p. 14.

2)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https://www.gwangjuayuki.com/main/contents/infant19> (2025. 3. 3. 인출).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2013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본계획(안)(아이돌봄담당관-4476, 2023.3.30.)에 따라 추진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다. 지원방식은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되는데 친인척형은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민간형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조건은 소득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민간은 월 2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친인척형 돌봄 조력자는 사전 온라인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은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이며, 영아가 2명일 경우에

는 월 45만원, 영아가 3명일 경우에는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몽땅 정보만능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가정당 영아 3명까지이며, 최대 13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서울특별시 50%, 시군구 5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표 II-3-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시기	- 2023년 9월
주진근거 (조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본계획(안)(아이돌봄담당관-4476,2023.3.30.)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거주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 준용) - ①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수행 시 돌봄비(친인척형) 또는 ②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서울시 지정) 이용권(민간형) (택 1)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 - 요건: 조력자 월 40시간 / 민간 월 2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친인척형-사전 필수 교육 이수(온라인 총 120분)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기」(http://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사업수행주체: 서울시, 자치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사업예산: 서울특별시 50%, 시군구 50%

자료: 1) 서울특별시(2025). '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pp. 1-2, pp. 6-7.

2)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2025).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ld=117526&tr_code=sweb (2025. 3. 3. 인출).

3) 경기도

경기도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돌봄조력자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경기도민인 이웃 주민을 지정할 수 있다. 지원조건으로 소득과 관련된 기준은 없으나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며, 2명일 경우에는 월 45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7개 시군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경기도 50%, 시군 5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표 II-3-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시기	- 2024년 7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가정: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타 자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 주민(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로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 요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이동 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신청방법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7개 시군이 참여(2025년 기준) - 사업예산: 경기도 50%, 시군 50%

자료: 1) 경기도뉴스포털. [2025년 경기도가 쓴다!]①더 넓어진 경기도 돌봄.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502111024158488C109&s_code=C109 (2025. 3. 3. 인출).
 2) 경기도뉴스포털. [360° 언제나 돌봄] ③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소'.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080928307442C109&s_code=C109 (2025. 3. 3. 인출).

4)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돌봄 수당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 부모를 대신해 24~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다. 지원조건은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과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상남도 손주돌봄 수당은 아동 1명 기준 월 20만원이며, 2명일 때는 월 30만 원, 3명일 때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

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사업예산은 경상남도 30%, 시군 7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표 II-3-4〉 경상남도 손주돌봄 수당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손주돌봄 수당
시행시기	- 2024년 7월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가 있는 부모 등) 부모를 대신해 24~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조건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 요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22시~06시 제외) 및 사전교육(온라인 4시간) 이수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월 20만원, 2명 월 30만원, 3명 월 4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타 사항	- 지원기간: 12개월 -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하는 경우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사업예산: 경상남도 30%, 시군 70%

자료: 1) 경상남도 보도자료(2024. 6. 27.).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지급.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2001000&boardId=BBS_0000060&dataSid=42173857 (2025. 3. 3. 인출).

2) 경상남도 보도자료(2024. 12. 30.). 경남도,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2001000&boardId=BBS_0000060&dataSid=42221313 (2025. 3. 3. 인출).

3) 경상남도 홈페이지. 손주돌봄 지원.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44010001014 (2025. 3. 3. 인출).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울산 거주 2세 영아(24~36개월)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다. 지원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과 연 2회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이며, 2명일 때는 월 45만원, 3명일 때는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아동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예산은 울산

광역시 50%, 구군 5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표 II-3-5〉 울산광역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시행시기	- 2025년 3월
지원대상	- 울산 거주 2세 영아(24~36개월)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및 교육(연 2회 집합 교육) 이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1명당 월 30만원 지급,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수당: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업예산: 울산광역시 50%, 구군 50%

자료: 1) 울산광역시(2024). 을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p. 3.

2) 울산광역시 보도자료(2025. 1. 25.). 울산시,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원한다.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27&mld=001004003001000000&dataId=169366 (2025. 3. 3. 인출).

6)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2025년 3월 19일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 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라남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구별 사업을 시작하여(예: 순천시 7월 시작, 해남군 8월 시작) 2026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이다. 지원조건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하루 4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온라인 사전교육 200분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수당은 월 30만원이며, 외·조부모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된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부모 주민등록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특징으로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시의 경우, 위치기반 출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으로 부정사항 의심 시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점검과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II-3-6〉 전라남도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5년 7월 ※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지원대상	- 순천시 거주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부모
지원조건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사전교육(온라인 교육 200분) 이행 등
지원내용	-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부모 주민등록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사항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활동일지 작성) - 외·조부모에게 현금(계좌이체) 지급

자료: 1)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2025. 7. 31. 작성).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mode=view&cntld=11566> (2025. 8. 8. 인출).
 2) 순천시청 홈페이지. 예산안내. 2025년 1회추경. <https://www.suncheon.go.kr/kr/open/0006/0014/0023/0002/> (2025. 8. 8. 인출).
 3) 해남군청 보도자료(2025. 8. 7.). 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https://www.haenam.go.kr/planweb/board/view.9is?contentUid=18e3368f5d745106015d877ab2850a94&boardUid=18e3368f5fb80fdc015fdc4c2ac203e7&pBoardId=BBSMSTR_000000000131&dataUid=18e3368f5d542987015d63ee65c202ff&nttld=112147 (2025. 8. 8. 인출).
 4) 순천시청 홈페이지. 예산안내. 2025년 1회추경. <https://www.suncheon.go.kr/kr/open/0006/0014/0023/0002/> (2025. 8. 8. 인출).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초구 거주 1~24개월 미만 손주가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이다. 지원조건에 소득과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조부모는 양성교육 수료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수당은 손자녀 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쌍둥이 가정일 경우에는 월 80시간 돌봄 시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손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종료 시점은 연계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손자녀가 만 24개월(생일 전날)이 되는 시점까지이다. 서비스 신청은 서초구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은 서초구 예산으로 100% 운영된다.

〈표 II-3-7〉 서울 서초구 손주돌봄미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서초 손주돌보미													
시행시기	- 2011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손주 가정 - 서초구 거주 조부모 - 서초구 거주 만 1~24개월 미만 손주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무관 - 요건: 아동당 월 40시간 손주돌봄, 조부모 대상 양성교육 수료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아동당 월 30만원 수당 지원(쌍둥이 가정, 월 80시간/월 60만원 수당 지원)													
신청방법	- 서초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이용 신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한 자녀</th> <th colspan="2">두 자녀</th> <th rowspan="2">세 자녀 이상</th> </tr> <tr> <th>외별이 가정</th> <th>맞벌이 가정</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td> <td>6개월</td> <td>9개월</td> <td>12개월</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종료 시점: 연계 시점 상관없이 해당 아동 연령 만 24개월(생일 전날)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아이돌보미서비스와 서초손주돌보미서비스 중 택 1 이용 가능 - 사업예산: 서초구 100%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외별이 가정	맞벌이 가정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외별이 가정	맞벌이 가정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자료: 1) 서초구 보도자료(2011. 9. 6.).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중 합계출산증가율 1위!! 저출산 극복정책 효과 톡톡!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61&bcIdx=198734> (2025. 3. 3. 인출).
2)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lay1/S295T315C318/contents.do> (2025. 3. 3. 인출).

8)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 비교

지역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수당 관련 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표 II-3-8〉과 같다. 사업명에는 가족돌봄, 손주돌봄, 아이돌봄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 시행 시기는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2011년으로 가장 빠르며, 전라남도 순천시가 가장 최근에 사업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 아동은 24개월~36개월 등 주로 영아에 한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는 6세 이하로 유아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다. 돌봄조력자의 경우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초구, 순천시는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과 민간업체까지 확장하였고, 경기도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을 포함하였다. 조부모의 연령을 제한한 지역도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70세 이하 조부모를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7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80세 이하 조부모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지원요건은 경기도와 서초구를 제외하고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적용하며, 8개 지역 모두에서 최소 돌봄시간과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며, 돌봄 조력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 교육 방식은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원 수준은 7개 지역에서 손자녀 1명 돌봄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이외 1개 지역에서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사업 예산 분담 방식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표 II-3-8〉 전국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 추진 현황(2025. 8)

구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초구
사업명	손자녀 가족돌봄보미	서울형 이어돌봄비	경기형 기족돌봄수당	손주돌봄 수당	(의)조부모 순주 돌봄수당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 서초 손주돌봄보미
시행시기	2011년	2023년 9월	2024년 7월	2025년 3월	2025년 7월	2011년
대상	이동 조력자 70세 이하 조부모 *70세↑ 6세 이하 조부모 습의 절정 친인척, 민간업체	24~36개월 이하 24~48개월 미만	24~35개월 이하 24~36개월 이하	24~35개월 이하 24~36개월 이하	24~35개월 1~24개월 미만	
소득	중위소득 150% *맞벌이 25% 경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중위소득 150% 이하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없음	조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	80세 이하 조부모 중위소득 150% 이하	조부모
조건	돌봄 시간 (종일돌봄) 1일 8시간 이상 (시간제돌봄) 1일 4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
교육방식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집합 교육
거주 요건	거주 지역 지원내용 (월, 만원)	서울 거주 무관	경기도 거주 무관	울산 거주 무관	해당 지역 거주 무관	서초구 거주 서초구 거주
조력자	광주 거주 4시간 이상 20 (월, 만원)	1명 30, 2명 45, 3명 60	1명 30, 2명 45, 3명 40	1명 20, 2명 30, 3명 60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30	1명 30, 생동이 60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방문, 온라인 신청
지원분담	광주시 100%	서울시 50%, 시군 50%	경기도 50%, 시군 50%	울산시 50%, 시군 70%	전라남도 30%, 시군 50%	서초구 100%

자료: 〈표 II-3-1〉~〈표 II-3-7〉 내용을 정리함.

나. 아이돌봄 지원

1) 서울특별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⁹⁾

서울특별시에서는 특화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틈새를 개선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서비스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잊은 야근과 학업, 출장, 질병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양육 공백 상황에서 등·하원 아이돌봄, 병원동행 아이돌봄(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영아전담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담 돌보미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 시간(오전 7~10시, 3시간) 전후에 식사 또는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오후 4~8시, 4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하원 시간 전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이다.

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병원 내원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돌보미가 병원동행과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1,630원(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이며, 진료비, 약재비 등은 이용 가정에서 부담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돌보미가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 영아에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양육공백 가정의 만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이며, 이용 요금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료와 동일하다.

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 1. 12.).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본격 시행.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267 (2025.7.11.인출) 및 우리동네카움포털.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2/dolbomMENU2_3/dolbomMENU2_3_1.jsp (2025.7.11.인출) 내용을 참고함.

〈표 II-3-9〉 서울특별시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사업명	-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	- 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 영아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 복동 등 비전염성 질병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 서울시 양육공백 가정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요금	-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 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진료비, 약재비 등은 이용 가정 자부담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료와 동일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금액 변동
이용 시간	- 등원 오전 7~10시(3시간) 하원 오후 4~8시(4시간) *등하원 시간 전후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서비스 종류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 시간형(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에서 전담 돌보미 연계		

자료: 우리동네카움포털,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2/dolbomMENU2_3/dolbomMENU2_3_1.jsp (2025.7.11.인출).

2) 서울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1190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서초아이돌보미서비스와 서초119아이돌보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아아돌보미서비스는 서초손주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이용할 수 없다.

서초아이돌보미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만 3개월에서 24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한 자녀 맞벌이와 두 자녀 외벌이 가정은 6개월, 두 자녀 맞벌이 가정은 9개월, 세 자녀 이상 가정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아동 연령 내 6개월간 월 5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연계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자녀가 만 24개월(생일 전날)까지이다. 이용요금은 교통비 1일 3,000원이며, 10시간 추가 이용 시에는 시간당 10,000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돌봄서비스로 한정되며, 가사 활동, 단독 목욕, 병원 동행 등은 불가하다. 서비스 이용은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초119 아이돌보미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3개월~만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주양육자의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맞벌이, 질병, 입원, 학교 재학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일시 안전보호, 등하원, 등하교를 주요 지원 내용으로 하는 서초119아이돌보미서비스는 월 6회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1일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 이용은 3일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교통비 1일 3,000원이며, 1일 4시간 초과 이용 시 시간당 10,000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서비스 범위는 서초아이돌보미서비스와 동일하게 아동 양육 중심 돌봄서비스에 한정된다. 서초119아이돌보미서비스도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표 II-3-10〉 서울 서초 아이돌보미/서초구 119아이돌보비 지원사업

사업명	- 서초 아이돌보미 서비스	- 서초 119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개월~24개월 자녀 양육 가정 - 서초구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가정 *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가정만 해당 *육아휴직의 경우 맞벌이 미인정 *서초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서초 손주돌보미 서비스 중 택1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거주하는 만 3~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주양육자의 양육 공백 발생 시 이용 가능(맞벌이, 질병, 입원, 학교 재학 등) *육아휴직의 경우 맞벌이 미인정 									
지원내용	<table border="1"> <tr> <th>한 자녀</th><th>두 자녀</th><th>세 자녀</th></tr> <tr> <td>맞벌이</td><td>외벌이</td><td>맞벌이 이상</td></tr> <tr> <td>6개월</td><td>6개월</td><td>9개월 12개월</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아동 연령 내 6개월간 월 50시간 지원(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쌍둥이일 경우 월 70시간 지원) *서비스 종료 시점: 해당 자녀 연령 만 24 개월(생일 전날)까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이상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6회 이내로 신청 가능 - 일시 안전보호, 등하원, 등하고 - 1일 최소 2시간~최대 8시간 이용 가능 *연속 이용은 3일까지 가능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이상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용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1일 3,000원 *10시간 추가 이용 시 자부담 시간당 10,000원 (공휴일·주말 이용 및 아동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비 1일 3,000원 *1일 4시간 초과 이용 시 자부담 시간당 10,000원 (공휴일·주말 이용 및 아동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서비스 범위	- 아동 양육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단, 가사 활동, 단독 목욕, 병원 동행 불가)										
신청방법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										

자료: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lay1/S295T315C318/contents.do> (2025. 3. 3. 인출).

4. 유관 정책 변화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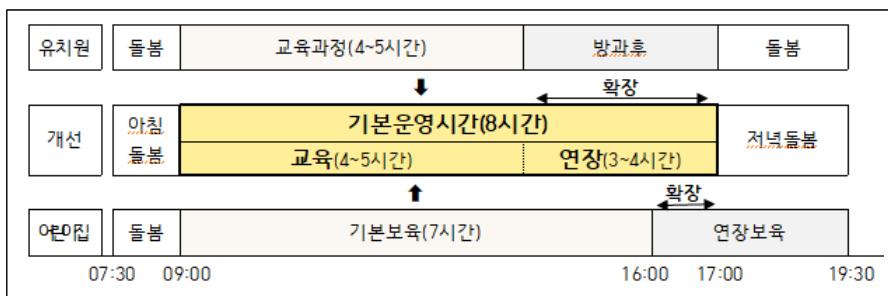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는 기관보육·돌봄서비스는 물론이고,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 그리고 아동관련 현금지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내양육서비스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양육지원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보통합 추진: 충분한 이용시간과 일수 보장

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돌봄 수요 대응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1, 2, 3단계¹⁰⁾ 추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포함되었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영유아보육 업무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제외되고 교육부로 이관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7.28).

[그림 II-4-1] 유보통합 실행 계획_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기본8+추가4)(2024)



출처: 교육부(2024).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p. 6.

교육부가 2024년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세부 과제로는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이 제시된다. 우선 충분한 이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희망하는 경우에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

10) 1단계('14년)는 결제카드 통합, 공통 공시정보 항목 및 평가항목 마련, 2단계('15년)는 유아학비 상한제 실시, 공통시설(피난기구 등) 기준 마련, 3단계('16년)는 유특회계 국고지원(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3).

도록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과 4시간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여 교육·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교육부, 2024: 56). 특히 돌봄 공백으로 지목되는 이른 아침에는 아침 돌봄(1시간 30분~2시간)과, 늦은 저녁에는 저녁 돌봄(2시간~2시간 30분)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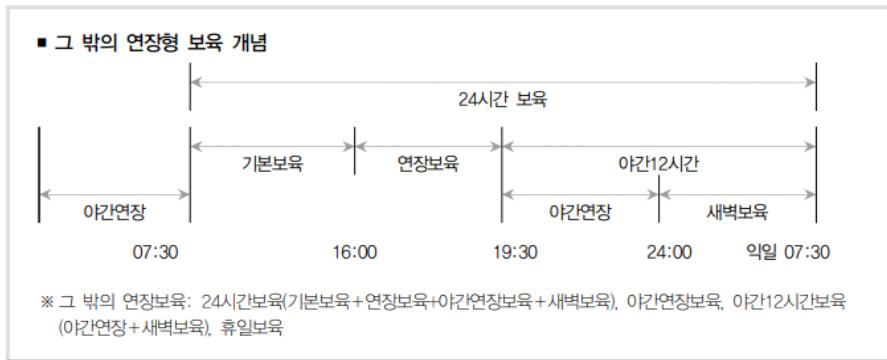
이러한 조치에 앞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아래와 같이 지원 목표에 따라 지원대상 및 운영기준이 변화되어 왔으며, 현행 운영 원칙에 의하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다음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어린이집 연장보육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반드시 12시간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5a: 78).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2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보육을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되, 지역이나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면 해당시간 전후 3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교육부, 2025a: 78). 이후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이후 시간대는 그 밖의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연장보육은 1) 야간연장보육(19:30~24:00),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07:30~19:30)이 포함된다. 이처럼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이루 어지는 12시간 이외에도 휴일을 포함하여 새벽과 늦은 야간시간대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에 도입된 연장보육은 오후 4시 이후에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12시간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교육부, 2025a: 356).

단, 연장보육을 포함하여 그 밖의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 사유를 증빙하여 실수요자를 위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은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 대해 희망하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치원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II-4-2] 어린이집 보육시간(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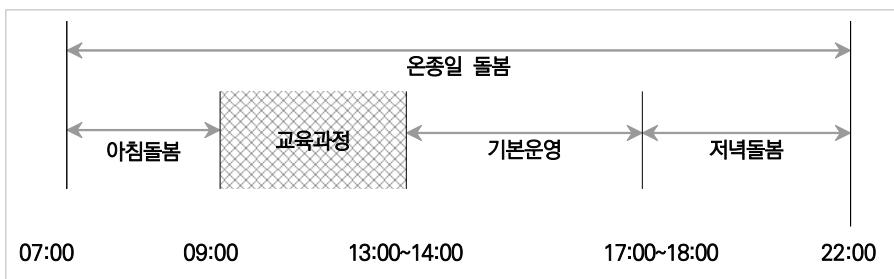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5a). 2025년 보육사업안내. p. 359.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유치원은 시·도별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 기본운영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부터 시·도별 방과후 과정 최소 운영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최소 운영 시간이 19시까지일 경우에는 19시까지가 유치원의 기본 운영에 해당한다.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아침돌봄이 운영되며, 기본운영 이후부터는 저녁돌봄을 운영할 수 있다. 아침돌봄, 기본운영, 저녁돌봄을 모두 운영하는 형태는 온종일 돌봄이라고 칭한다(교육부, 2025c: 13).

[그림 II-4-3]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시간(2025)



- 주:
- 1) 아침돌봄: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하는 돌봄
 - 2) 기본운영: 정규 교육과정 이후부터 시도별 방과후 과정 최소 운영 시간까지 운영
 - 3) 저녁돌봄: 기본운영 이후부터 운영하는 저녁돌봄
 - 4) 온종일 돌봄: 아침돌봄+기본운영+저녁돌봄으로 운영

출처: 교육부(2025c). 2025학년도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안). p. 14.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유아교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수업과정)로 구분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수업과정이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3월 12일 일부 개정을 통해 반일제, 시간연장제 내용은 삭제되고 종일제라는 명칭이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구자연 외, 2023: 53-54).

II

2)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일수와 돌봄 수요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이용시간과 더불어 충분한 이용 일수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주 6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교육부, 2024: 6-7). 또한 맞벌이 가구와 자영업자의 휴일근무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휴일에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4-4] 유보통합 실행 계획_충분한 이용일수 보장(주 6일 이상 서비스 제공)(2024)

현행		개선(안)
실제 운영일수		실제 운영일수
유치원	(병설) 연 227일, (단설/사립) 연 235일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약 70% 참여	방학 중 연장과정 100% 참여 보장 거점기관을 통한 주 6일 돌봄 - 다만, 토요일 및 휴일은 학부모 실제 수요를 바탕 으로 운영여부 결정
어린이집	연평균 275일* 운영 * 법정공휴일(18일)과 일요일(50일) 제외	

출처: 교육부(2024).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p. 7.

한편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일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에서는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해야 한다(교육부, 2025a: 77).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휴원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에만 휴무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집 운영일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수업일수를 정한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유치원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교육부, 2025c: 13).

이상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노력으로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이 실수요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별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는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영유아 가구에서 틈새보육이 요구되는 시간대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휴일과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용 일수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가정 내 보육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돌봄 공백으로 지목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 그리고 휴일과 방학 기간에 가정내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관돌봄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규모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나. 부모급여제도 도입 및 확대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과 통합되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큰 폭으로 급여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는 모두 현금으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감하고 현금을 지원받는 방식여서 서비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경우 0세아는 바우처 540,000원과 현금460,000원을 지급받고, 1세아는 바우처 475,000원과 현금 25,000원을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25: 4).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5: 7).

[그림 II-4-5]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5)

2022년(영아수당, '22년생부터)			2023년(부모급여)			2024년~2025년(부모급여)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연령		만 0세	만 1세
보육	시설 미이용	월 30 (현금)		보육	시설 미이용	월 35 (현금)		보육	시설 미이용	월 50	
	시설 이용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시설 이용	월 70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시설 이용	월 100 보육료 바우처* (0세반, 1세반)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 19.

한편 예산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7).

〈표 II-4-1〉 부모급여/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단가(2025)

구분	부모급여	부모급여 바우처	
		부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0세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2,180원 (최대 200시간)
1세 (0세반 /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예산 소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주: 2025년 0, 1세 부모보육료 예산은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편성

출처: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 7.

다.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가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어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가정내보육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소득대체를 상향 등 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액 인상과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실효성 제고, 시차출근제·근무시간 선택제·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18-24). 이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를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에 대폭 인상되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복직 후 6개월 뒤에 휴직급여의 25%가 지급되었으나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지급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b).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첫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첫 개월 휴직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1년간 육아 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밖에도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앞서 육아휴직제도와 달리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a: 1).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여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a: 2).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에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다(고용24,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Id=SC00000252&systId=SI00000397>, 2025.7.1.인출).

이상의 자녀돌봄지원제도 활성화는 일하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대리양육의 수요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가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과 이용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에도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4: 21).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제도 활용은 긴급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으므로 긴급돌봄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우려되므로 특히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대상과 공급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국외 사례 및 시사점

01 프랑스 사례

02 일본 사례

03 소결

III. 국외 사례 및 시사점

제3장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프랑스 사례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란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잠시 멈추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 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자녀를 돌보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 보육시설(crèches) 혹은 개인양육서비스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절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프랑스는 “인가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제도를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발달하였다. 프랑스의 인가 보육사 제도는 보육시설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영아자녀 부모의 욕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가 보육사는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보육사의 집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서 아동의 집 밖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지만 보육사의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가 보육사 이외에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가정 양육 도우미, 숙식 제공 도우미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 내양육지원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인가 보육사보다 이용률은 낮지만 도우미가 아동의 집에 와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인 가정 양육 도우미(Aide à domicile)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보상을 지불하는 숙식 제공 도우미(Salarié au pair)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일시보육시설(haltes garderies)을 살펴본다. 일시보육시설에서는 일시보육 서비스(accueil ponctuel 혹은 occasionnel), 긴급보육(accueil d'urgence) 서비스를 제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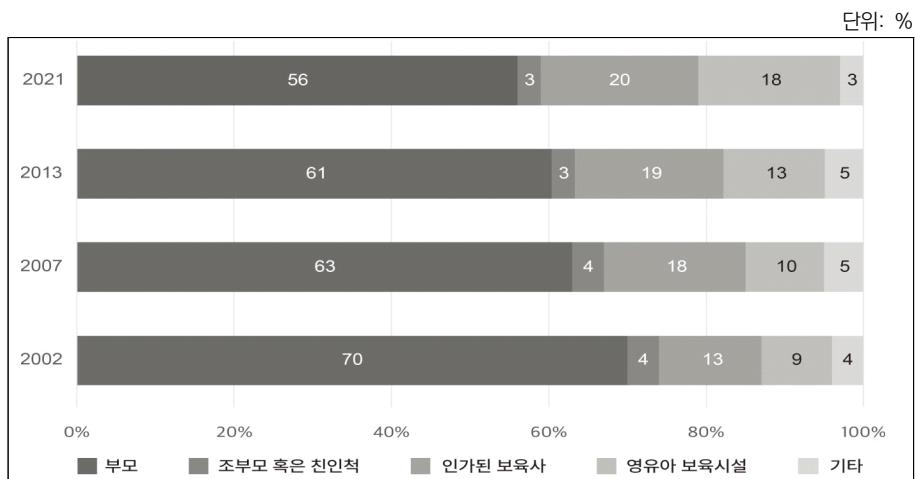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를 급할 경우에 해당 시설에 맡길 수 있다.

가. 가정 내 양육아동 현황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0~2세 아동과 3~6세 아동을 돌보는 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며 3세부터는 국가 교육체계에 속하는 의무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현재 3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은 2002년 이후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III-1-1] 프랑스 주중 3세 미만 아동의 주된 돌봄자 변화(2002~2021)



자료: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2024). L'accueil des jeunes enfants, Edition 2024. p. 13. <https://www.caf.fr/professionnels/actualites/rapport-2024-de-l-observatoire-national-de-la-petite-enfance-une-plongee-dans-les-modes-d-accueil> (2025.4.20. 인출)

2021년 보육 및 돌봄 방식 조사 (L'enquête de garde et d'accueil 2021)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56%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부모 중 한 명 (대부분 어머니)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44%는 부모 이외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돌보고 있다. 전체 3세 미만 아동 중 인가된 보육사 (assistantes maternelles)를 이용하는 비중은 20%, 영아보육시설(établissement d'accueil du jeune enfant: EAJE)은 18%, 조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경우는 3%, 학교에 맡겨지는 경우는 3%, 가정내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부모 외 주된 양육 방식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인 인가 보육사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1-1 참고).

2002년부터 여성 고용률 상승과 함께 부모가 주된 양육자인 비중은 크게 감소 하여 14% 포인트의 감소를 보였다. 이와 함께 3세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비율과 인가된 보육사에게 맡겨지는 비율은 각각 9% 포인트와 7% 포인트 상승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프랑스 3세 미만 영아 양육에서 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중은 56%로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 출산 이후 3세가 될 때 까지 육아휴직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 부모가 오롯이 혼자서 자녀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는 34%이며, 부모가 주양육자로서 다른 양육자 혹은 시설을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22%, 인가 보육사 혹은 시설을 주된 양육 수단을 삼고 부모가 보조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35%로 나타난다(표 III-1-1 참고). 이로써 부모가 주된 양육자인 경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인가 보육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프랑스 3세 미만 영아의 주된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 비중(2021)

단위: %, 시/분

주양육자	보조 양육자	비중(%)	주된 양육 평균 시간	보조 양육 평균 시간
부모	없음	34	55시	-
	인가된 보육사	8	34시 3분	19시 44분
	영유아 보육시설	6	36시 27분	17시 31분
	조부모 혹은 친인척	5	45시 30분	8시 44분
	학교	3	36시 45분	16시 36분
인가된 보육사	부모	19	37시 3분	16시 50분
어린이집	부모	16	38시 35분	15시 30분
기타		9	-	-
합계		100	-	-

주: 평균 보육시간은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임.

자료: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2024). L'accueil des jeunes enfants, Edition 2024. p. 13. <https://www.caf.fr/professionnels/actualites/rapport-2024-de-l-observatoire-national-de-la-petite-enfance-une-plongee-dans-les-modes-d-accueil> (2025.4.20. 인출)

프랑스 부모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인가 보육사 보다 믿을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 하지만 제한된 어린이집 정원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이 대부분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프랑스에서 정부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린이집 수를 늘리기 보다는 인가 보육사를 이용하여 부족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수요와 정원 수 증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프랑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3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가 시설 서비스인 경우는 2002년 9%에서 2021년에 18%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3세 미만 아동이 인가된 보육사에게 맡겨지는 비중은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그림 III-1-1 참고).

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1) 인가 보육사¹¹⁾

가)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인가 보육사 제도는 아동의 집 혹은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본다. 인가 보육사는 시설보육으로만은 부족한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모는 인가 보육사를 직접 고용한다. 인가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1일 기준으로 아동 당 59.4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인가된 보육사에게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mg는 인가받은 보육사, 가정 내 베이비시터, 소규모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부모들은 인가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Cmg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해야 하며, 자영업인 경우 노령 보험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일일 병가, 출산 휴가, 입양 휴가, 육아 휴가, 산업 재해 급여, 실업 급여, 유급 직업 훈련을 받고 있으면 근로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부모가 학생이거나

11) 본 절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행정부(2025a)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83> (2025.4.1.인출)

나 장애인 성인 수당 대상자이거나, 활동연대소득 혹은 특정연대수당을 받으면서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Cmg를 지원 받을 때 근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Cmg의 지원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가족 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0~2세 자녀가 3~6세 자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한부모가 부부 가족 보다 더 많이 지원받고, 자녀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전체 이용비용의 최소 15%는 부모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28,000 유로의 부부 가족이 5세 자녀를 인가 보육사에게 맡기면 월 169.73 유로를 지원 받는다. 이 부모가 인가받은 보육사에게 월 500 유로를 지불한다면 월 지원금 169.73 유로는 부모가 지불하는 월 500 유로의 85% 이하가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169.73 유로를 그대로 지원 받는다. 만일 부모가 인가 보육사에게 월 170 유로를 지불한다면 169.73 유로는 월 500 유로의 85%를 초과하게 되어, 부모는 170 유로의 85%인 144.50 유로만을 지원받게 된다.

인가 보육사의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가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 Cmg를 지원 받을 수 없으며, 50% 이하의 유급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근로시간을 50~80% 줄여서 일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게 감액된 지원금을 받는다.

〈표 III-1-2〉 프랑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금액: 부부 가족(2025)

단위: 유로

월 지원금		월 소득			
0-2세	3-6세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538.28	269.14	23,903 이하	27,295 이하	30,687 이하	34,079 이하
339.42	169.73	23,903~53,119	27,295~60,659	30,687~68,199	34,079~75,739
203.63	101.81	53,119 이상	60,659 이상	68,199 이상	75,739 이상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5b).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 – Assistante maternell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5> (2025.7.16. 인출)

〈표 III-1-3〉 프랑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금액: 한부모 가족(2025)

단위: 유로

월 지원금		월 소득			
0-2세	3-6세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699.76	349.88	33,464 이하	38,213 이하	42,962 이하	47,711 이하

자료: 프랑스 행정부(2025b).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 – Assistante maternell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5> (2025.7.16. 인출)

보육시간 동안 인가받은 보육사가 돌보는 3세 미만 아동의 수는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도의 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와 보육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계약서에는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육사는 새로운 아동을 맡아서 보살핀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보육사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법정 주당 35시간 근무제 규정을 받지 않고, 일일, 주간,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주간 휴식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관련 법령

인가 보육사 제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법 L421-1~L423-1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rt. L421-1~L421-1)
- 노동법 (Code du travail), 국가단체협약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Assistants Maternels du Particulier Employeur)

「사회복지법」은 보육사의 인가, 근무조건,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한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은 인가받은 보육사의 근무시간, 유급 휴가, 계약 해지 등 근로자의 권리를 정의한다. 국가 단체 협약은 인가받은 보육사와 부모 간의 근로 조건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 협약에는 급여 최소 기준, 근무시간(하루 몇 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초과 근무 수당 등), 휴가 및 병가 기준, 해고 수당 및 해고 예고 기간 등 계약 종료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서비스 이용 방법

개인 고용주로서 부모와 보육사 간의 고용 계약은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고용주와 보육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계약이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계약이 기간제 계약일 수 있다. 정규직 계약의 경우 서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 관계에 대한 내용과 자녀에 대한 지침 및 정보가 포함된다. 고용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고용 계약 유형, 당사자 신원, 고

용주 식별 번호, 보육사의 사회보장 번호,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채용일, 보육 장소 및 육아 내용, 직원 전문 책임 보험, 계약 참조인, 자동차 보험 (해당되는 경우), 적응 기간 및 시험 기간, 접수 기간 및 시간표, 자녀의 결석 날짜, 급여 및 지급일, 연차 휴가 날짜, 공휴일 근무, 주간 휴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자녀에 대한 지침과 정보에는 자녀의 건강 상태, 식습관, 주치의, 치료 및 약물 복용 상태, 비상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 계약서에 첨부해야 할 내용에는 자녀의 교통수단에 대한 승인,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서류(예방접종 증명서 등),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목록, 면회권 제한 가능성 있는 경우를 대비한 서면 정보, 보육사의 집에서 자녀를 데려갈 권리 있는 사람의 목록과 연락처 정보, 비상 시 및 부모 부재 시 연락할 사람 목록이 포함된다.

부모는 보육사가 아동을 공식적으로 돌보기 전에 보육사와 아동이 상호 간에 잘 적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보육사 고용의 시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다. 시험 기간의 최대 기간은 주 중 1~3 일 동안 아동을 돌보는 경우 3개월, 주 중 4일 이상 돌보는 경우 2개월이다. 시험 기간의 조건(예: 급여)과 보육시간은 아동의 적응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내용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다. 민간 고용주와 보육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보육사 거주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라) Urssaf Pajemploi 서비스

인가 보육사를 고용할 시에는 Urssaf Pajemploi 서비스에 신고해야 한다. Urssaf Pajemploi는 프랑스 사회보장 기여금 수납청(URSSAF)이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공개 고용 온라인 행정 서비스이다. 인가 보육사를 고용하는 부모는 Pajemploi를 통해 간편하게 보육사의 급여를 계산하고 세금·사회보험 등을 신고 하며 급여명세서 발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약 400,000명의 인가 보육사와 약 1,100,000명의 부모가 Pajemploi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는 인가 보육사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Pajemploi를 통해 URSSAF 혹은 Pajemploi가 보육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Cmg 역시 Pajemploi를 통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Pajemploi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는 Pajemploi에 등록 해야 한다. Pajemploi는 부모가 신고한 이용시간과 급여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을

계산하고 징수하며, 인가 보육사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림 III-1-2] 프랑스 Pajemploi 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Urssaf (2025). Bienvenue sur le site d'information et de services de l'Urssaf.

<https://www.urssaf.fr/accueil.html> (2025.7.16. 인출)

Pajemploi는 가족수당 금고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와 연계하여 Cmg를 자동으로 정산한다. 부모가 가족수당 금고로부터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mg)” 지급받는 경우 부모는 자동으로 Urssaf Pajemploi에 등록된다. 부모는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Urssaf Pajemploi 웹사이트에 신고해야 한다. Urssaf Pajemploi 서비스는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고 본인 부담금은 부모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다.

마) 노동권 보장 관련 사항

인가 보육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이며, 모든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하루에 연속적으로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인가 보육사는 주당 최소 24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인가 보육사의 주당 근무 시간은 45시간이며, 이것은 개인 고용주 및 가정 내 고용에 적용되는 전국 단위 단체 협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이다. 부모는 인가 보육사에게 주당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요구할 수 없지만, 인가된 보육사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주당 4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주당 45시간 근로는 4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보육 보조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은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연간 2,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근무 시작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근무 일정표에 따른 시간, 혹은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아이가 도착한 시간이다. 근무 종료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근무 일정표에 따른 시간, 혹은 아이가 예정보다 늦게 귀가한 경우 아이가 귀가한 시간이다.

주간 휴일 날짜는 가능하면 일요일에 부여되며 계약서에 명시된다. 고용주와 보육 보조원 간의 합의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선택할 수 있다. 보육 보조원이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휴무일은 돌보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연속 6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예외적인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초과 근로시간의 급여는 보육사와 부모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며 아동을 돌보는 날인 경우 휴무일이다. 부모와 인가 보육사는 해당 날을 예외적인 경우로 하여 근무일로 합의할 수 있다. 일반 공휴일 근로는 서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반 공휴일 근무는 부모와 인가 보육사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직업적인 원인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 중인 보육사는 병가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2024년 4월 22일에 제정된 제 2024-364호 법률(유럽 연합 법규에 대한 다양한 적응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월 또는 4주간의 보육 기간 당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급 휴가 이외 출산 휴가, 육아 휴가, 입양 휴가, 가족 행사 휴가, 공휴일, 교육 휴가, 근로 계약의 이행이 질병, 산업 재해, 직업성 질병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중단된 기간, 국방 및 시민의 날, 프랑스 시민권 수여식 참석을 위한 휴가는 유급 휴가로 간주된다. 유급 휴가 급여는 동일한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보육사의 급여 총액을 받거나 보육사가 기준 연도 동안에 받은 총 급여의 10분의 1(생활

비 및 식비 등 수당 제외)을 제공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보육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한다.

인가 보육사의 급여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가 보육사는 “보육 보조원-아동 돌봄”이라는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인가받은 보육사에게 제공되는 시간당 기본임금은 보육사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간당 급여는 개인 고용주 및 가정 내 고용에 관한 전국 단체 협약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 임금에 4%를 가산한 금액인 3.79 유로보다 낮을 수 없다. 부모와 보육사는 기본 시간당 급여를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다. 보육사에게 제공되는 유지비, 식비, 교통비 등 보상은 최저 임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급여는 인가 보육사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이나 연간 근무 주수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월급제로 지급된다. 인가 보육사는 추가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 4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 근무시간은 기본 시급으로 지급된다. 주당 45시간을 초과 근무시간은 추가 수당이 적용되며 추가 수당의 비율은 보육사와 부모 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10%보다 낮을 수 없다. 특별한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돌보는 경우 급여 인상률이 적용되며, 인상률은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인상률은 보육사와 고용주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된다.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결석하는 경우 연간 5일을 한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질병이나 입원으로 인한 결석이 14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인가받은 보육사가 질병에 걸려서 근무를 중단하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는 감액될 수 있다.

보육사는 아동의 놀이 및 교육용 재료, 수면 및 유아용품, 물·전기·난방 등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지비를 지급 받는다. 유지비는 아동 1인당 9시간 근무일을 기준으로 2.65~3.80 유로 한도에서 결정한다.

보육사가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부모는 식비 보상금을 보육사에게 지급 하며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고용 계약서에 식사의 종류, 제공되는 식사 수, 합의된 식비가 명시된다. 보육사가 부모의 요청에 따라 보육 중인 아동을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시킬 때 부모는 보육사에게 주행 거리 보상금을 지급한다.

2) 가정 양육 도우미¹²⁾

가)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가정 양육 도우미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자녀 양육 도우미가 아동의 집에 와서 아동을 돌본다¹³⁾. 인가 보육사가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과 달리 가정 양육 도우미는 아동의 집에 직접 와서 아동을 돌본다. 따라서 인가된 보육사 집에 자녀를 보내서 양육하는 것 보다 자택에 양육 도우미가 직접 와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직접 양육 도우미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협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가정 양육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비용은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 양육 도우미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Cmg의 조건과 급여액은 인가받은 보육사를 고용할 때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하다¹⁴⁾. 이용 비용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 자녀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전체 이용비용의 최소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모가 가정 양육 도우미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은 가정 양육 도우미가 집으로 직접 와서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가된 보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통상적으로 높다.

나) 관련 법령

가정 양육 도우미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 L7232-6조 (Code du travail: article L7232-6)”
- “2019년 4월 11일자 개인 서비스 기관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통지문 (Circulaire du

12) 본 절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행정부(2025c)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2> (2025.4.1.인출)

13) 프랑스의 개인서비스는 집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여행 중 자녀 동반, 자녀의 학습 지원 또는 가정 학습 지원, 의존적인 사람들을 위한 험 뷰티 케어, 집에서 식사 준비 (쇼핑 포함), 식사 및 식료품 배달, 다림질된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집에서 컴퓨터 및 행정 지원, 부양 가족을 위한 반려 동물 돌봄 및 산책, 집에서의 일시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 원격 지원 및 비디오 지원, 수화 통역사, 문자 언어 지원, 장애인 혹은 노인을 위한 외출 동반 혹은 차량 운전 서비스, 노인 혹은 장애인을 위한 일상 생활 지원 및 사회 통합 지원 등이 포함된다.

14) 가정 양육 도우미 이용에 따른 Cmg 지원 내용은 인가 보육사와 동일하므로 해당 내용 참고

11 avril 2019 relative à la déclaration et à l'agrément des organismes de service à la personne”

- “2021년 3월 15일 민간 고용주 및 재택 근로를 위한 전국 단체 협약)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 des particuliers employeurs et de l'emploi à domiciles du 15 mars 2021)“

다) 서비스 이용 방법

부모가 직접 가정 양육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기관에 연락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고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정양육 도우미의 채용 조건은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르다.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부모가 개인 고용주가 되며 서면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Urssaf에 고용주로서 등록하고, 보육사의 신원을 확인하며 유럽 외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허가증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mg)을 지원 받으면서 자녀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Pajemploi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돌봄 이외 집 청소, 소규모 수리 작업, 학습 지원, 가정 강좌, 생활 필수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 Urssaf Cesu 서비스¹⁵⁾를 이용해야 한다.

부모는 위임 기관(madataire) 혹은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업체 (prestataire)를 통해 가정 양육 도우미를 고용할 수도 있다. 위임 기관을 통해 가정 양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부모가 양육 도우미의 고용주가 된다. 이 경우는 부모가 양육 도우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 필요 시 징계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업체는 도우미의 경험, 능력 및 자격 등 채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회 보험료 계산 및 신고, 원천 징수 등 양육 도우미의 행정을 관리한다. 서비스 기관은 부모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한다. 육아 도우미 제공업체를 통해 가정 양육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주가 된다. 해당 업체는 자체 근로자인 가정 양육 도우미를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자체 근로자가 수행

15)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CESU)는 프랑스에서 개인 고용주가 가정 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간편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급여 및 사회보장 기여금을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식 제도이다. (프랑스 행정부 2025d.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2358>. 2025. 4. 1. 인출)

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며, 모든 행정 절차(고용 계약서, 급여 지급, 결근 관리 등)를 처리한다.

3) 숙식 제공 도우미¹⁶⁾

가)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숙식 제공 도우미는 부모에게 고용되어 청소, 세탁, 자녀돌봄 등 가정 내 업무를 수행하고 숙소와 식사 등 현물급여를 받는다. 부모와 도우미 사이에 고용 계약을 체결하며 개인 고용주 및 가정 내 고용에 적용되는 국가별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인가된 보육사와 가정 양육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숙식 제공 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숙식 제공 도우미를 고용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 세금감면 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 “2021년 3월 15일 민간 고용주 및 재택근로를 위한 전국 단체 협약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particuliers employeurs et de l'emploi à domicile du 15 mars 2021)”
- “2006년 5월 18일자 제21105호 장관 답변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의 현황에 관한 사항 (Réponse ministérielle n°21105 du 18 mai 2006 relative à la situation des familles employant des étrangers au pair)”

다) 서비스 이용 방법

숙식 제공 도우미에게 적용되는 연령 조건이나 국적 조건은 없으나, 고용 전에 부모는 먼저 도우미가 유효한 체류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근로가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숙식 제공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Urssaf에 양식을 제출

16) 본 절의 주요 내용은 프랑스 행정부(2025e) 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473>. (2025.4.1.인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매 분기마다 Urssaf는 부모에게 숙식 제공 도우미에 지급할 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명세서를 발송하고 부모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Urssaf에 제출해야 한다. 동 신고서를 바탕으로 Urssaf는 부모에게 급여 납부 기한 및 급여 납부 마감일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숙식 제공 도우미는 숙소와 식사 등 현물로만 보상이 지급된다. 개인 고용주 및 가정 내 고용에 관한 전국 단체 협약은 현물 혜택의 정액 추정액을 식사 당 4.70 유로, 월별 숙소 비용을 71 유로로 산정하고 있다. 제공되는 현물 혜택의 실제 가치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급되는 보상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숙식 제공 도우미가 머무는 주거 환경은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우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로 통하는 창문, 충분한 환기, 난방과 조명 시설, 화장실 및 식수 공급 시설에 대한 접근성, 주방 또는 주방 공간에 대한 접근성, 침대 제공 등이 포함된다.

숙식 제공 도우미는 질병, 출산, 산업 재해 및 기본 연금과 관련한 일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실업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숙식 제공 도우미와 부모 간의 분쟁은 부모의 거주지 관할 노동위원회가 관할한다.

4) 일시보육서비스¹⁷⁾

가) 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일시보육시설은 근로하지 않는 전업모가 주로 활용하는 시설보육서비스로서 오전 혹은 오후 몇 시간 동안만 자녀를 시설에 맡겨서 부모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동이 생후 3개월부터 취학 전 연령까지 일시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유형 혹은 부모의 직업 상태와 무관하게 자녀를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직장에 다니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모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한부모 혹은 저소득 실업 상태의 부모를 위해 보육 정원 20명 중 최소 1명의 입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대개 일시보육시설과 종일제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

17) Tots & Co Toulouse (2025)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totsandco.org/uploads/7/9/9/8/7998048/halte_garderie.pdf. 2025.4.1.인출)

보육시설에서 “반일제”로 다니는 다른 아이들은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종일제”로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돌봄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일시보육시설은 아침과 오후의 두 차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원아 현황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 자녀를 일시보육시설에 등록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 서비스 이용 방법¹⁸⁾

일시보육시설의 이용료는 소득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일시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은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SU)”라는 프랑스 가족 수당 기금(CAF)이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금 제도에 따라서 산정된다. PSU는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인 집단보육 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 가정 기반 돌봄서비스(가정어린이집 등), 부모 참여형 돌봄 시설, 어린이 정원(Jardins d'Enfants)¹⁹⁾에 적용된다.

PSU는 소득 기반 지원으로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가정에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한다. 가족의 본인 부담금은 국가적으로 설정된 기준표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과 자녀 수에 비례하여 시간 당 보육료가 산출된다. 보육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계약되고 청구되어 부모와 보육시설은 계약한 보육서비스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보육료 청구는 실제 아동이 출석한 시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일시보육이 청구된 시간은 아동의 실제 출석 시간과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실제 출석 시간은 아동이 실제로 시설에 머문 시간이며 예약된 시간이 사전 예약한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보육료가 청구된다. 출석 시간과 청구된 시간은 동일하게 30분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되며,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반올림 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

18) Caf de Maine-et-Loire (2023)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SU) Guide pratique pour les gestionnaires, avril 2023”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medias/493/Partenaires/Petite%20enfance/Les%20EAJE/Guide_PSU_MAJ_2023.pdf (2025.7.16.인출)

19) Jardins d'Enfants(어린이 정원)는 일반적으로 만 2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돌봄 시설이다. 이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중간 형태로, 아이들이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프랑스 교육부(2024). <https://www.education.gouv.fr/mission-d-expertise-sur-l-avenir-des-jardins-d-enfants-307984> 2024.11.1.인출).

다) 주요 서비스 내용

일시보육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주당 몇 시간 혹은 반나절 동안 아동을 돌보아 준다. 시설 당 최대 정원은 60명이다. 일시보육시설은 공공 혹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다. 일시보육시설의 보육사들은 보육 보조원 혹은 CAP 유아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시 보육 시설은 프랑스 당국에 의해 감독 및 관리된다. 아이가 일시보육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2~4주 동안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적응 기간 동안 부모가 처음 몇 번 동안 자녀와 함께 머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를 혼자 두는 시간을 10분, 20분, 30분 등으로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다. 자녀가 이 과정에 적응하게 되면 주 2회 아침이나 오후 중 한 번에 최대 4시간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길 수 있다.

일시보육시설은 부모가 매주 같은 날에 자녀를 맡기도록 오전과 오후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일시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어 주별 혹은 월별로 다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부모가 사전 예약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청구 시간은 아동의 실제 출석 시간과 동일하다. 예약이 있으나 취소 보육료를 부과하지 않는 시설은 예약 후 아동이 시설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취소 사전 통지가 없어도 보육료는 면제된다.

한편, 예약 및 취소 정책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모가 예약 취소 기한(예: 24~48시간 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약된 시간에 대한 보육료가 청구된다. 예를 들어 화요일 9시~17시까지 8시간 예약했으나, 아동이 출석하지 않았고 부모가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예약한 시간인 8시간을 청구한다. 화요일 9시~17시까지 8시간을 예약했으나 아동이 11시~17시 30분에 출석한 경우 예약 시간과 출석 시간이 다르고 부모가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 시간이 6시간 30분이더라도 청구되는 시간은 예약된 시간 8시간에 추가 시간 30분을 더하여 8시간 30분이 된다. 부모가 아동을 예약된 종료 시간 이후에 데리러 오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도 보육료가 부과된다. 초과 시간은 계약한 요율로 계산되며, 추가적인 패널티 또는 지연 보육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 유관 정책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가 보육사와 가정 양육 도우미의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는 정부로부터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 둔 부모들은 “자녀 교육 분담 수당(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을 지급 받는다. PreParE는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 받는 수당이다. 2025년 현재 자녀 1명을 가진 부모가 전일로 휴직 상태에 있으면 월 456.06 유로, 근로시간을 50% 줄여서 일하는 경우 월 294.82 유로, 근로시간을 50~80% 줄여서 일하는 경우 월 170.07 유로를 받는다²⁰⁾. 부모가 직업 활동을 완전히 그만 두고 전일로 휴직 상태에서 자녀 교육 분담 수당을 전액으로 받는 경우, Cmg 지원을 받을 수 없다²¹⁾. 즉, 전일제로 휴직 상태에 있으며 인가받은 보육사 혹은 가정 양육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비용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줄인 근로 시간에 상응하여 Cmg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50% 줄여서 일하는 경우 Cmg 지원 금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50~80% 줄여서 일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게 감액된 Cmg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일시보육시설에 보내면서 인가받은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Cmg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인가받은 보육사와 가정 양육 도우미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다 이용하는 경우에도 두 서비스 각각에 상응하는 Cmg를 받을 수 있다.²²⁾

20) 프랑스 행정부 (2025)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485/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0&quest1=0&quest2=0&quest3=0&quest4=1&quest=> (2025.7.21.인출)

21) Mes Allocs (2025) Peut-on cumuler deux Compléments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https://www.mes-allocs.fr/guides/allocations-familiales/paje/complement-libre-choix-mode-de-garde/cumul-deux-cmg/?utm_source=chatgpt.com. (2025.7.21.인출)

22) Mes Allocs (2025) Peut-on cumuler deux Compléments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https://www.mes-allocs.fr/guides/allocations-familiales/paje/complement-libre-choix-mode-de-garde/cumul-deux-cmg/?utm_source=chatgpt.com. (2025.7.21.인출)

Cmg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이므로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출산 보너스, 출산 기초 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2. 일본 사례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어린이집 등의 기관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취업, 질병, 간병 등의 사유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가보육소 등의 기관보육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합계출생률 1.57명 쇼크에 따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립 육아 해소를 위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는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가정 내 양육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보편화되었다.

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추진 배경 및 연혁

1) 가정 내 양육 아동 현황

최근 10년간 합계출생율의 저하로 0~5세 영유아 수는 <표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0만명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성 취업률 증가 등으로 보육소 등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 비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2024년 현재 3세 이상 유아의 보육소 등 이용률은 61.4%이고, 유치원 이용 유아까지 더한 2022년 조사에 의하면, 기관보육 이용률은 약 99.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4: 13). 반면 0~2세 아동은 기관보육 보다 가정 내 양육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 및 1~2세 아동의 보육소 등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5.9%, 24.2% 증가하여 38.3%(1,095,549명)이고, 61.7%(1,286,451명)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즉, 0~5세 아동 중에서 가정 내 양육 아동은 주로 0~2세아로 확인된다.

〈표 III-2-1〉 일본의 보육아동수 비교(2014/2024)

년도	2014년	2024년
취학 전 아동 수	6,312,000명	5,003,000명
0세 아동 총수 (보육이용아동수, %)	1,042,000명 (119,264명, 11.4%)	757,000 (131,247명, 17.3%)
1~2세 총수 (보육이용 아동수, %)	2,109,000명 (739,693명, 35.1%)	1,625,000명 (964,302명, 59.3%)
3세 이상 총수 (보육이용 아동수, %)	3,161,000명 (1,407,856명, 44.5%)	2,621,000명 (1,606,509명, 61.4%)

자료: 후생노동성(2014). 보육소 관련 상황 정리; 아동기정청(2024). 보육소등 관련 상황 정리.

2) 추진 배경 및 연혁

1989년의 합계출생률 1.57명 쇼크에 따른 대응책으로 관련 정부부처 연락회의는 “건강하게 아동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1991)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결혼·육아관련 부담감 증대”를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세부 대책으로는 “핵가족화, 도시화로 육아관련 정보를 조부모로부터 받기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적절하게 지도·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제언하였다(후생성, 건강하게 아동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yakaifukushi/410.pdf>. 2025.3.27.인출). 후속 대책으로 발표된 엔젤플랜에서는 “육아의 고립감·불안감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자보건 의료체계 정비와 함께 아동위원 등의 블런티어의 협력을 받아 지역자녀양육 네트워크 만들기”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점 시책 중 하나로 일시보육사업의 확충을 명시하였다. 일시보육사업은 “어머니가 질병으로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겨야 한다거나 업무상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문부성·후생성·노동성·건설성, 엔젤플랜,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ouron/19.pdf>. 2025.3.27.인출). 그리고 이를 뒤 엔젤플랜에서 명시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긴급보육 대책 등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영아를 위한 기관 보육 인원을 60만명으로 증원함과 아울러 일시보육시설을 2004년까지 3,000개소 확충, 육아 고립감,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영유아 양육지원센터 3,000개소 확충, 안심하고 영유아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패밀리 서포터 센터를 2004년까지 18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명시하였다(후생성,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 사업 개요,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ouron/19.pdf>. 2025.3.27.인출).

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yakaifukushi/517.pdf. 2025.3.27.인출).

1999년에는 “신엔젤플랜”이 발표되었다. 신엔젤플랜은 엔젤플랜의 주요 시책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업 주부의 육아 불안, 휴양, 급병, 육아 해소 등을 위해 아래의 〈표 III-2-2〉와 같은 3가지 시책과 5년 후의 목표치를 명시하였다(후 생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세부 계획, <https://www.mhlw.go.jp/www2/topics/topics/syousika/angel03.htm>. 2025.3.31.인출).

〈표 III-2-2〉 일본 “신엔젤플랜(1999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시책명	사업내용	목표치
지역영유아양육지원센터	육아상담, 육아동아리 지원등	1,500개소(1999년) 3,000개소(2004년)
일시보육	전업주부 가정 휴양, 급병·육아피로해소, 파트타임근로지원	1,500개소(1999년) 3,000개소(2004년)
패밀리서포터센터	자녀양육상호원조활동	62개소(1998년) 180개소(2004년)

출처: 후생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계획 <https://www.mhlw.go.jp/www2/topics/topics/syousika/angel03.htm> (2025.3.31.인출)

지역영유아 양육지원센터와 일시보육은 엔젤플랜에서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해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정부는 2004년까지 각각 3,000개소를 확충한다고 명시하였다(표 III-2-2 참고).

한편 엔젤플랜에서 일시보육은 직장을 가진 여성이 질병, 업무 등의 긴급 상황으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 방안이었다. 그러나 신 엔젤플랜에서는 직장여성은 물론 전업주부 가정의 독박 육아로 인한 휴양, 피로해소와 함께 파트타임 근로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일시보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관호상제, 쇼핑,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유아 양육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위한 공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부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패밀리 서포트 사업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패밀리 서포트 사업은 영유아 보육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과 원조를 원하는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상호 원조체계로 1998년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제안된 사업이다.

2002년 정부는 “저출생대책 플러스원”을 발표하였다.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이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둔 저출생 대책이 주류였다면 ‘저출생대책 플러스 원’에서

는 이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가정 내 양육을 하는 보호자를 위한 시책을 다음의 〈표 III-2-3〉과 같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엔젤플랜, 신엔젤플랜에서 명시되었던 목표 수치, 목표 연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표 III-2-3〉 일본 “저출생 대책 플러스 원(2002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보육소 등 가까운 장소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실시
양육부모가 모여서 상담, 정보교환이 가능한 “만남의 장소” 만들기
지역의 고령자, NPO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충실
유치원 놀이터 및 유치원 개방, 양육상담, 미취원 유아와 부모의 동반 등원추진
양육경험자를 자녀양육서포트로 활용하여 양육상담 및 양육동아리지원
양육지원서비스정보를 제공하는 자녀양육지도 작성, 배포

출처: 후생노동성, 저출생 대책 플러스원 <https://www.mhlw.go.jp/houdou/2002/09/h0920-1.html> (2025.4.1.인출)

한편 저출생 대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합계출생율은 계속하여 하락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및 「저출생 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을 단위로 저출생사회대책대강을 작성할 것을 명문화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4년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저출생의 주요원인으로 “결혼한 부부의 출생력 저하”, “가족 및 지역사회 변모에 따른 고립 육아”(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https://www.mhlw.go.jp/shingi/2005/03/s0303-11c.html>, 2025.4.3.인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양육지원 거점기관을 〈표 III-2-4〉와 같이 정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표 III-2-4〉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내용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영유아양육 지원센터, 일시보육, 패밀리서포터 센터가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들 사업의 목표 수치를 높이고, 영유아양육단기 지원사업, 영유아양육 동아리 육성 등 새로운 사업도 추가하였다.

〈표 III-2-4〉 일본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2002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구체적 사책		내용	목표치
지역 영유아 양육 지원 거점 정비	만남의 광장사업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 및 영유아를 위한 육아상담, 교류, 정보교환 장소	171개(2004년) 1,600개(2009년)
	지역영유아 양육지원 센터사업	보육소 등에서 전문가에 의한 전업주부의 육아 불안 상담, 육아클럽 활동	2,783개(2004년) 4,400개(2009년)

구체적 시책	내용		목표치
일시보육	보호자의 육아피로, 급병, 관훈상제, 파트타임근로 등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		5,935개(2004년) 9,500개(2009년)
상가공실 활용 양육지원사업	일시보육, 부모자녀교류, 육아 상담 등		-
영유아 양육 단기 지원 사업	단기 입소	보호자 질병, 육아 피로, 임업 등의 경우에 아동양호시설(아동양육시설, 영아원 등)에서 일시보육	569개(2004년) 870개(2009년)
	야간 보육	상기 이유로 평일아간 또는 휴일에 아동양호시설(아동양육시설, 영아원 등)에서 일시보육	310개(2004년) 560개(2009년)
패밀리서포터센터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 회원과 희망 회원간 송영서비스, 보육 등의 상호원조활동		368개(2004년) 710개(2009년)
고령자활용양육지원사업	실버센터의 고령자가 영유아 돌봄 제공		-
지역주민 자체조직 육성	방과후 아동클럽, 패밀리 서포터 센터, 실버인재센터 등을 활용하여 자녀양육 종료된 주부, 고령 퇴직자의 영유아돌봄서비스		-
자녀양육 동아리 육성	지역에서 양육지원 활동하는 NPO,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가 양육정보 제공		전체 시정촌 실시

출처: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https://www.mhlw.go.jp/stf/seisaku/2005/03/s0303-11c.html>. (2025.4.3. 인출)

그리고 5년 후 발표된 “아동·영유아 양육비전(2010)”에서는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2004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치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였다(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비전, https://www.mhlw.go.jp/stf/seisaku/2010/02/dl/s0217-11c_0016.pdf 2025.4.3. 인출).

〈표 III-2-5〉 일본 “아동·영유아 양육비전(2010년)”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명	2008년(당시)	목표치(2014년)
지역영유아양육지원거점	7,100개소	10,000개소
패밀리서포터지원사업	570시정촌	950시정촌
일시보육사업	연인원 348만명	연인원 3,952만명
상가공실활용양육지원	49개소	100개소

출처: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비전 https://www.mhlw.go.jp/stf/seisaku/2010/02/dl/s0217-11c_0016.pdf (2025.4.3. 인출)

〈표 III-2-5〉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영유아 양육비전”에서는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의 만남의 광장사업과 지역영유아양육지원센터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영유아양육지원거점”으로 명명하고 2014년까지 10,000개소로 확충, 패밀리서포

터센터는 970개 시정촌으로 확대하며, 일시보육은 연간 인원 기준으로 10배 이상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20여년간 영유아 양육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율을 제고하고자 가정 내 육아 환경을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생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고립감과 부담감도 여전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제공체 제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의 양적 확대 및 지역의 아동 영유아양육지원 충실을 위해 2012년에 아동·영유아양육 관련 3법을 제정하였다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관련 3법,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kwbz-att/2r9852000002kwfs.pdf>. 2025.4.9.인출).

아동·영유아 양육관련 3법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능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원을 설립하여 대기아동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 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지역영유아양육 거점사업, 일시보육, 패밀리서포터센터 사업 등을 지역아동·영유아양육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책임을 지고 운영하며, 이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지금까지 5년 단위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²³⁾의 규정으로 법률적 토대 위에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 제59조는 전업주부의 육아 불안 해소, 고립 육아 예방을 위한 지역영유아지원거점 사업 등을 포함하여 시정촌이 실시하는 지역아동영유아지원사업으로 14종류²³⁾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재원은 동법 65조~68조의 3에서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교부세로 충당하며,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한다고 규정하였다(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https://laws.e-gov.go.jp/law/424AC0000000065#Mp-Ch_4. 2025.4.9.인출). 한편 2015년 작성된 저출생사회대책대강 및 저출생 대책 향후 10년간 로드맵을 제시한 1억 총활약 플랜

23) 지역아동영유아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지역영유아지원거점사업, 일시보육, 영아전가정방문사업, 연장보육사업, 질병기 질병회복지아동보육사업, 방과 후 아동클럽, 이용자지원방문사업, 영유아양육단기지원사업, 패밀리서포터센터사업, 실비징수관련보조급여실시사업, 다양한 주체의 신제도참여촉진사업, 임산부 건강진단사업, 양육지원방문사업 등 13가지 종류였으나, 2025년부터 산후케어 사업이 추가되어 14개 사업이 되었다. 이중 영유아를 위한 가정내양육지원사업은 지역영유아지원거점사업, 일시보육, 전체 영아 가정방문사업, 영유아양육단기지원사업, 패밀리서포터센터사업 등이다.

(2016년)에서는 가정 내 양육지원대책사업 정비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후생노동성, 일본 1억 총 활약플랜, <https://www.cas.go.jp/seisaku/kyouginoba/h28/dai1/siryou4.pdf>. 2025.4.10.인출).

〈표 III-2-6〉 일본 “1억 총 활약플랜(2016년)”의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 및 목표 수치

사업항목	현재 정비 수	목표치
단기입소 생활지원	연인원 7만명(2014년 기준)	연인원 16만명(2019년)
단기입소 야간보육	연인원5만명(2014년 기준)	연인원 14만명(2019년)
지영유아양육지원거점사업	6,233개소(2013년 기준)	8,000개소(2019년)
일시보육	연인원 406만 명(2013년 기준)	연인원 1,134만명(2019년)
패밀리서포터센터사업	738개 시정촌(2013년 기준)	950개 시정촌(2019년)
전체 영아가정 방문사업	1,660시정촌(2013년 기준)	전체 시정촌 실시(2020년)

자료: 1) 후생노동성, 저출생사회대책대강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81807.pdf>.(2025.4.9.인출)

2) 후생노동성, 일본1억 총 활약플랜 <https://www.cas.go.jp/seisaku/kyouginoba/h28/dai1/siryou4.pdf>. (2025.4.10.인출)

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정책 현황

합계출생율 저하의 원인으로 독박 육아, 육아 불안 등이 제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주기로 작성하는 저출생대책에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1)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

“지역영유아양육 거점사업”은 1993년 시행된 보육소 지역 영유아양육 모델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1989년의 합계 출생율 1.57명 쇼크로 개최된 ”건강하게 아동을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련 관련부서 회의”(1991년)의 제안에 기초하여,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보육소가 중심이 되어 육아 불안 해소 상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하시모토마키 橋本真紀. 2009,117).

이 사업은 1994년의 엔젤플랜 책정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 계획에서 지역영유아양육지원센터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엔젤플랜,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 등의 저출생 대책의 추진과 함께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으

로 재편 되고(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09: 93) 2012년에는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의 제정으로 2015년부터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의 14개 사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은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대기아동 문제 및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고립감, 부담감 완화를 위해, 전자에 대해서는 인정어린이원과 소규모 보육사업 등에 대한 공적 지원과 함께 0~2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육, 연장보육,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내각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양육 관련3법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kwbz-att/2r9852000002kwfs.pdf> 2~6. 2025.8.27. 인출). 지역영유아양육 거점사업은 현재 일본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 III-2-7〉과 같다.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보육소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아, 육아 불안, 육아 고립감을 느끼는 0~2세 자녀를 둔 보호자가 주로 이용한다. 2023년 현재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였으며, 전국에서 8,016개가 운영되고 있다. 0~4세 인구 1,000명당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된 운영 장소는 보육소 29%, 공공시설·공민관 21%, 인정어린이원이 약 18%이다(후생노동성. 지역 영유아 양육 거점사업 실시 숫자 추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f496238b/20240529_policies_kosodateshien_shien-kyoten_34.pdf. 2025.4.21. 인출).

〈표 III-2-7〉 일본 지역영유아양육거점사업 개요

구분	일반형	연계형
목적	저출생, 혼가족화, 지역사회 변모로 보호자의 양육기능저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고립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모 및 영유아가 편안한 장소에서 만나 상호교류 활동을 하고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실시 주체	시정촌(시정촌이 인정한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가능)	
사업내용	1.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및 자녀를 위한 교류 장소 제공과 교류촉진 2. 영유아 양육관련 상담, 원조활동 3. 영유아 양육관련 지역정보제공 4. 영유아 양육 및 지원관련 강습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	

구분	일반형	연계형
실시장소	공공시설, 빈점포, 공민관, 보육소 등의 아동복지시설, 소아과 병원 등 의료시설 등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자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서 적합한 장소	아동관, 아동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실, 상담실 등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 만남의 장소로서 적당한 곳
실시방법	주 3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개설함이 원칙	주3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개설함이 원칙
종사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및 자녀 지원에 의욕이 있으며 양육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임자를 2명 이상 배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및 자녀 지원에 의욕이 있으며 양육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임자를 1명 이상 배치
종사자 자격	영유아지원연수사업 실시 요강에서 규정하는 기본 연수 및 지역영유아양육 지원 코스의 전문연수 수료 권고	
설비	수유코너, 싱크대, 베비침대, 장난감 및 기타 영유아가 이용하여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실시개수	6,963개소	1,053개소
재정	중앙정부 1/3, 도도부현 1/3, 시정촌 1/1(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65조~68조의 3)	

자료: 아동가정청, 지역 영유아 양육지원 거점사업 실시에 대하여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09133311/20240705_policies_kosodateshien_shien-kyoten_35.pdf. (2025.4.17.인출)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은 2008년 이전까지는 지역영유아양육지원센터, 만남의 광장사업으로 분류되어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일반형과 연계형의 두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일반형은 공공시설, 빈 점포, 공민관, 보육소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여 최소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와서 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수유 코너, 싱크대, 베이비 침대, 장난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반면 연계형은 기존 아동관, 아동센터의 설비 등을 활용하여, 주 3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기본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며, 아동관 등의 시설 설비를 이용하므로 별도 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형, 연계형 모두 종사자는 <표 III-2-8>에서와 같이 연수 수료자가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영유아양육지원 종사자 자격은 2015년 5월 후생노동성 고용 균등 아동가 정국장통지 ‘영유아양육지원원 연수 사업 실시에 대해서’에 첨부된 “영유아양육지원원연수사업 실시 요강”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들의 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니어서

제도상 위치도 불명확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효한 자격에 해당한다(전국보육단체연
락회·보육연구소, 2024: 95).

〈표 III-2-8〉 일본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 거점 종사자의 연수과목 및 내용(2019)

구분	과목명	형태	시간	내용
기본 연수	아동, 영유아 양육가정 현황	강의	60분	1. 아동이 성장하는 사회환경 2. 영유아양육가정의 변화 3. 아동 빈곤 및 아동 비행에 대한 이해
	아동가정 복지	강의	60분	1. 아동, 영유아양육신제도 개요 2. 아동가정복지시책 등 이해 3. 아동가정복지관련 자원 이해
	아동발달	강의	60분	1. 발달에 대한 이해 2. 태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발달 3. 발달에 대한 원조 4. 아동의 놀이
	보육 원리	강의	60분	1. 아동에 대한 이해 2. 정서안정, 생명유지 3. 건강유지, 안전관리
	대인원조의 가치와 윤리	강의	60분	1. 이용자존엄 준수와 이용자 주체 2. 아동 최선의 이익 3. 비밀준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고충 해결 구조 4. 보호자, 직장내, 유관 기관, 지역주민과의 연계, 협력 5. 영유아양육지원원의 역할
	아동학대와 사회적 양호	강의	60분	1. 아동학대와 영향 2. 학대 발견과 통보 3. 학대받은 아동이 보이는 행동 4. 아동권리보장관련 5. 사회적 양호 현황
	아동의 장애	강의	60분	1. 장애특성 이해 2. 장애특성에 따른 개입 방법, 전문기관과의 연계 3. 장애아동지원등 이해
전문 연수	종합 세미나	세미나	60분	1. 아동, 영유아양육가정현황고찰, 검토 2. 아동영유아양육가정 지원, 역할에 대한 고찰, 검토 3. 특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고찰, 검토 4. 영유아양육지원자에게 요청되는 자질 고찰, 검토 5. 전문연수선택 등 향후연수에 대한 고찰, 검토
	지역영유아양육 지원거점사업 개요	강의	60분	1. 지역영유아양육거점사업의 제도상 자리매김과 배경 2. 지역영유아양육거점사업에 요청되는 기능 3. 지역영유아양육거점사업에 있어서 지원자의 역할
	이용자 이해	세미나	60분	이용자 이해 심화를 위한 세미나

구분	과목명	형태	시간	내용
	활동			3. 이용자 욕구를 고려한 강습 등(프로그램)
	강습 등 기획 수립	세미나	60분	구체적 강습 등 프로그램 개발
	사례 검토	세미나	60분	사례연구
	지역자원 연계, 촉진	강의	60분	다양한 지역자원 이해, 연계 강화

출처: 후생노동성, 영유아 양육지원 종사자 연수사업. <https://www.mhlw.go.jp/content/000519628.pdf>. (2025.4.21.인출)

한편 보호자들은 지역영유아양육거점 지원사업으로 〈표 III-2-9〉에서와 같이 고립 육아로 인한 불안, 정보 부족,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영유아를 돌보면서 겪는 외로움 등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III-2-9〉 일본 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 수혜 가구의 경험담(2025)

사례 1: 임신 8개월경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어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아이 와 8 개월경에 쇼핑을 하던 중 비노비노(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소재하는 지역영유아양육지원거점사업의 명칭)를 알게 되어서, 현재는 매일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행운이에요.

사례2: 첫 번째 아이양육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안하였습니다. 산책 도중에 아베(아마가타현 소재 지역영유아양육지원거점사업의 명칭)를 알게 되어, 이곳에서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사례3: 미즈베(동경도 강동구소재지역영유아양육지원 거점사업의 명칭)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정신적 리프레시입니다. 스태프의 상냥한 응대, 저희 아이와 동일한 월령대의 엄마, 새로 알게 된 육아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 집니다.

사례4: 아유미아동센터(구마모토현 지역영유아양육지원거점사업 명칭)에 오기전에는 모르는 것 투성으로 육아가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심하게 울어 힘들었는데, 스태프가 좋은 조언을 해주어서 편안해 졌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는 육아 강좌도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출처: 아동가정청, 지역 영유아 양육지원 거점사업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9c4ab7a7/20230401_policies_koso_dateshien_shien-kyoten_16.pdf. (2025.4.21. 인출)

2) 베이비 호텔/주택방문형 보육사업(일명 베이비시터)등의 인가 외 보육사업

일본은 근로, 질병, 간병 등의 사유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영유아 가정에 대해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등의 기관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가정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호상제, 육아 피로, 쇼핑 등과 같은 일상 생활상의 이유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베이비 호텔, 베이비시터 등의

인가 외 보육시설이 상기의 사유로 공적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운영되었다. 아동가정청은 베이비호텔을 ① 밤 8시 이후의 보육, ② 숙박을 동반한 보육, ③ 일시보육 아동이 이용 아동수의 절반 이상, 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가정청, 2022년 인가외 보육시설 현황,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9e449dd6-28c2-4066-af0e-8b203ea43ca6/28931a4d/20240807_policies_hoiku_ninkagai_tsuuchi_genkyou_09.pdf. 2025.4.22.인출).

〈표 III-2-10〉 일본의 베이비호텔 및 자택방문형 보육사업 현황(2025)

구분	베이비호텔	자택방문형보육사업
시설 수(이용아동 수)	1,013개(11,152명)	6,519개(6,944명)
현장조사	681개(67.2%)	1,799개(27.6%)
적합(2022년)	393개소(57.7%)	1,015개소(56.4%)
아동 연령	0세	914명
	1세	1,869명
	2세	2,201명
	3세 이상	2,087명
	4세 이상	4,076명
		1,113명
		1,374명
		1,101명
		943명
		2,413명

출처: 아동가정청, 2022년 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9e449dd6-28c2-4066-af0e-8b203ea43ca6/28931a4d/20240807_policies_hoiku_ninkagai_tsuuchi_genkyou_09.pdf. (2025.4.22. 인출)

그리고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은 1대1 보육 형태이므로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와 유사하다. 2023년 현재 일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 호텔, 자택방문형 보육 사업(일명 베이비시터)의 시설 수 및 이용아동수는 〈표 III-2-10〉과 같다.

베이비 호텔 및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에는 보호자의 근로, 질병, 간병 등의 사유로 가정보육이 불가능하나, 인가보육소 입소가 불가능하여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도 있으므로, 전업주부 가정 영유아의 숫자만을 추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0~2세 영유아의 베이비 호텔 이용 비율은 44.7%, 자택방문형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51.7%이다. 두 시설은 영리로 운영되는 인가 외 보육시설이므로 보육료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공적 지원이 없으며, 보호자가 지불하는 보육료로 운영된다. 따라서 베이비 호텔 등의 보육료는 시설과 설비의 수준에 따라 격차가 크고, 공식 통계자료도 부재하다(장경희, 2021: 10).

베이비시터 이용료는 베이비시터 가입 기관인 공익사단법인 전국보육서비스 협회에 따르면 개별 베이비시터에 따라 상이하나, 시간당 평균 2,000엔 정도이다(공익사단법인전국보육서비스협회, 베이비시터 이용 가이드, <https://acsu.jp/images/babysitter-userguide2023.pdf>. 2025.4.22.인출). 단,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정책으로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의 3~5세 25,700엔,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3~5세 37,000엔, 저소득층 근로가정의 0~2세 42,000엔의 범위 내에서 베이비호텔 및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을 이용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가 외 보육시설은 공공 시설은 아니나,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도부현에 신고하고(아동복지법59조의 2 제 1 항, 2 항, 3 항), 매년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아동복지법, 59조2의5 제1항, 인가 외 보육시설에 관한 신고, 정기보고 및 정보의 연계,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9/01/21/1412251_004.pdf. 2025.08.27.인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인가 외 보육시설 지도 감독 기준에 근거하여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아동복지법 59조 제1항, 인가 외 보육시설 현장조사에 대하여,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documents/d/fukushi/r5ninkagai6_shiryo, 2025.08.27.인출). 그러나 앞의 <표 III-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조사를 받는 베이비호텔 및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의 비율이 낮고, 이 중 40% 이상은 지도감독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문서 지도, 구두 지도, 개선 권고, 사업 정지 명령 등이 이루어진다(이동가정청, 2022년 인가 외 보육시설 현황,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9e449dd6-28c2-4066-af0e-8b203ea43ca6/28931a4d/20240807_policies_hoiku_ninkagai_tsuuchi_genkyou_09.pdf. 2025.4.22.인출).

한편 자택방문형보육사업(일명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베이비시터를 사칭한 남성의 자택에서 남아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은 매칭 사이터(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결망 역할)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고 있다(김아름 외, 2022: 81-83).

인가외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준은 인가보육소 설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2세 미만 아동의 포복실(기는 공간, 1인당 3.3평방미터 이상), 2세 이상 유아의 실

외놀이터, 의무실 설치 규정이 없으며, 보육사 또는 간호사 배치를 1/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택방문형 보육사업(베이비시터)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1대1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의 자택에서 보육한다는 점에서 보육사, 간호사 이외의 종사자에게는 일정의 연수 수강자가 적당하다고 인가 외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기준을 2019년에 개정하였다(후생노동성, 인가외 보육사업의 개요와 현황, <https://www8.cao.go.jp/kisei-kaikaku/kisei/meeting/wg/koyou/20200309/200309koyou04.pdf>. 2025.4.23.인출). 연수 과목 및 연수내용은 이하 <표 III-2-11>에서와 같이 20시간 정도의 강의와 1일 이상의 세미나를 기본으로 한다.

〈표 III-2-11〉 일본 자택방문형 보육사업자의 연수과목 및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거택방문형 보육의 개요	1	심장소생법(실기강습)	2
영유아의 생활과 놀이	1	자택방문형보육사업의 보육내용	2
영유아 빌달과 심리	1.5	자택방문형보육 환경정비	1
영유아 식사와 영양	1	자택방문형보육운영	1
소아보건 1	1	안전화보와 리스크 매니저먼트	1
소아보건2	1	자택방문형보육자 직업윤리와 배려사항	1.5
자택방문형 보육에 있어 보호자 대응	1.5	특별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	1.5
아동학대	1	실천세미나	1~2일
실시자치제 제도에 대하여	1	계: 20시간+1일 이상 실천세미나	

출처: 후생노동성, 인가외 보육사업의 개요와 현황 <https://www8.cao.go.jp/kisei-kaikaku/kisei/meeting/wg/koyou/20200309/200309koyou04.pdf>. (2025.4.23. 인출)

3)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일본 정부는 저출생대책 “미래아동 전략”(2023년 12월)에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는 보호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0~2세아가 기관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7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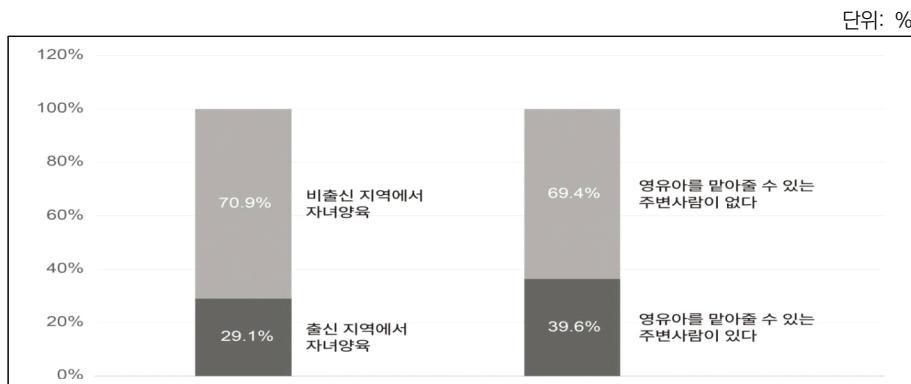
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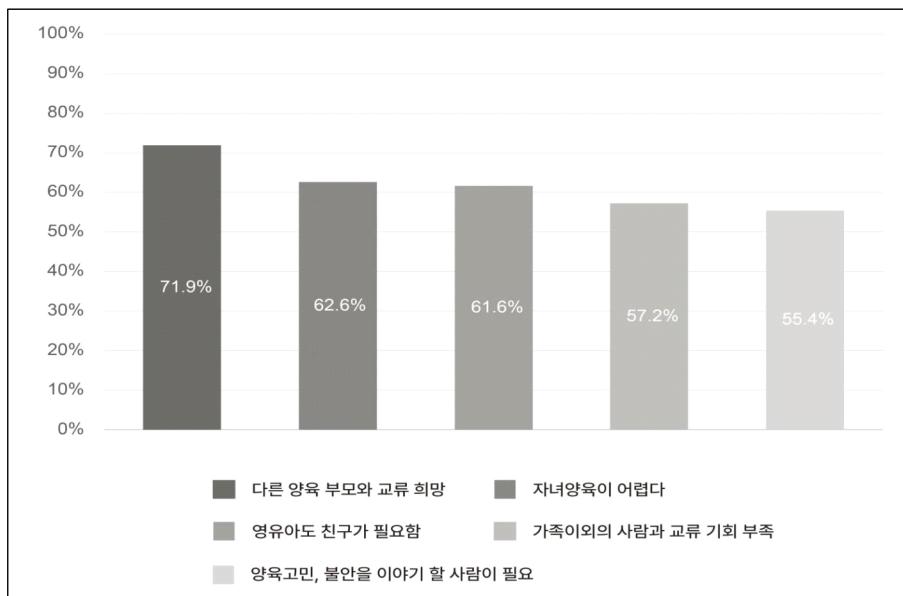
(1) 가정 내 양육가구의 육아 불안 해소와 아동학대 예방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다수는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이웃과의 연결망 약화, 독박 육아, 핵가족화 등으로 육아 불안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동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2세아의 약 60%를 차지하는 가정 내 양육가구를 포함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다수 가정의 고립 육아 및 육아 불안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아동가정청 2023: 19).

2021년 후생노동성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림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30세~44세의 70% 이상은 자신이 성장한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60%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는 등 외롭고 어려운 환경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 기회도 없어(57.2%), 주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부모와 교류를 희망하였다(71.9%).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62.6%), 양육 고민과 불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55.4%)고 응답하였다(후생노동성, 보육을 둘러싼 상황,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784219.pdf>. 2025.4.26.인출). 즉, 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관련 고민과 불안을 같은 상황을 공유하는 다른 보호자와의 교류를 통해 해소하기를 희망하며, 영유아에게 또래 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I-2-1] 일본의 영유아 양육가정 현황(2017)





자료: 후생노동성, 보육을 둘러싼 상황,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784219.pdf>.(2025.4.26.인출)

특히 육아 고립감은 아동학대를 초래할 수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의 연결망 역할을 하였던 “지역의 보육소, 보육사 등 관련 검토회 보고서”는(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922000/000869392.pdf>. 2025.4.28.인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관 미이용 비율이 높은 0~2세아의 학대보고 건수는 2009년 8,078명에서 2018년에는 37,826명이었다고 명시하였다(후생노동성, 지역의 보육소, 보육사 등 관련 검토회 참고자료집, <https://www.mhlw.go.jp/content/11922000/000869390.pdf>. 2025.4.28.인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도 0세아가 가장 많고 2세아 이하 비율이 52.1%로 나타난다(후생노동성, 보육을 둘러싼 상황,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784219.pdf>. 2025.4.26.인출).

(2) 대기아동 감소 및 보육소의 정원 미달

저출생으로 출생아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여성의 증가로 보육소 등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아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0년 이후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 III-2-12〉에서와 같이 대기아동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보육소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III-2-12〉 일본 보육소 등의 정원총족율· 대기아동 현황 추이(2010/2015/2020/2022/2024)

구분	2010	2015	2020	2022	2024
현원대비 정원총족률	96.4%	94.2%	92.2%	89.7%	88.8%
대기아동 지자체수	357개	374개	400개	252개	217개
대기아동 수	26,275명	23,167명	12,439명	2,944명	2,567명

자료: 후생노동성, 보육소 등 관련상황 안내(2020, 2022, 2024)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862028/www.mhlw.go.jp/content/11922000/000678692.pdf> (2025.4.28.인출);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862028/www.mhlw.go.jp/content/11922000/000979606.pdf> (2025.4.28.인출);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tome_r6_02.pdf (2025.4.28.인출)

대기아동은 주로 0~2세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소 확충 정책을 주기적으로 20년 이상 실시하였다. 그러나 저출생의 지속으로 202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시설 통폐합이 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영 유지를 걱정하기 까지 이르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3: 231). 후생노동성이 일본종합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한 “인구과소 지역의 보육 제공에 관한 조사연구”(2022)에 의하면 “인구 감소로 이용자 확보가 어려워 이미 정원 미달이 발생하였다”는 시설은 11.9%였으며, “현재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비율도 54.1%였다(일본종합연구소,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 제공에 관한 조사 연구, https://www.cfa.go.jp/assets/cont_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fc73764-a0f7-4bbb-b04b-e63e11829e14/da246664/20231016_policieskosodateshienchousasuishinchosar03-01_h03.pdf. 2025.4.28.인출). 이에 2021년 12월에 정원에 여유가 있는 보육소 등에서 기관 미이용 아동에게 주 1~2회 정도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이 “지역의 보육소, 보육사 등 관련 검토회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3: 231).

나)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주요 내용

(1) 목적 및 의의

일본 정부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에 대해, 아동 관점에서 “모든 아동의 성

장을 응원하고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아동, 보호자, 보육자, 사업자에게는 〈표 III-2-13〉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표 III-2-13〉 일본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의의

대상	의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다른 경험, 지역에 처음으로 나가 가족이외의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또래 아동들과 교류하면서 가정에서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물, 사람에 대한 흥미, 관심을 넓히면서 성장이 가능함 -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 촉진 등, 성장 발달에 적합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음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과 접촉함으로서, 잠시나마 쉴 수 있고, 육아의 불안감과 고립감을 해소함 - 아동에 대한 보육자의 접근 방식을 통해 아동 성장 및 발달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호자가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음 - 다양한 정보, 사람과의 관계가 확대되어 보호자가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활용할 있음
보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접할 기회가 적었던 아동 가정과 함께 함으로서 보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지역 아동의 성장을 위해 발휘할 수 있음 - 가정 내 양육 보호자에게 가정 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동의 모습과 성장에 관하여 전달함으로서 아동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감정 전달, 육아 고립감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강화함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미달 보육소가 경력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보육 전문가를 퇴직시키지 않고 사업 을 계속하여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 생성 및 관계 심화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확대되어 지역의 아동과 영유아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지역사회가 기능함

자료: 아동가정청,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실시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afde15f-8760-4477-806a-ed72b6916696/7ef6fbdf/20250327_policies_hoiku_daredemo-tsuen_10.pdf. (2025.4.30.인출)

(2)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아동가정청은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2024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영아 등을 위한 지원급부”로 규정하였다. 단, 2025년 1년간은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가정청,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실시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afde15f-8760-4477-806a-ed72b6916696/7ef6fbdf/20250327_policies_hoiku_daredemo-tsuen_10.pdf. 2025.4.30.인출). 일본 정부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세부내용을 다음 〈표 III-2-1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III-2-14〉 일본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개요

구분	내용
대상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으로 보육소 등(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가정적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기업주도형보육사업)에서 보육을 받지 않는 아동
실시 주체	전국 모든 시정촌, 시정촌 인가가 필요
실시 장소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소규모보육사업소, 가정적 보육사업소, 유치원, 지역영유아양육지원거점, 기업주도형 보육사업소, 인가외 보육시설(인가외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준 충족시설), 아동발달지원센터 등
이용시간	아동1명당 월 10시간 상한(정부의 보조기준상의 상한, 시정촌 판단에 따라 초과도 가능)
단가	아동 1명당 850엔(장애아동, 의료적 케어필요 아동, 요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있음)
이용료	1시간당 300엔
이용 방법	정기 이용(장소, 요일, 시간 고정), 자유이용, 부모와 함께 통원도 가능(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실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활용형(보육소 등에서 정원미달 인원수를 활용하여 보육) - 일반형(정원을 별도로 설정하여 재원아동과 함께 또는 전용실을 설치하여 보육, 형태: 재원아동 합동 실시, 전용실 독립 실시, 독립시설 실시)
시설설비 기준 및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시설설비기준(영아 등 통원지원사업설비·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제정 - 여유활용형: 보육소, 유보연계형인정어린이원, 인정어린이원, 가정적 보육사업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름 - 일반형: 보육소 기준과 유사하나, 의무실, 조리실, 옥외놀이터 기준이 없음. 종사자 수의 1/2은 보육사 자격증 소지자(보육사 이외의 자격증 소지자는 영유아양육 지원원 연수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연수 수료자)
재원	1차적으로 시정촌이 전액 부담(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65조) 후, 중앙정부(3/4) 도도부현(1/8) 보조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68조의 4, 제67조3)

자료: 아동가정청,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실시 안내 (https://laws.e-gov.go.jp/law/424AC0000000065/20261001_506AC0000000047, 2025.5.1. 인출);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afde15f-8760-4477-806a-ed72b6916696/7ef6fbdf/20250327_policies_hoiku_daredemo-tsuen_10.pdf, 2025.4.30.인출)

위의 〈표 III-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는 보육소 등의 기관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0~2세아가 보육소 등에서 월 10시간 정도 보육을 받는 제도이다. 보호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0~2세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독박 육아, 육아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자는 다소나마 육아의 부담을 덜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아동학대를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보육시설 차원에서는 정월 미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고, 영아는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 발달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월 10시간 정도의 간헐적 보육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전용실 없이 통상보육을 받고 있는 기존 아동 집단에 편입시킨다면,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4). 특히 3세 미만의 영아는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설비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자 자격을 영유아 양육지원자 연수 또는 가정적 보육사업 연수 수료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일시보육사업

우리나라의 시간제 보육과 유사한 형태이다. 초기에는 보육소 입소 조건이 엄격 하였기 때문에, 보육소에 입소할 수 없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자녀, 그리고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가정에서 보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육소가 하루 중 일정시간을 보육하는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990년 이전에는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소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합계출생율 1.57명 쇼크는 일시보육을 확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보고서는 “결혼·육아관련 부담감 증대”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독박 육아, 육아 불안” 등을 저출생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시보육사업을 1990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1996년에는 보호자의 육아피로 해소 등의 개인적 사유도 일시보육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 보육연구소 2010: 94). 그리고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 등에서 “육아관련 부담감, 육아 고립과 불안”의 해소를 위해 일시보육 시설 확충을 요구하면서, 일시보육시설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일시보육은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법제화(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09: 94)되었으며, 2012년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제정으로 지역아동·영유아양육지원사업의 한 종류가 되어 현재 다음의 〈표 III-2-15〉와 같은 5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받는 일시보육 시설 수는 10,509개이고, 이용아동 수는 3,457,314명이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4: 338).

〈표 III-2-15〉 일본의 일시보육시설 종류 및 내용

구분	대상 아동	실시 장소	실시 요건	개소 (2021년)
일반형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미이용 아동	보육소,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 또는 역 주변 등 편의성이 높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 및 설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설비 및 운영기준의 보육소 기준 준수 ② 인력 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연령 및 인원수에 따른 보육종사자 배치하고 이들 중 보육사 등을 1/2 배치 - 보육사 이외 보육종사자는 연수 수료자. - 보육종사자를 2명 이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육소 등에서 운영되므로 보육소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명도 가능 	9,449 개소
유치원형 1	유치원에 재원 중인 3세 이상 유아로, 교육시간 전후, 장기 휴업 일 등으로 유치원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경우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종사자를 2명 이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육소 등에서 운영되므로 보육소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명도 가능 	8,242 개소
유치원형 2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2세 아동	유치원 (영유아양육지원법 전환 유치원, 사학 조성 유치원)	<p>〈일반형〉 평균 1일 이용아동수가 3명 이하의 경우에는 가정적 보육자를 보육사로 인정 가능</p> <p>〈유치원형〉 일정기간 보육사 배치 경우, 보육사 등 이외의 교육·보육종사자자격에 대한 원화 조치 있음</p>	146 개소
여유 활용형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미이용 아동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가정적보육사업, 소규모보육사업 사업소내 보육사업소가 정원 미달인 경우	<p>〈유치원형〉 일정기간 보육사 배치 경우, 보육사 등 이외의 교육·보육종사자자격에 대한 원화 조치 있음</p>	787 개소
자택 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질병 정도로 보아 집단보육이 힘든 경우 - 한부모 가정 보호자의 일시적 심야 및 야간근로 - 도서지역 등, 보호자의 일시적 근로 	이용아동 자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수료 보육사, 가정적보육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된 사람. 단 가정적 보육자 1명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수는 1명 	1 개소
지역밀착 2형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미이용 아동	지역영유아양육 지원거점, 역 주변 등 편의성이 높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설비 및 운영기준의 보육소 기준을 따름 - 보육사 1명 이상 배치, 보육사 외 담당자는 시정총장이 실시하는 연수수료자 	일반형 숫자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2024). 보육백서, p. 153.

위의 〈표 III-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형 및 여유활용형, 지역밀착2형은 인정어린이원, 보육소,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형태이며, 유치원형 1은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이 보호자의 파트타임 근로, 질

병, 취미활동 등의 사유로 일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유치원형 2는 보육소 부족 등의 이유로 보육소 이용이 불가능하여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2세 아동 보육을 유치원에서 일시보육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이며, 자택방문형은 아동 및 보호자,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집단보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의 종류이다. 자택방문형 이외의 모든 일시보육시설의 보육은 기본적으로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지역형 보육사업 등의 운영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3: 167, 유해미 외, 2023: 108-109에서 재인용).

한편 일시보육의 실시 내용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동경도의 경우는 “보호자의 출산, 질병, 관혼상제, 취미생활, 쇼핑, 미용실뿐만 아니라 육아 피로 등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8시간 이용할 경우 비용은 1일 2,220엔, 월 지불액은 44,000엔으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동경도 복지국, 일시보육사업·정기이용보육사업에 대하여, 유해미 외, 2023: 109에서 재인용).

요코하마시는 보호자의 업무, 질병,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경우,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자의 육아 불안 해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0~2세 1시간 당 300엔, 3~5세 160엔,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 또는 재충전을 위한 이용시간은 월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생활보호세대, 시민세 비과세세대, 한부모 가정 등은 전액 면제이며, 연봉 360만엔 미만 세대에 대해서도 이용요금의 3분의 2를 감면한다(요코하마시 일시보육안내, <https://www.city.yokohama.lg.jp/kosodate-kyoiku/hoiku-yoji/shisetsu/hoikuseido/ichiji/ichijiannai.html>. 2025.5.7. 인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으로,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을 다니지 않는 3~5세아가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우에는 25,700엔(가정보육 가능 아동), 37,000엔(가정보육 불가능 아동) 한도 내에서 비용이 감면되고, 시정촌 주민세 미과세 0~2세아가 일시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42,000엔 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감면 받는다. 그러나 위의 <표 III-2-15>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설비의 기준은 보육소 기준을 따르나, 종사자 배치를 전원 보육사로 의무화 하지 않고 연수 수료자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유해미 외, 2023: 109).

5)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아동가정청은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지역에서 영유아 양육을 도와주는 조직”이며, “육아 원조를 원하는 사람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회원으로, 양자를 증개하는 상호원조 조직체”(아동가정청,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332207c/20231221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07.pdf. 2025.5.9.인출)로 설명하고 있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은 1994년 후생노동성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여성노동협회, 전국 패밀리 서포트 센터 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 <https://www.jaaww.or.jp/securewp/wp-content/uploads/2024/12/2d6c62232df95308ddf40a72ba6c8dc9.pdf>. 2025.5.9.인출) 1998년까지는 62개소에 불과하였다(후생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계획, <https://www.mhlw.go.jp/www2/topics/topics/syousika/angel03.htm>. 2025.3.31.인출).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문가 회의(1998)”에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해 “영유아 양육에 참가의욕을 가진 지역주민과 지원을 기대하는 가정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조직체를 만들 것” 이 제안되고, 이를 정부가 신엔젤 플랜, 아동·영유아양육응원플랜 등의 저출생 대책으로 반영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현재 전국의 996개 시정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회원 60만명, 제공 회원 1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아동가정청, 영유아양육 원조활동 지원사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557c220/20240514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10.pdf. 2025.5.9.인출).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호원조 활동의 세부내용은 [그림 III-2-]와 같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①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② 보육시설 시간 이후의 돌봄, ③ 보호자가 쇼핑이나 외출로 인한 영유아 돌봄, ④ 질병, 관혼상제 등으로 영유아 돌봄이 필요할 때, ⑤ 이른 아침이나 야간 등 급한 용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살피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III-2-2]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사업내용



자료: 아동가정청,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332207c/20231221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07.pdf.(2025.5.9.인출)

[그림 III-2-3]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운영체계



자료: 아동가정청,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332207c/20231221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07.pdf.(2025.5.9.인출)

패밀리 서포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III-2-3]에서와 같이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의뢰 회원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제공 회원이 시정촌 또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유해미 외, 2023: 119). 시정촌 또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서비스 내용, 시간 등과 관련하여 의뢰 회원과 증개 회원을 증개 및 조정한 후에 의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료는 의뢰 회원이 제공 회원에게 지불한다. 의뢰 회원은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을 통해 <표 III-2-16>과 같이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표 III-2-16〉 일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효과

사업과 출장 시에도 아이를 돌보아 주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으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친척도 없어, 이사 왔던 당시에는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제공회원은 현재 저희 부부의 강력한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	--

자료: 아동가정청,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332207c/20231221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07.pdf.(2025.5.9.인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지역아동·영유아 양육지원제도의 일종이므로, 대상아동, 사업내용, 비용 등이 시정촌에 따라 상이하다(유해미 외, 2023: 120). 오사카시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0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유치원·보육소 등하원, 보호자의 육아피로 해소, 긴급·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당 800엔이고, 새벽, 야간, 심야, 컨디션 불량으로 이용할 경우와 토·일요일, 연말·연시 등의 경우에는 900엔을 지불한다(오사카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70655.html#1>. 2025.5.9.인출).

동경도 기타구의 경우에는 생후 57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단시간 근로, 통원, 재충전, 관혼상제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오사카시와 동일하다(동경도 기타구,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https://www.city.kita.lg.jp/children-edu/childcare/1002833/1002855/1003942.html>. 2025.5.9.인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유해미 외, 2023: 120). 제공 회원은 보육사 등의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나 긴급구명 강습·사고방지 관련 강습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안전 대책을 위해 24시간의 강좌²⁴⁾를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시 주체는 시정촌 또는 시정촌의 위탁을 받은 자이며, 재원은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제65조~68조의 3)에 의거하여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부담 한다(아동가정청, 영유아 양육 원조활동 지원사업, <https://www.cfa.go.jp/>)

24) 보육의 마음(2시간), 마음의 발달과 문제(4시간), 신체발육과 질병(2시간), 소아간호기초지식(4시간), 안전과 사고(2시간), 아동에 대한 보살필(2시간), 어린이의 놀이(2시간), 어린이 영양과 식생활(3시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3시간)

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557c220/20240514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10.pdf. 2025.5.9.인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패밀리 서포트 센터도 무상화 기관에 포함되었다(유해미 외, 2023: 121). 따라서 3~5세아(가정 보육 가능 25,700엔/가정보육 불가능 3~5세 37,100엔) 및 0~2세의 주민세 비과세 아동은 42,000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 연구소, 2022 재인용). 이처럼 보육소 또는 유치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을 보육의 대체서비스로 이용 하는 경우, 아동 안전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보육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 오사카에서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 받던 생후 5개월 영아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 2023 재인용).

III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에 의하면, 가정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지원 목적은 다음 2가지로 파악된다. 즉, 시설보육의 접근성이 낮아서 이용하기 힘든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고립 육아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게 가정내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녀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은 사실상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공급 부족이 주된 배경 여서 부모 선택권 강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가 보육사의 이용료는 시설보육에 비해 높아서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보육소를 이용하기 힘든 가정 내 양육가구를 지원하는데 주력하며, 그 배경에는 저출생 극복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이용 자격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제한되므로, 가정 내 양육가구의 고립 육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조된다.

둘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수준은 기관보육서비스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우선 일본에서는 영리 목적의 가정내보육사업에 관한 비용지원이 없었으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이후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지원체계의 변화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형평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기관보육에 대한 비용지원체계를 반드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녀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동 보조금은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 연령이 높아 자녀 양육 부담이 높은 가정과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와 같은 취약 가정에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 위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욕구 수준과 양육 부담 정도를 반영하는 차등지원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비용지원 수준은 부모 상한선을 두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원방식에도 불구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단 부모 상한선을 두는 방식은 부모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기관보육과의 형평성을 견지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실수요자에 한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mg에 대한 지원이 부모의 육아휴직 시간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종일제로 육아휴직 중에는 Cmg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여 절감된 국가로부터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mg)을 지원하여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있다.

셋째,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신고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비용도 이들 인력에 한하여 지원된다. 즉, 프랑스의 인가 보육사는 영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들 가구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력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동시에 국가에서 관리되는 민간 돌봄 인력의 처우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인가 보육사는 돌봄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당 35시

간 이내 근로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주 4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인다. 그러나 근로 조건, 급여,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유급 휴가 및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 외 제공하는 추가비용의 책정 기준과 자녀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차량 제공에 따른 비용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사례에서 영리 목적의 자택 방문형 보육사업의 돌봄 인력이 20시간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행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2026년에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용자 시스템과 이들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인가 보육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용가구에서 Urssaf Pajemploi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가받은 보육사를 등록하고 보육사에 대한 급여 산정과 제공, 정부 지원금 (Cmg) 지급,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계산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V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 01 응답자 특성
- 02 양육 실태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전반
- 0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04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 05 소결

IV.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제4장에서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내양육서비스 이용 실태 전반과 주요 서비스 유형별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돌봄서비스 전반과 유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종합하여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1. 응답자 특성

0~5세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여성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1,628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연령별 비례 할당을 적용한 막내 자녀 연령의 경우는 0세에서 5세까지 14.8%~19.5%로 분포하고, 35개월 이하 영아가 45.8%, 36개월 이상 유아가 54.2%를 차지하며,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45.4%, 읍면지역이 16.0%로 나타난다.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6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맞벌이 가구는 58.7%, 월평균 가구소득은 401~600만원 이하가 35.6%로 가장 많다. 자녀수는 평균 1.6명이고, 1명인 경우가 50.5%, 3명 이상 가구는 9.4%이다.

〈표 IV-1-1〉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전체 가구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연령		맞벌이 가구 여부	
29세 이하	3.7 (60)	맞벌이	58.7 (956)
30~39세	67.6 (1,101)	홀벌이	40.1 (653)
40~49세	28.5 (463)	둘다 일 안 함	1.2 (19)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거주지역		201~400만원	26.9 (438)
대도시	38.6 (629)	401~600만원	35.6 (580)
중소도시	45.4 (739)	601~800만원	20.9 (340)
읍면지역	16.0 (260)	801만원 이상	13.8 (224)
총 자녀수		자녀 연령2(만)	
1명	50.5 (822)	0세(0~11개월)	14.9 (243)
2명	40.1 (653)	1세(12~23개월)	14.8 (241)
3명 이상	9.4 (153)	2세(24~35개월)	16.1 (262)
평균(명)	1.6	3세(36~47개월)	17.0 (276)
자녀 연령1(만)		4세(48~59개월)	17.7 (288)
영아(0~35개월)	45.8 (746)	5세(60~71개월)	19.5 (318)
유아(36개월 이상)	54.2 (882)	자녀 출생순위	
		첫째	50.5 (822)
		둘째	40.1 (653)
		셋째 이상	9.4 (153)
		계(수)	100.0 (1,628)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고, 자녀 특성은 막내자녀 기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추가 할당하여 조사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443사례)는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9.7%,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2.2%이고, 아이돌봄서비스 단독 이용가구는 1.9%, 기관 병행 가구 56.2%, 기관 이용과 조부모 돌봄 병행 가구 30.7%, 조부모 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가구는 6.7%로 나타난다.

응답자 연령은 전체 응답자 분포와 유사하게 30대가 67.2%로 가장 많고,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44.1%, 읍면지역이 13.9%이다. 가구특성은 맞벌이 가구가 75.1%로 홀벌이 가구(24.1%)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체 응답자 분포와 유사하게 401~600만원 이하가 35.6%로 가장 많다.

〈표 IV-1-2〉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단위: % (명)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거주지역		
단독 이용	1.9 (8)	대도시	44.1 (195)	
기관 병행	56.2 (249)	중소도시	42.0 (186)	
조부모 병행	6.7 (30)	읍면지역	13.9 (61)	
기관+조부모 병행	30.7 (136)	맞벌이 가구 여부		
기타 병행	4.5 (20)	맞벌이	75.1 (333)	
연령		홀벌이	24.1 (107)	
29세 이하	6.1 (27)	둘다 일 안 함	0.8 (4)	
30~39세	67.2 (298)	월평균 가구소득		
40~49세	26.7 (118)	200만원 이하	2.8 (12)	
50세 이상		201~400만원	25.8 (115)	
평균(세)	36.5	401~600만원	35.6 (158)	
총 자녀수		601~800만원	20.1 (89)	
1명	48.9 (217)	801만원 이상	15.7 (70)	
2명	39.8 (176)	정부지원 소득기준 유형		
3명 이상	11.3 (50)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4 (55)	
평균(명)	1.6	나형(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	22.3 (99)	
자녀연령1(만)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21.1 (93)	
영아(0~35개월)	46.5 (206)	리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200% 이하)	14.9 (66)	
유아(36개월 이상)	53.5 (237)	마형(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5.6 (25)	
자녀연령2(만)		잘 모름	23.8 (105)	
0세(0~11개월)	14.3 (63)	서비스 이용 유형		
1세(12~23개월)	16.9 (75)	영아종일제 돌봄	22.2 (99)	
2세(24~35개월)	15.3 (68)	시간제돌봄	49.7 (220)	
3세(36~47개월)	17.1 (76)	단기 서비스(일시연계)	18.5 (82)	
4세(48~59개월)	16.7 (74)	잘 모름	9.6 (42)	
5세(60~71개월)	19.7 (87)	자녀 출생순위		
		첫째	48.9 (217)	
		둘째	39.8 (176)	
		셋째 이상	11.3 (50)	
		계(수)	100.0 (443)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고, 자녀 특성은 막내자녀 기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336사례)구는 단독 이용이 8.0%에 그치고, 기관 병행 가구가 48.0%로 약 절반 수준이며, 기관 병행 조부모 돌봄 가구 28.5%, 조부모

도움만 받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병행하는 가구는 11.7%로 나타난다.

응답자 연령은 30대가 70.4%로 다수이고,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49.6%, 읍면지역이 8.1%로 나타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유사하게 맞벌이 가구가 75.0%로 홀벌이 가구(24.1%)보다 월등히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1~600만 원 이하가 31.3%로 가장 많고, 801만원 이상 가구가 22.8%이다. 자녀수는 평균 1.5명이고, 1명이 56.5%로 전체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며, 막내 자녀 기준으로 영아 가구는 55.6%이다.

〈표 IV-1-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구분		비율(수)		단위: %(명)
서비스 병행 이용 여부		거주지역		
단독 이용	8.0 (27)	대도시	49.6 (167)	
기관 병행	48.0 (161)	중소도시	42.4 (142)	
조부모 병행	11.7 (40)	읍면지역	8.1 (27)	
기관+조부모 병행	28.5 (96)	맞벌이 가구 여부		
기타 병행	3.7 (12)	맞벌이	75.0 (252)	
연령		홀벌이	24.1 (81)	
29세 이하	6.9 (23)	둘다 일 안 함	0.9 (3)	
30~39세	70.4 (237)	월평균 가구소득		
40~49세	22.7 (76)	200만원 이하	1.1 (4)	
50세 이상	0.0 (0)	201~400만원	22.5 (76)	
평균(세)	35.9	401~600만원	31.3 (105)	
총 자녀수		601~800만원	22.3 (75)	
1명	56.5 (190)	801만원 이상	22.8 (77)	
2명	35.9 (121)	자녀연령(만)		
3명 이상	7.6 (26)	0세(0~11개월)	26.2 (88)	
평균(명)	1.5	1세(12~23개월)	14.6 (49)	
자녀연령1(만)		2세(24~35개월)	14.8 (50)	
영아(0~35개월)	55.6 (187)	3세(36~47개월)	13.7 (46)	
유아(36개월 이상)	44.4 (149)	4세(48~59개월)	17.0 (57)	
자녀 출생순위		5세(60~71개월)	13.8 (46)	
첫째	56.5 (190)			
둘째	35.9 (121)			
셋째 이상	7.6 (26)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고, 자녀 특성은 막내자녀 기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경제활동 가구의 고용 상 지위와 근로 형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상용근로자가 75.9%와 70.7%로 다수이고, 남성은 전일제가 93.2%로 대다수이나, 여성은 시간제가 22.9%로 남성에 비해 많다. 주말/휴일/야간/새벽 근로와 같은 비전형적 근로를 두 달에 1회 미만 하는 비율은 여성이 54.5%로 남성의 32.5%보다 높아 남성의 비전형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주말·휴일근로 비율이 61.6%, 19시~24시까지의 야간근로가 51.1%로 절반 이상이며, 0~7시까지의 새벽근로도 25.7%이고, 여성은 주말·휴일근로 40.0%, 야간근로 27.0%, 새벽근로가 11.1%이다.

〈표 IV-1-4〉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의 근로특성_경제활동 가구

단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비율 (수)	비율 (수)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		
상용근로자	75.9 (1,181)	70.7 (713)
임시근로자(계약직 포함), 일용근로자	6.5 (101)	10.8 (109)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5 (164)	6.7 (67)
무급가족종사자	0.4 (6)	1.3 (13)
기타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	6.7 (105)	10.5 (106)
근로특성2(근로형태)		
전일제	93.2 (1,449)	77.1 (778)
시간제	6.8 (106)	22.9 (231)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61.6 (958)	40.0 (403)
야간근로	51.1 (795)	27.0 (273)
새벽근로	25.7 (401)	11.1 (112)
비전형근로 아님	32.5 (506)	54.5 (550)

주: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하는 경우는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이며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이상 전체 응답자의 근로 특성을 가구 단위로 살펴보면, 이하 〈표 IV-1-5〉와 같다. 부부가 모두 상용근로자인 가구는 34.4%, 모두 임시·일용근로자이거나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는 7.5%, 둘 중 한 명이 자영업인 경우는 8.6%, 모두 기타종사자 이거나 상용근로자+기타종사자 또는 임시·일용근로자+기타 종사

자인 경우는 8.2%로 분포하였다. 근로 형태는 부부 모두 전일제인 경우가 41.9%로 대부분이고, 15.7%는 전일제+시간제로 나타났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말/휴일/야간/새벽 근로와 같은 비전형적 근로를 두 달에 1회 이상 하는 경우를 비전형 근로 가구로 간주할 때, 주말·휴일근로가구 37.8%, 야간근로가구 30.9%, 새벽근로 가구 16.6%로 나타난다.

〈표 IV-1-5〉 설문조사 응답자 가구의 근로특성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단위: % (명)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34.4 (560)	주말·휴일근로	37.8 (615)	
임시·일용근로 가구	7.5 (122)	야간근로	30.9 (504)	
자영업가구	8.6 (139)	새벽근로	16.6 (271)	
기타 종사자 가구	8.2 (134)	비전형근로 아님	18.0 (293)	
맞벌이 가구 아님	41.3 (673)	맞벌이 가구 아님	41.3 (673)	
근로특성2(근로형태)				
둘다 전일제	41.9 (682)			
전일제+시간제	15.7 (255)			
둘다 시간제	1.1 (18)			
맞벌이 가구 아님	41.3 (673)			
계(수)	100.0 (1,628)	(수)		(1,628)

주: 1)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부부의 고용상 지위가 서로 다른 경우, 아래와 같이 분류함.

- ① 상용/임시일용인 경우, 임시일용으로 분류
- ② 상용/자영업인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
- ③ 상용/기타인 경우, 기타로 분류
- ④ 임시일용/자영업인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
- ⑤ 임시일용/기타인 경우, 기타로 분류
- ⑥ 자영업/기타인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

2)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중복가구 있음.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2. 양육 실태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전반

이하에서는 전체 영유아 가구(1,628사례)를 대상으로 주양육자와 병행하여 추가로 돌보는 인력이나 기관 중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제도 인지와 이용 경험을 위주로 다루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와 조부모 돌봄

가구의 경우는 구체적인 이용 양상을 파악하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와의 관계를 진단하였다.

가. 주양육자와 추가돌봄

전체 영유아의 낮 시간대 주양육자는 어린이집 이용 52.0%, 유치원 이용 22.9%, 부모 직접돌봄이 17.0%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가 주된 양육 방식에 해당하는 가구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공 아이돌보미 1.0%, 민간 육아도우미 0.8%, 시간제보육서비스 0.3%에 그친다. 이로써 가정내양육지원 서비스는 주로 보조적 양육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현황_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반일제 기관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시간제 보육 기관	부모 직접 돌봄	조부모 /친인척	기타	계(수)
전체	52.0	22.9	3.0	1.0	0.8	0.3	17.0	2.8	0.1	100.0 (1,628)
자녀연령										
0세	13.2	0.0	1.9	3.0	2.8	0.3	72.1	6.0	0.6	100.0 (243)
1세	66.1	1.5	0.8	0.3	0.3	0.7	26.0	4.2	0.0	100.0 (241)
2세	85.1	0.7	3.5	0.8	1.1	0.0	6.9	2.0	0.0	100.0 (262)
3세	75.5	17.5	3.3	0.9	0.4	0.4	1.6	0.4	0.0	100.0 (276)
4세	40.4	49.4	3.4	0.7	0.0	0.4	2.8	2.9	0.0	100.0 (288)
5세	33.9	55.6	4.7	0.3	0.6	0.0	2.7	2.1	0.0	100.0 (3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7.4	23.7	3.5	0.8	1.0	0.3	9.0	4.1	0.2	100.0 (956)
맞벌이 가구 아님	44.4	21.7	2.4	1.2	0.7	0.2	28.3	1.0	0.0	100.0 (67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0.0	34.5	0.0	0.0	0.0	0.0	15.5	0.0	0.0	100.0 (47)
201~400만원	53.3	18.6	1.9	1.4	0.2	0.4	22.1	2.1	0.0	100.0 (438)
401~600만원	51.5	25.1	2.8	0.6	1.2	0.1	15.7	2.7	0.3	100.0 (580)
601~800만원	53.7	23.9	2.6	0.9	0.7	0.6	14.9	2.8	0.0	100.0 (340)
801만원 이상	48.6	21.6	7.3	1.6	1.5	0.0	14.2	5.1	0.0	100.0 (224)

주: 빈도분포 특성상 카이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이러한 점은 주양육자와 병행 이용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비율(중복응답)이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주양육자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기관이나 인력으

로는 부모 및 친인척을 제외하면, 공공 아이돌보미 26.2%, 민간 육아도우미 19.8%, 시간제보육기관 3.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병행 이용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에 그쳤다.

공공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해당 비율은 월평균 소득이 601만원 이상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데, 이는 높은 서비스 이용료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표 IV-2-2〉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 이외 추가돌봄 기관/인력 현황(중복응답)_전체 가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반일제 기관	(공공) 아이 돌보미	민간 육아 도우미	시간제 보육 기관	조부모 /친인척	기타	없음	(수)
전체	5.5	3.7	13.9	26.2	19.8	3.8	39.1	0.7	29.6	(1,62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5	4.4	16.2	34.0	25.4	4.4	42.4	0.4	21.4	(956)
맞벌이 가구 아님	4.1	2.8	10.6	15.2	11.8	2.9	34.5	1.0	41.3	(67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3	2.0	12.0	26.3	8.2	0.0	18.6	2.3	50.5	(47)
201~400만원	4.9	3.0	12.8	24.8	17.1	3.8	34.4	0.6	34.4	(438)
401~600만원	5.3	3.3	14.5	26.6	16.9	3.7	37.5	0.7	31.6	(580)
601~800만원	4.0	3.7	15.1	25.3	21.3	4.1	47.3	0.5	24.0	(340)
801만원 이상	10.2	6.4	13.0	29.4	32.7	4.3	44.5	0.5	19.1	(224)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나. 서비스 유형별 인지 및 이용 경험_전체 가구

1)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을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고,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을 응답한 비율은 35.3%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조사되었다.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42.1%로 비맞벌이 가구(25.5%)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표 IV-2-3〉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_전체 가구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	전혀 알지 못함	계(수)
전체	52.0	35.3	12.7	100.0 (1,62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7.5	42.1	10.4	100.0 (956)
맞벌이 가구 아님	58.4	25.5	16.1	100.0 (672)
$\chi^2 (df)$		49.904(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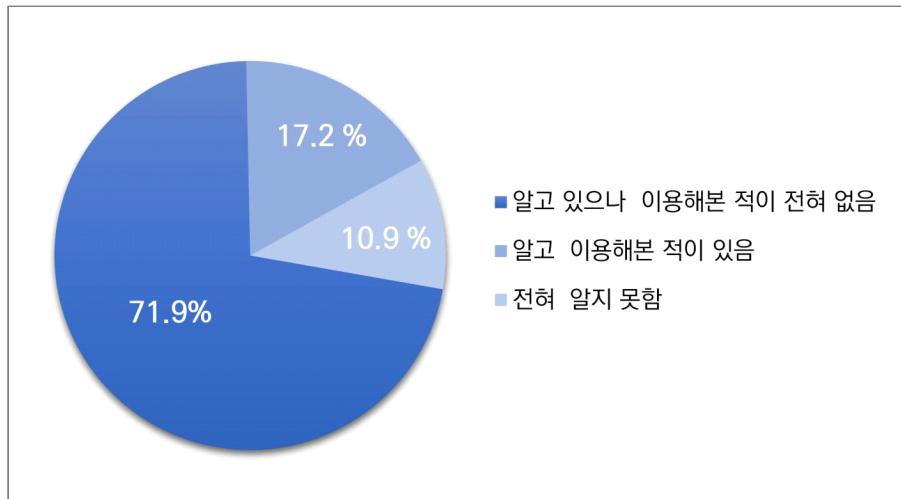
2)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이 71.9%,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이 17.2%, ‘전혀 알지 못함’이 10.9%로 조사되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가구에서 해당 사유는 ‘불필요 해서’(26.2%)를 제외하면,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19.5%, ‘서비스 질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가 16.1% 순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고).

주요 변인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집에서 멀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1.3%로 높게 나타나서 서비스 접근성의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 또한 돌봄지원 인력이 있는 가구에서 ‘불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고립 육아 해소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IV-2-1] 시간제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비율_전체 가구



주: 사례수 1,628명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2-4〉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이유_시간제보육 미이용가구

구분	단위: %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6.1	7.2	26.2	19.5	12.1	12.7	4.0	2.2	100.0 (1,170)
거주지역									
대도시	18.9	7.0	22.8	22.2	12.0	10.8	3.5	2.8	100.0 (440)
중소도시	15.1	5.8	26.9	19.0	12.3	15.4	3.8	1.6	100.0 (532)
읍면지역	12.4	11.3	32.0	14.9	11.9	9.8	5.4	2.4	100.0 (198)
$\chi^2 (df)$									27.289(14)*
상시 돌봄지원인력 유무									
있음	17.3	5.2	33.9	20.0	8.3	10.0	4.0	1.5	100.0 (555)
없음	15.0	9.0	19.3	19.1	15.6	15.2	4.0	2.8	100.0 (615)
$\chi^2 (df)$									51.788(7)***

주: ①서비스 질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②집에서 멀어서, ③불필요해서(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④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 ⑤신청 및 이용 절차가 어려워서, ⑥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 ⑦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어서, ⑧기타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

1)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시각 및 희망 이용시각

어린이집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등원과 하원시각에 대해 현재 시각과 희망시각을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등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8시 53분이고, 희망 시각은 평균 8시 44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희망시각은 8시 37분으로 상대적으로 이르다. 하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오후 4시 43분이고, 희망 시각은 오후 5시 25분으로 42분의 간극이 확인된다.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연장보육 이용가구에서 오후 5시 52분, 맞벌이 가구에서 오후 5시 40분으로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타난다.

〈표 IV-2-5〉 어린이집 등하원시각/희망 등하원시각_어린이집 이용가구

단위: 시간/분, 명

구분	등원시각		하원시각		수
	현재 시각	희망 시각	현재 시각	희망 시각	
전체	8:53	8:44	16:43	17:25	92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56	8:44	16:36	17:22	365
민간	8:52	8:47	16:39	17:24	333
가정	8:55	8:40	16:53	17:34	131
사회복지법인 등	8:53	8:42	16:51	17:29	40
직장	8:44	8:33	17:18	17:36	51
F	1.7	0.7	4.5**	0.7	
연장보육 이용 여부					
이용	8:45	8:39	17:14	17:52	563
미이용	9:07	8:51	15:53	16:44	356
t	-10.0***	-3.2**	20.2***	13.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44	8:37	17:00	17:40	598
맞벌이 가구 아님	9:11	8:57	16:09	16:57	321
t	-12.0***	-5.5***	11.1***	8.0***	

주: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법인·단체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이용가구 포함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시간을 시작과 종료 시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주중(월~금요일)에는 오전 9시 이전에 이용하는 비율이 40~50% 선이고, 오후 5시 이후로 이용하는 비율이 60~80%선이며, 주말과 휴일에도 해당 비율의 절반 수준을 보이며, 이는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용 실태는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내양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추세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로는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비율이 야간, 주말, 휴일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시간대의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거나 높은 이용료 등 낮은 접근성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우선 주중에는 오전 9시 이전에 이용하는 비율이 아이돌봄서비스 40.8%, 민간 육아도우미 46.5%, 조부모(또는 친인척) 33.5%이고,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55.0%, 69.7%, 83.0%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5시부터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8.7%, 5.8%, 1.9%로 나타난다.

주말에는 오전 9시 이전에 이용하는 비율이 아이돌봄서비스 59.7%, 민간 육아도우미 55.4%, 조부모(또는 친인척) 47.1%이고,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27.9%, 38.6%, 42.8%로 조사되었다.

휴일에는 오전 9시 이전에 이용하는 비율이 아이돌봄서비스 46.2%, 민간 육아도우미 58.9%, 조부모(또는 친인척) 53.5%이고,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32.9, 39.8%, 56.3%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내양육서비스 병행 이용 시간대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시간이므로, 이들 시간대에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6〉 뜻별이 가구의 서비스 병행 이용 시간: 어린이집 이용가구_시작 시간대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까지	7시 초과~ 7시 30분	8시 초과~ 8시 30분	9시 초과~ 9시 30분	10시 초과~ 10시 30분	11시 초과~ 11시 30분	12시 초과~ 12시 30분	13시 초과~ 13시 30분	14시 초과~ 14시 30분	15시 초과~ 15시 30분	16시 초과~ 16시 30분	17시 초과~ 17시 30분	18시 초과~ 18시 30분	19시 초과~ 19시 30분	20시 초과~ 20시 30분	
주중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10.3	1.0	7.6	5.7	16.2	9.6	23.4	2.2	12.6	1.7	5.6	2.0	2.2	0.0	0.0	200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15.3	1.1	11.6	6.3	12.2	7.2	20.2	1.4	10.9	1.3	8.6	0.7	2.6	0.6	0.0	151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16.0	4.9	7.4	2.5	2.7	3.4	23.9	7.7	14.9	5.9	5.8	1.0	3.3	0.0	0.5	214
주말(토요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15.4	0.0	22.8	5.5	16.0	27.3	9.2	0.0	0.0	1.9	2.0	0.0	0.0	0.0	0.0	56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2.9	5.3	22.6	0.0	24.6	30.5	11.7	0.0	0.0	0.0	0.0	0.0	0.0	2.3	0.0	37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14.4	1.2	13.9	3.5	14.1	32.7	13.9	0.0	2.5	0.0	2.2	0.0	1.6	0.0	0.0	88
휴일(일요일 등)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15.2	2.5	7.8	0.0	20.7	45.4	8.5	0.0	0.0	0.0	0.0	0.0	0.0	0.0	0.0	35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15.1	0.0	7.0	13.7	23.1	30.8	10.3	0.0	0.0	0.0	0.0	0.0	0.0	0.0	0.0	27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23.9	1.9	15.6	4.6	7.5	36.2	6.0	0.0	4.2	0.0	0.0	0.0	0.0	0.0	0.0	48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2-7〉 뜻별이 가구의 서비스 병행 이용 시간: 어린이집 이용가구_총료 시간대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7시 까지	7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12시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7시 30분 까지	7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30분	12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20시 초과~ 30분	20시 초과~ 30분	21시 초과~ 30분	
주중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11.4	2.8	1.6	0.0	7.1	3.4	9.9	1.8	6.9	3.1	10.6	4.1	19.1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0.7	0.7	1.1	1.5	7.3	3.1	9.9	2.2	3.6	3.8	10.9	4.2	14.2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1.0	0.0	1.4	0.9	3.9	3.9	4.0	0.4	1.5	0.9	11.7	8.6	20.3
주말(토요일)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0.0	0.0	0.0	0.0	0.0	8.2	51.7	1.5	10.7	1.5	8.5	2.2	6.2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0.0	0.0	0.0	0.0	0.0	8.2	37.8	0.0	15.3	2.3	12.4	6.1	4.9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0.0	0.0	0.0	0.0	0.0	8.6	37.8	2.4	8.6	0.0	12.2	2.4	7.8
휴일(일요일 등)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이용	0.0	0.0	0.0	0.0	2.7	11.2	38.9	5.8	8.6	5.5	5.2	3.6	2.7
민간 육아도우미 병행 이용	0.0	0.0	0.0	0.0	0.0	12.1	44.4	0.0	3.5	8.5	16.6	4.1	0.0
조부모/친인척 병행 이용	0.0	0.0	0.0	0.0	0.0	5.2	20.4	0.0	18.1	1.9	12.8	0.0	11.8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설비 및 요구 조사

2) 유치원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시각 및 희망 이용 시각

유치원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등원과 하원시각에 대해 현재 시각과 희망시각을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등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8시 54분이고, 희망 시각은 평균 8시 50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희망시각은 8시 43분으로 상대적으로 이르다. 하원시각은 현재는 평균 오후 4시 33분이고, 희망 시각은 오후 5시 10분으로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37분의 간극이 확인된다. 희망하는 하원시각은 방과후 과정 이용가구에서 오후 5시 11분, 맞벌이 가구에서 오후 5시 22분으로 상대적으로 더 늦게 나타난다.

〈표 IV-2-8〉 유치원 등하원시각/희망 등하원시각_유치원 이용가구

단위: 시간/분, 명

구분	등원 시각		하원 시각		수
	현재 시각	희망 시각	현재 시각	희망 시각	
전체	8:54	8:50	16:33	17:10	421
유치원 유형					
국공립	8:47	8:45	16:34	17:11	155
사립	8:58	8:53	16:33	17:09	267
<i>t</i>	-3.5**	-1.2	0.2	0.4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이용	8:54	8:49	16:36	17:11	402
미이용	8:56	9:07	15:41	16:32	20
<i>t</i>	-0.3	-1.1	2.4*	2.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49	8:43	16:46	17:22	259
맞벌이 가구 아님	9:02	9:01	16:13	16:50	163
<i>t</i>	-4.8***	-2.5*	6.1***	5.4***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IV

라. 조부모/친인척돌봄 가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1) 조부모 돌봄 사유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에게 돌봄 사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긴급한 때 자녀돌봄이 용이해서’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응답은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62.2%로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4.1%,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요 변인별로는 병행 이용 여부, 자녀연령,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조부모/친인척 돌봄 사유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단독 이용가구는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율(46.2%)이 높았고, 기관 병행 가구는 ‘긴급한 때 자녀돌봄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44.5%)이 높았다. 영아 자녀에서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율(24.2%)이 유아(2.7%)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IV-2-9〉 조부모/친인척 돌봄 사유_전체(1순위/1+2순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구분	1순위	1+2순위	단위: %(명)
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39.0	62.2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4.1	21.8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13.5	17.6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료(부모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서	3.5	6.1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3.7	7.8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2.2	6.3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3.2	8.7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3.9	8.0	
장기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5.5	18.8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친인척 제외) 등의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3.5	12.1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등 비혈연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	24.3	
기타	1.8	6.5	
계(수)	100.0(682)	(68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2-10〉 조부모/친인척 돌봄 사유(1순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단위: %(명)
전체	13.5	3.5	3.7	14.1	2.2	3.2	3.9	39.0	5.5	3.5	6.1	1.8	100.0 (682)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46.2	4.4	1.9	1.0	8.4	1.8	3.5	17.7	1.0	2.9	7.4	3.7	100.0 (8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자녀연령1													
영아	24.2	2.1	3.8	11.5	3.0	3.3	3.7	32.3	3.0	3.6	7.4	2.0	100.0 (344)
유아	2.7	5.0	3.5	16.7	1.3	3.1	4.1	45.7	8.1	3.3	4.8	1.6	100.0 (338)
$\chi^2(df)$								86.568(11)***					
자녀연령2													
0세	45.1	2.7	1.9	3.1	3.9	3.6	2.3	21.6	1.3	4.8	7.4	2.3	100.0 (121)
1세	21.3	1.1	2.8	13.0	4.9	3.6	1.9	34.7	3.9	4.6	7.1	1.1	100.0 (99)
2세	6.1	2.3	6.4	18.6	0.8	2.7	6.6	40.9	3.9	1.7	7.6	2.4	100.0 (124)
3세	3.7	0.9	2.7	16.6	0.9	4.6	2.1	45.7	9.5	5.8	4.8	2.8	100.0 (119)
4세	1.9	6.4	5.1	12.3	2.2	2.2	8.4	46.8	5.2	2.3	6.1	1.0	100.0 (99)
5세	2.3	8.0	3.1	20.4	0.9	2.3	2.6	44.9	9.1	1.7	3.6	1.0	100.0 (120)
$\chi^2(df)$								NA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1	4.4	4.1	19.1	1.4	3.7	3.3	37.0	6.6	3.3	4.4	1.6	100.0 (444)
맞벌이 가구 아님	18.0	2.0	2.9	4.8	3.6	2.2	5.2	42.5	3.5	3.9	9.3	2.2	100.0 (238)
$\chi^2(df)$								47.475(11)***					

주: 1) ①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료(부모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④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⑤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⑥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⑦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⑧긴급한 때(급작스런 아근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⑨장기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⑩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친인척 제외) 등의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⑪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등 비활연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⑫기타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카이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IV

2) 이용가구 특성과 돌봄 시간

조부모 돌봄 가구(682사례) 중에서 주중, 주말, 휴일로 구분하여 이용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중에 돌보는 비율이 평균 71.4%이고, 주말과 휴일은 각각 34.9%와 22.5%로 나타난다. 주요 변인별로는 단독 이용과 기관 병행이 60~70%선으로 유사하고, 주말(토요일) 돌봄에서는 영아가구에서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40.7%). 주중에 도움을 받은 비율은 맞벌이 가구는 80.8%로 다수이지만 비맞벌이 가구도 54.0%에 달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주중에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V-2-11〉 조부모/친인척돌봄 이용 비율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단위: 명, %

구분	주중		주말(토요일)		주말(휴일)	
	이용합		이용합		이용합	
	전체수	이용률	전체수	이용률	전체수	이용률
전체	682	71.4	682	34.9	682	22.5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82	68.8	82	43.2	82	22.6
기관 병행	542	71.1	542	33.9	542	22.9
기타 병행	58	77.7	58	33.2	58	18.5
F		0.7(a)		1.4(a)		0.3(a)
자녀연령1						
영아	344	68.9	344	40.7	344	23.7
유아	338	74.0	338	29.1	338	21.2
t		-1.5		3.2**		0.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4	80.8	444	31.3	444	18.2
맞벌이 가구 아님	238	54.0	238	41.8	238	30.4
t		7.2***		-2.7**		-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9	64.1	9	25.8	9	22.5
201~400만원	160	57.3	160	40.1	160	27.5
401~600만원	233	68.4	233	37.2	233	23.6
601~800만원	170	81.0	170	30.3	170	16.7
801만원 이상	111	83.9	111	30.4	111	21.8
F		8.6*** (a)		1.3(a)		1.5(a)

주: (a)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다수를 차지하는 주중 기준으로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을 시작과 종료시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단독 이용의 경우는 시작 시각은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7시부터 16시까지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하고,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는 12시~16시 25.9%, 7시 30분 이전 19.4%, 16시 30분~17시 13.4%로 높게 나타난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8시 이전에 시작하는 비율이 맞벌이 가구 29.9%, 비맞벌이 가구 20.0%이고, 오후 5시 30분 이후에 종료하는 비율이 각각 77.5%와 57.6%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시간대별 이용 분포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조부모 돌봄의 경우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이용 양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영아와 유아의 돌봄 시간대 등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돌봄 공백 측면에서 조부모 돌봄 가구의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필요가 있다.

〈표 IV-2-12〉 주중 조부모/친인척 돌봄시간 시작 시각

구분	오전						오후						단위: %, 명
	7시 초과~ 까지	7시 초과~ 까지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12시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20시 초과~ 30분	수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16.1	2.8	5.7	1.5	19.8	19.5	29.8	1.5	0.0	0.0	1.3	0.0	0.0
기관 병행	14.7	4.7	8.4	1.7	3.9	2.5	25.9	7.7	13.4	4.9	7.5	1.4	0.2
기타 병행	11.3	3.5	11.8	2.8	10.6	30.4	21.8	0.0	3.7	0.0	4.2	0.0	0.0
자녀연령1													
영0	13.4	3.3	9.3	2.3	8.6	11.4	30.6	4.7	6.6	2.7	4.9	0.0	0.0
유1	15.6	5.4	7.5	1.2	4.3	3.0	21.5	7.6	15.1	5.4	7.7	2.2	0.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9	5.8	9.2	1.8	5.1	6.3	20.5	6.3	13.7	5.2	6.7	1.2	0.2
맞벌이 가구 0님	13.4	0.6	6.0	1.5	10.1	9.4	41.1	6.0	3.2	0.9	5.4	0.9	0.3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2-13〉 주중 조부모/친인척 돌봄시간_총료 시각

구분	오전				오후				단위: %, 명
	7시~ 7시 까지	7시~ 30분 초과~ 초과	8시~ 8시 초과~ 초과	9시~ 9시 초과~ 초과	16시~ 16시 초과~ 초과	17시~ 17시 초과~ 초과	18시~ 18시 초과~ 초과	19시~ 19시 초과~ 초과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3.4	0.0	0.0	1.5	9.7	30.3	0.0	20.1	0.0
기관 병행	1.1	0.2	1.3	1.9	4.7	3.5	3.3	0.8	3.4
기타 병행	0.0	1.9	1.7	0.0	0.0	5.3	21.6	0.0	7.5
자녀연령1									
영0	1.8	0.4	1.1	0.5	1.6	5.5	14.0	0.8	7.5
유1	0.8	0.4	1.2	2.4	6.0	3.5	2.7	0.4	3.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6	0.0	1.1	1.7	4.3	4.2	6.0	0.2	3.4
맞벌이 가구 0님	3.0	1.3	1.6	0.8	2.6	5.1	14.0	1.6	11.6
자료: 기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3)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친인척 돌봄 지불비용을 질문한 결과 평균 327,000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396,000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약 20만원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여 801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54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비용의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1점으로 조사되었다. 비용 부담 정도는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 3.2점(5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4〉 조부모/친인척 돌봄 월 평균 지불비용 및 부담 정도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지불비용		비용 부담 정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7	50.1	3.1	1.1	682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23.8	46.1	3.1	1.0	82
기관 병행	32.6	49.3	3.2	1.1	542
기타 병행	45.3	59.6	3.0	1.2	58
<i>F</i>	3.2*(a)		0.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6	51.0	3.2	1.1	956
맞벌이 가구 아님	19.7	45.7	3.0	1.1	672
<i>t</i>	5.2***		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1.0	21.1	3.0	0.7	47
201~400만원	18.7	39.2	3.0	1.2	438
401~600만원	26.7	41.5	3.1	1.0	580
601~800만원	40.4	50.4	3.2	1.0	340
801만원 이상	54.2	69.3	3.1	1.3	224
<i>F</i>	10.8****(a)		0.4		

주: 1)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 ~ '매우 부담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a)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조부모/친인척에게 맡기려는 자녀의 연령은 평균 6.4세까지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는 병행 이용 여부, 맞벌이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 병행 가구는 평균 7.1세까지라고 응답하여 단독 이용가구(3.4세)보다 3~4년 가량 더 오래 자녀를 맡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평균 7.0세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5.3세)보다 2년 가량 더 오래 맡기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15〉 조부모/친인척 돌봄 예정 기간(자녀연령)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6.4	3.8	682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3.4	3.6	82
기관 병행	7.1	3.4	542
기타 병행	3.4	3.5	58
F	6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0	3.7	956
맞벌이 가구 아님	5.3	3.6	672
t	5.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0	3.5	47
201~400만원	5.3	3.7	438
401~600만원	6.4	3.8	580
601~800만원	6.8	3.7	340
801만원 이상	7.1	3.8	224
F	4.7**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3. 서비스 유형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이하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이용 특성과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동기, 이용시간, 이용 빈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3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4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용 동기와 이용가구 특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사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긴급할 때(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30.7%,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25.4%,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17.6% 순이었다.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긴급할 때(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52.6%,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40.3%,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22.0%, ‘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20.0% 순으로 1순위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IV-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1순위	1+2순위	단위: %(명)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17.6	22.0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9.8	14.0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25.4	40.3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5.6	10.9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힘들어서	2.2	7.3	
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30.7	52.6	
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6.9	20.0	
기타	1.8	2.4	
계(수)	100.0(449)	(449)	

주: 이유가 한 가지인 경우 2순위는 응답하지 않음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주요 변인별로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조부모와 병행 또는 기타 병행을 하는 가구는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0세와 1세를 둔 가구에서는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기관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해당 비율은 임시 일용직, 자영업가구, 기타 종사자 가구, 새벽, 야간 등 비전형적근로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1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단위: %(명)
전체	17.6	9.8	25.4	5.6	2.2	30.7	6.9	1.8	100.0 (449)	
이용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돌봄	19.6	13.7	26.5	2.9	1.0	31.4	3.9	1.0	100.0 (102)	
시간제돌봄	17.9	8.5	24.7	5.8	2.7	29.6	8.5	2.2	100.0 (223)	
단기 서비스(일시연계)	13.4	12.2	28.0	2.4	3.7	32.9	6.1	1.2	100.0 (82)	
잘 모름	19.0	2.4	21.4	16.7	0.0	31.0	7.1	2.4	100.0 (42)	
$\chi^2(df)$										24.491(21)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50.0	0.0	0.0	10.0	0.0	30.0	10.0	0.0	100.0 (10)	
기관 병행	13.7	12.5	26.2	5.6	2.8	31.0	5.6	2.4	100.0 (248)	
조부모 병행	60.6	6.1	0.0	0.0	0.0	24.2	9.1	0.0	100.0 (33)	
기관+조부모 병행	8.1	5.9	34.8	6.7	2.2	32.6	8.9	0.7	100.0 (135)	
기타 병행	39.1	13.0	8.7	4.3	0.0	26.1	4.3	4.3	100.0 (23)	
$\chi^2(df)$										89.660(28)***
자녀 연령										
0세	39.7	7.7	12.8	5.1	0.0	26.9	7.7	0.0	100.0 (78)	
1세	27.3	7.8	20.8	7.8	2.6	27.3	3.9	2.6	100.0 (77)	
2세	6.1	15.2	27.3	3.0	0.0	39.4	7.6	1.5	100.0 (66)	
3세	13.6	4.5	25.8	7.6	1.5	31.8	10.6	4.5	100.0 (66)	
4세	12.5	8.3	36.1	5.6	4.2	23.6	6.9	2.8	100.0 (72)	
5세	5.6	14.4	30.0	4.4	4.4	35.6	5.6	0.0	100.0 (90)	
$\chi^2(df)$										NA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6	9.8	31.2	5.6	1.8	26.4	6.5	2.1	100.0 (337)	
맞벌이 가구 아님	20.5	9.8	8.0	5.4	3.6	43.8	8.0	0.9	100.0 (112)	
$\chi^2(df)$										28.819(7)***

주: 1) ①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③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⑤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⑥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⑦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⑧기타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카이검정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p < .001$.

〈표 IV-3-3〉 근로특성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동기(1순위)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단위: %(명)
									계(수)
전체	17.6	9.8	25.4	5.6	2.2	30.7	6.9	1.8	100.0 (449)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19.2	12.0	27.4	6.3	1.9	26.0	5.8	1.4	100.0 (208)
임시·일용근로 가구	9.8	5.9	45.1	5.9	0.0	21.6	7.8	3.9	100.0 (51)
자영업가구	18.4	5.3	31.6	5.3	0.0	31.6	7.9	0.0	100.0 (38)
기타 종사자 가구	10.0	7.5	32.5	2.5	5.0	30.0	7.5	5.0	100.0 (40)
맞벌이 가구 아님	20.5	9.8	8.0	5.4	3.6	43.8	8.0	0.9	100.0 (112)
$\chi^2(df)$									49.637(28)**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15.5	7.7	31.9	5.3	2.4	28.5	6.3	2.4	100.0 (207)
야간근로	17.0	9.1	32.7	4.8	1.2	25.5	7.3	2.4	100.0 (165)
새벽근로	14.0	9.3	32.6	4.7	1.2	27.9	9.3	1.2	100.0 (86)
비전형근로 아님	16.2	13.5	29.7	6.3	0.9	24.3	7.2	1.8	100.0 (111)
맞벌이 가구 아님	20.5	9.8	8.0	5.4	3.6	43.8	8.0	0.9	100.0 (112)
$\chi^2(df)$									61.583(35)**

- 주: 1) ①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③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⑤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⑥긴급한 때(급작스런 아동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⑦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⑧기타 2)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3)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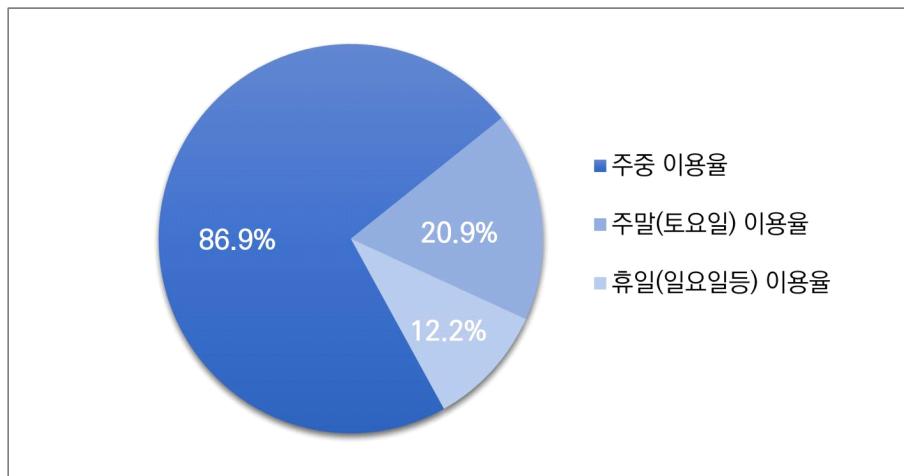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p < .01$.

2) 서비스 이용시간

시간대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주중에는 86.9%, 주말과 휴일에는 20.9% 와 12.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V-3-1]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대별 이용률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주: 사례수 449명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주중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시작과 종료 시각을 구분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시작 시각은 오전 9시 이전까지 이용 비율이 기관 병행 이용가구에서 46.4%이고, 맞벌이 가구에서 40.3%로 비맞벌이 가구(47.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종료 시각은 기관 병행 이용가구에서 오후 5시 이후 이용 비율이 48.8%이고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53.8%로 비맞벌이 가구(29.5%)에 비해 월등히 높고, 오후 7시 30분 이후는 14.5%로 조사되었다.

〈표 IV-3-4〉 주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시작 시간

구분	오전						오후						수
	7시 7시 까지	7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12시	12시 초과~ 16시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0이용서비스 유형													
영이종일제 돌봄	9.0	2.2	11.2	13.5	22.5	10.1	1.1	12.4	0.0	4.5	1.1	0.0	1.1
시간제돌봄	10.3	2.0	4.9	3.4	15.8	13.3	26.1	4.4	9.4	2.0	4.9	1.5	0.5
단기(서비스일시연계)	12.3	0.0	10.8	1.5	10.8	15.4	26.2	3.1	15.4	1.5	0.0	1.5	0.0
잘 모름	3.0	0.0	3.0	6.1	33.3	0.0	33.3	3.0	6.1	0.0	9.1	3.0	0.0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0.0	0.0	0.0	0.0	30.0	30.0	40.0	0.0	0.0	0.0	0.0	0.0	0.0
기관 병행	10.5	1.8	8.2	7.3	18.6	7.7	20.5	4.5	10.0	0.9	6.4	1.4	0.5
조부모 병행	3.3	3.3	13.3	0.0	33.3	33.3	10.0	0.0	3.3	0.0	0.0	0.0	0.0
기관조부모 병행	12.8	0.9	4.6	2.8	8.3	9.2	31.2	2.8	17.4	2.8	3.7	1.8	0.9
기타 병행	0.0	0.0	4.8	14.3	33.3	28.6	19.0	0.0	0.0	0.0	0.0	0.0	0.0
자녀연령													
영아	5.3	0.5	9.5	7.4	24.3	18.5	20.1	1.1	6.9	0.0	3.2	1.1	1.6
유아	13.9	2.5	5.0	4.0	11.9	5.5	25.9	5.5	14.4	2.5	6.0	1.5	1.0
맞벌이 기구 여부													
맞벌이	10.8	1.3	7.7	5.7	14.8	11.4	21.2	3.4	12.5	1.7	6.1	1.7	1.3
맞벌이 기구 아님	6.5	2.2	5.4	5.4	28.0	12.9	29.0	3.2	5.4	0.0	0.0	1.1	1.1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구

〈표 IV-3-5〉 주중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_총료 시각

구분	오전						오후						수	단위: %, 명
	7시 까지	7시 초과~ 30분	7시 초과~ 30분	8시 ~8시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30분	12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01용서비스 유형														
영이종일제 돌봄	12.5	2.3	1.1	0.0	2.3	5.7	11.4	2.3	6.8	4.5	11.4	4.5	15.9	5.7
시간제돌봄	12.4	1.5	0.5	1.0	7.4	4.0	18.3	2.0	6.4	1.5	11.9	2.5	14.9	2.0
단기 1서비스(일시연계)	13.8	3.1	3.1	0.0	7.7	9.2	15.4	0.0	9.2	0.0	6.2	3.1	16.9	1.5
잘 모름	12.1	0.0	0.0	0.0	6.1	3.0	15.2	3.0	6.1	6.1	18.2	6.1	18.2	3.0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11.1	0.0	0.0	0.0	0.0	22.2	44.4	0.0	0.0	0.0	11.1	11.1	0.0	0.0
기관 병행	15.0	2.7	1.4	0.5	5.9	4.5	11.8	1.8	7.7	3.2	11.4	4.1	15.0	3.2
조부모 병행	10.0	0.0	0.0	0.0	0.0	6.7	50.0	0.0	10.0	0.0	6.7	0.0	13.3	3.3
기관조부모 병행	7.4	0.9	0.9	10.2	2.8	10.2	2.8	5.6	0.9	10.2	2.8	22.2	2.8	11.1
기타 병행	19.0	0.0	0.0	0.0	14.3	28.6	0.0	4.8	4.8	23.8	0.0	0.0	4.8	0.0
자녀연령														
영아	11.7	0.5	0.5	0.0	3.7	5.9	22.9	2.1	8.5	3.2	11.2	3.2	16.0	1.6
유아	13.5	3.0	1.5	1.0	8.5	4.5	9.5	1.5	5.5	1.5	11.5	3.5	15.5	4.0
맞벌이 기구 여부														
맞벌이	11.8	2.0	1.4	0.3	6.8	4.7	10.8	2.0	6.4	2.4	12.5	3.4	17.6	3.4
맞벌이 기구 아님	15.2	1.1	0.0	1.1	4.3	6.5	32.6	1.1	8.7	2.2	7.6	3.3	9.8	1.1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구

3) 서비스 이용 빈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게 최근 1년 기준으로 상황별(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주말-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휴일-일요일 등에 일해야 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관련 상황이 발생한 적 없다'는 응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많았으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이용 빈도는 발생한 적이 없다 25.2%, 한 달에 2~3회 18.5%, 한 달에 1회 15.4%, 연간 1~2회 10.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6〉 상황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전체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주말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휴일 일요일 등에 일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적 없음	48.1	25.2	69.3	62.8	74.6
1주일에 3~5회	4.2	5.6	3.6	2.0	2.2
1주일에 1회	8.2	9.4	2.4	4.5	1.3
한 달에 2~3회	8.5	18.5	6.5	5.3	2.7
한 달에 1회	9.1	15.4	6.2	8.2	5.8
두 달에 1회	6.5	8.0	2.9	4.7	2.9
연간 3~4회	6.9	7.1	4.0	5.8	5.3
연간 1~2회	8.5	10.9	5.1	6.7	5.1
계(수)			100.0(449)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 서비스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10개 항목에 걸쳐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42.1%(전반)~30.1%(불만 및 민원 대응)로 나타났고,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3.1점(5점 만점)에서 3.4점의 분포를 보였다.

5점 척도 기준 항목별 만족도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균 3.4점으로 나타난 가

운데,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총 이용시간, 이용시간대,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신뢰도 항목이 공히 3.3점, 신속한 서비스 연계, 돌봄 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불만 및 민원 대응은 공히 3.2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7〉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전체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2.7	10.9	51.0	27.8	7.6	100.0 (449)	3.3
신속한 서비스 연계	4.2	11.4	49.2	26.5	8.7	100.0 (449)	3.2
이용비용	4.5	16.0	48.1	23.6	7.8	100.0 (449)	3.1
총 이용시간	4.7	10.2	48.1	29.4	7.6	100.0 (449)	3.3
이용시간대	2.4	11.6	47.0	31.2	7.8	100.0 (449)	3.3
돌봄 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3.1	14.9	48.6	26.9	6.5	100.0 (449)	3.2
서비스 제공 범위	3.1	10.7	52.1	25.8	8.2	100.0 (449)	3.3
불만 및 민원 대응	3.6	13.1	53.2	23.4	6.7	100.0 (449)	3.2
서비스 신뢰도	2.7	9.4	48.6	32.1	7.3	100.0 (449)	3.3
전반	2.7	7.3	47.9	34.5	7.6	100.0 (449)	3.4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매우 불만족+불만족)고 응답한 경우 해당 불만족 내용으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이용 및 절차가 복잡(설명 어려움, 사이트 불안정, 신청 방법이 자주 바뀜 등)하고, 정보 및 홍보가 부족한 점이 지목되었다. 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긴 대기 기간(즉시 이용이 어려움, 인원 매칭 느림)이 주된 불만이었고,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표출되었다. 이용비용과 관련된 불만족 이유로는 비용이 높아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용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용시간이 짧고, 저녁, 이른 시간, 휴일 이용의 어려움 등이 지목되었다. 아이돌보미의 자질 또는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외에도 도우미마다 편차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주를 이루었다(부록표1 참고).

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수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동기, 이용시간, 이용 빈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5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이용 동기와 이용가구 특성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사유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23.9%, ‘긴급할 때(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19.7%,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8.0% 순이다.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긴급할 때(급작스러운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39.9%,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28.1%,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27.0%,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20.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구분	단위: % (명)	
	1순위	1+2순위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23.9	28.1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11.0	14.0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18.0	27.0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3.9	9.3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12.1	20.8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2.2	8.1
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19.7	39.9
정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3.4	14.0
다양한 서비스를 원해서(아동돌봄 이외 가사서비스, 영어과외 병행 등)	5.1	15.2
기타	0.8	2.2
계(수)	100.0(356)	(356)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주요 변인별로는 영아자녀에서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

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맞별이 가구는 자녀돌봄이 용이 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3-9〉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1순위)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23.9	11.0	18.0	3.9	12.1	2.2	19.7	3.4	5.1	0.8	100.0 (356)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42.4	9.1	0.0	0.0	9.1	3.0	15.2	3.0	18.2	0.0	100.0 (33)
기관 병행	20.9	12.3	25.8	1.8	14.1	2.5	16.0	4.3	1.8	0.6	100.0 (163)
조부모 병행	44.7	4.3	2.1	10.6	4.3	0.0	23.4	2.1	6.4	2.1	100.0 (47)
기관+조부모 병행	9.2	11.2	21.4	5.1	15.3	3.1	26.5	3.1	5.1	0.0	100.0 (98)
기타 병행	46.7	20.0	0.0	6.7	0.0	13.3	0.0	6.7	6.7	6.7	100.0 (15)
자녀연령2											
0세	40.9	7.3	6.4	5.5	4.5	0.9	19.1	4.5	9.1	1.8	100.0 (110)
1세	26.4	9.4	17.0	3.8	11.3	0.0	26.4	1.9	3.8	0.0	100.0 (53)
2세	12.2	14.3	24.5	4.1	28.6	4.1	12.2	0.0	0.0	0.0	100.0 (49)
3세	19.5	12.2	19.5	2.4	12.2	2.4	17.1	7.3	4.9	2.4	100.0 (41)
4세	12.7	9.1	30.9	0.0	10.9	3.6	21.8	3.6	7.3	0.0	100.0 (55)
5세	10.4	18.8	22.9	6.3	14.6	4.2	20.8	2.1	0.0	0.0	100.0 (48)
맞별이 가구 여부											
맞별이	24.7	10.6	21.3	3.8	13.3	2.3	17.9	2.3	3.4	0.4	100.0 (263)
맞별이 가구 아님	21.5	11.8	8.6	4.3	8.6	2.2	24.7	6.5	9.7	2.2	100.0 (93)

주: 1) ①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③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⑤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⑥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힘들어서, ⑦긴급한 때(급작스런 아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⑧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⑨다양한 서비스를 원해서(아동돌봄 이외 가사서비스, 영어과외 병행 등), ⑩기타 2) 빈도분포 특성상 카이제곱이 부적절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2) 서비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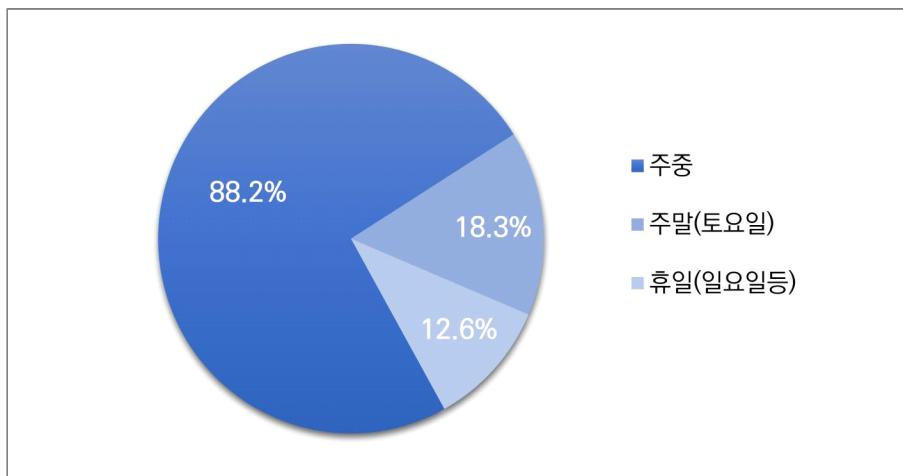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은 주중에는 88.2%이고, 주말과 휴일에는 18.3%와 12.6%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주중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시작과 종료 시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기관 병행 가구의 경우는 오전 9시 이전에 시작하는 비율은 56.2%로 아이돌봄서비스(46.4%)보다 높고, 비맞별이 가구는 62.6%에 달하며, 종료 시각은 오후 5시 이후에는 맞별이 가구 50.8%, 비맞별이 가구 37.4%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별이 가구의 경우는 오후 7시 30분 이후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18.8%로 나타난다.

이들 시간대는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달리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비맞벌이 가구의 민간 육아도우미 수요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V-3-2] 주중/주말/휴일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주: 사례수 356명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표 IV-3-10〉 주중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_시작 시간

구분	오전						오후						단위: %, 명
	7시 7시 까지	7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30분	12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기관 병행	12.6	0.8	10.9	10.1	21.8	9.2	14.3	8.4	1.7	5.9	0.8	2.5	119
조부모 병행	7.1	7.1	21.4	0.0	50.0	14.3	0.0	0.0	0.0	0.0	0.0	0.0	14
기관조부모 병행	8.7	2.2	4.3	2.2	6.5	10.9	34.8	2.2	19.6	2.2	2.2	0.0	46
기타 병행	0.0	0.0	7.7	23.1	38.5	15.4	0.0	0.0	0.0	0.0	0.0	0.0	13
자녀연령													
영아	6.3	1.1	13.7	10.5	28.4	15.8	12.6	1.1	5.3	0.0	2.1	0.0	95
유아	14.4	2.1	6.2	6.2	14.4	5.2	23.7	1.0	14.4	3.1	6.2	2.1	9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9	1.9	10.6	8.1	16.9	12.5	16.9	1.3	9.4	1.9	5.0	1.3	160
맞벌이 가구 비율	3.1	0.0	6.3	9.4	43.8	0.0	25.0	0.0	12.5	0.0	0.0	0.0	3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구

〈표 IV-3-11〉 주중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_총료 시간

구분	오전						오후						수	단위: %, 명
	7시 7시 까지	7시~ 30분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20시 초과~ 30분	20시 초과~ 30분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기관 병행	15.1	4.2	1.7	0.0	5.9	5.9	10.9	3.4	6.7	4.2	9.2	3.4	119	
조무모 병행	7.1	0.0	0.0	0.0	0.0	14.3	35.7	0.0	14.3	0.0	7.1	0.0	14	
기관조무모 병행	6.7	2.2	2.2	0.0	6.7	4.4	8.9	0.0	2.2	0.0	11.1	2.2	45	
기타 병행	30.8	0.0	0.0	0.0	7.7	30.8	0.0	0.0	0.0	23.1	0.0	0.0	13	
자녀연령1														
영아	16.8	1.1	1.1	0.0	4.2	6.3	18.9	3.2	6.3	4.2	11.6	1.1	95	
유아	10.4	5.2	2.1	0.0	6.3	6.3	8.3	1.0	5.2	1.0	9.4	4.2	52	
맞벌이 기구 여부														
맞벌이	13.8	3.8	1.9	0.0	6.3	6.9	8.8	2.5	5.0	2.5	10.1	2.5	96	
맞벌이 기구 아님	12.5	0.0	0.0	0.0	3.1	37.5	0.0	9.4	3.1	12.5	3.1	15.6	3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구

3) 서비스 이용 빈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게 최근 1년 기준으로 상황별(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주말(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휴일(일요일 등) 일해야 하는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련 상황이 발생한 적 없다는 응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많았으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적 없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이용 빈도는 발생한 적이 없다 28.7%, 한 달에 1회 14.9%, 한 달에 2~3회 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빈도: 전체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파서 등원하지 못한 경우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주말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휴일 일요일 등)에 일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적 없음	49.2	28.7	65.4	64.6	71.6
1주일에 3~5회	4.5	5.9	3.7	2.5	1.4
1주일에 1회	8.7	9.0	3.7	3.4	3.7
한 달에 2~3회	9.6	13.8	4.5	5.3	3.4
한 달에 1회	9.8	14.9	4.8	3.4	2.5
두 달에 1회	4.8	9.3	6.5	6.7	5.1
연간 3~4회	7.3	9.3	6.2	6.2	5.9
연간 1~2회	6.2	9.3	5.3	7.9	6.5
계(수)			100.0(356)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4) 서비스 만족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10개 항목에 걸쳐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44.1%(이용시간대)~26.5%(이용비용)이고,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2.9점(5점 만점)에서 3.4점의 분포가 나타났다.

항목별로 5점 척도 기준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속한 서비스 연계와 이용시간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총 이용

시간,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전반에 대한 항목이 각각 평균 3.3점이며,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불만 및 민원 대응, 서비스 신뢰도가 각각 평균 3.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IV-3-1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만족도: 전체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0.3	10.4	52.0	30.3	7.0	100.0 (356)	3.3
신속한 서비스 연계	1.1	8.4	48.6	32.3	9.6	100.0 (356)	3.4
이용비용	6.7	21.6	45.2	22.8	3.7	100.0 (356)	2.9
총 이용시간	2.0	7.9	49.2	35.7	5.3	100.0 (356)	3.3
이용시간대	1.4	7.6	46.9	37.4	6.7	100.0 (356)	3.4
돌봄인력 자질 또는 전문성	4.2	14.3	45.8	29.5	6.2	100.0 (356)	3.2
서비스 제공 범위	2.5	9.8	46.6	33.7	7.3	100.0 (356)	3.3
불만 및 민원 대응	3.1	10.4	51.4	29.5	5.6	100.0 (356)	3.2
서비스 신뢰도	3.1	11.8	48.9	30.1	6.2	100.0 (356)	3.2
전반	1.4	7.9	53.9	31.2	5.6	100.0 (356)	3.3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 불만족하다(매우 불만족+불만족)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하는 내용으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구해야 하는 어려움과 민원을 제기할 창구가 부재하거나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등 민원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에 아이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료와 정부 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유사하게 전문성 부족이 주된 불만이었으나, 아이돌보미와는 달리 신원이 보장되지 않거나 자격 검증이 어려운 점이 추가로 제시되었다(부록표2 참고).

IV

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1) 이용 동기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사유는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61.6%)이 1, 2순위를 합산하여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료가 저렴해서’,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구직 활동, 취미 생활, 운동 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해서(대기가 너무 길어서)’ 순이었다.

〈표 IV-3-14〉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동기_전체(1순위/1+2순위)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1순위	1+2순위	단위: %(명)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해서	38.4	61.6	
이용료가 저렴해서	20.0	38.0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해서(대기가 너무 길어서)	17.9	22.5	
집단보육이 더 신뢰가 가서	8.1	13.9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구직 활동, 취미 생활, 운동 등)	6.0	28.0	
아이돌보미의 잊은 변경(또는 교체)이 우려되어서	2.2	8.2	
자녀를 훌로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4.8	16.5	
아이에게 또래가 필요해서(사회성 발달 등)	2.1	8.8	
기타	0.6	2.5	
계(수)	100.0(281)	(281)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한편 시간제보육기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동 소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도보의 경우는 평균 24.6분, 차량 이용의 경우는 평균 8.5분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 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도보는 평균 38.9분, 차량은 평균 11.1분으로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

〈표 IV-3-15〉 시간제보육시설 이동 소요시간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도보 이용 시			차량 이용 시			단위: 분, (명)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6	26.2	281	8.5	7.9	(281)	
거주지역							
대도시	21.3	24.4	121	7.1	6.6	(121)	
중소도시	23.4	19.8	121	9.0	7.0	(121)	
읍면지역	38.9	41.4	38	11.1	12.4	(38)	
F	7.0**(a)			4.3*(a)			

주: (a)는 등분산 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2) 서비스 이용 만족도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내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로 나타났고, 해당 비율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기관에서 35.1%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에 비해 높았다.

〈표 IV-3-16〉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시 불만족 경험 유무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7.1	72.9	100.0 (281)
이용기관 유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35.1	64.9	100.0 (122)
어린이집 부설	24.1	75.9	100.0 (130)
잘모름	6.3	93.7	100.0 (29)
$\chi^2(df)$	10.837(2)**		

주: 이용기관 유형은 이용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기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1$.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불만족하는 내용으로는 ‘시간대 맞추기 어려움’, ‘서비스 신청 번거로움’, ‘면 거리’, ‘교사 등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불신’, ‘자녀의 부적응’ 등이 언급되었다(부록표3 참조).

IV

4.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이하에서는 돌봄서비스 수요 전반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를 조사한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의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의향을 파악하였다.

가.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수요 전반

1) 자녀돌봄의 어려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8개 항목에 걸쳐 근로 및 추가출산에 관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각 항목별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시기의 연기 및 취업 포기 고려한 적이 있다’ 68.8%,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4.2%, ‘자녀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4%, ‘직장을 그만둔 적 있다’ 6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자녀돌봄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및 추가출산 경험_전체 가구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1)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또는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1	36.9	100.0 (1,397)
2)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58.4	41.6	100.0 (1,280)
3)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8.8	31.2	100.0 (1,401)
4) 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정규직 → 계약직/임시직 근로 변경)	42.2	57.8	100.0 (1,216)
5) 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 변경)	53.7	46.3	100.0 (1,299)
6) 자녀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3.4	36.6	100.0 (1,359)
7)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어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6.0	34.0	100.0 (1,403)
8)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어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64.2	35.8	100.0 (1,357)

주: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각 항목별로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장을 그만둔 적 있다’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와 월평균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직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초과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계층에서 관련 제도의 이용률이 높은 점과 관련된다고 추측된다. 또한 해당 비율은 임시 일용직가구와 자영업가구 주말과 새벽, 야간 등 비전형 근로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가능 가구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IV-4-2) 가구특성별 자녀돌봄 어려움에 따른 유경험 비율_전체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전체	63.1	1,397	58.4	1,280	68.8	1,401	42.2	1,216	53.7	1,299	63.4	1,359	66	1,403	64.2	1,357
자녀연령1 정이 우01 $\chi^2(\text{df})$	58.9 66.3 8.045(1)**	60.4 56.8 1.697(1)	559 721 .287(1)	68.1 69.4 1.947(1)	605 796 .287(1)	39.9 43.9 1.947(1)	508 709 2.207(1)	51.3 55.5 62.5	545 754 767	64.7 754 65.4	593 6941(1)	66.9 617 786	617 355(1)	68.8 60.5 10.016(1)**	60.5 57 10.016(1)**	64.2 57 10.016(1)**
자녀연령2 예 세 세 세 세 세 세 $\chi^2(\text{df})$	49.7 60.7 65.7 61.8 68.0 68.7 22.532(5)***	192 206 209 249 255 286 3.171(5)	58.9 59.2 62.9 66.8 56.3 55.4 6.870(5)	182 181 196 221 231 269 11.847(5)*	62.8 67.8 72.9 48.9 68.8 72.2 6.868(5)	185 207 213 219 256 289 11.847(5)*	33.5 38.5 47.1 48.9 41.2 42.0 11.847(5)*	164 168 176 219 229 261 11.847(5)*	45.9 55.7 52.2 57.3 52.8 56.3 11.847(5)*	176 183 186 233 245 277 11.847(5)*	62.5 61.9 69.4 63.4 64.8 59.6 11.847(5)*	197 194 201 240 251 276 11.847(5)*	61.5 68.2 70.8 68.8 66.0 59.6 11.847(5)*	201 206 211 244 259 283 11.847(5)*	64.9 69.0 72.4 67.2 57.7 57.4 11.847(5)*	198 199 203 234 249 274 11.847(5)*
자녀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chi^2(\text{df})$	58.2 65.6 78.2 21.748(2)***	692 571 134 2.494(2)	58.4 58.9 56.4 11.7	649 515 117 83.5	63.9 71.4 83.5 136	699 567 48.0 114	40.6 42.9 56.3 114	615 487 56.1 114	51.3 56.1 123 114	651 525 73.0 123	59.8 65.6 131 123	679 549 131 123	70.5 62.4 57.0 129	712 561 129 129	69.5 59.7 54.7 125	683 549 54.7 12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맞벌이 가구 아님 $\chi^2(\text{df})$	59.2 69.4 14.727(1)***	861 536 23.986(1)***	63.4 49.4 460	820 79.6 584	61.2 58.4 38.0	817 44.7 445	44.7 772 47.0	826 64.7 473	854 61.3 506	68.2 64.7 1.556(1)	868 62.5 13.375(1)***	68.2 61.3 1.556(1)	62.5 535 4.716(1)*	65.8 61.5 4.716(1)*	63.9 51.8 2.669(1)	839 51.8 2.669(1)

단위: %, 명

구분	① 비율 전체수	② 비율 전체	③ 비율 전체수	④ 비율 전체수	⑤ 비율 전체수	⑥ 비율 전체수	⑦ 비율 전체수	⑧ 비율 전체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78.7	39	49.2	33	80.4	42	46.8	33
201~400만원	63.6	364	51.9	317	75.6	380	42.4	302
401~600만원	70.6	497	56.1	442	74.0	512	46.8	428
601~800만원	56.8	301	64.6	295	59.8	283	38.8	272
801만원 이상	49.8	196	66.3	194	51.8	184	35.3	181
$\chi^2(df)$	36.225(4)***	17.345(4)**	52.703(4)***	8.886(4)	7.389(4)	8.896(4)	5.739(4)	2.258(4)

주: 1) ①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②휴직 기간의 연장, 별도 사용을 고려한 적이 있다, ②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③제3직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④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고용상 지원을 받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⑤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어 추기자녀의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2)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rho < .05$, ** $\rho < .01$, *** $\rho < .001$.

〈표 IV-4-3〉 근로특성별 자녀돌봄 어려움으로 인한 근로 및 초기출산 경험_전체_기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비율	전체수														
전체	63.1	1,397	58.4	1,280	68.8	1,401	42.2	1,216	53.7	1,299	63.4	1,359	66.0	1,403	64.2	1,357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기구	45.8	513	66.2	509	48.0	469	34.4	467	51.3	496	58.0	507	66.6	513	64.9	500
임시·일용근로 기구	84.8	108	61.4	101	81.3	112	69.5	96	66.1	102	73.6	108	67.4	110	66.1	106
자영업기구	69.3	121	58.4	107	71.0	115	49.5	108	60.9	117	68.7	121	71.5	126	66.9	120
기타 종사자 기구	83.5	119	57.1	103	84.2	121	63.5	100	74.1	111	81.2	118	72.4	119	68.9	113
맞벌이 기구 아님	69.4	536	49.4	460	79.6	584	38.0	445	47.0	473	61.3	506	62.5	535	61.5	518
$\chi^2(df)$		120.032(4)***		28.635(4)***		148.011(4)***		65.141(4)***		36.878(4)***		29.822(4)***		6.873(4)		3.401(4)***
근로특성2(근로형태)																
둘다·전일제	50.7	616	65.7	604	52.4	568	37.0	555	49.5	590	58.8	608	67.0	618	64.4	601
전일제+시간제	83.5	227	60.0	201	83.7	232	67.1	199	80.4	219	81.3	228	74.3	233	72.6	222
둘다·시간제	43.7	17	20.2	15	49.4	17	32.6	17	43.0	17	53.5	17	30.7	17	30.7	17
맞벌이 기구 아님	69.4	536	49.4	460	79.6	584	38.0	445	47.0	473	61.3	506	62.5	535	61.5	518
$\chi^2(df)$		93.273(3)***		37.992(3)***		129.959(3)***		60.488(3)***		75.969(3)***		38.748(3)***		19.824(3)***		16.904(3)***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64.8	558	67.1	517	66.9	524	48.8	494	62.1	533	69.5	548	73.9	561	70.4	548
0건근로	64.4	461	67.7	423	64.6	429	49.4	404	63.6	435	69.2	451	73.6	466	70.0	450
세벽근로	66.6	249	70.2	227	70.8	230	51.9	213	63.6	231	71.7	243	76.9	244	71.8	241
비전형근로 아님	47.9	257	57.0	261	51.3	253	36.3	239	48.7	254	54.5	261	56.8	261	55.5	249
맞벌이 기구 아님	69.4	536	49.4	460	79.6	584	38.0	445	47.0	473	61.3	506	62.5	535	61.5	518
$\chi^2(df)$		134.047(10)***		218.503(10)***		107.543(10)***		132.333(10)***		206.888(10)***		163.448(10)***		173.687(10)***		130.936(10)***

구분	① 비율 전체수	② 비율 전체 수	③ 비율 전체수	④ 비율 전체수	⑤ 비율 전체수	⑥ 비율 전체수	⑦ 비율 전체수	⑧ 비율 전체수
시간지원제도 이용 가능성								
유아휴직제도	54.0	738	62.0	707	57.5	703	36.5	64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52.4	507	59.9	489	52.8	472	31.3	451
재택근무제도	58.3	216	56.4	201	61.5	205	39.0	190
시간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57.2	422	60.9	407	59.9	399	37.5	375
기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54.2	460	63.5	444	58.6	432	36.0	411
$\chi^2(df)$	38.609(10)***	24.195(10)**	79.647(10)***	28.413(10)**	24.719(10)**	31.495(10)***	21.096(10)*	25.904(10)**

주: ①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휴직 기간의 연장, 번복 사용을 고려한 적이 있다, ③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번복하여 사용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④ 휴직 또는 휴직 기간을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⑤ 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⑥ 자녀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⑦ 자녀돌봄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2)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3) 시간지원제도 이용 가능성은 각 제도별 이용 가능 기구이며, 부부 둘 중에 한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서비스 필요시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을 시작과 종료 시각을 구분하여 주중(월~금요일), 주말(토요일), 휴일(일요일 등) 기준으로 질문하였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별로 가구 근로특성에 따른 수요를 살펴보면, 주중 기준으로 시작 시각이 오전 7시 30분 이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둘다 상용 근로가구 25.8%, 임시·일용직 가구 23.2%. 새벽근로 가구 29.8%이고, 종료 시각이 오후 7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둘다 상용근로 가구 29.8%, 자영업 가구 30.2%, 야간근로 가구 35.1%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가구에서 오후 5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2.5%, 82.2%, 76.9%로 나타난다.

주말 기준으로 오전 9시 이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 가구 64.9%, 주말·휴일근로 가구 71.0%이고,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이전이 40% 선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오후 5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영업 가구 58.9%로 월등히 높고, 주말·휴일근로 가구는 35.0%로 나타난다.

휴일 기준으로 오전 9시 이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임시·일용직 가구 93.3%, 자영업가구 73.5%, 주말·휴일근로 가구 7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후 5시 이후까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임시·일용직 가구 51.8%. 자영업가구 52.0%, 주말·휴일근로 가구는 54.4%로 조사되었다.

〈표 IV-4-4〉 주중 툴봄서비스 필요 시간대_전체 기준: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구분	오전				오후				수	단위: %, 명
	7시 초과~ 30분 까지	7시 초과~ 30분 까지	8시 초과~ 30분 까지	9시 초과~ 30분 까지	12시 초과~ 12시	16시 초과~ 16시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시작 시각										
그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기구	21.2	4.6	14.7	4.5	9.1	5.3	19.1	4.2	9.0	0.0
임시·일용근로 기구	17.4	5.8	7.3	3.4	7.6	8.1	21.4	5.1	13.4	0.0
자영업기구	9.8	2.8	10.6	4.1	12.0	8.2	25.7	2.9	19.0	0.0
기타 종사자 기구	12.5	5.1	9.9	4.3	17.0	4.6	16.2	3.5	19.3	1.0
맞벌이 기구 아님	9.2	3.9	12.9	4.1	22.2	11.5	27.3	2.5	3.3	0.0
그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20.3	4.5	11.5	4.3	10.2	5.7	19.6	3.6	13.0	4.6
0시간근로	21.3	4.1	11.5	3.4	10.0	5.2	19.5	3.1	14.1	2.0
새벽근로	25.3	4.5	11.4	3.3	10.9	4.5	16.3	2.1	13.8	2.2
비전형근로 아님	12.2	4.5	15.1	4.7	10.5	7.2	20.5	5.7	10.1	0.9
맞벌이 기구 아님	9.2	3.9	12.9	4.1	22.2	11.5	27.3	2.5	3.3	0.8
종료 시각										
그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기구	0.5	0.0	0.7	0.8	7.0	4.1	7.2	1.4	5.9	2.8
임시·일용근로 기구	0.0	0.0	0.0	1.0	7.0	5.8	2.5	1.0	8.1	3.4
자영업기구	0.0	0.0	0.0	0.0	3.0	0.8	6.0	0.8	7.1	2.8
기타 종사자 기 구	2.5	0.0	0.0	0.0	4.6	1.0	8.3	0.0	4.6	10.2
맞벌이 기구 아님	0.5	0.0	0.0	0.6	2.3	3.9	21.8	2.0	11.3	2.6

구분	구분												수	
	7시 7시 까지	7시 30분 초과~ 7시	8시 초과~ 8시	8시 초과~ 8시	9시 초과~ 9시	12시 초과~ 12시	16시 초과~ 16시	16시 초과~ 16시	17시 초과~ 17시	17시 초과~ 17시	18시 초과~ 18시	18시 초과~ 18시	19시 초과~ 19시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0.8	0.0	0.6	0.2	5.0	4.3	6.2	0.8	6.1	2.9	14.9	7.5	17.4	7.4
0시간근로	0.7	0.0	0.5	0.0	6.4	2.8	5.7	0.9	6.0	2.3	13.8	7.7	18.0	6.7
세박근로	0.5	0.0	0.9	0.0	5.4	3.7	6.8	1.2	5.3	1.8	12.9	9.9	18.5	6.1
비전형근로 아님	0.3	0.0	0.0	1.5	7.5	1.7	7.8	2.0	6.9	3.5	14.3	5.4	26.2	7.4
맞벌이 가구 아님	0.5	0.0	0.0	0.6	2.3	3.9	21.8	2.0	11.3	2.6	16.7	3.0	17.5	2.3
														5.7
														375

주: 1) 근로특성(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2)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세박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3) 매 요일 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응답하도록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4-5〉 주말(토요일) 툴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전체 기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구분	오전						오후						수	단위: %, 명
	7시 7시 까지	7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8시 초과~ 30분	9시 초과~ 12시	12시 초과~ 16시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19시 초과~ 30분
시작 시각														
그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기구	16.0	2.1	16.8	4.5	25.7	22.3	11.9	0.0	0.0	0.8	0.0	0.0	0.0	96
임시·일용근로 기구	8.8	3.8	24.9	7.5	40.6	11.2	3.3	0.0	0.0	0.0	0.0	0.0	0.0	29
자영업기구	7.3	0.0	15.1	3.5	39.0	26.1	9.0	0.0	0.0	0.0	0.0	0.0	0.0	26
기타 종사자 기구	0.0	0.0	26.6	2.7	37.2	21.5	11.9	0.0	0.0	0.0	0.0	0.0	0.0	40
맞벌이 기구 아님	7.9	1.6	10.6	0.9	31.1	32.7	11.4	0.7	2.2	0.9	0.0	0.0	0.0	125
그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11.6	0.6	20.8	2.8	35.2	19.6	9.3	0.0	0.0	0.0	0.0	0.0	0.0	153
여간근로	11.2	0.7	20.1	2.4	34.8	20.7	10.0	0.0	0.0	0.0	0.0	0.0	0.0	131
새벽근로	14.8	1.1	21.2	3.9	27.6	23.3	8.1	0.0	0.0	0.0	0.0	0.0	0.0	82
비전형근로 아님	5.7	6.3	17.3	12.0	21.3	23.3	12.0	0.0	0.0	2.1	0.0	0.0	0.0	34
맞벌이 기구 아님	7.9	1.6	10.6	0.9	31.1	32.7	11.4	0.7	2.2	0.9	0.0	0.0	0.0	125
종료시각														
그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기구	0.0	0.0	0.0	0.0	0.8	10.8	41.2	1.1	16.2	1.2	8.9	3.5	6.3	95
임시·일용근로 기구	0.0	0.0	0.0	0.0	0.0	7.0	46.9	0.0	17.0	0.0	3.7	11.3	2.9	29
자영업기구	0.0	0.0	0.0	0.0	0.0	4.2	23.3	0.0	13.6	8.3	18.4	0.0	11.8	26
기타 종사자 기구	0.0	0.0	0.0	0.0	0.0	2.7	43.8	0.0	17.9	0.0	11.6	2.1	14.0	40
맞벌이 기구 아님	1.6	0.0	0.0	0.0	0.9	9.2	38.6	0.6	14.9	0.9	11.7	0.8	5.2	125

구분	구분												수
	7시 7시 까지	7시 30분 초과~ 7시	8시 30분 초과~ 8시	8시 30분 초과~ 9시	12시 12시	16시 16시 초과~ 16시	17시 30분 초과~ 17시	18시 30분 초과~ 18시	18시 30분 초과~ 19시	19시 30분 초과~ 19시	19시 30분 초과~ 20시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0.0	0.0	0.0	0.5	7.0	41.9	0.7	15.0	2.2	9.1	3.5	9.4	1.5
여간근로	0.0	0.0	0.0	0.6	8.2	40.6	0.8	17.4	1.6	9.0	4.1	8.7	0.8
새벽근로	0.0	0.0	0.0	0.9	8.5	41.8	0.0	14.9	1.2	10.5	5.6	10.8	0.0
비전형근로 아님	0.0	0.0	0.0	0.0	11.2	29.7	0.0	20.3	0.0	14.8	6.0	3.7	0.0
맞벌이 가구 아님	1.6	0.0	0.0	0.9	9.2	38.6	0.6	14.9	0.9	11.7	0.8	5.2	0.0

주: 1) 근로특성(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2)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3) 매 요일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응답하도록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4-6) 휴일(일요일 등) 툴봄서비스 필요 시간대_전체 가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구분	오전						오후						수	단위: %, 명			
	7시 초과~ 30분 까지	7시 초과~ 30분 까지	8시 초과~ 30분 ~8시	8시 초과~ 30분 ~9시	9시 초과~ 12시	12시 초과~ 16시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7시 초과~ 30분 까지	7시 초과~ 30분 까지	8시 초과~ 30분 ~8시	8시 초과~ 30분 ~9시	9시 초과~ 12시	12시 초과~ 16시	16시 초과~ 30분	16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7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18시 초과~ 30분					
시작 시각																	
그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17.2	2.1	15.9	12.8	25.3	14.4	6.4	0.0	2.4	0.0	1.6	0.0	1.9	0.0	0.0	0.0	45
임시·일용근로 가구	5.0	6.4	25.4	19.7	36.8	6.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7
자영업가구	12.5	0.0	13.2	6.8	41.0	19.3	7.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기타 종사자 가구	5.8	0.0	11.5	4.5	43.2	23.1	1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
맞벌이 가구 아님	11.0	1.6	8.5	3.2	28.6	31.9	13.5	0.0	0.0	1.7	0.0	0.0	0.0	0.0	0.0	0.0	67
그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12.3	1.3	17.9	14.3	31.6	14.0	5.9	0.0	1.5	0.0	0.0	0.0	1.2	0.0	0.0	0.0	70
어간근로	13.2	1.6	14.0	12.6	33.6	16.6	5.1	0.0	1.8	0.0	0.0	0.0	1.4	0.0	0.0	0.0	59
새벽근로	17.8	2.7	12.6	15.8	28.5	14.7	2.4	0.0	3.0	0.0	0.0	0.0	2.4	0.0	0.0	0.0	35
비전형근로 아님	11.8	4.5	12.2	3.5	35.9	20.7	8.4	0.0	0.0	0.0	3.0	0.0	0.0	0.0	0.0	0.0	24
맞벌이 가구 아님	11.0	1.6	8.5	3.2	28.6	31.9	13.5	0.0	0.0	1.7	0.0	0.0	0.0	0.0	0.0	0.0	67
종료 시각																	
그로특성(고용상 지위)	0.0	0.0	0.0	0.0	0.0	13.7	16.5	0.0	18.2	2.7	20.0	7.5	4.7	0.0	13.1	3.6	43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0.0	0.0	0.0	0.0	0.0	12.1	19.2	0.0	17.0	7.0	6.3	13.0	6.3	7.1	0.0	12.1	17
임시·일용근로 가구	0.0	0.0	0.0	0.0	0.0	6.8	27.0	0.0	14.2	6.1	19.9	0.0	12.9	0.0	0.0	13.1	15
자영업가구	0.0	0.0	0.0	0.0	0.0	18.3	0.0	17.9	5.8	29.5	4.5	18.3	5.8	0.0	0.0	0.0	19
기타 종사자 가구	0.0	0.0	0.0	0.0	0.0	2.9	29.4	2.8	19.6	0.0	19.0	1.6	8.8	0.0	4.5	9.8	67
맞벌이 가구 아님	1.8	0.0	0.0	0.0	0.0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7

구분	구분												수				
	7시 7시 까지	7시 30분 초과~ 7시	8시 초과~ 8시	8시 초과~ 8시	9시 초과~ 9시	12시 초과~ 12시	16시 초과~ 16시	17시 초과~ 17시	18시 초과~ 18시	18시 초과~ 18시	19시 초과~ 19시	19시 초과~ 19시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0.0	0.0	0.0	0.0	7.6	24.4	0.0	13.6	6.3	15.5	7.5	10.8	3.3	6.9	4.1	69
	여간근로	0.0	0.0	0.0	0.0	8.8	24.7	0.0	12.8	5.5	15.1	6.8	11.3	1.9	8.2	4.9	58
	새벽근로	0.0	0.0	0.0	0.0	9.3	19.9	0.0	13.1	2.8	17.9	9.3	16.7	0.0	8.5	2.5	33
	비전형근로 아님	0.0	0.0	0.0	0.0	11.8	4.5	0.0	28.4	0.0	31.3	4.6	4.3	0.0	3.9	11.4	24
	맞벌이 가구 아님	1.8	0.0	0.0	0.0	2.9	29.4	2.8	19.6	0.0	19.0	1.6	8.8	0.0	4.5	9.8	67

주: 1) 근로특성(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2)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3) 매 요일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응답하도록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3)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4개 유형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제보육서비스' 68.3%(평균 3.8점, 5점 만점),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의 등하원서비스' 59.9%(3.6점), '기관 미운영시간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43.0%(3.2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표 IV-4-7〉 돌봄서비스 필요도(전체)_전체 가구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야간/새벽/주말 등)에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11.3	18.0	27.7	29.6	13.4	100.0 (1,628)	3.2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	3.1	7.5	21.1	40.8	27.5	100.0 (1,628)	3.8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하원서비스를 도와주는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의 등하원지원서비스	5.7	12.0	22.4	36.1	23.8	100.0 (1,628)	3.6
민간 육아도우미	8.8	16.4	37.8	26.2	10.8	100.0 (1,628)	3.1

주: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가구특성별로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4개 유형의 서비스 전반에서 수요가 높고, 맞벌이 가구에서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의 등하원서비스'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IV-4-8〉 가구특성별 돌봄서비스 필요도_전체 가구

단위: 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전체	3.2	3.8	3.6	3.1	1,628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i>t</i>	5.4***	4.7***	3.3**	4.4***	
자녀연령2					
0세	3.6	4.1	3.9	3.5	243
1세	3.2	3.9	3.6	3.2	241
2세	3.3	3.8	3.6	3.2	262
3세	3.2	3.7	3.6	3.2	276
4세	2.9	3.7	3.6	3.0	288
5세	2.9	3.7	3.4	2.9	318
<i>F</i>	10.6***	5.8*** ^(a)	4.7*** ^(a)	7.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	3.8	3.7	3.2	956
맞벌이 가구 아님	3.1	3.8	3.5	3.1	672
<i>t</i>	2.2*	0.3	4.4***	2.8**	

주: 1) ①기관 미운영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②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 ③기관 등하원서비스를 도와주는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④민간 육아도우미

2)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a)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근로특성별로는 부모 둘다 상용근로자이고, 전일제 근로를 하며, 주말·휴일/야간/새벽 등 비전형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4개 유형의 서비스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IV

〈표 IV-4-9〉 근로특성별 돌봄서비스 필요도_전체 가구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전체	3.2	3.8	3.6	3.1	1,628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					
(둘다) 상용근로자 가구	3.3	3.9	3.8	3.3	560
임시·일용근로 가구	3.3	3.9	3.8	3.4	122
자영업가구	3.0	3.7	3.4	3.0	139
기타 종사자 가구	3.1	3.7	3.6	3.1	134
맞벌이 가구 아님	3.1	3.8	3.5	3.1	672
<i>F</i>	3.2*	0.8	8.6*** ^(a)	4.4**	
근로특성2(근로형태)					

구분	①	②	③	④	사례수
맞벌이 가구 아님	3.1	3.8	3.5	3.1	672
<i>F</i>	3.9**	0.3	9.5***(a)	3.8*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주말·휴일근로	3.3	3.9	3.7	3.2	615
야간근로	3.3	3.9	3.7	3.2	504
새벽근로	3.3	3.9	3.8	3.2	271
비전형근로 아님	3.1	3.7	3.7	3.2	293
맞벌이 가구 아님	3.1	3.8	3.5	3.1	672
<i>F</i>	1.6	1.1	6.4***	2.7*	

주: 1) ①기관 미운영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돌봄이가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②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 ③기관 등하원서비스를 도와주는 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④민간 육아도우미

2) 평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근로특성1(고용상 지위)에서 임시근로, 일용직근로, 자영자, 기타 종사자 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

4)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가구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달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5) (a)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방식의 동의 정도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체계 정비 방향에 반영하고자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관련 7개 항목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는 가운데 '기관을 이용하지만 장시간 이용이 힘든 아동에 대한 돌봄인력 지원'에 찬성한다(매우 찬성+찬성)고 응답한 비율이 71.5%(평균 3.9, 5점 만점)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가구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것' 70.0%(평균 3.9),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돌봄 인력 지원' 68.0%(평균 3.8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비용 지원' 65.5%(평균 3.8점)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4-1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방식의 동의 정도: 전체_전체 가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계(수)	평균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야간/새벽/주말 등)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에게 돌봄 인력 지원	1.6	5.1	25.1	42.8	25.2	100.0 (1,628)	3.8
기관(어린이집 등)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게 돌봄인력 지원	2.2	5.5	27.7	41.6	23.0	100.0 (1,628)	3.8
기관을 이용하지만 장시간 이용이 힘든 아동에게 돌봄인력 지원	1.7	3.0	23.7	46.2	25.3	100.0 (1,628)	3.9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가구에서 돌봄인력 지원	2.1	3.6	24.3	41.3	28.7	100.0 (1,628)	3.9
서비스 이용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4.5	9.2	29.2	36.1	20.9	100.0 (1,628)	3.6
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 부담액 상한선 규제(예시: 총 이용료 중 부모 자부담 비중 20% 이하)	2.1	4.6	28.2	41.7	23.3	100.0 (1,628)	3.8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 비용지원	2.7	4.5	27.3	37.8	27.7	100.0 (1,628)	3.8

주: 평균은 '매우 반대' 1점 ~ '매우 찬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나.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1) 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

부모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 여부를 10개 항목에 걸쳐 질문하였다. 긍정 응답 비율은 '예정보다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시기를 늦추게 되었다'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26.9%, '육아휴직 기간을 예정보다 더 늘리게 되었다' 25.5%, '육아휴직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 21.6% 순이었다.

'예정보다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시기를 늦추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맞벌이 가구에서 48.2%로 높게 나타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한 경우는 셋째 자녀를 둔 가구에서 30.9%로 높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31.4%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와 200~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각각 56.4%와 34.6%,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32.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1〉 부모급여 수령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 전체_부모급여 수급 가구

단위: %(명)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수)
1)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26.9	73.1	100.0 (427)
2)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7.5	92.5	100.0 (342)
3)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였다	10.5	89.5	100.0 (339)
4)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14.5	85.5	100.0 (337)
5) 예정보다 기관(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늦췄다/ 늦추려고 한다	42.9	57.1	100.0 (469)
6)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했다	6.2	93.8	100.0 (386)
7)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14.9	85.1	100.0 (392)
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을 늘였다	14.3	85.7	100.0 (370)
9) 육아휴직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	21.6	78.4	100.0 (393)
10) 육아휴직 기간을 예정보다 더 늘리게 되었다	25.5	74.5	100.0 (411)

주: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IV-4-12〉 부모급여 수급에 따른 양육방식 변화_급정 응답 비율

구분	① 비율 전체수	② 비율 전체수	③ 비율 전체수	④ 비율 전체수	⑤ 비율 전체수	⑥ 비율 전체수	⑦ 비율 전체수	⑧ 비율 전체수	⑨ 비율 전체수	⑩ 비율 전체수								
자녀연령2 세	26.9 25.8 29.7 28.4 21.2 1.717(3)	427 131 118 114 63 0.197(3)	7.5 8.1 8.1 6.8 6.8 0.197(3)	342 100 93 12.3 53 2.265(3)	10.5 9.4 7.6 16.9 14.6 2.690(3)	339 16.2 14.5 92 56 2.690(3)	14.5 49.8 42.0 42.9 7.8 7.436(3)	337 144 128 129 69 0.319(3)	42.9 7.2 6.2 5.4 5.8 0.319(3)	469 99 113 112 62 3.674(3)	386 18.4 14.0 9.9 18.0 3.674(3)	14.9 117 111 104 61 3.674(3)	392 13.2 11.3 104 99 20.0	14.3 108 102 104 61 2.480(3)	370 21.6 21.9 16.5 20.0 11.0	393 30.8 21.9 16.5 60 11.680(3)**	25.5 36.2 104 104 59 11.688(3)***	411
자녀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chi^2(df)$	23.7 29.1 36.2 3.258(2)	224 164 39 3.769(2)	7.3 6.0 16.6 3.769(2)	179 136 27 1.298(2)	10.4 9.3 16.6 1.298(2)	177 134 28 6.984(2)*	12.7 13.3 30.9 1.203(2)	177 42.4 41.7 2.333(2)	42.4 6.6 4.5 2.333(2)	247 200 181 2.333(2)	159 206 153 2.596(2)	190 14.3 14.8 348(2)	190 20.3 22.0 1.120(2)	190 20.3 22.0 28.4	190 20.3 22.0 33	207 25.3 152 1.120(2)	224 224 154 318(2)	224
맞별이 기구 여부 맞별이 맞별이 기구 이님 $\chi^2(df)$	31.4 20.4 6.323(1)*	251 175 0.004(1)	7.6 7.4 0.791(1)	198 145 0.791(1)	11.8 8.7 0.952(1)	200 139 135	16.1 12.2 135	201 135 0.952(1)	251 6.2 0.000(1)	232 154 2.589(1)	17.3 11.4 1.260(1)	233 159 1.260(1)	15.9 11.7 1.260(1)	222 147 0.363(1)	222 20.1 0.363(1)	222 242 25.0	25.8 25.8 159	25.8
월평균 기구수득 200만원 이하 201~400만원 401~600만원 601~800만원 801만원 이상 $\chi^2(df)$	56.4 34.6 23.2 16.9 32.9	10 114 150 97 56	18.9 7.0 4.9 11.6 6.2	10 95 119 73 46	26.6 10.1 8.8 11.5 10.7	10 92 118 73 45	37.5 18.8 118 13.8 33.8	10 91 117 75 43	134 45.3 44.6 42.9 58	8 6.6 4.5 6.8 7.0	19.3 108 130 89 51	10 107 133 85 22.3	19.3 12.6 13.1 15.5 57	10 107 133 85 17.2	18.8 24.4 23.4 17.8 54	11 97 137 81 55	9.4 97 137 92 21.7	11 102 142 95 61
																	3.791(4)	

주: ①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세월에 이용하게 되었다. ②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출연했다. ③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출연했다. ④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을 출연했다. ⑤여기에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 ⑥여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예정보다 더 늘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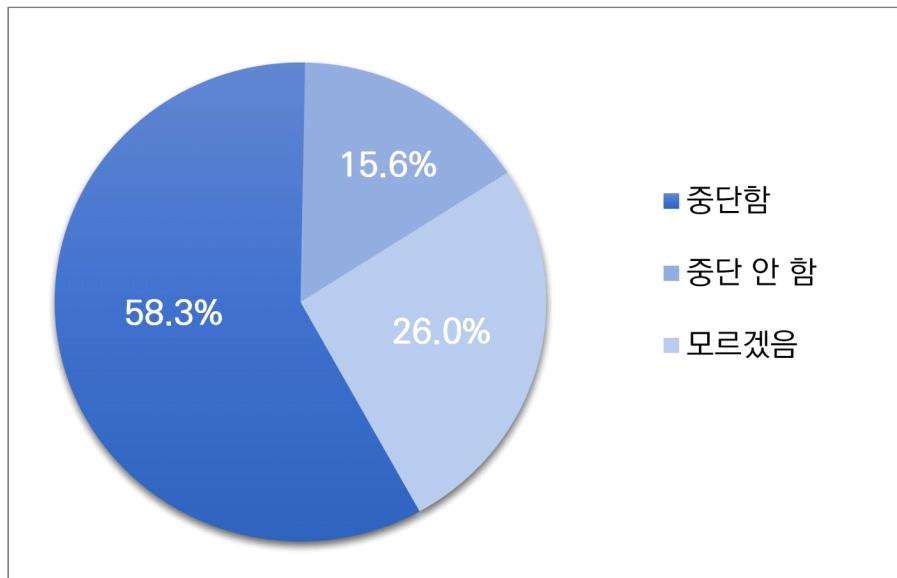
2)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높게 나타나며, '계속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그쳤다. 이로써 영아자녀의 일시보육은 가정파견형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4-1]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가능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중단 의향



주: 사례수 281명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가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아이돌보미의 편의성, 신뢰성, 아동의 정서 및 적응에 더 좋아서, 개별 돌봄이 가능해서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표 IV-4-13〉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중단 사유

이유	수	단위: 명
아이돌보미의 편의성(이동 불필요, 이동시간 단축)	55	
아이돌보미에게 더 신뢰가 감(가정보육이라 더 안심, 전문적임)	32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및 적응에 좋음	17	
아이돌보미가 시간 활용에 용이	16	
아이돌보미가 1대1 맞춤 케어와 집중 케어가 가능	12	
아이돌보미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동일 인력이 지속적으로 케어)	10	
아이돌보미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8	
아이돌보미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4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대상 연령이 낮으므로	2	
기타	2	

주: 기타는 '지인의 아이돌보미 추천',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예약이 어려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반면에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긴급할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판단되어 신뢰가 가고, 비용이 저렴하며, 개인 시간의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표 IV-4-1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속 이용 사유

이유	수	단위: 명
편리함(가까움, 시간제라서 편리, 주차 편리)	12	
긴급 시 비정기적으로 이용 가능	7	
전문성(프로그램 다양) 있고 신뢰가 감	7	
비용 절감	5	
부모의 개인적인 시간 확보에 용이	2	
기타	3	

주: 기타는 '내 집에 다른 사람 방문 꺼림', '지인 추천', '또래와 어울릴 수 있음'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3) 기관(어린이집/유치원) 병행 가구의 이용기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수요 변화

가) 어린이집 병행 이용가구의 수요

어린이집 이용가구 중에서 추가돌봄 인력이나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674 사례)에게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인력

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이고,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조사되었다.

이용 중단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60.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51.6%로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자녀 연령이 낮은 점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표 IV-4-15〉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 돌봄인력/시설 이용 중단 의향_어린이집 및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가구

구분	중단함	중단 안함	모르겠음	계(수)
전체	57.6	22.3	20.1	100.0 (67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0.0	23.0	16.9	100.0 (274)
민간	56.9	24.0	19.2	100.0 (233)
가정	51.6	25.7	22.6	100.0 (100)
사회복지법인 등	75.1	8.0	17.0	100.0 (29)
직장	45.8	8.8	45.4	100.0 (37)
$\chi^2(df)$	23.533(8)**			
연장보육 이용 여부				
이용함	60.1	21.7	18.2	100.0 (451)
이용안함	52.4	23.6	24.0	100.0 (223)
$\chi^2(df)$	4.347(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3	21.9	17.7	100.0 (485)
맞벌이 가구 아님	50.5	23.3	26.2	100.0 (188)
$\chi^2(df)$	7.205(2)*			

주: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법인·단체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이용가구 포함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가구에게 이용 중단 사유를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의 연속성, 이동이 적어서 편리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지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비용 부담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표 IV-4-16〉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 중단 사유

이유	수	단위: 명
어린이집이 아동에게 익숙하고 적응된 환경이라 안정적임(보육의 연속성)	183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가능 시 이동이 적어서 이용이 편리함(접근성 좋음)	88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체계적, 현재 기관에 만족, 교사의 질이 좋음)	82	
자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30	
비용이 부담됨	29	
어린이집이 안전함	22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가능 시 시간 사용의 편리성	21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가능 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음	19	
어린이집에서 간식 및 식사 제공	3	
도움받을 곳이 없음	2	
기타	3	

주: 기타는 '간헐적 이용 가능', '추가 돌봄 사용이 어려움', '부담감이 적어서'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반면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 시에도 추가돌봄 인력/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긴급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시간 사용의 용이성, 돌봄인력의 필요성, 부모의 개인 시간 확보 등이 지목되었다.

〈표 IV-4-17〉 재원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연장 시에도 추가돌봄 인력/시설 지속 이용 사유

이유	수	단위: 명
특별하거나 긴급 상황에 이용 가능(자녀가 아픔, 주말 등)	39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한 공간에 오래 머무름으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부모의 회의감)	28	
이용 편의(등원 버스 시간 맞추기 어려움, 이른 시간 등원 힘듦, 병원 등행, 학원 이동)	27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맞벌이 부부라 돌봄인력이 필요함	16	
부모의 개인 시간 확보	16	
신뢰할 수 있음(마음이 편함, 보육의 질이 더 우수)	14	
자녀가 집에 빨리 오고 싶어 해서, 자녀가 조부모를 좋아해서	8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서	7	
돌봄 인력이 있음(가까이에 조부모님 거주 등)	7	
추가 교육 및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7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육아 스트레스	4	
조부모의 요구(조부모 및 친척이 원함)	4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족(환경 및 인력 미비, 전염병에 취약 등)	3	
자녀가 어려서	3	
조부모가 돌봐주는 게 자녀 정서에 좋아서	2	
맞춤보육 가능(아동의 성향 파악 가능 등)	2	
기타	2	

주: 기타는 '아이 특성에 의해(자폐아)', '돌아주는 데 한계가 있음'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나) 유치원 병행 이용가구의 수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추가돌봄 인력이나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가구(269사례)에게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이용하는 인력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이고,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1%로 조사되었다.

이용 중단 의향은 어린이집과 달리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18〉 재원 유치원의 이용시간 연장 시 추가 돌봄인력/시설 이용 중단 의향_유치원 및 추가돌봄 인력/시설 이용가구

구분	중단함	중단 안함	모르겠음	단위: %(명)
전체	55.2	25.1	19.7	100.0 (269)
유치원 유형				
국공립	61.7	24.0	14.3	100.0 (94)
사립	51.7	25.7	22.6	100.0 (175)
$\chi^2(df)$		3.333(2)		
방과후 과정 이용여부				
이용	54.8	25.0	20.2	100.0 (257)
미이용	63.9	27.3	8.7	100.0 (12)
$\chi^2(df)$.967(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9	24.9	22.2	100.0 (188)
맞벌이 가구 아님	60.5	25.7	13.8	100.0 (81)
$\chi^2(df)$		2.651(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4) 조부모 돌봄 가구의 수요 변화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에서 정책 변화 시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중단 및 축소 의향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부모/친인척 돌봄 이용을 '중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차출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중단한 것이라는 응답이 69.9%, 육아휴직 제도가 보장될 경우 중단할 것이라는 응답이 68.5%로 높게 나타났다. 민간 업체 등록제도, 공공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취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시간 확대로

인해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을 ‘중단 및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19〉 정책 변화에 따른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중단/축소 의향(전체)_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
단위: % (명)

구분	중단 /축소 함	중단 /축소 안함	모르겠음	해당 없음	계(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48.5	19.3	32.2	-	100.0 (682)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필수 취득하도록 변경될 경우	45.6	19.7	34.7	-	100.0 (682)
민간(베이비시티) 업체도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도우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경우	40.6	24.1	35.3	-	100.0 (682)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52.1	19.1	28.9	-	100.0 (682)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68.5	12.6	12.4	6.4	100.0 (6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70.4	11.8	11.9	5.9	100.0 (682)
시차출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69.9	12.4	11.9	5.7	100.0 (682)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 조부모/친인척 돌봄을 ‘중단 및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돌봄 시간지원제도가 보장되는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해당 제도를 제외하면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이용이 보장될 경우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서 조부모 단독 이용가구의 중단/축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공 아이돌보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해당 응답률은 비맞벌이 가구에서 48.9%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IV-4-20〉 정책 변화에 따른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중단/축소 의향_조부모/친인척 돌봄 기구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공공)아이돌봄비가 국가자격 취득한 경우	민간(밸리비시티)업 체가 국가에 등록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근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단위: %, 명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전체	48.5	682	45.6	682	40.6	682	52.1	682	52.1	643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56.0	82	56.2	82	52.8	82	61.9	82	80.0	74.2
기관 병행	47.2	542	42.8	542	37.6	542	50.2	542	72.1	78
기타 병행	50.2	58	56.6	58	52.0	58	55.5	58	73.0	513
$\chi^2(df)$					14.306(4)**	6.679(4)	3.559(4)	8.648(4)	52	52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 이용	48.2	382	44.0	382	39.1	382	53.0	382	72.4	362
유치원 이용	45.1	159	39.6	159	33.7	159	43.3	159	71.5	149
기관 미이용	53.3	142	56.6	142	52.7	142	59.5	142	77.6	80.0
$\chi^2(df)$		5.544(4)	13.020(4)*	13.248(4)*	10.377(4)*	10.377(4)*	3.059(4)	9.061(4)		5.884(4)
자녀연령										
영아	51.0	344	49.3	344	45.4	344	56.7	344	73.9	77.1
유아	45.9	338	41.9	338	35.8	338	47.4	338	72.5	72.4
$\chi^2(df)$		1.950(2)	3.864(2)	6.647(2)*	6.707(2)*	6.707(2)*	.201(2)	.201(2)	316	3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9.6	444	43.8	444	39.0	444	50.8	444	74.3	324
맞벌이 가구 0남	46.5	238	48.9	238	43.6	238	54.4	238	71.2	73.2
$\chi^2(df)$		2.288(2)	7.725(2)*	4.175(2)	4.718(2)	4.718(2)	5.098(2)	5.098(2)	219	219
맞벌이 가구 0남										
맞벌이 가구 0남	49.6	444	43.8	444	39.0	444	50.8	444	74.3	324
$\chi^2(df)$		2.288(2)	7.725(2)*	4.175(2)	4.718(2)	4.718(2)	5.098(2)	5.098(2)	219	219

주: 1)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0시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 $p < .05$, ** $p < .01$.

한편 이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친인척 돌봄을 ‘지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해당 사유로는 조부모/친인척의 신뢰성과 자녀가 원하거나 익숙한 점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부록표4 참고).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수요 변화

가)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 의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대상으로 정책(제도) 변화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그만 이용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긴급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제도 보장 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3%로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4-21〉 정책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축소 의향(전체)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중단 /축소 함	중단 /축소 안 함	모르 겠음	해당 없음	계(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37.0	26.3	36.7	-	100.0 (449)
민간(베이비시터) 업체도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도우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경우	28.7	33.0	38.3	-	100.0 (449)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 시보육시설(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41.0	30.5	28.5	-	100.0 (449)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50.3	20.5	23.8	5.3	100.0 (44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48.6	22.7	23.4	5.3	100.0 (449)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47.9	24.1	22.5	5.6	100.0 (449)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주요 변인별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및 축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보장 시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와 단기서비스 이용가구에서는 민간 업체 국가등록제도 도입 시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말, 휴일, 새벽 근로가구에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의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IV-4-22〉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0-10돌봄서비스 이용 중단/축소 의향_기구특성별: 0-10돌봄서비스 이용기구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민간(비이비시티) 업체가 국가에 등록 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9세~18세)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사치출퇴근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전체	37.0	449	28.7	449	41.0	449	53.2	425	51.3	425
0용서비스 유형										
영어종일제 돌봄	36.3	102	31.4	102	38.2	102	54.6	97	49.5	97
시간제돌봄	39.0	223	28.3	223	42.6	223	52.4	208	51.9	208
단기서비스(일시연계)	36.6	82	34.1	82	46.3	82	60.5	81	57.5	80
잘 모름	28.6	42	14.3	42	28.6	42	38.5	39	40.0	40
$\chi^2(df)$	12.884(6)*	12.693(6)*	16.163(6)*	8.690(6)	8.690(6)	8.802(6)	8.802(6)	9.108(6)	9.108(6)	
장부지원 소득기준 유형										
기형	34.5	55	21.8	55	36.4	55	41.5	53	43.4	53
나형	33.7	101	31.7	101	40.6	101	57.9	95	53.1	96
다형	35.8	95	22.1	95	36.8	95	45.2	93	44.1	93
리형	41.2	68	33.8	68	48.5	68	67.7	65	62.5	64
마형	42.3	26	50.0	26	46.2	26	54.5	22	61.9	21
잘 모름	38.5	104	26.9	104	41.3	104	52.6	97	51.0	98
$\chi^2(df)$	16.137(10)	19.050(10)*	16.737(10)	19.839(10)	16.737(10)	19.839(10)	16.412(10)	16.412(10)	18.893(10)*	18.893(10)*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민간(베플리시티) 업체가 국가에 등록 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장될 경우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 이용	40.4	280	31.1	280	43.2	280	55.1	263	53.8
유치원 이용	33.0	103	22.3	103	35.9	103	47.0	100	45.0
기관 미이용	28.8	86	28.8	66	39.4	66	54.8	62	50.8
$\chi^2(df)$	5,606(4)		5,448(4)		4,069(4)		2,191(4)		3,348(4)
맞별이 기구 여부									
맞별이	39.2	337	30.3	337	42.7	337	55.2	319	54.1
맞별이 기구 아님	30.4	112	24.1	112	35.7	112	47.2	106	42.9
$\chi^2(df)$	8,441(2)*		4,233(2)		5,921(2)		5,792(2)		15,571(2)***
									2,543(2)

주: 1)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포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이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p < .05$, *** $p < .001$.

〈표 IV-4-23〉 정책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충단/축소 의향_근로특성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구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전체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비율	전체수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37.0	449	41.0	449	53.2	425	51.3	425	50.7	424		
주말·휴일근로	45.4	207	47.8	207	61.6	198	61.1	198	57.6	198		
야간근로	44.8	165	45.5	165	60.4	159	59.7	159	57.2	159		
새벽근로	47.7	86	48.8	86	65.9	82	62.2	82	63.4	82		
비전형근로 아님	28.8	111	36.9	111	43.7	103	41.3	104	41.7	103		
맞벌이 가구 아님	30.4	112	35.7	112	47.2	106	42.9	105	47.6	105		
$\chi^2(df)$	39.931(10)***		22.653(10)*		44.000(15)***		63.474(15)***		33.554(15)*			

주: 1)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기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명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2) 각 항목별 사례수는 '해당' '없음' 제외 수치임.

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포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구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유관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계속 이용하려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긴급할 때 이용하기에 좋다. 편리하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4-24〉 유관 정책의 변화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속 이용 사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명

이유	수
긴급할 때 이용하기에 좋음	5
편리함	4
부모의 개인 시간 확보	3
안심이 되어서, 믿을 수 있음(국가가 인증한 인력이므로)	3
맞벌이 또는 주말부부라 맡길 곳이 없으므로	2
기타	12

주: 기타는 '연령에 맞게 교육 및 예절 등을 알려줌', '아이가 좋아해서', '도움이 됨', '출퇴근 시간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음', '시간이 없어서',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규칙을 배울 수 있어서', '비용이 저렴함',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둘 이상을 함께 돌볼 땐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장 편리함', '혼자 아이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움', '아이를 위해서', '돌보미와 아이의 신뢰도가 쌓여서 편함'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나) 아이돌봄지원사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의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0%로 조사되었다.

주요 변인별로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서 50.0%, 기관 병행과 조부모 돌봄 병행 가구에서 각각 50.0%와 54.5%로 나타났고,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25〉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의향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이용시간 확대	이용시간 변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46.8	37.0	16.3	100.0 (449)
이용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돌봄	50.0	38.2	11.8	100.0 (102)
시간제돌봄	49.3	39.9	10.8	100.0 (223)
단기 서비스(일시연계)	40.2	37.8	22.0	100.0 (82)
잘 모름	38.1	16.7	45.2	100.0 (42)
$\chi^2(df)$	35.965(6)***			
정부지원 소득기준 유형				
가형	41.8	45.5	12.7	100.0 (55)
나형	45.5	39.6	14.9	100.0 (101)
다형	48.4	38.9	12.6	100.0 (95)
라형	58.8	32.4	8.8	100.0 (68)
마형	50.0	34.6	15.4	100.0 (26)
잘 모름	40.4	31.7	27.9	100.0 (104)
$\chi^2(df)$	18.301(10)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30.0	30.0	40.0	100.0 (10)
기관 병행	50.0	35.9	14.1	100.0 (248)
조부모 병행	54.5	33.3	12.1	100.0 (33)
기관+조부모 병행	41.5	37.8	20.7	100.0 (135)
기타 병행	39.1	52.2	8.7	100.0 (23)
$\chi^2(df)$	11.459(8)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비용이 줄어든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59.5%이고, 서비스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로 조사되었다. 가구특성별로 이용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기준 '라'와 '마'형에서 63.2%와 69.2%, 조부모 돌봄 병행가구에서 78.8%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26〉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의향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구분	단위: %(명)			
	이용시간 확대	이용시간 변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전체	59.5	27.8	12.7	100.0 (449)
이용서비스 유형				
영아종일제 돌봄	58.8	34.3	6.9	100.0 (102)
시간제돌봄	61.4	27.8	10.8	100.0 (223)
단기 서비스(일시연계)	61.0	26.8	12.2	100.0 (82)
잘 모름	47.6	14.3	38.1	100.0 (42)
$\chi^2(df)$	30.263(6)***			
정부지원 소득기준 유형				
가형	61.8	30.9	7.3	100.0 (55)
나형	66.3	25.7	7.9	100.0 (101)
다형	54.7	31.6	13.7	100.0 (95)
라형	63.2	33.8	2.9	100.0 (68)
마형	69.2	19.2	11.5	100.0 (26)
잘 모름	51.0	23.1	26.0	100.0 (104)
$\chi^2(df)$	28.994(10)**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60.0	10.0	30.0	100.0 (10)
기관 병행	60.5	28.6	10.9	100.0 (248)
조부모 병행	78.8	15.2	6.1	100.0 (33)
기관+조부모 병행	54.8	28.9	16.3	100.0 (135)
기타 병행	47.8	39.1	13.0	100.0 (23)
$\chi^2(df)$	12.867(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66.7	16.7	16.7	100.0 (12)
201~400만원	63.8	21.6	14.7	100.0 (116)
401~600만원	50.9	36.0	13.0	100.0 (161)
601~800만원	67.4	20.2	12.4	100.0 (89)
801만원 이상	60.6	31.0	8.5	100.0 (71)
$\chi^2(df)$	13.099(8)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p < .01$, *** $p < .001$.

6)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수요 변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유관 정책의 변화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

도 이용 가능),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필수로 취득하도록 변경될 경우,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모두에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27〉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중단/축소 의향: 전체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단위: %(명)

구분	중단/ 축소함	중단/ 축소 안함	모르 겠음	해당 없음	계(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44.7	23.0	32.3	-	100 (356)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필수 취득하도록 변경될 경우	42.7	28.7	28.7	-	100 (356)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46.9	25.3	27.8	-	100 (356)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50.8	21.1	23.6	4.5	100 (3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52.2	19.1	24.7	3.9	100 (356)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50.3	19.7	24.4	5.6	100 (356)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주요 변인별로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관 미이용가구에서 47.4%, 조부모 병행가구와 기관 및 조부모 병행 가구에서 66.0%와 58.2%,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서 45.6%로 높게 나타난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비전형근로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보다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난다.

〈표 IV-4-28〉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충단/축소 의향_가구특성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공공)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기금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차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사자출퇴근제도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전체	44.7	356	42.7	356	46.9	356	53.2	340	54.4	342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 이용	44.8	201	40.8	201	45.8	201	53.6	194	55.6	196
유치원 이용	39.7	58	34.5	58	39.7	58	43.1	58	43.1	58
기관 미이용	47.4	97	51.5	97	53.6	97	59.1	88	59.1	88
$\chi^2(df)$	12.862(4)*		18.502(4)**		10.844(4)*		13.607(4)**		8.805(4)	
병행 이용 여부										
단독 이용	36.4	33	45.5	33	54.5	33	56.7	30	60.0	30
기관 병행	35.0	163	33.7	163	38.0	163	41.5	159	43.5	161
조부모 병행	66.0	47	63.8	47	61.7	47	69.0	42	71.4	42
기관+조부모 병행	58.2	98	49.0	98	55.1	98	67.4	95	68.4	95
기타 병행	13.3	15	26.7	15	26.7	15	35.7	14	21.4	14
$\chi^2(df)$		NA		NA		NA		NA		NA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5.6	263	42.2	263	46.4	263	53.0	249	54.2	251
맞벌이 가구 아님	41.9	93	44.1	93	48.4	93	53.8	91	54.9	91
$\chi^2(df)$	6.431(2)*		5.078(2)		5.278(2)		2.999(2)		3.184(2)	

주: 1) 각 항목별 사례수는 '행당 없음' 제외 수치임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 아간, 세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포함

3) NA는 비단분포 특성상 카이제곱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 $p < .05$, ** $p < .01$.

〈표 IV-4-29〉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충단/축소 의향_근로특성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구

구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긴급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 (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장될 경우	
전체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있음 비율	전체수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	44.7	356	46.9	356	53.2	340	54.4	342	53.3
주말·휴일근로	53.2	158	51.9	158	58.2	153	59.7	154	57.0
야간근로	53.3	135	52.6	135	60.5	129	62.3	130	59.4
새벽근로	53.8	65	55.4	65	66.1	62	68.3	63	61.9
비전형근로 아님	34.4	90	36.7	90	43.9	82	44.6	83	43.9
맞벌이 기구 아님	41.9	93	48.4	93	53.8	91	54.9	91	56.2
$\chi^2(df)$	36.534(10)***		23.337(10)**		32.113(15)**		30.310(15)**		27.571(15)*

주: 1) 근로특성3(비전형적 근로)에서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근로기구는 맞벌이 기구의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해당 근로를 하는 경우이며, 두 딸에 1회 이상 일하는 경우임.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포함.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구

* $p < .05$, ** $p < .01$, *** $p < .001$.

5. 소결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공급과 지원대상 측면의 함의를 제시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가. 서비스 공급 및 지원대상

첫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주양육자와 추가 돌봄의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반 돌봄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측면에서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적 부문의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기관이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1% 이하에 불과하나, 주양육자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은 26.2%와 3.8%로 나타나서 틈새보육과 긴급돌봄이 주된 목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공급 방식은 기관과 가정 내 보육을 동시에 확충되되, 특히 영아 자녀의 경우는 시설 보다는 가정 내 보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아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시간제보육을 대신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간제보육 이용가구의 비율은 58.3%로 높은 반면, 시간제보육을 계속하여 이용하려는 비율은 15.6%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지원 목적이 달라서 영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를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주양육자의 질병 등이 아닌 경우에도 종일 동안 상시로 이용하는 것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구에게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이용시간과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이때 맞벌이 가구에서 대기가 길어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예외 적용이 요구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동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대기가 길어 입소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 응답 기준으로 17.9%(1+2순위: 22.5%)로 조사되었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시간제 돌봄의 경우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즉, 긴급돌봄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는 자녀가 너무 어려서 등의 이유로 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가구이다. 가장 수요가 높다고 확인되는 긴급돌봄은 이용 빈도도 가장 높고(한 달에 1회 이상 이용 빈도: 48.9%, 발생한 적 없음 5.2%), 비맞벌이 가구에서도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1순위 응답 기준: 43.8%) 시간제보육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른 한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기관에서 충족하든지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기관보육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가구는 실수요 측면에서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들 가구에서 연장하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돌봄 인력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이들 가구는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초래되는 돌봄의 틈새에 대응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추가 돌봄 인력이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가구(22.3%)는 장시간보육을 기피하거나 편의성을 위한 자의적 선택이므로 정부의 비용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단,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가구를 고려하여 연장된 기관의 운영시간에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틈새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앞서 주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약 절반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였거나 장시간 기관 이용이 힘든 가구, 그 다음으로는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일하는 가구,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돌봄서비스가 상시로 필요한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구는 자녀돌봄의 어려움에

서 전 항목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어려움 수준을 보여 희망하는 출산과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말(토요일)과 휴일(일요일 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20.9%와 12.2%로 나타나며, 비전형근로 가구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기본 운영시간을 벗어나고 있으나, 이들 가구를 위한 기관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하여 차별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로 충족할 수 없는 고유한 수요가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공적 부문의 서비스 접근성과 상관없이 민간 육아도우미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구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를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하면 ‘기관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 기준으로 23.9%(1+2순위: 28.1%)로 가장 높아서 긴급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긴급한 때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기관의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순으로 주된 동기가 유사하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는 12.1%(1+2순위: 20.8%)이고,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해서 3.9%(1+2순위: 9.3%)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중, 주말, 휴일의 이용 비율도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88.2%, 18.3%, 12.6%). 단 주중 기준으로 이용시간대는 9시 이전의 시작 시각이 비맞벌이 가구에서 62.6%로 맞벌이 가구(46.4%)보다 높게 나타나서 해당 시간의 수요를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오후 5시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비율이 맞벌이 가구에서 50.8%(비맞벌이 가구: 37.2%)이고 오후 7시 30분 이후는 18.8%에 달하여 실수요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긴급하게 자녀를 맡기는 빈도가 한달에 1회 이상 발생하는 비율이 43.6%로 조사되어 아이돌봄서비스(48.6%)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비용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평균 2.9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신속한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는 3.4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3.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이고 기관 미이용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서(45.5%), 양육 공백의 해소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비전형적 근로가구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 또는 축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 비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실수요자임을 확인시켜준다.

넷째, 조부모 돌봄 가구의 이용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수요를 선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부모 돌봄 가구의 이용 동기는 ‘긴급할 때 자녀돌봄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 기준으로 39.0%, 1, 2순위를 합하여 62.2%로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 가구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이때 조부모 돌봄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비맞벌이 가구에도 폭 넓은 시간대에 걸쳐 있어서 긴급돌봄을 위한 일시보육의 지원대상은 홀벌이 가구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3.2%),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해서’(2.2%)라고 응답한 가구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없어서’(3.7%)와 ‘장시간 기관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치 않아서’(5.5%)라고 응답한 가구는 그 사유가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와는 무관하므로 정부지원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보내지 않고 조부모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나. 유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의 이용가능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조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도가 보장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절반 수준으로 기관의 운영시간 변경 시의 해당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수요는 비전형적 근로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제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시기를 늦추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이 42.9%에 달하여 어린이집 미이용가구의 일시보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이는 가구의 비율이 20%선이므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시간은 감소하고 특히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는 영아종일제 이용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는 비율은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가구는 틈새보육을 위한 상시 이용가구에 해당한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고, 기관을 신뢰하지 않아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일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는 기관 미이용가구에서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이용 의향이 높고 기관의 운영시간이 변경되어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계속하려는 의향이 단독 이용가구에서 63.6%로 다수여서 영아 가구의 가정 내 보육 수요가 기관 보육의 대체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주말이나 야간 등 비전형근로가구에서는 기관의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절반 수준으로 높고, 기관 미이용가구에서 기관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의향도 47.4%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조부모 돌봄 가구에서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민간 육아도우미 업체가 국가에 등록하는 경우 조부모를 대신하여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관 미이용가구와 단독 이용가구에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는 잠재수요 자로 볼 수 있다.

다. 서비스 유형별 개선과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위주로 개선과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지역적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차별화된 공급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읍면지역의 시간제보육 이용가구는 도보로 평균

38.9분이 소요되어 도시 지역에 비해 20분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프라 확충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이용비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서 정부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확대 시 이용시간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라’와 ‘마’형 가구에서 63.2%와 69.2%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질은 서비스 이용비용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이들의 전문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장시간 대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므로 서비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우선지원 대상 선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원대상 확대와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여 대기 가구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단적으로 말해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양육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는 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그에 따라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돌봄 욕구 수준에 따라 현행 양육 공백 기준의 정교화를 모색할만하다.

V

심층분석: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요구 분석

- 01 수요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유형별 수요
- 02 공급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공급 관련 쟁점과 개선요구
- 03 소결

V. 심층분석: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욕구 분석

제5장에서는 가정내양육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요자 조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는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대상의 공급자 조사에서는 유료 소개업체와 정보제공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수요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유형별 수요

가. 조사 개요: 참여자 특성

수요자 조사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로 3개 그룹에 관하여 자녀 연령 및 자녀수, 맞벌이 가구의 근로 형태, 기관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유형을 고르게 할당하고, 참여자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근로시간과 서비스 이용시간 등은 〈표 V-1-1〉과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유형은 ‘나’~‘라’형으로 나타난다.

이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참여자는 30~40대이고, 자녀는 1~4명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녀의 출생순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연령이 30~40대이고, 자녀는 1~2명이며, 월평균 소득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종일(입주)과 늦은 야간(오후 9시)가 포함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참여자는 30~40대이고,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중에는 비전형적 근로가구가 포함되어 있다(표 V-1-5 참고).

〈표 V-1-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구분	참여자 번호	연령 (만)	이용자녀 연령 (출생순위) /총자녀수 (이외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모 직업	거주 지역	근로시간 및 근로특성	
							모	부
영아 자녀	1	43세	1세(둘째) /2명(5세)	600만원~ 800만원 미만	직장인	경기 성남시	전형근로 (9:00~18:00 상시 근무)	비전형근로 (10:00~19:00 /19:00~ 익일10:00)
	2	41세	1세(둘째) /2명(7세)	400만원~ 600만원 미만	직장인	경기 남양주시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비전형근로 (평일14:00~22:00 /23:00~2:00 주말 9:00~18:00)
	3	34세	1세(둘째) /2명(6세)	600만원~ 800만원 미만	직장인	경기 안양시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4	34세	1세(넷째) /4명 (3세, 6세, 7세)	800만원 이상	자영업	경북 포항시	상시근로 (11:00~17:00)	비전형근로 평일 18:00~21:00 주말 12:00~18:00)
유아 자녀	1	44세	4세(둘째) /2명(6세)	400만원~ 600만원 미만	자영업	경북 포항시	비전형근로 (매주 월 12:30~15:00 매주 화 18:00~20:30)	상시근로 (8:30~18:00 상시 근무)
	2	46세	3세(둘째) /2명(15세)	600만원~ 800만원 미만	직장인	대구 달서구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비전형근로 (3:00~15:00 근무)
	3	37세	3세(둘째) /3명 (1세, 6세)	600만원~ 800만원 미만	직장인	경기 고양시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상시근로 (8:30~17:30 상시 근무)
	4	39세	3세(둘째) /2명(11개월)	600만원~ 800만원 미만	프리랜 서	서울 강동구	비전형근로 (평일 22:00~1:00 매주 토 9:00~14:00)	상시근로 (9:00~18:30)
	5	43세	3세(첫째) /1명	800만원 이상	직장인	서울 강서구	상시근로 (9:00~18:00 상시 근무)	상시근로 (8:00~17:00)

주: 1) 돌봄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의 기관은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제외한 기관임.

2)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표 V-1-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구분	참여자 번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 경험	병행 이용 기관(유형) /하원시각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 가능성	돌봄 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
		최근 3개월내 이용 횟수(회) /지원유형	서비스 이용시간 (1일 기준 총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대				
영아 자녀	1	5 /나형	2	7:00 ~9:00	있음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시차출근제	돌봄 지원 인력 있음
	2	60 /나형	6	12:00 ~18:00	있음	가정양육	이용가능 제도 없음	둘다 없음
	3	20 /나형	2	16:30 ~18:30	없음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둘다 없음
	4	60 /다형	3.5	16:00 ~19:30	없음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이용가능 제도 없음	돌봄 지원 인력 있음
유아 자녀	1	60 /나형	3	17:00 ~20:30	없음	어린이집 이용 (연장보육) /오후 4시 이후 하원	이용 가능 제도 없음	돌봄 지원 인력 있음
	2	15 /나형	3	16:00 ~19:00	있음	어린이집 이용 (연장보육) /오후 4시 이후 하원	이용가능 제도 없음	둘다 없음
	3	55 /나형	2	16:00 ~18:00	있음	유치원 이용 (교육과정) /오후 4시 하원	제도는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함	돌봄 지원 인력 있음
	4	10 /나형	4	평일 9:00 ~13:00 토요일 9:00 ~13:00	없음	유치원 이용 (방과후과정) /오후 4시 이후 하원	육아휴직제도	돌봄 지원 기관 있음
	5	60 /라형	2	7:00 ~9:00	있음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둘다 없음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표 V-1-3〉 면담조사 참여자 특징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구분	번호	연령 (만)	이용 자녀 연령(출생순위) /총 자녀수 (이외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모 직업	거주 지역	부모 근로시간 및 근로특성	
							모	부
영아 자녀	1	40	1세(첫째) /1명	800만원 이상	직장인	서울 구로구	상시근로 (8:00~17:00)	상시근로 (10:00~19:00)
	2	35	2세(첫째) /1명	800만원 이상	직장인	경기 하남시	상시근로 (10:00~19:00)	상시근로 (8:00~18:00)
	3	35	7개월(첫째) /1명	800만원 이상	프리 랜서	서울 송파구	비전형근로 (평일 9:00~11:00 /주말 9:00~11:00)	상시근로 (10:00 ~19:00)
	4	33	1세(둘째)/ 2명(7세)	800만원 이상	시간제 근로	경기 고양시	비전형근로 (평일 17:00~22:00 /주말 13:00~19:00)	상시근로 (9:00~ 매번 다름)
유아 자녀	1	48세	5세(첫째) / 1명	800만원 이상	직장인	서울 서초구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2	47세	6세(둘째)/ 2명(9세)	400만원~ 600만원 미만	직장인	경기 안성시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3	37세	5세(첫째) / 1명	400만원~ 600만원 미만	직장인	서울 은평구	상시근로 (9:00~17:00 상시근무)	상시근로 (9:00~17:30 상시근무)
	4	35세	2세(첫째)/ 2명(7개월)	800만원 이상	직장인	경기 하남시	비전형근로 (평일 2회 10:00~23:00)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5	37세	2세,5세 (첫째,둘째) /2명	800만원 이상	자영업	서울 송파구	비전형근로 (7:30~16:30/ 13:00~21:00)	비전형근로 (평일 및 토 00:00~9:00 /10:00)

주: 1) 돌봄자원 인력 및 기관 여부의 기관은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제외한 기관임.

2)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표 V-1-4〉 면담조사 참여자 특징_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구분	참여자 번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현황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경험	병행 이용 기관(유형) /하원시각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이용 가능성	돌봄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
		최근 3개월내 이용 횟수 (회)	서비스 이용 시간 (1일 기준 총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대				
영아 자녀	1	1	3	16:00 ~19:00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돌다 없음
	2	50	4	16:00 ~20:00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시차출근제	돌봄 인력 있음
	3	100	24	종일 (입주)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가정양육	육아휴직제도	돌봄 인력 있음
	4	6	24	15:00 ~익일 아침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가정양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돌다 있음
유아 자녀	1	50	4	15:00 ~20:00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유치원 이용 (교육과정)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돌다 없음
	2	10	6	10:00 ~16:00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연장보육) /오후 4시 이후 하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돌다 있음
	3	5	2	17:20 ~19:20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유치원 이용 (방과후 과정) /오후 4시 이후 하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돌봄 기관 있음
	4	90	9	9:00 ~18:00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근제	돌다 없음
	5	60	10	16:00 ~21:00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어린이집 이용 (기본보육) /오후 4시 하원	육아휴직제도	돌다 있음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표 V-1-5〉 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특징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1: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번호	연령 (만)	이용자녀 연령 (출생순위) /총자녀수	월평균 가구 소득	서비스 기관 유형	모 직업	거주 지역	근로시간 및 근로특성	
							모	부
1	37세	1세(첫째) /1명	600만원~800만원 미만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전업 주부	서울시 서초구	일하지 않음	비전형근로 (새벽근무 하나 매일 세부 변동 있음) 00:00~14:00/ 2:00~15:00
2	38세	2세(둘째) /2명	600만원~800만원 미만	어린이집	파트 타임	경기도 안양시	비전형근로 (주말 포함 주5일 근무)	비전형근로 (주말 포함 주 5일 13:00~22:00)
3	41세	2세(첫째) /1명	8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직장인	경기도 성남시	상시근로 (9:00~18:00 상시근무)	상시근로 (9:00~18:00)
4	35세	1세(둘째) /2명	8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직장인	서울시 은평구	상시근로 (10:00~14:00)	상시근로 (8:00~17:00)
5	40세	0세(둘째) /2명	800만원 이상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직장인	서울시 마포구	상시근로 (8:30~18:30)	상시근로 (8:50~18:20)
6	39세	1세(첫째) /1명	800만원 이상	어린이집	프리랜서	경기도 의왕시	비전형근로 (평일 및 주말 11:00~15:00 20:00~2:00)	상시근로 (10:00~22:00)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표 V-1-6〉 면담조사 일정 및 참여자 특징_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2: 서비스 수요 관련 특성

번호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			돌봄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민간 육아도우 미 이용 경험
	최근 3개월내 이용횟수 (회)	서비스 이용시간 (1일 기준 총시간)	서비스 이용시간내			
1	36	4	12:00~16:00	돌봄지원기관 있음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 없음	없음
2	5	6	10:00~16:00	돌봄지원인력 있음	알고 있으나 이용해 본 적 없음	없음
3	5	40	9:00~18:00	돌봄지원인력 있음	알고 이용해본적 있음	없음
4	5	2	14:00~16:00	돌봄지원인력 있음	알고 이용해본적 있음	없음
5	19	5	9:00~14:00	둘다 없음	알고 이용해본적 있음	있음
6	5	3	11:00~14:00	돌봄지원기관 있음	알고 이용해본적 있음	없음

주: 응답자는 모두 여성임.

나. 서비스 유형별 욕구 분석

이하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및 이용 특성, 그리고 유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토대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잠재수요를 규명하고, 서비스 유형별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가) 서비스 이용가구 및 이용 특성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았다.

우선 시간제돌봄의 경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는 해당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기관의 운영시간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불일치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 영아1과 영아3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연장보육의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는 비전형적 근로시간 즉, 야간, 새벽, 주말근로 등으로 인해 기관에서 돌봄을 온전히 충족하기 힘든 가구, 자녀 특성으로 장시간보육이 힘든 가구, 어린이집 대기가구 이고, 영아4와 같은 다자녀 가구는 양육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나 대기가 길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영아보육의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고 판단된다.

[비전형근로 가구: 야간/새벽/주말/휴일]

(야간근로어린이집 이용가구: 영아1, 유아1)

아이가 지금 2명이고, 첫째는 6살에, 지금 둘째는 지금 19개월 차 됐고요. (둘째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첫째는 유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첫째랑 둘째 동시 돌봄으로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중략) 아이 둘이 등원 시간이 각자 다르고 첫째 아이는 차량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쫓기게 되더라고요.....(중략) 남편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제가 아이 둘을 돌보고 아침까지 같이 케어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아이돌봄서비스_영아1)

저는 배우자가 평일에 10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독박 육아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후) 6시에 퇴근해서 같이 육아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아이돌봄서비스_유아1)

(휴일근로/어린이집 이용가구: 유아2)

(자녀돌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어린이집 차를 타고요. (오전) 7시에 차를 타면 등교는 8시 5분, 10분에 도착 해요. 오후 4시에 하원을 하고요. (오후) 4시 반까지 집에 와서 8시 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남편이 새벽 3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로해요(중략) 아빠가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많다 보면 이게(퇴근) 더 늦춰질 때도 있고, 특히 추석 전 명절 전에는 엄청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10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2)

(주말근로/유치원 이용가구: 유아4)

제가 지금은 프리랜서여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근무시간은 자유로운 편인데, 집중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정해 놓고 주중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된 아기거든요. 많이 어려서 어린이집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까지 아이돌보미 선생님 오시고(중략) 주말에는 제가 어쨌든 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두 명의 아이를 다 보기에는 둘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큰 아이를 주말에 선생님한테 맡겨서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첫째는 기관(유치원)을 이용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이용기관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가구]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접근성이 낮은 가구: 영아1, 3)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아1과 영아3은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눈치가 보이거나 실제로 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오후 4시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영아3의 경우는 오후 6시반 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연장보육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맡겨볼까 했었는데 여기 동네 특성이 그런지 다른 엄마분들이 다 연장 근무를 안 하셔 가지고 남아 있는 아이가 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늦게 가는 아이를 제가 여쭤봤더니 5시 반에 간대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1)

둘째는 어린이집에 3월부터 다녔고요. 아이가 오후 4시 반에 하원 하고 있어요. 제가 오후 6시 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오후 4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그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돌봐 주고 계시고요....(중략) (어린이집 연장보육) 알고 있는 데, 가정어린이집에서 거의 오후 4시에 하원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어린이집에서 편의를 봄으로서 오후 4시 반까지 맡아 주시거든요.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면 6시 반까지, 아이돌봄서비스 2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 맡길 의향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사실 맡길 수 있었는데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여서.. 원장님이 “맡길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린데 맡기시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아이돌봄서비스_영아3)

(유치원 저녁돌봄 접근성 낮은 가구: 유아4)

병설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4는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후 5시 이후에 남겨진 아동이 거의 없어서 자녀가 혼자 남는 것을 우려하여

4시 하원 이후에 오후 7시 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아이를 공립 단설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후 7시까지는 공립 단설에서는 봐줄 수 있다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연장으로 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까지 남아 있는 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공립 단설 유치원 특성상 남아 있는 애들이 (오후) 5시 이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영아2)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2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되지 않아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퇴근 시각에 맞추어 오후 6시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구는 여성은 전형적 근로시간에 근로하고, 배우자는 평일에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비전형근로 가구여서 종일제 돌봄이 필요해서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가정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작년 여름쯤에 걸어 놨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단지 두 곳 (어린이집)에 대기를 해놨는데. (대기기간이) 1년이 다되어 가는데 대기 순번이 줄지가 않더라고요.(중략) 저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 놨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으면 다시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인데 그래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친척도 없고 시부모님도 못 도와주니까,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고 그나마 남편이 늦게 출근하니까 오전은 봐줄 수 있는 건데 오후에는 못 봐주잖아요...그런데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제한되어 1년 동안 이렇게 쓰다(12-18시)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정부지원)시간이 모자라서 (아이돌보미를) 못 쓰게 되어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자녀 특성으로 장시간 기관이용 힘든 가구: 발달 지연 아동 등] (유아5)

유아5는 자녀가 예민하고 발달 지연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고,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후에 하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애기가 좀 예민하고 지금 발달 지연이 있는 상황이라...(어린이집) 연장반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이용하는 것은...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애가 예민하고 발달이 느리다 보니까, 추천을 받은 게 연장반에 있으면, 애가 감정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1~2년 정도 계속 같은 아이돌보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_유아5)

[다자녀가구] (영아4)

영아4는 4명의 자녀를 둔 자영업 가구인데, 넷째는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셋째(만2세)도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오전 9시에 등원해서 오후 4시 10분에 하원하며, 둘째(6세)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양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_영아4)

저는 자영업자고, 출퇴근시간이 조금 프리 한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일을 한다고 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7세) 다 등하원 시각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학원에 보내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받으려(하원) 가야 하는 아이도 있고...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첫째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 오후 5시에 가야 되어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중략) 혼자서만 4명을 보다가 손(아이돌보미)이 하나 들어오니까 약간 숨 쉴 구멍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애들만 보다가 음식도 잘 못해주고 밥도 잘 못 차려주고 배달시켜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장을 봄서 음식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아이돌봄서비스_영아4)

나) 유관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수요 변화: 서비스 이용 중단 여부

영아1과 2는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관을 단독으로 연장하여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가 1세에 불과하여 자녀가 유아가 되면 이용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영아2는 이른 하원에 대해 자녀가 어려서 자주 아파서 이른 하원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의향 있음] (영아1, 2)

아이가 만약에 하나라면 아이가 한 명이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유아가 됐을 때는 굳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둘이고 한 명은 유아 한 명은 영아다 보니까 지금 유아는 혼자서도 잘 놀고 하니까 뒤도 되는데, 유아는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시기라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집안 일을 하다가도 계속 쳐다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더 클 때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1)

아직 너무 어려서 9시 반 정도부터 (오후) 2, 3시 까지 보내고 싶어요. 아직 14개월이잖아

요. 또 아이가 신생아 때 두 번이나 입원하고 좀 자주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서 입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이돌봄서비스 중단하고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하는) 게...(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단 의향 없음] (영아2, 4/유아1, 3, 4)

영아4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하원 차량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연장하여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을 호소하고, 이를 하원 이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영아2는 하원 이후에 자녀의 바깥놀이를 위해서 그리고 유아1은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 자녀가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해서 연장하여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안 되고요. 그 시간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니까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안정감도 느끼고.(아이돌봄서비스_영아4)

(만3세가 되어도)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오후) 4시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후) 3시 반부터 아이들이 거의 나가니까, 첫째 때 경험으로 비춰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또 밖에서 놀거든요. 나와서 놀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퇴근을) 늦게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오후 4시 정도에 (하원시키고) 아이들보미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좀 놀아주시고 와서 좀 씻겨주시고 하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맞아서....(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오후 7시30분~9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이용하기 전에 제가 저녁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조부모님에게 맡겼거든요. **저녁도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기관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_유아1)**

유치원에 (오후) 6시 까지 보낼 생각은 없고요. 저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 세 아이가 같이 잘 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보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이랑도 되게 잘 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기관에 따로따로 두고 있고 싶지도 않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3)

주말에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말에 유치원에서 돌봄을 한다고 해도 그때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아이들이 올 거고, 그러면 애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주말에는 아이도 자기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2)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활용 가능성에 따른 수요 변화: 서비스 중단 여부

영아3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이용 후 직접 자녀를 하원 시킬 수 있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유아5의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시차출근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유아4는 당시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였다.

내년에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단축근무를 할 생각이거든요. 단축근무를 하면 아이를 제가 하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내년에는 아이가 4살이고 내후년에는 5살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연장보육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는 웬만해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3)

사실 이것(근로시간 단축제도나 시차출근제)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못 옮기고 있긴 해요.(아이돌봄서비스_유아5)

첫째 출산 2주 전까지 일을 했었고, 그런데 재택근무도 아니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중략) 제가 그 때도 프리랜서로 잠깐 어떻게 보면 투잡 형식이죠.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둘다 그만뒀었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군이나 직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이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또 안 하면 경력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일하러 나가는 시간만 돌보미 선생님이 봐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아이랑 같이 있는 거죠. (육아휴직을) 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저희는 일을 안 나가면 그만큼 급여가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고 (일을 하고) 싶어요. 반나절이라도.(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3)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수요 변화: 서비스 이용 변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향 있음]

영아2와 4는 가정 내 양육을 더 선호하여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유아4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이 덜해서 시간제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근로를 계속하기 힘들었다고 언급하고, 영아2는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복직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보장: 영아2, 4)

저는 부모급여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작년에 쉬면서 또 다시 복직을 하려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면 면접은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에 어떤 선생님을 제가 해서 몇 시간 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다 부모급여에서 다 충당을 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따로 환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중략)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면 어린이집에 갔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내면 특별활동비랑 재료비 이런 걸로 되는데....(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어린이집에 맡기면 무상이니까 부모급여를 안 받는다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가 더 열심히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100만원을 받으면 어쨌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24개월 동안 100만원을 받으면 받는 만큼 제가 비쁠 때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맡겨서 제가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아이와의 애착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부모급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크죠.(아이돌봄서비스_영아4)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유아4)

제가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투잡 개념으로 일했던 보조적인 어떻게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부모급여가 당연히 있으니까 이렇게 단시간 근무만 해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서 부모급여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일자리에 만족을 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이 나가는데, 부모급여는 없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냥 둘째를 기르는 데 전념할 것 같아요.(프리랜서 일하는 것 조차) 일을 못하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서비스 이용 영향 없음] (영아3)

전일제 상시근로 가구인 영아3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모급여가 없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저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재 상황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못 받는다고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3)

다)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장시간 대기 등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과 아이돌보

미의 잊은 교체 및 기피 등을 지목하였고, 영아종일제 돌봄 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시간 대기] (영아1)

영아1은 1년 이상 대기를 거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매칭이 된 적이 없어서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등록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죠. 저도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아이돌보미가 너무 적어서 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고....제가 이번에 운 좋게 된 거는 저희 동네에 한 분이 신규로 아이돌보미를 등록을 하셨대요.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분이 거주를 하고 계셔서 운이 좋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중략) 긴급돌봄을 제가 몇 번 신청을 해봤는데, 한 번도 선생님이 매칭이 된 적이 없었어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1)

[아이돌보미 역량과 근로자성 강화 필요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잊은 교체, 고연령으로 인한 건강상 우려, 특정 아동이나 가구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을 지적하였다. 아이돌보미 교체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사회보험 혜택 등을 위해 한 달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를 희망하기 때문에 단시간 이용가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불편을 언급하였다.

(잊은 아이돌보미 교체: 유아4, 5)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민간에서 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하원은 민간 선생님이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구해서 몇 번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선생님이 힘들다고 세 번 정도 그만 두셔서....(아이돌봄서비스_유아5)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한 번 바뀌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원래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평일에만 이용했는 데 이 시간이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주 15시간 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나오고....한 달에 60시간을 채워야만 건강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나 봐요.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선생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뀌게 된 거죠....(아이돌봄서비스_유아4)

(이용가구 및 아동에 대한 선호와 기피: 유아5)

저는 6개월 때 만났던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랑 지금 만 3세 6개월 됐는데 3년 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없는데, 그게 선생님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애는 남자 애기 인데 여자 애들에 비해서 남자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대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해보고 힘들면 조금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시고... 남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아이돌봄서비스_유아5)

(아이돌보미 고연령에 따른 우려: 유아5)

최근에도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프셔서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 가고 입원하시게 되면서 쭉 안 나오셨는데 긴급 신청을 하기에도 너무 촉박하고 하원 시간대는 이미 그것도 제가 되게 대기를 많이 한 다음에 배정 받았던 분이라서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었고, 도와주실 분들도 다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고... 부모님들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아이돌봄서비스_유아5)

[지원시간 확대: 종일제돌봄 수요자] (영아2)

영아2는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는 정부지원 시간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경우는 전일제근로가 불가피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쓰는 경우랑 저 같이 그런 게(육아휴직)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은 (돌봄서비스)시간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개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첫째는 거의 시간을 많이 안 썼는데 둘째는 벌써 반을 썼거든요...(중략) 제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인데 선생님은 저희가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4~5시간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출근을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략) 육아휴직을 늘린다 급여를 늘린다 하지만 결국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아이돌봄서비스_영아2)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영아3)

영아3은 2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용기관과 낮잠 시간 등이 서로 달라서 함께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다자녀가 더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제가 그때는 그 육아휴

직 중이어서 상관 없었는데, 첫째가 태권도를 다니면서 제가 등하원을 시키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등하원하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낮잠 시간도 다르고 매번 다르기도 하고 딱 그 첫째가 태권도 갈 때 딱 낮잠을 자기 때문에 자는 애를 데리고 다니기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선생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아이돌봄서비스_영아3)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가) 서비스 이용가구 및 이용 특성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즉, 부모의 근로특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유아1과 3은 불규칙한 퇴근 시각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유아5는 자영업가구여서 새벽근로 등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어린이집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악된다. 영아3과 영아4의 경우 어머니가 모두 비전형적 근로시간에 일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주말 또는 종일 동안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

[불규칙하고 늦은 퇴근 가구] (유아1, 3/어린이집 이용가구)

원래는 오후 7시까지 이용하였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시간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민간 도우미를 거의 9시 까지도 쓰게 되지 않을까 너무 비싸긴 하지만... 7시 퇴근도 했다가 8시 퇴근도 했다가 이렇게 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1)

일단 유치원을 아침 7시 50분에 등원 차량을 해서 오후에 5시까지 해서 5시에 하원을 하고 제가 시차출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일주일 중에 두 번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다른 업무량에 밀린 업무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민간육아도우미를) 해야 됩니다.(민간 육아도우미_유아3)

[불규칙한 퇴근 가구] (영아1, 2, 유아5/어린이집 이용가구)

육아휴직 할 때는 9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했고, 제가 복직을 하면서 남편이랑 시차출근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남편이 10시 출근하면서 애를 8시 반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고 제가 5시 퇴근이거든요. 5시 퇴근하면서 5시 40분에서 반 정도에 애를 픽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은 다 일찍 아기를 다 하원을 시켜서 4시 이후 5시 이 사이에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집을 가요. 그래서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 애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쓰는 걸로 하고 있었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1)

저희 맞벌이 여서 얘기를 10월 말경 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고, 제가 출근을 하게 되면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이런 식으로 시차출퇴근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등원은 시킬 수 있는데 하원은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남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데, 대개 오전 7시나 8시 사이에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있어야 되고, 퇴근도 집에 오면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다 보니까...그래서 어린이집에 오후 4시 까지 있고 오후 4시부터 8시 까지 이모님을 쓰면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이모님(민간 육아도우미)이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2)

[새벽근로 가구] (유아5/어린이집 이용가구)

저는 제가 스케줄 근무를 하고 신랑이 완전 새벽 도매업을 하기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제가 스케줄 근무가 아침 7시 반까지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오후 1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그 스케줄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애들을 보통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문을 열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시간은 9시부터니까 보통 9시까지 보내려고 하고 그전에 제가 오전 출근을 해야 돼서 빈 공간이 생길 때는 저희 조부모님이 봐주시거든요....남편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신랑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신랑이 일찍 퇴근하면 애들 등원을 시켜줄 수는 있어도 하원 같은 경우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져가지고...(민간 육아도우미_유아5)(민간 육아도우미_유아5)

[상시 비전형근로/주말근로 가구] (영아3, 4/어린이집 미이용가구)

저는 입주를 24시간 쓰고 있어요....아기가 일단은 잠도 안겨서만 자고 낮잠 밤잠 다 안겨서 자고 그리고 수유가 많이 힘들어서 아이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수유가 많이 힘들어서 수유하는 시간이 거의 안고 수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수유할 때 평균 1시간이고 길면 2시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재택을 한다고 해도...(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등하원 도우미로 바꿔서 구할 것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제가 주말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럴 때 당직일 때가 한 번씩 있어서 집에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남편이) 조가 바뀌어 가지고 격주로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할 때도 있고요. 제가 새벽까지 할 때 남편이 퇴근이 늦거나 혹은 당직이 있을 때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4)

[간헐적 휴일근로 가구] (유아2/어린이집 이용가구)

빨간 날(휴일)이라든지 일요일 빼고 공휴일 있죠. 그런 날에는 신랑이랑 같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에 민간(육아도우미)을 이용하고요.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으로 보내고 있고요.(아이돌봄서비스_유아2)

영아2는 어린이집 대기 중이고, 영아1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이용가구인 영아1은 입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오후 5시경에 대부분 아동이 하원하여 오후 4시부터 6시 까지 계속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영아1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되었으나 면접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영아2)

어린이집은 제가 사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2023년 12월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복지 앞두고 10월 경에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한 군데는 있겠지 했는데, 동네에 20군데를 전화를 돌렸는데 단 한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약간 옆 동네에다가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상황이었고, 당장 회사는 가야 되니까 그런 차에 올해 신학기에 작년 2월쯤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희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트 앞 단지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그때 그려면서 옮겼거든요. 움긴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 그렇게 되면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간연장반 같은 것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 또래들은 같은 반 애들은 거의 다 (오후) 4시쯤에 하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만 (오후) 6시, 7시까지 맡기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11월부터 이모님(민간 육아도우미)을 구해서 쭉 쓰게 됐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2)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구] (영아1)

아이돌보미 제가 대기를 작년부터 걸어놨었는 데 갑자기 6월부터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화가 와서, 다음 주부터는 그 분으로 써보려고 했거든요. 면접 없이 그냥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도의 면접은 없다고...(민간 육아도우미_영아1)

[가정 내 양육 선호 가구] (영아3, 유아4)

영아3의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아4는 첫째 자녀가 28개월 까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다가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둘째(7개월)가 출생하여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당연히 저도 한 살 두 살까지는 그리고 싶지는 않은데(기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기가 **대여섯 살이 되어** 사회성이 높아지면 집에서 이모님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더 오래 (기관에) 보낼 것 같아요...** 아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질 시기가 오면, 저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민간 육아도우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맞벌이 가정 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기 싫어서 28개월 동안 베이비시터 분을 모시게 됐고요.....둘째를 그 사이에 낳아서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갔다 오면 봐 주시고, 그전에는 둘째를 봐주시는 형태로....(민간 육아도우미_유아4)

반면에 영아1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으나, 영아를 장시간 기관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앞서 다룬 가구와 수요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데 너무 장시간을 영아를 두기에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빨리 찾아오려고 하는 거죠....야근은 거의 없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1)

나) 유관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수요: 서비스 이용 중단 여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시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연장된다고 해도 특히 영아자녀의 경우(영아2, 영아3)는 장시간 보육 기피가 두드러지며, 유아1은 해당 시간에 남은 아동이 소수에 불과하고, 영아2는 연장보육시간에 자녀가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유아1은 소수의 아동만이 남겨져서 자녀가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였다. 반면에 영아3은 유아가 되면 연장하여 기관을 더 길게 이용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변화 없음] (영아2, 3/유아1)

저는 기관에 너무 애를 하루 종일 맡기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서, 거의 10시간 정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것도 너무 애기인데...그렇게 맡기는 게 편치 않아서 차라리 집에서 이모님이랑 있는 게 애가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우미를 쓰는 것도 있어요...
(오후) 4시 이후에 뭐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애들을 몰아 놓은 채로 그냥 애들이 있다 정도인 느낌이라서...그래도 이모님(아이돌보미)은 저희 애 하나만 보고서 책도 읽어주고, 놀이터에서 놀아 주시고(민간 육아도우미_영아2)

(연장보육이) 있다고 해도....아기가 아직 내년 돼 봤자 이제 한 살 좀 지난 애인데 개가 어린이집에서 이미 7시간을 있었고, 장난감,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미 한참을 놀았잖아요. 그

랬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집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오후) 4시부터는 집에 민간 (육아) 도우미 이모님을 모셔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원래는 오후 6시까지 돼요. 오후 5시 반에서 6시까지 됐는데요. 이 지역 특성인지 오후 3시면 (기관에서) 하원을 다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는 데....발레 수업 가고 수학 가고 영어 가고 태권도 가고 글짓기 가고 여러 가지를 가니까, 놀 아이들이 안 남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아이들이 노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안 다니는 애들이 둘, 셋 35명 중에 둘, 셋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여행 가죠, 놀러 가죠, 아프죠, 그러면 저희 아이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간 시터분(육아도우미)이 데리고 미술학원 데려다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따로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보내고 있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1)

[서비스 이용 변화 있음] (영아3)

당연히 저도 한 살 두 살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기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애기가 **대여섯 살이 돼서** 사회성이 높아지면 집에서 이모님이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더 오래 보낼 것 같아요...** 애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질 시기가 오면, 저는 민간 육아 도우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2)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활용가능성 제고에 따른 수요 변화: 서비스 이용 중단 여부

자녀돌봄 시간지원의 활용 가능성은 여성의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추가 출산을 가능하게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아3은 자녀돌봄을 위해 야간에 일해야 하는 직장에서 유치원 하원 이후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약 2시간(17:20~19:20) 이용하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변경하였고, 유아4는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원래는 프리랜서 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후부터 일을 해서 학원을 하다 보니까 밤에 10시 11시까지 다녀야 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장을 옮겼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3)

지금 저희는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고요. 남편 기업이 공기업이고 저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력상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더 커리어를 유지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요, 공기업은 사실 육아휴직 써도 안 써도 눈치 안 받잖아요. 저는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남편이 육아휴직을 못했다면 둘째를 안 낳았을 것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4)

(3)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수요 변화: 서비스 이용 변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영아3과 영아4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급여가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들 가구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실수요자임을 알 수 있다.

이모님(민간 육아도우미) 비용에 도움은 됐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부모급여가) 없었어도 이용했지 않았을까 싶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아이가 아무래도 보호가 필요한 나이이다 보니까 부모급여가 없었다고 해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계속 이용할 거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4)

(4) 국가등록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이용 의향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채용 시에 신원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유아2, 5). 이에 덧붙여 건강검진 기록,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유아1, 3).

제가 알아볼 수도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장이 돼 있다면 당연히 거기 검색이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을 구해서 매칭이 잘 돼서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건 없죠..(민간 육아도우미_유아2)

아무래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사설로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범죄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요구를 하더라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거를 다 보장을 해 주는 거고 국가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어느 정도는 깔고 가기 때문에....국가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 하면 충분히 이용할 것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5)

그분들 건강검진은 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건강검진 다 받고 튼튼하다 그랬는데...저는 대기가 길어져서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을) 못 받았지만, 민간 업체를 이용했을 때 75세 이상이신 분들을 소개시켜 주셨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는 범죄 기록 그 다음에 건강 기록, 경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1)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 제가 만났던 그 시터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고 자기 교장 선생님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 그러셨구나, 교육자시구나 했

는데 아이를 보는데 있어서는 정말 꽉이셨어요. 아기를 보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교육자 출신이 아니셔도 아이는 잘 보시는 분들...(민간 육아도우미_유아1)

일단 자주 변경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민간 (육아도우미)로 하다 보면 짧게 하면 한 달에 끝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한 명이 보게 되면.(민간 육아도우미_유아3)

다)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으로는 범죄 이력 등 채용 시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유아1), 정부지원 요구로는 비용지원이 주를 이루었다(유아2, 3, 4).

[채용 시 신원보장의 어려움] (유아1)

내가 이 (민간 육아도우미)도우미를 쓸 때, 국가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 이런 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시티(민간 육아도우미)라면 누구든지 **부모 한테 등본을 줘야 되는 범죄 기록을 (확인) 받아야 된다**.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1)

[정부 비용지원] (유아2, 3, 4)

경제적인 부분이 들죠.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가 잘 정착이 되고 제가 안심하게 보낼 정도로 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제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부담이 덜 될 거고... 경제적인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민간 육아도우미_유아2)

저도 최근 들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이) 줄어든 건데 원래는 주 5일을 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3시간씩 매일,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정부가 바우처 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3)

월 평균 36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비용 보조가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아예 지원은 못 받는데, 조부모님 소득이 불안정하신 상황이어서 조부모님께 보조금 드려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민간 육아도우미_유아4)

3)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가) 서비스 이용가구 및 이용 특성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정 내 양육가구의 고립된 육아와 주양육자의 질병 치료 등으로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구, 어린이집 입소 대기 가구, 그리고 임시직 등으로 비정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가구에서 대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로시간에 간헐적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자녀가 어려서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이용 등기로 지목하였다.

[고립육아 가구] (시간제보육1)

제 남편이 지금도 사실 집에 없거든요. 오늘은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다시 출근한 상태예요. 자영업이어서 돌아다니는 운수업이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도 얘기를 돌봐주는 시간이 평상적인 보통의 아빠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긴 적어요. 주말에는 100%로 얘기한테 조금 육아를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평일에 이게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얘기는 너무 예쁜데.(시간제보육1)

[주양육자 질병 치료] (시간제보육5)

저는 아이가 둘이고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7개 월이에요. 제가 아기 키우면서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되면서부터 바로 맡기기 시작했었습니다...7월에 복직 예정여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시간제보육5)

[어린이집 적응 필요 아동] (시간제보육1)

어린이집 입소가 희망한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입소 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얘기는 2024년 3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육아휴직 쓰고 복귀하면서 얘기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대기가 빌생해서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는 못하고 찾다 보니까...어린이집 입소를 못해서 현재는 퇴사를 했지만...재취업하게 되었을 때 어린이집 적응이 잘 되게 아이를 (시간제보육기관에) 보내고 있어요.(시간제보육1)

[유연한 근로시간에 따른 간헐적 이용 필요 가구] (시간제보육2, 3, 4, 6)

저희가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많이 맡겨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아이를 온전히 다 보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9시부터 6시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고 오후에 출근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제보육을 이용해서 그 고정적인 시간을 맡겨 놓으면 그래도 그 외 시간에 조금은 어머니한테 맡길 때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시간제보육2)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이기는 한데, 탄력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내고 싶은 시간이랑 데리고 오고 싶은 시간을 정할 수 있어서 현재는 이용하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어린이집에 풀로 다니는 것보다 시간제가 좀더 저렴하긴 하잖아요.(시간제보육3)

저는 알바식으로 잠깐 일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제 근무시간에 맞게 제 편의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그리고 제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닌데 어린이집 보내기는 부담되고....그래서 저는 소액이라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제 어린이집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10시에 맡길 때도 있고 2시부터 4시는 자주 이용하는 시간이고요.(시간제보육4)

남편이 육아를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허리가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는 애가 통잠을 자서 밤에는 할 수 있는데 낮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보육도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몇 번 보냈어요.(시간제보육6)

나) 유관 정책에 따른 수요 변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선호와 이용비용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시간제보육3번 가구는 시설, 시간제보육4와 6은 아이돌보미를 더 선호하고, 시간제보육1은 아이돌보미를 현재 이용 중인 시간제보육과 상황에 맞게 병행하여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서비스 이용 변화 없음] (시간제보육2, 3, 5)

저는 제가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게 더 낫지 누가 와서 같이 아이랑 일대일로 있는 거는 제가 싫어요... 집단이 애 친구들도 만들 수 있고...(시간제보육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가능하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아침 7시 반부터 6시 반 7시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봄은 원래부터 생각 안 했던 게 비용 부분에서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어서 아기가 어린이집 들어간다면 거기에 주력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시간제보육5)

아이 연령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6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해서 집에서 아이 케어하는 거 위주로 할 것 같고요. 시간제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그

런 시기를 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둘쯤이나 이후에는 시간제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불안하기도 해서 어린이집을 좀더 신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게 결정하는 데에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시간제보육2)

[서비스 변경 의향 있음] (시간제보육1, 4, 6)

얘기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집단생활이어서 친구 사귀어서 좋지만 **전염병에 노출이 되기도 쉬우니까....** 저는 믿을 만한 돌보미 선생님이 오신다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돌보미 선생님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시간제보육4)

아이돌보미가 계속 같은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올 수 있었다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까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예요.(시간제보육6)

저 같은 경우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아이돌보미를 쓰고 싶었는데 그게 어플에서 봤을 때 신청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원래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경우라서...지금 시간제보육이 너무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가끔 제가 약속이 있다거나 이럴 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번거로울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얘기랑 같이 준비하고 하는 게,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막 뚱을 싼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돌 이후로는 엄청 걷기 시작해가지고 막 갑자기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커요.(시간제보육1)

다)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요구로는 다음이 제기된다. 시간제보육1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하고 있어서 급식 제공과 키즈노트 등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을 불만으로 언급하였으며, 시간제보육2는 해당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 실정이므로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_영아1과 3은 거리가 멀고, 혼합연령 반 편성에 따른 서비스 질을 우려하였다.

[인프라 유형에 따른 운영 방식 일원화] (시간제보육1)

저도 대체로 다 만족스럽기는 한데... 다른 어머니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보내기 시작하셨나 봐요.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내는 거라서 급식이랑 키즈노트가 아예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얘기 엄마는 키즈 노트도 일반 어린이집처럼 작성해서 보내주고 밥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시간제보육1)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그게 저는 아이사랑 어플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아이사랑 어플에 들어가면 시간제 보육 신청하는 게 나와 있는 거라서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게 되게 간단해 가지고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불편했던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 시간에 이용을 하고 싶어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클릭을 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어요.(시간제보육1)

[제도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시간제보육2)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시스템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등록 신청이 안 돼서 전화로만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다 맡길 수가 없었고... 어린이집 검색을 했을 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어플이 개발된다거나 아니면 그 페이지가 더 쉽게 신청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시간제보육2)

[지리적 접근성 보장] (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무려 세 군데나 있었는데 세 군데 다 거리가 그 정도였어요.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로 20분이면 출퇴근해야 되는데 아기를 거기(시간제보육시설)에 놓고 가는 게...(만약에 도보로 5분 거리 이 정도면) 그랬으면 어린이집 대기가 계속 안 잡혔으면 저는 이용했을 것 같아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3)

[시간제보육반 편성 기준 개선] (민간 육아도우미_영아1)

(6개월 아이부터 36개월 아이가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싫기는 하죠. 우리 애는 아직 너무 영아인데 24개월 36개월은 사실 엄청 다르잖아요. 발달에 차이가 있으니까 좀 거부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시간제보육시설에) 맡기기 싫었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거기다 맡긴 거거든요.(민간 육아도우미_영아1)

2. 공급자 면담조사 결과: 서비스 공급 관련 쟁점과 개선요구

V

가. 조사 개요: 참여자 특성

공급자 조사는 수요자 조사에서와 같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유형별로 3개 그룹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의 경우는 연령이 30~50대로 다양하고, 경력은 9년

이상이며, 소속 기관의 아이돌보미수는 150~311명이다.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의 운영자는 30~60대로 연령이 다양하지만, 정보제공업체의 운영자는 모두 30대로 연령이 낮았으며, 유관 분야 경력은 5~25년으로 다양하게 분포한다. 등록 인력 또는 회원 규모는 격차가 커서 100명~80만명으로 나타나며, 업체 인력 규모는 3인~105인으로 차이를 보여 이들 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기관 소재지가 서울, 강원, 경기 지역이고, 유관 분야의 경력은 15년 이상이며, 시간제보육반수는 1~2개로 나타난다.

〈표 V-2-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참여자 번호	응답자			업체/기관 특성	
	연령 (만)	성별	총 경력	소재지	등록 아이돌보미 수
1	53세	여	9년 9개월	경기	311명
2	42세	여	13년 5개월	서울	236명
3	38세	여	16년 10개월	서울	150명
4	47세	여	15년 10개월	충청북도	265명

〈표 V-2-2〉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2: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면담 차수	참여자 번호	응답자			업체/기관 특성		
		연령 (만)	성별	총 경력	업체 유형	회원 규모	지원 규모
1차	1	37세	남	6년 10개월	정보제공업	3,000명	43인 (상근11/비상근32)
	3	61세	남	25년	소개업	2,500명	16인 (상근15/비상근1)
	4	59세	여	18년	소개업	100명	105인 (상근5/비상근100)
2차	2	37세	여	14년 1개월	정보제공업	80만명	36인 (상근33/비상근3)
	5	33세	여	5년 11개월	소개업	40명	3인 (상근2/비상근1)

〈표 V-2-3〉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_공급자3: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면담 차수	참여자 번호	응답자			업체/기관 특성		
		연령 (만)	성별	총 경력	소재지	인프라 유형	운영 반수
1차	1	60세	여	25년	서울	육아종합 지원센터	2개
	2	55세	여	25년 9개월	서울		1개
2차	1	52세	남	15년 6개월	강원	어린이집	1개
	2	47세	여	22년 10개월	경기		2개

나. 서비스 유형별 공급 특성과 개선요구

1) 아이돌봄서비스

가) 서비스 이용가구 특성과 추이 변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상은 종일제 이용가구의 급격한 감소와 시간제 0세아 이용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 원인으로는 부모급여와 자자체의 조부모 돌봄수당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이 지목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 2, 3, 4). 반면에 영아돌봄수당 도입으로 영아 시간제돌봄의 접근성이 제고된 점도 언급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4_서면조사결과). 종일제 이용가구의 감소로 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수요가 급감하고, 시간제돌봄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시간을 모두 지원받고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연령에 이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와 동시에 대기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양육가구의 이용 추세도 언급된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 그 밖에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쌍생아와 다동이 가구의 이용 증가도 변화 양상으로 거론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감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2, 4)

대기자가 300가구예요. 그러면 400~500명의 아동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저희한테는 문제고 우리 지역은 평균 (인구)연령이 30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동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저희는 이용하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36개월 이하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800명의 아동 중에 한 달에 800명 아동 중에 2명만 영아종일제를 이용을 해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중간 시간대의 수요가 급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지원이)

960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용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마'형으로 이용해도 이득인 경우가 더라고요. 저희 이용자 중에도 영아종일제로 이용한다고 해놓고 시간제를 쓰다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형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부모급여를 포기하는 것보다 '마형으로 나머지 쓰고 1월에 생기는 960시간을 소진을 하고 돌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 더라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영아종일제 이용가정이 3가정 밖에 지금 없어요.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50~60 가정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종일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었는데...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이 960시간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굳이 영아종일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도 밤을 거 다 받아가면서 또 시간제를 1년 동안 나눠서 쓰면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36개월 이하 아이들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36개월 이하인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영아종일제 쪽에서 시간제로 많이 빠졌어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새벽/야간 이용가구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저희도 영아아종일제가 2가정 밖에 없거든요. 시간제로 전환할 때도 사실 96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2시간에 해서 써야지 맞아요... 올해 지금 7월인가 6월부터는 시작 시간이 5시 반이나 5시에 시작하셔가지고 3~4시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대개 끝났는데, 지금은 22시, 23시 가는 상황도 있고요. 저희가 **주말 야간 새벽에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서...**(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상시]이용 가정 내 양육가구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특이한 점은 직장생활을 하는 이용자는 위낙에 지금도 많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나 혼자 아이 보기 힘들다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용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중에 연계가 힘들다 보니까 '어머니 그러면 등하원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 시간을 조금 피해서 신청을 해 보세요' 라고 권하기로 하고...(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쌍생아/다자녀가구 이용 증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다둥이들 두 자녀, 두 쌍둥이, 세 쌍둥이인 친구들도 요새 제법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나)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격차, 일시연계 이용가구의 이용자 수와 준수의 어려움과 정기 이용 서비스 연계의 준수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

었다. 특히 다수 영유아 가구가 유입된 외곽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아이돌보미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미연계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일시연계 이용가구의 경우는 온라인 방식으로 매칭되어 정기 이용가구와 같이 실무자로부터 이용관련 수칙을 숙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돌봄범위 외 요청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대응 방안으로는 주요사항에 대해 일시연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4_서면조사결과).

일시연계(서비스)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정기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아무리 서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휴게시간이라든가 신청된 아동 이외에 다른 아동이 있는지, 성인 보호자 이런 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는데, 일시연계는 엄마가 그냥 AI로 해서 선생님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성인 보호자 인계가 안 되는 상황 갔더니 신청된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적발 건들이 많이 발생 되거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또한 일시연계서비스의 공급 확대로 만족도가 가구의 정기 이용 전환을 희망하는 가구가 증가한 점도 서비스 연계의 쟁점으로 제기되었다(서비스제공기관3_서면조사결과). 원칙적으로 정기 이용의 경우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어려움이 제기된다.

(2) 개선 필요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구 중 ‘가’, ‘나’형의 정부지원 시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가, 나 형과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는 학령기 아동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해당 연령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심야시간의 경우는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4_서면조사결과).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200% 이상)와 미지원 대상자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우선순위 체계를 정비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가점 부여와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하였다(서비스제공기관1_서면조사결과). 맞벌이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 가구를 위주의 서비스

공급이 강조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 2). 이는 증가하는 대기규모와 양육 공백 가구가 아닌 가구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등 실제 필요한 가구를 원활하게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실수요자 위주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2)

(양육 공백) 우선순위에서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뭐 이런 계층 밖에 없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도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정부지원 받는 가구가 우선순위에 없단 말이에요. 점수가 모두 5점인데 거기서 맞벌이도 5점 다자녀도 3점... 정부지원받는 가구도 점수를 줬으면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정부지원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민간 서비스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이 사람 소득이 이 수준이구나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이돌보미들이 이용자가 무슨 (소득기준) 유형인지 모르는 데, 알게 되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1)

한편 일시연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따라 정기 연계 이용가구와 아이돌보미 선택권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여 대기기구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단기 서비스 이용가구에서 정기 이용가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대기기정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서비스 유형의 관계 등에 관한 일관된 관리 방향이 정립 및 적용 지침을 요구하였다(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3_서면조사결과).

[정기이용과 일시연계 지원 원칙 및 체계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시연계가 들어오면서 대기 기준이 되게 많이 틀어졌거든요... 양육 공백에 대한 가점이랑 정부지원 이런 걸 저희가 제안을 하긴 하지만, 결정은 사실 가정이랑 선생님이 하신단 말이죠....일시연계로 이용을 하시면서 선생님이랑 서로 맞으니까 나 이 분이랑 정기로 이용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비율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4)

서비스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돌보미당 전담인력 비율을 축소하여

행정 업무 과부하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즉. 현재 아이돌보미 50명당 1인을 40명당 1인, 30명당 1인으로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업무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_서면조사결과). 이와 더불어 서비스제공기관의 복수 지정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_서면조사결과).

(서비스제공기관 확충: 서비스제공기관1, 3, 4)

현재와 같이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별도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력관리 및 저우 측면에서도 센터 직원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였다(서비스제공기관1, 3, 4).

가족센터 안에 정직원으로 있어도 별도 사업을 하는 사람, 한시적으로 하는 별도 사업 담당자들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지침이 별도로 있으니까...**(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가족센터 안으로 붙일 거면 수당체계 이런 것들은 기본 호봉 테이블이야 같기는 하지만, **기타 수당, 재수당 같은 게 차이가 있고, 저희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팀장이랑 전담 그리고 지원인력밖에 없어요. 중간에 선임 테이블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센터와)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애로사항이 있고...전국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가족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보조금이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아이돌봄사업만 유독 별도 사업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가족센터 운영 지침 처럼 기관에 대한 운영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이 같은 어려움으로 가족센터에서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독립 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이때 예산은 인건비는 사업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3).

저희가 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면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광대한 사업을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 변화되어 가고, 노조도 그렇고...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될 때 센터장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사업비를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 항목으로 입력이 되다 보니까, (독립) 위탁을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정확하게 사업비랑 인건비랑 운영비는 나눠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서비스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아이돌보미 양성이 힘든 외곽 지역의 경우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서비스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서비스제공기관4_서면조사결과).

외곽 지역이 산업도시라든가...많이 변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쪽에 이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엄마들은 많은데 중장년 여성들은 없으세요. 시내권에서 선생님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바로 옆에 옆 동네에 바로 옆에 아파트 근처에 3시간이나 4시간짜리 활동권이 들어왔어요. 원 거리에 대기가 오래된 집을 연결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바로 옆(인근지역)에 바로 (연계)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특례적용을 해서 20km 이상일 땐 최대한 하루에 교통비 2만 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니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조금 더 원거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면 단위가 거리들이 멀기 때문에 이동시간이 기본적으로 10km 이상은 당연히 된다고 하더라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아이돌보미 채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2, 3, 4)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아이돌보미)사람들이 있어요. **강요할 수가 없고 골라서 가거나 본인 입맛대로 골라서 가는 아이돌보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곳이라면 최소한의 급여를 보전을 해 주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게 맞지가 않을뿐더러....(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1)

저는 (최소 활동시간 보장을) 약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이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신선생님들이 연차가 없다 보니까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취소를 했을 때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대 보험 때문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60시간 (활동)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데. 또 60시간 활동을 못하면 그다음 연차가 또 다음 달에 안 생기는 구조이다 보니까...이용가정 사유로 갑자기 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체 가정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이 경우는 최소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입장이고요.(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

최근에 일시연계도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인이 찾으면 (활동)할 수 있는 데 “나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더는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

최소 활동시간 보장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을 했을 때, 아이돌보미 업무는 아이를 돌보는 거 이외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교육으로는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

지만....보장을 받으시려면 이 분들한테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야 되고...(중략) 근로거부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고...(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3)

2) 민간 육아도우미

가) 서비스 공급 및 운영관리 현황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인력관리 방식 등은 매우 다양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유료 소개업과 온라인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정보제공업2에서와 같이 특정 대상(영아 가구)에게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개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유료 소개업을 운영하는 민간3의 경우도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정부지원사업 등 돌봄 수요에 맞추어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는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2는 서비스 운영 방식 다양화의 배경으로 이용단가와 연동되어 있는 업체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였다. 즉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는 소개업체는 한계가 있어서 서비스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부가세를 부모에게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용가구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쪽은 사실 저희가 구축해 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서요. 쉽게 얘기하면 종일자라든지 뭐 입주라든지 이런 건 주로 소개업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파트타임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플랫폼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민간3_소개업체)

다양한 어플이 많이 개발이 되고....저희도 지사도 쥐 보고 다른 지역도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서비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플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경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저희도 이용자수가 아주 점차적으로 줄었어요.(민간5_소개업체)

저희는 직업정보제공업도 하고 있고 직업소개업도 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중략) 소개비는 3개월에 30%를 넘으면 안 되고....그 말은 그 이후로 관리를 하면 안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이돌봄은 계속 이슈가 생기거든요....저희는 서비스업으로 관리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부가세예요. 부가세는 부모가 더 내야 돼요. 직업소개업은 면세에 직거래이고, 서비스업은 부가세가 포함된 전체 비용을 부모가 내야 업체가 3개월 이후로도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이 같은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돌봄인력의 자격이나 관리 방식도 보다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 인력을 직접 소개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교육원을 병행하여 운영하여 재교육에 주력하는 업체가 있고(민간4-소개업체), 보육교사 자격 등 돌봄 관련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그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기도 한다(민간2_정보제공업체).

저는 인력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제가 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원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어떤 곳에서도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산모 쪽일지, 시터(민간 육아도우미) 쪽일지, 가사 쪽일지....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민간4_소개업체)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가 풀로 등록할 때 초기 교육을 받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보수교육을 하면서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새로 나온 육아용품, 어떤 캠플레이인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상도 드리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이 사람(민간 육아도우미)이 경험이 진짜 많고 잘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어디 가도 잘했던 사람인데 어떤 고객하고는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그냥 이 사람과 안 맞는 고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객의 육아 방식과 고객이 원하는 돌봄과 가사 형태를 잘 수행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기는 나는 이렇게 안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나쁜 시터가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건강관리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들마다 나는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세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게다가 아이돌봄 이외에 가사서비스와 산후조리서비스를 위주로 인력을 활동하고 있어서 인력 관리의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돌봄 인력의 고용상 지위도 달라서 민간1의 경우는 정부인증사업(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참여하여 직접 고용 인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돌봄 인력이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2에서와 같이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원보장과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는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고용 직원이 한 105명 정도 있어요. 저희는 가사도 하고 산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시터랑 직업소개업도 하고 있어요. 베이비시터 쪽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방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소방관들은 3교대라서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민간4_소개업체)

저희는 32명 정도 직접고용한 인력이 있어요. 그 인원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 15시간에서 30시간 보장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직접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민간1_소개업체)

시터들(민간 육아도우미)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린 아기를 보고 싶어 하고 그 어떤 사람은 좀 큰 애들을 우리 밥 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는)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AI로 만들어 놔서요.(민간1_소개업체)

(민간 육아도우미)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고 내국인, 서류로 인증할 수 있고, 프로필 앱 활용해서 부모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후기를 통해서 자율경쟁하는 구조이고... (중략) 저희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는 못하지만 이외 할 수 있는 것들, 대면 면접도 보고,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우면 화상 면접하고, 서류 같은 거 다 받고, 건강 인증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이용료 부과 방식도 업체의 성격과 영업 방향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테면 민간1의 경우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외 업체는 이용자와 돌봄인력이 자율적으로 단가를 확정하도록 허용하되, 단, 업체가 정한 돌봄인력의 요건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즉, 소개업의 경우는 최대 수수료 규제가 적용되지만 정보제공업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용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민간5에서와 같이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교육 및 재교육을 의무화하기 힘든 실정이나 이용자 후기를 위주로 인력을 관리하고 교육을 유도하기도 한다.

최대 수수료가 20%라고 하면 리뷰가 좋거나 저희 활동에 충성도가 높은 가사 관리사나 베이비시터들한테는 수수료를 감해주는 거예요.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부분은 없고) 기본 1년이고 리뷰와 별점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민간1_소개업체)

아이돌봄만 한다 그러면 얼마, 가사를 포함하면 얼마 이렇게 (이용료가) 정해져 있고요. 플러스로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어요....아이가 2명이거나 쌍둥이거나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저희는 비용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를 한 명 보는 것과 2명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2명이어도 쌍둥이와 일반 2명은 다르거든요. 강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를 하면 강도가 당연히 세지니까 추가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 제공시간은) 기본 3시간 이상이고요. 2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2시간 하면 3시간 만큼의 기본급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민간1_소개업체)

(근로시간 때문에 지금 단가가) 1천원, 2천 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분의 역량이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하면 우대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경력도 물론 중요하죠. 경력이 늘어나면 시간당 천원이라든가, 그렇게 (급여) 인상은 당연히 있습니다.(민간4_소개업체)

기본적인 서비스 요금 기준표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야 어머님들이 신뢰,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평가가 좋고 이제까지 경력이 많고 저희 기관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하면 이 인력 분들도 본인이 받고 싶은 임금 수준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은 그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이 분의 능력을 저희가 판단하고 어머님께 제시하고 어머님이 오케이를 하시면 (민간5_정보제공업체)

한편 이러한 업체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용자 추이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민간5는 영아종일제 돌봄의 언급하였으나, 소개업을 운영하는 민간5의 경우에는 입주 방식의 영아종일제 특히 0세아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하였으며, 민간2는 입주형 영아가구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으로 해당 수요의 증가를 강조하였다.

종일은 저희는 많이 줄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가 때문에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민간4_소개업체)

2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가기 전에 종일 또는 입주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정부는 입주는 안 되기 때문에...엄마가 너무 아픈 경우, 아이가 밤에 아픈 경우 그리고 애가 쌍둥이인 경우 쌍둥이인데 첫째가 있는 이런 집들이 입주로 시터 분을 원하는데 사실 찾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2022년 정도에 처음에 시작 했고요. 종일제 입주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소규모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 돌봄 만 0세에 대한 종일제 수요가 굉장히 크고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연령대가 거의 영아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보통 어머님들이 36개월 이상이 되면 사교육을 시작하세요. 사실 36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12개월 미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산모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연결선을 보니까.(민간5_소개업체)

한편 공공 대비 민간 서비스의 강점으로는 신속한 매칭과 조정, 부모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된다. 특히 신속한 서비스 매칭은 업체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점으로 언급되었다.

빠르게 매칭이 되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요. 예를들어 풀타임으로 쓰시려는 고객들은 길게는 한 달 동안도 고려해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의 특성 상 단기간 당장 내일 며칠 안에 몇 시간 쓸 거면 시간이 제일 빠른 게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일자리가 없는 시터들을 빨리빨리 앱에서 추천해 버리고(민간1_소개업체)

저희가 앱으로 되게 파트타임 시간제로 매칭하는 거는 너무 잘 되고 빨리빨리 되는데 풀타임 종일 그리고 좀 검증된 그리고 신생아 아이들은 특수성이 또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컴플레인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 저는 사실 사업 초반에는 외면하다가....거기 너무 힘든 시장이잖아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신속한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게 최우선적으로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전담 케어 인력이 바뀌지 않는다.(민간3_소개업체)

또한 소개업체에서는 돌봄 인력은 물론이고 서비스 내용을 부모 욕구에 맞게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과 배정된 돌봄 인력이 변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된다(민간3_소개업체). 또한 대규모 회원을 보유한 민간2과 민간3, 5는 다양한 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인력풀과 서비스를 강점으로 제기하였다.

어머님들이 만약에 이용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셔요.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고, 저희랑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보다 **공공보다는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고 유연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좋은 편이 있어요...** 일단 맞춤 상담, 맞춤 피드백, 바로바로 연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모든 상담을 중앙에서 다 하고 있고, 그걸 바로바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민간5_소개업체)

부모 상황에 따라서 맞춤으로 저희가 케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베이비시터가 어느 집에 가면 최고로 좋은 베이비시터고 또 어떤 다른 집에 가면 안 좋은 시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용자 관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오요. 기대치가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는 부모와 제공인력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민간3_소개업체)

인력풀이 되게 많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돌봄인력)의 (선호) 의사를 바꾸기 되게 어렵고, 부모님 수요는 사실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이 다른데, 풀이 많아야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상담할 때 플랫폼은 그냥 유선 상으로 하지만 유료 직업소개업을 베이스로 하는 테는 거의 일 대 일 상담을 꽤 오래 하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베이비시터는 한 번 소개해서 그걸로 끝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아 케어는 변동이 되게 커서 유연성을 중요시해요. 소기업 쪽에서는 인력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 인력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중략) 만약 베이비시터가 아프면 다른 베이비시터를 빨리 구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유연성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민간3_소개업체)

나)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민간 육아도우미 운영자는 이용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용 고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인력풀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적관리 노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1) 서비스 운영관리의 어려움

[이용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민간2, 3)

문제는 고객은 늘어났는데 고객들이 쓰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쓰는 금액이 평균 한 100-110만원 정도 썼었는데 코로나 1년 반쯤 지났을 때는 거의 50~60만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이전 대비)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민간2_정보제공업체)

(최근 이용료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 것은 기본적인 평균 금액이고요. 어떤 회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면 되게 많이 받는 곳도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 내용은) 자격증 경력 이런 거예요.(민간3_소개업체)

[인력관리의 어려움] (민간1, 2, 3, 4)

첫날 (이용부모) 대면 때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개인 파일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보건증이 있고, 범죄이력 조회가 있고 그것까지.... 요즘 워낙 이용자들 까다로우니까 한 눈에 보시고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민간4_소개업체)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을 그냥 가도 되는데 이 베이비시터는 약간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소기업이라고 그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신경 써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질이 곧 업체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특히 안전사고 라든지 아동학대 교육은 업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민간3_소개업체)

(채용할 때) 저희가 만들어놓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그다음에 연간 8시간 정도 보수 교육을 시켜요. 보통 한 2~3회 정도 걸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사업을 오래 했지만 그 교육 효과가 딱 3개월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뭐 몇 백 시간 시켜도 3개월 지나면 완전히 리셋이 되어 버려요. 이

게 루즈해지면 사고로 바로 연동 되거든요. “오늘 (근무) 들어가시죠? 아기 조심 하세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중략)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만약에 안전사고가 한 번 나잖아요. 그럼 문 닫아야 돼서 굉장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요.(민간3_소개업체)

(교육을) 듣고 안 듣고를 제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앱에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고객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든 교육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수한 사람들은 해당되는 배지 같은 게 달리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하는 베이비 시터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 목록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는 걸로 고객들한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있으면 당연히 잘 선택이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다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서.....(민간1_소개업체)

저희가 이제 범죄 기록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고, 건강도 보건소 가서 장티푸스랑 전염에 관련된 것들 다 확인해서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 확인해서 업로드 되면 다 표시가 됩니다.(민간2_정보제공업체)

(2)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정부지원 요구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에서는 종일제 영아돌봄은 높은 비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돌봄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매칭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이를 서비스를 민간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비용지원을 요구하였다.

[영아돌봄 지원] (민간4)

저희는 주로 보는 아이들의 대상이 영유아예요. 그래서 24개월 이하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이 너무 일찍부터 기관에 보내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보미를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 24개월 이하 아이를 민간 쪽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너무 어릴 때는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민간4_소개업체)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민간1)

고객이 만약에 어떠한 신청서를 올리게 되면 저희는 자동으로 다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시터(민간 육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공고를 올리잖아요. 요건을 맞춰서 확인을 누르면, 예를 들어 놀고 있는 시터들에게 다 알림이 가요. 그 알림이 딱 맞는 사람이 잡아서 지원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몇 시간 안에도 되니까...(민간1_소개업체)

[비용지원체계 이원화: 가구소득에 따른 서비스 공급 체계 이원화] (민간3)

신속하게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이

런 거는 민간이 담당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소득수준이 낮으면 비용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이 가구를 공공 분야에서 관리 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민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민간3_소개업체)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서비스 연계] (민간4)

올해 바뀐 지침 중에 하나가 산후관리에서 어머니가 개입을 해 주면 관리사님하고 동일한 급여를 줬어요. 올해 획기적이었어요. 이렇게 폭증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신청할) 줄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조금 들어올 줄은 알았는데 정말 교육생의 60% 가 넘어요 어머니들이 들어오는 게. 엄청 들어왔죠. (공공) 아이돌보미가 해결을 못하는...너무 웨이팅이 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민간4_소개업체)

[정부지원에 따른 이원화된 운영 방식 전환] (민간3)

업체들이 이 사업(정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정부 위탁사업을 맡게 되면) 모든 업체가 투 트랙으로 (운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부 거랑 민간 이랑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료직업 소개하면 기준에 하던 그 트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공 트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트랙 중에 내가 편하고 소득이 많은 걸 진행 할 거 아니에요.(민간3_소개업체)

3) 시간제보육서비스

가) 서비스 공급 및 운영관리 현황

(1) 서비스 이용가구 특성 및 추이 변화

우선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이용가구의 특성으로는 양육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보호자의 휴식, 가정 내 양육자의 급작스러운 사정(병원 방문, 장례식 등), 부모의 질병이나 치료 등 건강 문제, 이용기관의 휴원이나 방학 기간, 부모의 비정기적 근로 또는 재택근무, 장애자녀 치료를 위한 보호자의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시간제보육1, 시간제보육4_서면조사결과).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중복지원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직 중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시간제보육4).

장애아동을 형제로 둔 부모님이 그 치료 시간에 이용하시기도 하고요....나는 딱 4시간만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 데 정규반은 가고 싶지 않아서 시간제보육반으로 그 시간을 선택해서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이 아이를 긴급보육에 맡기고 본인의 병원 진료라든지 필요한

사회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한편 최근 들어 이용 아동의 연령이 기존의 1~2세에서 0세아로 하향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시간제보육1, 2, 4). 이처럼 보육아동의 연령이 다양화됨에 따라 시간제보육1과 2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였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보육반의 경우에는 센터 직원이 보조교사를 대신하여 투입되고 있다.

(과거에는) 6개월 (아동의) 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굉장히 상승했어요. **6~9개월까지 아동의 이용이 수직 상승했어요...** 이전에는 18개월에서 26개월 사이가 가장 많았거든요. 7년~8년간... 2년 전부터 6개월 들어설 때부터 예약이 바로 들어와요. 예약 확인을 하면 이 아이 5개월인데 했는데 그 날로 딱 6개월이 되는 거예요....(중략) 6개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예약을 시작해서 현재 6에서 9개월까지의 아동 이용 수가 많고요. 이전에는 **16개월에서 24개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10시에서 3시까지 이용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용하는 **6~9개월, 오후에 이용하는 6~9개월, 오전과 오후가 나눠져서 6~9개월 아이들이 6명씩 꽉 차 있어요.**(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예전에는 **24개월** 지나고 **36개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은 **현저히 줄고**, 더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 해요. 어린이집 보육료와 거의 비슷해지는 시기에는 굳이 시간제보육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급여가 많이 나오는 때에는 맡겨도 이 쪽(시간제보육서비스)에 많거든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6개월이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오시고, 많이 오는 아이들이 한 10개월부터 17개월 15개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대 3이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걸어 다니는 애들 말이 통하는 애들 그냥 말귀는 알 아듣고 하는 애들이 와서 1대 3이 가능했는 데 지금은 다 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직원들이 들어가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연령이) 굉장히 하향 됐고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둘이 동시에 올고 한 명은 또 멀뚱히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교실에 보조교사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보조교사가 없을 때는 우리 선생님(센터 직원)들이 지원하는데...(시간제보육1_육아종)

(2) 서비스 운영 관련 주요 쟁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쟁점으로는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이용 양상의 차이, 시간제보육 이용가구 대기 문제와 0세 어린이집 0세반 접근성의 충돌 문제,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필요성 증대 등이 제기되었다. 2개 반을 각각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2는 지리적 접근성 수준에 따라 이용가구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시간제보육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게 일시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시 대중교통 인근 지역 등 지리적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육아종합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하는 경우는 급식을 제공하거나 보조교사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제기되어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적합한 인프라 유형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시간제보육1, 2).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이용 양상의 상이함] (시간제보육1, 2)

저희도 인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없어서... 계속 꽉 차 있으니까 (종약)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도 있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곳이라서 되게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제보육은 긴급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두 군데가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00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 타임별로 이제 3타임 운영을 하면 골고루 좀 오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많고 이용하는 시간대는 많아도 종일 이용하거나 이러는 건 거의 없어요....근데 00은 작정을 하고 와야만 하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막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용시간이 장시간이 상당히 많아요.(시간제보육1_육아종)

[인프라 유형 이원화에 따른 운영상 차이] (시간제보육1, 2)

저희는 어린이집과 좀 다른 곳이잖아요. 여기가 정말 긴급한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어서(급식 제공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 필요한지 모르니까.(시간제보육1_육아종)

(급식 제공은) 센터는 여건도 안돼요. 조리실도 없고. (시간제보육2_육아종)

저희가 비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그냥 필수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휴게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영아들 우는 소리가 난다든지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한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를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가 돌아가면서 아이를 케어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시간제보육1_육아종)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과 0세반 운영] (시간제보육3)

부모급여를 받고 시간제보육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정규반에 있는 0세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없거든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또 그 친구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규반을 살리려면 시간제보육이 최소화되는 게 맞는 거죠...시간제보육에서 1:3의 T.O가 다 나가버리면 이용을 못해서 정규반으로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요.(시간제보육3_어린이집)

나)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1) 서비스 운영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담임교사의 보육 준비시간이나 활동 준비,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로 제기된다. 시간제보육2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든 시간 이용 아동이 있어 담임교사에게 별도의 보육 준비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육 종료 이후에야 교사가 청소, 교구 정비, 활동 준비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 외 시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서면조사 결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시간제보육1, 2)

저희는 시간제보육을 두 번을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도 (담임교사가) 휴게시간도 가질 수 없고 보육 계획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들이다 보면 서로 번갈아가면서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번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으로 보조교사를 쓰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을 저희가 보조교사를 4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지금 12시까지.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한 번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보조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때는 굉장히 대기가자가 많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시간제보육1_육아종)

한 교실에 한 3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6개월 이후부터는 오고 그다음에 두 명이 동시에 굉장히 어린 아기들이 올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교사만 지원이 된다면 1:3이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혼자서 만약에 3명이 왔을 때는 거의 무방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1:2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명은 케어를 안고 한 명은 놀이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되는데 1:3은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제보육1_육아종)

아이들이 1대 3(교사 1명당 3명 아동)으로 다 있는데(정원총족이 되어 있는 데) 결제를 해야 될 때 어머님들이 오셔서 보육료를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다 낱 두고 이따가 결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인터폰을 주시면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이 가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상시로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또한 일시보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도 지적되었다. 시간제보육2는 일을 하지 않는 양육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장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간 종일 이용가구 규제의 어려움] (시간제보육2)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있는 애도 있어요. 어린이집보다 더 오래, 어린이집은 맞춤형 기본 보육이 4시에 끝나는데 시간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일을 하시나 하면 그렇지도 않으세요....장기간 어린이집처럼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이렇게 장시간 이용하려면 어린이집이 훨씬 좋으니까 가시라고 해도 어린이집은 1대 3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1 대 1로 커버가 되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2) 개선 필요사항

시간제보육2는 비용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시보육의 취지와 달리 종일동안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부모가 있으므로 다른 부모들이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이용시간을 정해두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서면조사 결과). 또한 서비스 운영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규제함과 동시에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이나 보육 준비 시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시간제보육2_서면조사 결과). 또한 담임교사의 재교육 강화와 이용아동에 대한 정보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시간제보육4_서면조사결과). 즉, 시간제보육 특성상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아동을 단기간에 맞이하게 되므로, 담임교사에게 아동기 기질 이해, 초기 애착지원, 부모상담에 대한 연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아동이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으나, 이용아동의 건강 상태, 빌달 특성, 민감 반응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개별화된 돌봄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용아동에 대한 정보 구축과 보호자-기관 간 상호 피드백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앞서 주된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지원요구로 강조되었다(시간제보육1, 2). 이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간제보육 담임교사의 재교육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되었다(시간제보육1).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시간제보육1, 2)

저희가 보조교사를 5일을 못 쓰고 이번에는 이제 3일을 쓴 사례가 된 거예요. **이용료가 적거나 원아수가 좀 적으면 보조교사를 쓸 수가 없어요.**(시간제보육1_육아종)

예전에는 아이들이 좀 클 때는 4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1 대 30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동 수를 줄이던가 아니면 **보조교사를 하루 종일 아니면 적어도 10시부터 4시까지는 주셔야** 아이들이 또 어리기 때문에 위생이나 청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시간제보육2_육아종)

기본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교사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시간제 선생님이어서 이 시간만큼 그냥 아이들이 놀고 가면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더 요청이나 요구를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도 굉장히 일시적인 교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넣어주는 게 맞는 거고**(시간제보육1_육아종)

근무 시간 내에 선생님이 교육받으러 가시면 이게 반나절이든 하루든 가시면 이 반을 담당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거 이제 보조교사가 8시간 있으면 반나절 됩니다 하면 이제 그렇죠. **3시간 4시간 먼저 퇴근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죠.**(시간제보육1_육아종)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되게 미안하게. 근데 **오프라인으로 있는 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오전에 또 빼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보육교직원하고 동일하게 아이들의 보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시간에 대체 근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보조교사가 10시부터 6시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시간제보육2_육아종)

[어린이집을 통한 인프라 확충의 적정성] (시간제보육1, 2, 3, 4)

제 생각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확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서 그 곳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이 되고 질도 좋게 보육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시간제보육1_육아종)

어린이집이 더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이 이렇게 원하는 급간식도 다 거기서(어린이집)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외놀이터도 있고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한 개 보육실을 설치하고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안타까워서 웨건을 사줬어요. 그래서 거기 애들을 태우고 밖에라도 한 바퀴 돌고 오면 애들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시간제보육2_육아종)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통합반을 운영을 해 주는 게 맞아요, 0, 1, 2세를....운영자 입장에서는 시간제보육의 인원만큼 정원을 비워두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도 더 이상 0, 1, 2세가 대기가 차고 넘치지가 않아요. 아동 수 자체

가 워낙 적고. 3월에서 6월에는 0세반 같은 경우도 인원 모집이 힘든 곳이 많아요.(시간제 보육4_어린이집)

아마 규모 소규모 국공립이라든지 정원이 작은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로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보다 (어린이집) 정규반을 채우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아기자기하게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낮잠 잘 때 이불도 제공하고 간식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이 원하시면 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간식 도 제공을 하니까...(시간제보육3_어린이집)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린이집이 훨씬 다양해서 시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고요....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시간제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린이집 정규반 부모 상담 기간에 시간제도 부모 상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 개편] (시간제보육2)

아이가 딱 와서 적응하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3시간을 넘어가면 영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시간제보육2_육아종)

[실수요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신청 방식 개선] (시간제보육4)

내가 이용한 날부터 15일 이후로는 계속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그러니까 항상 아동 비율이 차 있는 상태에서...(아동가구에서) 먼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부모님들이 사실 9월 10월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약하기 힘들다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사실 2개 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먼저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하니 대부분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꾸준하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더 다양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용 일자 기준이 아니라 특정 일에) 일 주일 단위 등으로 예약이 열리는 방식이라면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그때 들어와서 하겠죠.(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의 형평성 제고] (시간제보육4)

장애통합시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제 보육 반 선생님은 따로 제외되어 있고, 처우 개선비 부분도 제외되어 있고, 처우개선비도 동일하게 영아수당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외되어 있잖아요.(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교사 수당이 20만 원으로만 되어 있고, 그렇게 (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린이집) 소속감을 없어지게 하는 요인이 하나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제보육반) 담당교사의 처우에서는 그 어린이집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해야...(시간제보육4_어린이집)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서비스 유형별 수요와 공급을 종합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내양육서비스 수요는 돌봄 공백 해소와 긴급돌봄으로 구분되며, 가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수요를 보이므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식 부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는 그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모두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근로 특성에 따라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부각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경우 돌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일제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주를 이루어 기관이 돌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전형 근로시간에 상시로 일하는 가구는 물론이고 간헐적 늦은 퇴근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정내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형적 근로시간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오후 5시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근시각에 맞추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는 늦은 오후에 남겨진 아동이 많지 않거나 방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저녁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시간에 실수요자 위주로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에 종일제 돌봄이 필요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거나 늦은 오후에 가정에서 돌보기를 더 선호하여 퇴근 시각 이전에 자발적으로 자녀를 하원 시키는 가구도 확인되며, 특히 영아 자녀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가구는 기관의 비용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영아 자녀의 이른 하원에 대해서는 발달 특성을 고려하

여 유아와는 달리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종일제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적으로 이들 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우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을 종합한 [그림 V-3-1]과 [그림 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부모의 근로시간과 기관 이용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요건은 가구 단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_영아1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비전형적 근로시간에 일하는 배우자를 둔 가구는 자녀돌봄의 어려움으로 대체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표 V-3-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근로와 자녀돌봄 현황

시간	영아1			영아2			유아1			유아4			
	모 부 근로 시간	부 근로 시간	기관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모 부 근로 시간	기관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모 부 근로 시간	기관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모 부 근로 시간	기관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00:00-01:00													
01:00-07:00													
07:00-08:30													
08:30-09:00													
09:00-10:00													
10:00-12:00													
12:00-12:30													
12:3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8:30													
18:30-19:00													
19:00-20:30													
20:30-22:00													
22:00-24:00													

주: 1) 영아1 기구의 영아는 둘째아 1세이며, 돌봄 지원인력이 있음.
 2) 영아2 기구의 영아는 둘째아 1세이며, 기관이용인력, 돌봄 지원인력/기관 없음.
 3) 유아1 기구의 유아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오후 4시 이후까지 이용하거나 정체한 이용시간은 모름. 모는 화요일마다 저녁근무가 있음. 돌봄 지원인력이 있음.
 4) 유아4 기구의 유아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오후 4시 이후까지 이용하거나 정체한 이용시간은 모름. 모는 토요일마다 9:00-14:00 근무가 있음. 이어돌봄서비스를 토요일도 이용함.
 돌봄 지원기관이 있음

〈표 V-3-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기구의 시간대별 근로와 자녀돌봄 현황

시간	영이2			영이3			영이4			유이5		
	모 부 근 로 시 간	기 관 이 용 시 간	돌 봄 서 비 스 이 용 시 간									
00:00-07:30												
07:30-08:00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6:30												
16:3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22:00-24:00												

주: 1) 영이2 기구의 영이는 첫째아 2세이며, 돌봄 지원인력이 있음.

2) 영이3 기구의 영이는 첫째아 7개월이며, 기관이용인형. 모가 주말에는 오후에 근로형.

3) 영이4 기구의 영이는 둘째아 1세이며, 기관이용인형. 민간 육아도우미를 일일 이첩까지 이용하나 정체한 종료 시간은 모름.

4) 유이5 기구의 자녀는 2세, 5세 두 명이며, 돌봄 지원인력/기관 모두 있음.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경우는 고립 육아와 긴급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어린이집 입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민이 제기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목한 정기적으로 종일 동안(오전 9시~ 오후 6시) 이용가구에 대해서는 이용 자격이 제한될 필요가 있고, 반면에 휴직 이후 복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기중이어서 시간제보육을 정기적으로 종일 동안 이용하는 가구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 후자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연간 정부지원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비용지원체계의 정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비용지원체계 정비 시에 다음의 쟁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종일제 돌봄 수요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민간 육아도우미의 경우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급여 도입이 주된 변수로 작용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추측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부모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는 부모급여로 인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시로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야간과 주말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비용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긴급돌봄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이점으로 강조되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민간 업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기관의 돌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식 부문의 서비스 유형별 개선과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다음이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정기 이용과 일시연계 지원 원칙 개선, 지리적 공급 격차 해소,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이 요구된다. 우선 공급

체계 측면에서 정기 이용과 단기서비스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돌봄 지원 강화로 인해 일시연계 이용가구에서 정기 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기기간과 상관없이 지정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이용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되므로 서비스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일시연계 이용가구의 이용 자격을 상시 이용가구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인프라 확충 방식 다양화 및 운영기준 일원화, 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적 공급 격차 해소, 보조인력 지원 강화, 반 편성 기준 개선, 서비스 접근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이용 제한 규정 마련과 비용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하여 검토할 만하다.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식으로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의 장점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언급하고 있으므로, 지역 여건과 기관유형에 부합하는 시간제보육반의 설치 기준을 모색할만하다. 단, 이때 시간제보육반의 운영기준은 서비스 인프라 유형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가 요구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인프라 유형은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되는 데, 이를 기관의 보육 환경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운영관리 사항에 관해서는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0~1세아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다양화된 이용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인건비 지원, 0세반 별도 편성 기준 등 운영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VI

정책 제언

01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방향

02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와 제도적
기반 조성

03 기타 정비 사항

VI. 정책 제언

제6장에서는 앞서 다룬 외국 사례, 설문조사, 면담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공급 방향과 지원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보육 등 유관 정책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를 선별하고 잠재수요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하에서는 유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공식 돌봄부문을 위주로 서비스 유형별 세부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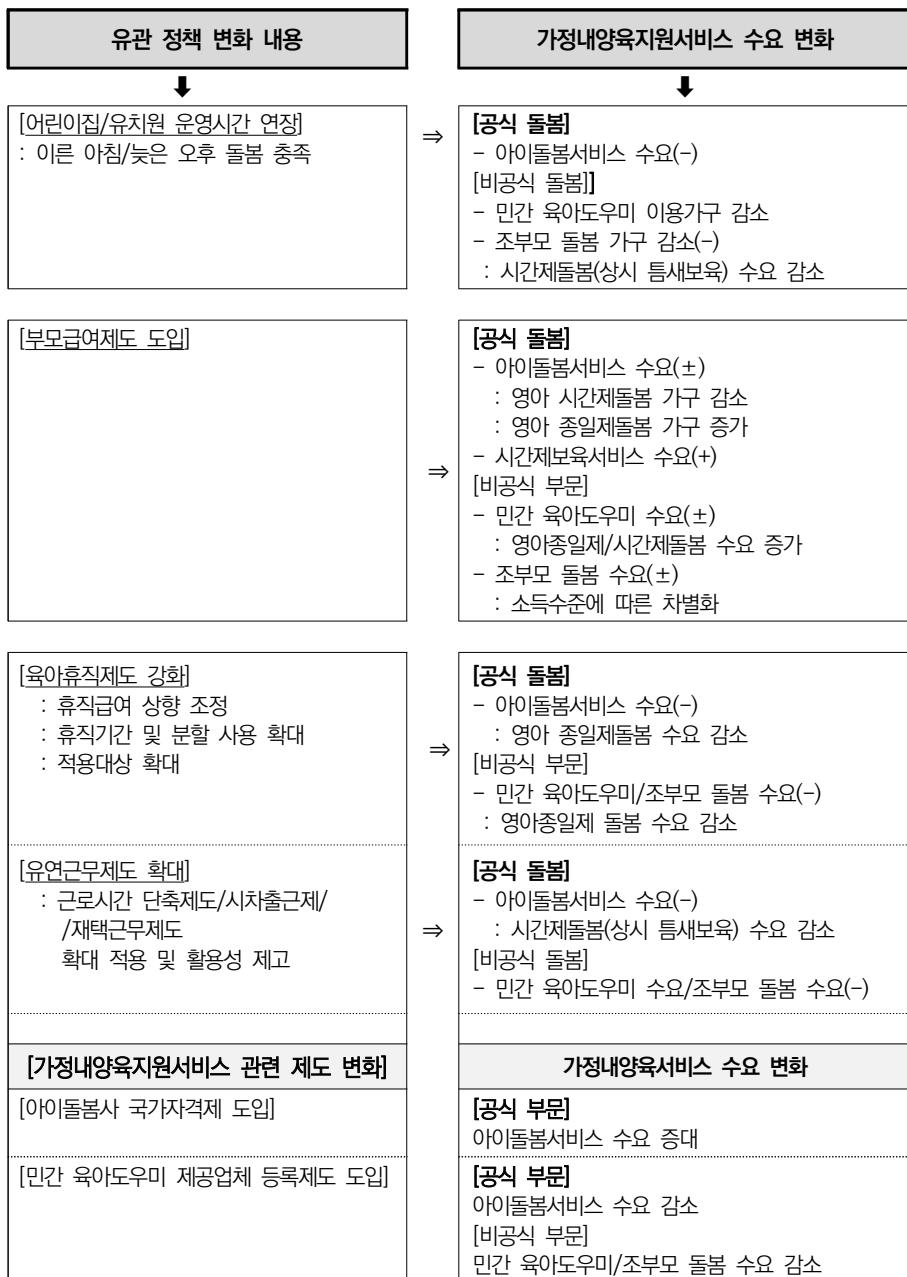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유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양육자 기준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조부모 돌봄 가구로 구분하여 공식 돌봄의 강화로 따른 이용 의향을 토대로 가정 기반의 돌봄서비스 공급 수준을 모색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병행 이용 중인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는 ‘민간업체 등록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들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를 종일제로 이용할 의향이 높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계속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민간 부문의 종일제 돌봄 수요는 공식 돌봄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시간제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와는 달리 종일제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サービ

스의 공급 수준과 상관없이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택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림 VI-1-1] 유관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또한 조부모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가구 중에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업체 국가등록제가 시행되는 경우 조부모를 대신하여 이들 인력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이들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잠재수요자로 확인된다. 조부모 돌봄 가구 중에는 공식 또는 비공식 부문의 가정 기반 돌봄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해서 조부모에게 자녀돌봄을 의존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에게 공식 돌봄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시간제 돌봄이 주를 이루는 틈새보육에는 공식 돌봄 부문이 일차적으로 대응하되, 가정 기반의 종일제 돌봄에 대해서는 비공식 부문의 선호가 일부 존재하므로 해당 수요를 제외하고 공식 부문의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틈새보육을 총족하거나 유연근무제도 이용가능성이 증대된다면, 이를 오전과 늦은 오후의 틈새보육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강화로 인해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일시보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VI-1-1]과 같다.

이하에서는 변화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지원 목표와 지원대상,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와 비용지원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지원 목표와 지원대상 정교화

1) 서비스 지원 목표와 포괄 범위

아동 돌봄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다음의 두 가지 목표가 주요하다. 첫째는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가정 기반 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 내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자는 여성 노동 증가 등으로 인한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기반의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가정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게 비용을 지원한

다. 앞서 다룬 프랑스에서는 시설보육의 공급이 부족하여 인가 보육사와 가정양육 도우미를 이용하는 가구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후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보육을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유치원이나 보육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시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영아에게 영아보육시설의 정원충족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2026년부터는 일정 시간 동안 보육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이른 새벽과 늦은 야간, 주말과 휴일 등의 틈새보육은 물론이고, 긴급돌봄 수요를 포함해야 한다. 틈새보육 수요가 맞벌이 가구 위주이나 이와는 달리 긴급돌봄 수요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한 달에 1회 이상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절반(48.9%)으로 높은 수준이나, 비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도 4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2) 서비스 지원대상

앞서 제시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의 지원 목표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 및 가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충족하기 힘든 돌봄 수요를 지닌 가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상시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비전형 근로가구, 장시간 기관 이용이 힘든 아동, 다자녀 가구와 장애부모 등 과중한 양육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삼고(여성가족부, 2025a: 24), 정부지원의 양육 공백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는 해당 기관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보육의 기피 등 개인적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려는 가구가 다수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양육 공백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여 실제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위주로 공식 돌봄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대상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종일 동안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여 입소대기 중인 가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대기 가구 중에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가구를 위주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가구가 주된 수요자이므로 현행과 같이 무상교육을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3). 단, 미취학 아동 전반에서 제기되는 긴급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6~36개월 미만)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3개월 이상부터 이용하거나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0~5세아의 긴급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기관 기반의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 기관 기반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이용자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프라의 물리적 환경이 확장된 아동의 연령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을 위한 보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을 위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공식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구 및 아동 특성별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VI-1-2]와 같다.

[그림 VI-1-2] 공식 돌봄 부문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구분	서비스 지원대상	공식 돌봄 부문 정부지원 서비스 유형
가구 특성	<p>[맞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형근로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벽/야간/주말/휴일근로 - 불규칙한 근로시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규칙한 출근시각/퇴근시각 - 이용기관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낮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시간 이용가능성 낮음) : 어린이집 연장보육 : 유치원 아침돌봄/저녁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p>[맞벌이+홀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녀가구 : 영유아 2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p>[맞벌이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p>- 가정 내 양육 선호 가구 : 육아휴직제도 이용 힘든 가구 등</p> <p>- 모든 홀벌이 가구</p> <p>- 육아휴직 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서비스
아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보육 힘든 아동 : 장애아 및 경계선 아동, 영아자녀 등 - 기관 적응 힘든 아동 : 장애아 포함 - 기관이용 질병감염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
모든 가구 및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필요 가구 및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보육서비스

나.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방향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보육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실수요자를 선별하고 이를 가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지원이 요구되므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틈새보육과 긴급돌봄은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차별화된 공급 전략이 요구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적정 공급을 위한 정비

아이돌봄서비스가 기관 기반의 돌봄서비스와 상충되지 않고 보완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즉,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규모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일차적으로 요구되며,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구를 양육 공백 기준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시설보육의 보완적 기능에 따르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서 돌봄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가구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관 이용가구의 돌봄의 틈새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급 부족에 따른 돌봄 공백 가구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영아 자녀를 둔 전일제 맞벌이 가구 중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사유로서 ‘어린이집 대기 중이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하여 영아반 접근성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당 가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된다. 이처럼 영아 자녀를 둔 종일제 돌봄이 필요하나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힘든 가구에게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식 돌봄 부문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에 대응하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2) 시간제보육서비스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비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 내 양육가구의 일시보육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간제보육기관의 이동 시간은 읍면지역 거주 가구에서 도시 지역에 2배 이상 소요되어 주된 불만족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의 보육관련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5: 31). 또한 이때 보육관련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한 아동전용시설, 도서관 등이 포함되므로 어린이집 이외에도 도서관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기반의 시간제보육서비스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정 기반의 서비스를 고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을 통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위주로 일시보육 기관을 설치하나, 도서 지역이나 심

야 시간 등과 같이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자택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긴급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급 방식의 정비

긴급돌봄은 서비스 공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집 근처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긴급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내 아동 돌봄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 중앙 단위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대상의 긴급돌봄은 단기서비스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영아 자녀를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이나, 이들 서비스의 관할 부처가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로 달라서 서비스 연계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기반과 가정 기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간 연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게는 자녀의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기 힘든 경우에는 단기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계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지역 단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앞서 제기한 긴급돌봄서비스 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하의 두 가지 사업을 고안하여 추진할만하다.

우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패밀리 서포트 센터에서와 같이 지역 주민이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희망하는 지역 내 부모 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기준, 최소 회원 수 기준, 서비스 제공 회원을 위한 필수교육 및 이력 관리, 상해보험 가입 등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동 사업은 일시보육을 위한 인프라의 발굴이 힘들거나 돌봄 인력의 양성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다음으로 가정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돌봄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여 시간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과 인프라 공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의 신규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3항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 운영관리 기준(시설 기준, 돌봄 인력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다. 서비스 비용지원체계 정비 방향

1) 공식 돌봄 부문

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부지원 기준의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용 부담은 100%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소득기준 ‘마’형 가구에서 평균 3.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체계는 유지하되, 소득구간별로 자부담 수준을 보다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시간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구와 비전형적 근로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시간제 돌봄이 추가로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에서는 현행 정부지원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현행 비용 지원에서는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가정에 한하여 ‘가’형 가구인 경우 5%의 자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구 이외에도 특히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는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므로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시간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용 기회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정부지원 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시보육은 기관 미 이용가구를 위해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지원 최대 이용시간을 월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용할 시에는 자부담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일시보육은 월 120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긴급 또는 재충전을 위한 이용시간을 월 20시간으로 제한하며,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생활보호세대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비공식 돌봄 부문

가) 조부모 돌봄 가구

조부모 돌봄의 사유는 공식 부문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 이외에도 다양한 수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정부 개입은 신중을 요한다. 비공식 돌봄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공식 부문의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동 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한정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 주된 사유는 자녀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가구 이외에도 기관 등 공식 부문의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해서 선택하는 경우로 확인된다. 즉, 종일제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또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일부 지방정부의 조부모 돌봄 수당을 공식 돌봄의 보완책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들 제도에서 지원대상은 지역 내 공식 부문의 돌봄서비스 즉,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및 아침돌봄과 저녁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정교화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를테면 종일제 돌봄이 필요하나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여 이용하기 힘든 가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야간, 새벽, 주

말 등)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손자녀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에 해당하는 조부모에 대한 인적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지원 시간에 준하는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이고, 손자녀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지원대상의 정교화와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돌봄에 대한 정부지원은 근본적으로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식 돌봄의 확대와 상충되어 아동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조부모가 없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 제도적 의문을 극복하기 어렵다.

다만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지원대상을 유관 정책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우려가 없는 연령으로 제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부모급여가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고 36개월 아동부터는 누리과정이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부분 지역에서 24~35개월 아동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시에는 공식 돌봄의 사각지대 즉, 공식 부문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가구와 공식 돌봄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선별하되, 공식 돌봄 부문과 상충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지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요한다. 민간 육아도우미는 공식 돌봄의 공급 부족 즉,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고, 이용기관(어린이집 등)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 주체에 해당하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는 서비스 운영 방식과 비용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정부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과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사례에 의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인가 도우미와 가정양육 도우미는 모두 국가에 등록한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일본에서도 재택방문형 서비스의 돌봄 인력은 보육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에 대한 비용지원 요건으로는 국가에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가구의 비용지원 방식은 세제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공식 돌봄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비전형적 근로시간에 일하는 가구, 아동 특성으로 기관 이용이 힘든 가구, 어린이집 대기 가구 등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검토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2026년 4월 이후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민간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와 제도적 기반 조성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반의 적정 공급 및 확대와 더불어 이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요구된다. 공식 돌봄 부문의 가정 기반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기관 기반 돌봄서비스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아동돌봄서비스 전반의 정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인권 보장 및 노동권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에 앞서 요구되는 유관 정책의 내실화 등 전제요건과 제도적 여건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가. 지원체계 정비의 선결과제: 유관 정책의 내실화와 정합성 제고

공식 돌봄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앞서 확인한 실수요자를 위주로 공급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가 요구된다.

1) 어린이집 연장보육/유치원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의 운영 내실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돌봄서비스 내실화가 선결과제로 요구된다. 어린이집의 12시간 운영 원칙이 견지되고, 유치원의 방과후 돌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이들 시간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을 충족할 수 있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주된 사유로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돌봄 욕구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돌봄 전담교사의 배치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자녀가 혼자 방치되거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추가로 이용하기를 꺼려할 것으로 짐작되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에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1개반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단독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가배치 교사를 위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와 휴식 위주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의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복지원 금지 기준의 정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가(假)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 돌봄의 운영시간 및 비용지원 적용기준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 중복금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일 기준으로 9시부터 16시, 유치원의 경우는 평일 기준 9시부터 13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시간을 일괄 9시부터 17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린이집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적용되고, 유치원의 저녁돌봄은 17시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반영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는 시간대는 공백이 우려되는 17시 이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관 이용가구의 중복지원 기준을 일괄 17시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17시 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이후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을 위주로 서비스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수요자 위주로 서비스를 신청을 유도하여 공백 해소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운영기준과 비용지원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기관 기반 돌봄서비스와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기준을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지원대상 아동연령의 정합성 제고

현재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이용자격은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 우선 현재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영아 기준을 고려하면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타당하다.

또한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현재 6개월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와 일관되도록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3개월 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은 3개월 아동부터이고,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보다 이른 생후 57일 경과한 다음부터 일시보육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유해미 외, 2023: 263), 긴급 상황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아동연령을 3개월로 하향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표 VI-2-1〉 시간제보육 지원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2025. 10. 1. 인출)

나. 지원체계 정비의 제도적 여건 조성

1)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통합적 법적 근거 마련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보육 수요의 충족을 위한 가정 기반의 서비스와 0~2세의 가정 내 양육가구를 위한 일시보육 서비스로 구분되나, 특히 후자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비용지원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양적으로 크게 확대하고 이를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에서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기반과 가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즉, 가정 내 양육가구를 위한 일시보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지역 주민이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신설하거나 가정 기반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최소 기준, 필수 운영사항, 비용지원 원칙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마련

가정 기반의 양육지원서비스는 돌봄 인력에 대한 부모 신뢰가 주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성을 겸지함과 동시에 인권 보장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업체의 돌봄 인력의 인권 보장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고용된 인가 보육사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주당 총 근무시간과 일수를 제한하고,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병가 등 휴가 일수와 휴가급여에 관한 사항을 권리로 보장하고, 급여 산정방식과 돌봄 활동을 위한 비용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에게 적용되는 사항과 민간 등록기관의 육아도우미에게 적용되는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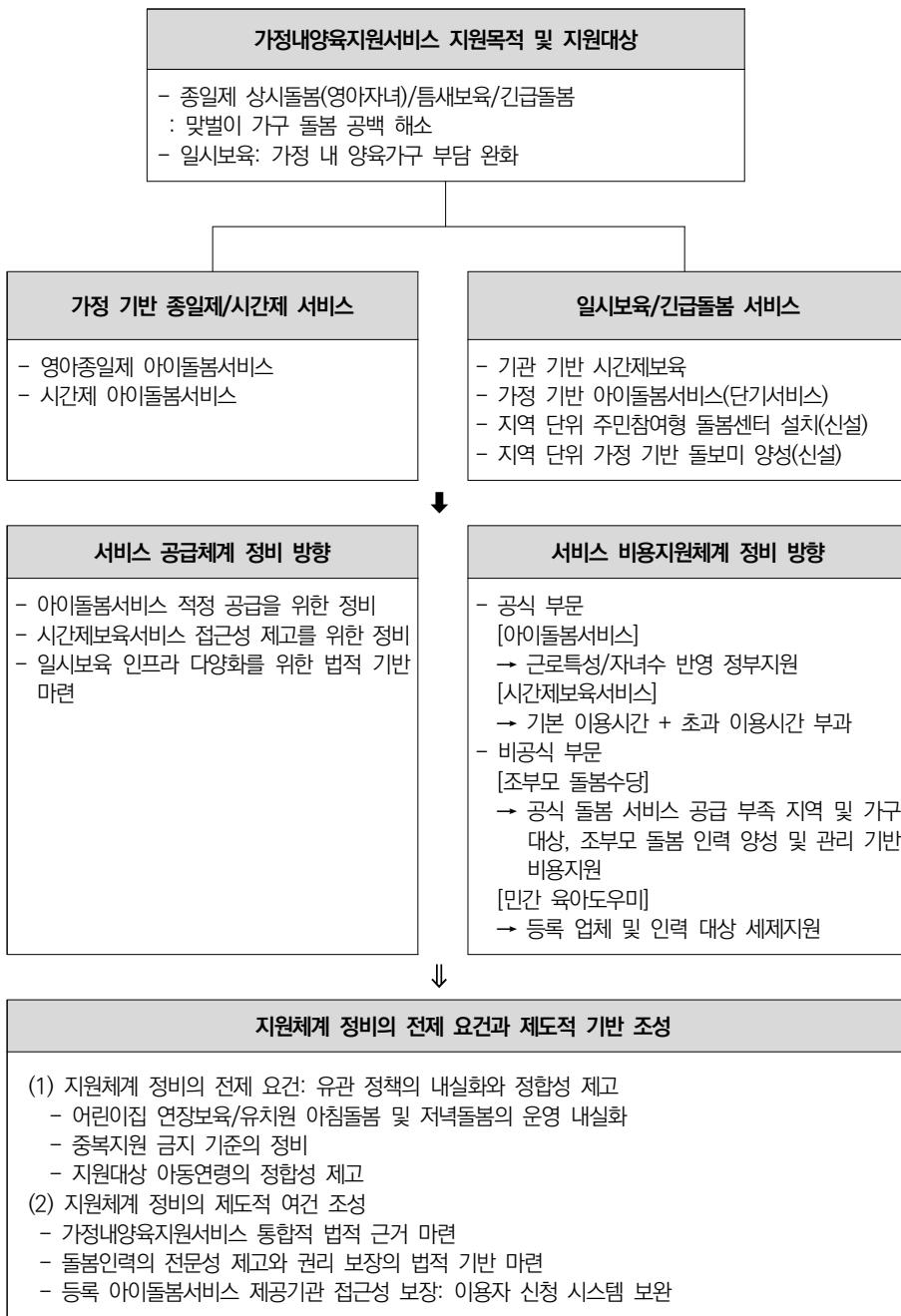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아이돌봄사 자격 및 이력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민간 육아도우미 등록기관)에 대한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제보육반 담당교사는 다양한 연령의 낯선 아동을 보육해야 하므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요구된다.

3)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보장: 이용자 신청 시스템 보완

2026년에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등록제도가 시행되므로 이를 업체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구에서 신원을 보장받은 돌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포털(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등록업체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향과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면 [그림 VI-2-1]과 같다.

[그림 VI-2-1]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정비 방향과 선결과제 및 제도적 여건 조성



3. 기타 정비 사항

앞서 제기한 2절과 3절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향에 부합하는 공식 돌봄 부문의 기타 정비사항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만하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1)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의 추가 고려사항

긴급돌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상시 이용가구의 우선지원 원칙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되므로 정기 이용과 단기 이용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를 지닌 가구 즉, 정기 이용가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긴급돌봄을 위한 단기서비스 이용가구는 정기 이용가구와는 상이한 수요를 지니므로 서비스 공급체계 측면에서 이들 가구가 혼재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돌봄 이용시간대와 이용가구 특성을 분석하여 대기 중인 상시 이용가구와는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견형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이돌보미 양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 존재하므로 이들 지역에서도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교통수당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이고 아이돌봄서비스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수급 방안도 추가로 요구된다.

2)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확대는 다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한다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경

우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힘든 가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비용 지원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간시간대와 휴일 이용가구의 비용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이들 시간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서 공식 돌봄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한 대체서비스에 해당하나, 해당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어 상시 이용가구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들 시간대의 상시 이용가구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속한 연계와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수가 많거나 지역이 넓은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복수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을 모색할만하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 비율을 현행 아이돌보미 50명당 1인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개선하고, 전담인력의 승급체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2026년에 민간업체 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공공)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아이돌봄사 활동 이력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포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두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나. 시간제보육서비스

1)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의 추가 고려사항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시간제보육반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어린이집 정원 내 시간제보육반 3명 이상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 수준을 감안하여 시간제보육을 위한 정원을 2명 이상으로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의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다음의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시간제보육반의 보조교사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0세아의 이용이 증가하여 보조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됨에 따라 반별로 4시간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현행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 대 영아 비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0~1세아의 이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보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간제보육반의 교사 대 영아 비율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이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담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의 담임교사의 재교육 시에는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통합반의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시간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2)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특정 가구에게 상시 이용하는 양상이 확인되므로 일시보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홀별이 가구의 이용 기회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일수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일수를 한달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하루 기준 이용시간은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만하다.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인프라가 어린이집 위주로 확충되고 이외 도서관 등으로 보다 다양화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가 확충된 지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지역내 시간제보육기관을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3).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 광주광역시(2011). 2011년도 손자녀돌보미 시범 사업지침.
- 교육부·보건복지부(2023).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방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3).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로 책임 있는 유보통합 실현한다(2023.7.28).
- 교육부 보도자료(202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 2배 이상 확대 운영(2024.9.3).
- 교육부(2024).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4).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5). 20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교육부.
- 교육부(2025a). 2025년 보육사업안내.
- 교육부(2025b). 2025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 교육부(2025c). 2025학년도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 지원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2024.3.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b).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지원 확대(2024.12.1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돌봄 공백 없도록 고용 연장(2025.2.14).
- 구자연·권미경·윤지연·장유진·박건령(202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김소영·최인희·권소영·박세경(202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방안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김아름·유해미·이정원·윤지연(2022)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방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김원정·김선아·정윤미·이성준(2022). 2022년 성평등추진전략사업: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김미정·강신혜(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여성 가족재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2019.9.19).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서울특별시(2025). '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늘리고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한다(2025.1.14).

여성가족부(2025a).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25b).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여성가족부(2025c).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2025 4.2).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2023).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울산광역시(2024). 울부심 생활+(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1a).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b).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이정원·최윤경·권미경·김아름·조숙인·조미라·김자연·이혜민·엄지원·윤소정 (2022).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유해미·조혜주·김윤환·신윤정·한인애(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최효미·김은설·최윤경·김동훈·김지현·김자연·조혜주(2024).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2025). 내부자료.

OECD(2021). PF3.3: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https://www.oecd.org/els/soc/PF3-4-Informal-childcare-arrangements.pdf> (2025.2.27. 인출)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5.2.27. 인출)

【참고 웹사이트】

경기도뉴스포털. [2025년 경기도가 쓴다!] ① 더 넓어진 경기도 돌봄.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502111024158488C109&s_code=C109 (2025.3.3. 인출)

경기도뉴스포털. [360° 언제나 돌봄] ③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소’.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1080928307442C109&s_code=C109 (2025.3.3. 인출)

경상남도 보도자료(2024. 6. 27.).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지급.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2001000&boardId=BBS_0000060&dataSid=42173857 (2025.3.3. 인출)

경상남도 보도자료(2024. 12. 30.). 경남도,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2001000&boardId=BBS_0000060&dataSid=42221313 (2025.3.3. 인출)

경상남도 홈페이지. 손주돌봄 지원.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44010001014 (2025.3.3. 인출)

고용24,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Id=SC00000252&systId=SI00000397> (2025.7.1. 인출)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 <https://www.gwangjuaikeum.kr/main/contents/infant19> (2025.3.3. 인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 1. 12.).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형 텁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본격 시행.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8267 (2025.7.11.인출)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2025). https://yesan.seoul.go.kr/wk/wkSelect.do?itemId=117526&tr_code=sweb (2025.3.3.인출)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사업소개. <https://seocho.familynet.or.kr/center/lay1/S295T315C318/contents.do> (2025.3.3.인출)

서초구 보도자료(2011. 9. 6.).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중 합계출산증가율 1위!! 저출산 극복정책 효과 톡!톡!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61&bcIdx=198734> (2025.3.3.인출)

순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2025. 7. 31. 작성).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mode=view&cntId=11566> (2025. 8. 8. 인출)

순천시청 홈페이지. 예산안내. 2025년 1회추경. <https://www.suncheon.go.kr/kr/open/0006/0014/0023/0002/> (2025. 8. 8.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사업 현황, <https://www.idolbom.go.kr/front/biz/stts> (2025.5.30.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내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유형 소개, <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Guide> (2025.3.5.인출)

우리동네키움포털.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2/dolbomMENU2_3/dolbomMENU2_3_1.jsp (2025.7.11.인출)

울산광역시 보도자료(2025. 1. 25.). 울산시, 3월부터 손주 돌봄수당 지원한다.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dataId=169366 (2025.3.3.인출)

해남군청 보도자료(2025. 8. 7.). 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https://www.haenam.go.kr/planweb/board/view.9is?contentUid=18e3368f5d745106015d877ab2850a94&boardUid=18e3368f5fb80fdc015fdc4c2ac203e7&pBoardId=BBSMSTR_000000000131&dataUid=18e3368f5d542987015d63ee65c202ff&nttId=112147 (2025.8.8.인출)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 (2025.5.8.인출)

【프랑스 자료_일반 / 참고 웹사이트】

프랑스 교육부(2024). <https://www.education.gouv.fr/mission-d-expertise-sur-l-avenir-des-jardins-d-enfants-307984> (2024.11.1.인출)

프랑스 행정부(2025a). Assistante maternell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83> (2025.4.1.인출)

프랑스 행정부(2025b).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
- Assistante maternell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5> (2025.7.16.인출)

프랑스 행정부(2025c) Aide à domicile (services à la personne) : recrutement d'un salarié.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2> (2025.4.1.인출)

프랑스 행정부 (2025d). Adhérer a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Cesu).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2358>. (2025.4.1.인출)

프랑스 행정부(2025e). Salarié au pai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473>. (2025.4.1.인출)

프랑스 행정부(2025f).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2485/personnalisation/resultat?lang=&quest0=0&quest1=0&quest2=0&quest3=0&quest4=1&quest=> (2025.7.21.인출)

Caf de Maine-et-Loire (2023) "La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SU) Guide pratique pour les gestionnaires, avril 2023"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medias/493/Partenaires/Petite%20enfance/Les%20EAJE/Guide_PSU_MAJ_2023.pdf (2024.7.16.인출)

Mes Allocs (2025) Peut-on cumuler deux Compléments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https://www.mes-allocs.fr/guides/allocations-familiales/paje/complement-libre-choix-mode-de-garde/cumul-deux-cmg/?utm_source=chatgpt.com. (2025.7.21.인출)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4). L'accueil des jeunes enfants, Edition 2024. <https://www.caf.fr/professionnels/actualites/rapport-2024-de-l-observatoire-national-de-la-petite-enfance-une-plongee-dans-les-modes-d-accueil> (2025.4.20.인출)

Tots & Co Toulouse (2025). https://www.totsandco.org/uploads/7/9/9/8/7998048/halte_garderie.pdf. (2025.4.1.인출)

Urssaf (2025). Bienvenue sur le site d'information et de services de l'Urssaf. <https://www.urssaf.fr/accueil.html> (2025.7.16.인출)

【일본 자료_일반】

아동가정청(2023). 아동미래전략.

아동가정청(2024). 보육소등 관련 상황 정리.

유해미·문무경·김문정·장경희·김송이(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수요 분석과 제도화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장경희(2021).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26(1), 1-25.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2009).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전국보육단체연락회, 보육연구소(2010).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전국보육단체연락회, 보육연구소(2023).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전국보육단체연락회·보육연구소(2024). 보육백서. 히토나루출판사.

후생노동성(2014). 보육소 관련 상황 정리.

橋本真紀(2009). 保育所の地域子育て支援事業に期待される「役割」— 先行研究に記述される「役割」の検討から. *教育学論究* 創刊号. 117-127.

【일본 자료_참고 웹사이트】

공의사단법인전국보육서비스협회, 베이비시터 이용가이드 <https://acsu.jp/images/babysitter-userguide2023.pdf>. (2025.4.22.인출)

내각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양육관련3법에 대하여,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kwbz-att/2r9852000002kwfs.pdf>, 2~6. (2025.08.27.인출)

동경도 기타구,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ファミリー・サポート・センター事業 <https://www.city.kita.lg.jp/children-edu/childcare/1002833/1002855/1003942.html>. (2025.5.9.인출)

동경도 복지국, 일시보육사업·정기이용 보육사업에 대하여 一時預かり事業·定期利用保育事業について|保育サービス|東京都福祉局.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hoiku/ichijiazukari_teikiriyohoiku (2025.5.7.인출)

문부성·후생성·노동성·건설성, 엔젤플랜, 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基本的方向(エンゼルフラン)について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ouron/19.pdf>. (2025.3.27.인출)

아동·영유아양육지원법, 子ども・子育て支援法 https://laws.e-gov.go.jp/law/424AC0000000065#Mp-Ch_4. (2025.4.9.인출)

아동가정청, 2022년 인가외 보육시설현황 令和4年度 認可外保育施設の現況取りまとめ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9e449dd6-28c2-4066-af0e-8b203ea43ca6/28931a4d/20240807_policies_hoiku_ninkagai_tsuuchi_genkyou_09.pdf. (2025.4.22.인출)

아동가정청,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실시안내 こども誰でも通園制度の実施に関する手引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afde15f-8760-4477-806a-ed72b6916696/7ef6fbdf/20250327_policies_hoiku_daredemo-tsuen_10.pdf. (2025.4.30.인출)

아동가정청, 영유아 양육 원조활동 지원사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557c220/20240514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10.pdf. (2025.5.9.인출)

아동가정청, 지역 영유아 양육지원 거점사업 실시에 대하여,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09133311/20240705_policies_kosodateshien_shien-kyoten_35.pdf. (2025.4.17.인출)

아동가정청, 지역 영유아 양육지원 거점사업 안내,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9c4ab7a7/20230401_policies_kosodateshien_shien-kyoten_16.pdf. (2025.4.21.인출)

아동가정청, 패밀리 서포트 센터 안내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18b0699-53bd-4d02-bd42-f7ebb30c362b/6332207c/20231221_policies_kosodateshien_family-support_07.pdf. (2025.5.9.인출)

아동복지법, 59조2의5제1항. 인가외 보육시설에 관한 신고, 정기보고 및 정보의 연계,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9/01/21/1412251_004.pdf(2025.08.27.인출)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164>. (2025.4.22.인출)

여성노동협회, 전국 패밀리 서포트 센터 활동실태조사 결과보고, <https://www.jaaww.or.jp/securewp/wp-content/uploads/2024/12/2d6c62232df95308ddf40a72ba6c8dc9.pdf>. (2025.5.9.인출)

오사카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大阪市：ファミリー・サポート・センター事業（…教育・保育サービス）一時的に利用できる保育サービス）.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70655.html#1> (2025.5.9.인출)

요코하마시 일시보육안내, (<https://www.city.yokohama.lg.jp/kosodate-kyoiku/hoiku-yoji/shisetsu/hoikuseido/ichiji/ichijiannai.html>. (2025.5.7.인출)

인가외 보육시설 현장조사에 대하여,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documents/d/fukushi/r5ninkagai6_shiryo (2025.08.27.인출)

일본종합연구소, 인구 감소지역의 보육제공에 관한 조사연구, 人口減少地域等における保育の提供に関する調査研究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bfc73764-a0f7-4bbb-b04b-e63e11829e14/da246664/20231016_policieskosodateshienchousasuishinchosar03-01_h03.pdf. (2025.4.28.인출)

후생노동성, 보육소 등 관련 상황 안내(2020),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862028/www.mhlw.go.jp/content/11922000/000678692.pdf> (2025.4.28.인출)

후생노동성, 보육소 등 관련 상황 안내(2022)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862028/www.mhlw.go.jp/content/11922000/000979606.pdf> (2025.4.28.인출)

후생노동성, 보육소 등 관련상황 안내(2024)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tome

_r6_02.pdf. (2025.4.28.인출)

후생노동성, 보육을 둘러싼 상황, 保育を取り巻く状況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784219.pdf>. (2022.4.26.인출)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少子化社会対策大綱に基づく重点施策の具体的実施計画について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https://www.mhlw.go.jp/shingi/2005/03/s0303-11c.html>, 2025.4.3.인출)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관련 3법, 子ども・子育て関連3法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kwbz-att/2r9852000002kwfs.pdf>. (2025.4.9.인출)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비전,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 https://www.mhlw.go.jp/shingi/2010/02/dl/s0217-11c_0016.pdf (2025.4.3.인출)

후생노동성, 아동·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https://www.mhlw.go.jp/shingi/2005/03/s0303-11c.html>. (2025.4.3.인출)

후생노동성, 영유아 양육지원 종사자 연수사업. 子育て支援員研修事業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000519628.pdf>. (2025.4.21.인출)

후생노동성, 인가외 보육사업의 개요와 현황. 認可外の居宅訪問型保育事業 (ベビーシッター) の概要と現状 <https://www8.cao.go.jp/kisei-kaikaku/kisei/meeting/wg/koyou/20200309/200309koyou04.pdf>. (2025.4.23.인출)

후생노동성, 일본1억 총 활약플랜. 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 <https://www.cas.go.jp/jp/seisaku/kyouginoba/h28/dai1/siryou4.pdf>. (2025.4.10.인출)

후생노동성, 저출생대책 플러스원 少子化対策プラスワン - 少子化対策の一層の充実に関する提案-. <https://www.mhlw.go.jp/houdou/2002/09/h0920-1.html> (2025.4.1.인출)

후생노동성, 저출생사회대책대강, 少子化社会対策大綱.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81807.pdf>. (2025.4.9.인출)

후생노동성, 지역 영유아 양육 거점사업 실시 숫자 추이.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の実施か所数の推移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21a8144-83b8-4467-b70e-89aa4a5e6735/f496238b/20240529_policies_kosodateshien_shien-kyoten_34.pdf (2025.4.21.인출)

후생노동성, 지역의 보육소, 보육사 등 관련 검토회 보고서. 地域における保育所・
保育士等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 <https://www.mhlw.go.jp/content/11922000/000869392.pdf>. (2025.4.28.인출)

후생노동성, 지역의 보육소, 보육사 등 관련 검토회 참고자료집. 地域における保育所・
保育士等に関する検討会参考資料集 <https://www.mhlw.go.jp/content/11922000/000869390.pdf>. (2025.4.26.인출)

후생성, 건강하게 아동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健やかに子供を生み育てる
環境づくり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yakaifukushi/410.pdf>. (2025.3.27.인출)

후생성, 긴급보육대책등 5개년 사업개요, 「緊急保育対策等5か年事業」の概要 <https://www.ipss.go.jp/publication/j/shiryou/no.13/data/shiryou/syakaifukushi/517.pdf>. (2025.3.27.인출)

후생성,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계획, 重点的に推進すべき少子化対策の具体的実施計画について <https://www.mhlw.go.jp/www2/topics/topics/syousika/angel03.htm>. (2025.3.31.인출)

【법률 및 법률안/조례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 4. 23] [법률 제21065호, 2025. 4. 2., 일부개정]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부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27.] [부산광역시동구
조례 제1542호, 2024. 9. 27., 제정] 제2조(정의), 제6조(돌봄 지원 사업)



Abstrac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Home-based Childcare Services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s

Haemi Yoo, Ja Yeun Koo, Suji Jung, Moonjeong Kim, Kyoung Hee Chang,
Yoonjeong Shin

As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in-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is rapidly changing,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ervice support system by paying attention to relevant policies that affect demand.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act of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troduction of parental allowanc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on the demand for home-based childcare services. Specifically, the study addressed changes in demand for in-home childcare services and part-time childcare services in the formal care sector, and for private childcare assistants and grandparent care in the informal care sector.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628 household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to discuss their overall experience using in-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and their support needs. Additionall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urrent state of service operation and improvement needs of 24 households using each service type and 14 suppliers by service type.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pport policies for in-home childcare services in France and Japan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directions and detailed improvements were proposed for the 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 support system to respond to changing demands. First, the goal

of supporting home-based childcare services can be presented as resolving the care gap for households that prefer home-based care services and allevi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for households that do not use institutions. Accordingly, the priority recipients of child care services are households that require care during times when the facility is not in operation, such as at night or on weekends. Part-time childcare services should prioritize supporting families with children in need of emergency care through diversifying methods of infrastructure expansion. Home-based childcare services require alleviating the burden of costs for nighttime and all-day infant care services, and improving accessibility through restructur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Part-time childcare services need to guarantee universal access by differentially charging fees based on basic and additional usage hours, and improve service quality by strengthening support for assistant teachers.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childcare support services, institu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morning and evening care services at institutions such a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enhance the professionalism their labor rights. of caregivers.

Keyword: Home-based Childcare Services, Emergency Care Services, part-time childcare services, formal care sector, informal care sector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이용 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응답자 확인 사항〉

※ 다음은 귀댁의 자녀와 가구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조사 중단
② 여성 ↗ 이동

SQ2 [할당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

을/며/동

SO3.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미훈 | ▣ 조사 중단 |
| ② 기훈 | ▣ SQ4 |
| ③ 이훈/사별 | ▣ 조사 중단 |

SO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자녀 있음 ↗ SQ5
 ② 자녀 없음 ↗ 조사 중단

505.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S06. [할당1] 자녀의 출생연도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자녀 구분		출생연도	
1	첫째자녀	()년	()월
2	둘째자녀	()년	()월
3	셋째자녀	()년	()월
4	넷째자녀	()년	()월
5	다섯째자녀	()년	()월
	...	()년	()월

[로직] 막내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만 조사 진행

SO7. [제시: 막내자녀 출생연도] 년생 막내자녀는 현재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 어린이집 SQ7-1
② 유치원 SQ7-2
③ 이용하고 있는 기관 없음 SQ8

SQ7-1 [제사: 막내자녀 출생연도]년생 막내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민간어린이집 |
| ③ 가정어린이집 | ④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 ⑤ 직장어린이집 | ⑥ 협동어린이집 |
- [로직] 막내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SQ7-2 [제사: 막내자녀 출생연도]년생 막내자녀는 이용 중인 기관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 (16:00~19:30)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 |
|--------------|
| ① 이용하고 있음 |
| ② 이용하지 않고 있음 |
- [로직] 막내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SQ7-3 [제사: 막내자녀 출생연도]년생 막내자녀가 이용 중인 유치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국공립유치원 | ② 사립유치원 |
|----------|---------|
- [로직] 막내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SQ7-4. [제사: 막내자녀 출생연도]년생 막내자녀는 이용 중인 기관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14:00~)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 |
|--------------|
| ① 이용하고 있음 |
| ② 이용하지 않고 있음 |
- [로직] 막내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SQ8. 평상시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친인척 또는 기관이 있습니까?

구분	돌봄지원 인력 및 기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 상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돌봄센터, 시간제보육 등 일시보육보육시설)		

SQ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부가조사(+300명)] 귀댁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3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① 예 |
| ② 아니오 |

SQ10.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부가조사(+300명)] 귀댁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비시터)를 5회 이상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① 예 |
| ② 아니오 |

SQ11. [할당3]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십니까?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 휴직 중인 분들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에 해당됩니다.

구분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②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1	본인	
2	배우자	

[로직] 본인과 배우자 모두 ②번에 응답한 경우는 SQ12~16번 응답하지 않음

SQ12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고용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 이전의 지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계약직)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등)
1	본인	
2	배우자	

[로직]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경제활동 여부 문항=2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SQ13.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 이전의 근로형태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일제 근로는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① 전일제 근로 (※ 일 8시간 이상 근로) ② 시간제 근로
1	본인	
2	배우자	

[로직]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경제활동 여부 문항=2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SQ14.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다음의 근로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본인	배우자
1 아래 시간대에 일한 경험이 전혀 없음		
2 주말 근로 (토요일)		
3 휴일 근로1(일요일)		
4 휴일 근로2(추석, 설, 공휴일 등)		
5 야간 근로(오후 7시 ~ 밤 12시)		
6 새벽 근로(밤 12시 ~ 오전 7시)		

- ① 매주 일함
- ② 격주로 일함(2주에 1회 정도)
- ③ 한 달에 1회 정도 일함
- ④ 두 달에 1회 정도 일함
- ⑤ 간헐적으로 일함(연간 6회 미만)
- ⑥ 해당 시간대에 일한 적 없음

[로직]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경제활동 여부 문항=2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SQ15.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직장이나 일터에는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다음의 제도가 있습니까?

※‘제도 없음’은 근무 중인 기업 등에 도입된 제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분	본인	배우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재택근무제도		
4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5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 ① 제도 있음
- ② 제도 없음

[로직] 본인과 배우자 모두 경제활동 여부 문항=2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SQ16 그렇다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구분	본인	배우자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재택근무제도		
4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5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 ①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 ③ 이용하기 힘든 분위기이다
- ④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로직] SQ15(제도 유무)=1인 제도에 대해서만 응답

SQ17. 귀댁의 동거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주말부부(주1~3일만 동거)
- ② 주말부부 아님

I.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전반

※ 다음 질문에 [제시: 막내자녀 출생연도]년생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귀댁의 막내 자녀는 최근 3개월 기준 평일 낮 시간(아침~이른 오후)에 주로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주양육자/기관)?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영어유치원 제외)
 - ③ 어린이집/유치원 외 반일제 기관(영어유치원/학원 포함)
 - ④ (공공) 아이돌보미
 - ⑤ 민간 육아도우미
 - ⑥ 시간제 보육기관
 - ⑦ 부모
 - ⑧ 조부모/친인척
 - ⑨ 기타(구체적으로:)
 2. 앞서 주양육자/기관을 [제시: Q1 주양육자/기관명](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외에 최근 3개월 내 막내자녀의 돌봄을 위해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인력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이용하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기관 또는 인력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영어유치원 제외)
 - ③ 어린이집/유치원 외 반일제 기관(영어유치원/학원 포함)
 - ④ (공공)아이돌보미
 - ⑤ 민간 육아도우미
 - ⑥ 시간제보육기관
 - ⑧ 조부모/친인척
 -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⑩ 추가로 이용한 기관 없음
- [로직] 확인창 : SQ1='①영아 자녀'가 문1='②유치원 이용' 응답 시

3. 귀하는 아이돌봄비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
②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 문3-1번으로 이동
③ 전혀 알지 못함

- 3-1. 귀하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최초 이용 시기와 가장 최근 이용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십시오

※최초 이용 시기와 가장 최근 이용이 동일한 경우는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대기 기간	
최초 이용 기준	가장 최근 이용 기준
() 개월	() 개월

4. 귀하는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이 전혀 없음
②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음
③ 전혀 알지 못함

5. 귀 자녀가 이용한 시간제보육시설은 다음의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 이용해본 시간제보육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② 어린이집 부설
③ 잘 모름

[로직] 04(시간제보육서비스 경험자)=2인 경우만 응답

6. 귀하가 시가제보육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비스 질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 ② 집에서 멀어서
 - ③ 불필요해서(필요한 상황이 없어서)
 - ④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
 - ⑤ 신청 및 이용 절차가 어려워서
 - ⑥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
 - ⑦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로직] Q4(시간제보육서비스 경험자)=1인 경우만 응답

7. 귀 자녀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하지 못해서(대기가 너무 길어서)
 - ② 집단보육이 더 신뢰가 가서
 - ③ 이용료가 저렴해서
 - ④ 아이돌보미의 잊은 변경(또는 교체)이 우려되어서
 - ⑤ 긴급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해서
 - ⑥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구직 활동, 취미 생활, 운동 등)
 - ⑦ 아이에게 또래가 필요해서(사회성 발달 등)
 - ⑧ 자녀를 홀로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 ⑨ 기타(구체적으로:)

[로지] Q4(시간제보육서비스 경험자)=2인 경우만 응답

[로식] Q4(시간제보육서비스 경험자)=2인 경우만 응답

8. 귀 댁에서 시간제보육시설은 얼마나 걸립니까?
※ 도보와 차량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소요 시간을 편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이용해본 시간제보육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도보 이용	차량 이용
() 분	() 분

9. 귀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 이용 중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Q9-1 ② 아니오 Q9-2
③ 잘 모르겠음 Q9-3

- 9-1. 귀하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1. **What i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로직] 09=1이 경우만 응답

- 9-2. 귀하가 계속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1. **What i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e.g.,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new treatment, to explore a new research question, to describe a population, etc.)

[로직] 09=2인 경우만 응답

- 9-3. 과거 또는 현재 이용 중인 시각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내용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4. 불만족한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로직] Q9-3=1인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만 응답] [로직] SQ5번 ①~②번 응답자

10.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귀댁 자녀의 현재 등·하원 시각과 이용을 희망하는 등·하원 시각은 언제입니까?

※ 등원 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도착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 하원 시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집으로 출발하는 시각을 말합니다.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분은 10분 단위 입력 설정

구분	10-1-1~2 현재 이용 시각		10-1-3~4 희망하는 등하원 시각	
	※ 등원시각(예시): 09시 20분 ※ 하원시각(예시): 16시 30분		※ 등원시각(예시): 07시 20분 ※ 하원시각(예시): 20시 30분	
등원 시각	()시 ()분		()시 ()분	
하원 시각	()시 ()분		()시 ()분	

10-2. 추가로 이용하는 돌봄인력이나 기관의 이용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언제입니까?

문2번에서 상시로 병행 이용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로직] 해당 문항은 해당 위치에서 질문하지 않고, 이용자 이용시간 문항 응답과 동일하게 데이터 처리

구분	10-2-1~6 시작 시각			10-2-7~15 종료 시각		
	주중	주말 (토요일)	휴일 (일요일 등)	주중	주말 (토요일)	휴일 (일요일 등)
(공공) 아이돌보미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민간 육아도우미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조부모/친인척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10-3.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추가이용 중인 돌봄인력이나 시설의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시] 문1 또는 문2 응답값 제시]

- ① 예 Q10-3-1 ② 아니오 Q10-3-2
③ 잘 모르겠음 Q10-3-1

10-3-1 귀하가 병행 이용 중인 돌봄인력 등의 이용을 중단하고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로직] Q10-3=① 응답자

10-3-2. 귀하가 계속해서 현재 이용 중인 돌봄인력을 병행하여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로직] Q10-3=② 응답자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구만 응답] [로직] Q1=⑧번 또는 Q2=⑧번 응답자

11. 귀 자녀를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기〉

- ①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료(부모 자부담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④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⑤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⑥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⑦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이 힘들어서
⑧ 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⑨ 장기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⑩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친인척 제외) 등의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⑪ 가정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등 비혈연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⑫ 기타(구체적으로:)

12. 귀 댁에서 조부모/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주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매주 자녀를 맡기는 시각이 다른 경우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주로 맡기는 평균 시각을 응답합니다.
※ 맡기지 않는 때에는 '맡기지 않음'을 체크해주세요.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분은 10분 단위 입력 설정
[로직] 12.시작 시각=맡기지 않음 선택 시, 13.종료 시각은 비활성화
[로직] 모두 맡기지 않음 선택 불가

구분		12-1~3. 시작 시각	12-4~6. 종료 시각
1	주중(월~금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2	주말(토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3	휴일(일요일 등)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13. 귀 댁에서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매월 다른 경우는 3개월 이내 가장 높은 월 평균비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지불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응답합니다.

() 만원

15. 귀 댁에서는 조부모/친인척에게 언제까지 자녀를 맡길 예정입니까?
[제시: 맘내자녀 혼자 만 나이]

자녀 연령: 만 ()세

16. 귀하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도,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에 변화가 있을지를 가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로직] '해당사항 없음'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도, 선택적근로시가제제도에만 적용

구분	① 중단 /줄일 의향 있음	② 중단 /줄일 의향 없음 →모두 ②이면 문12-1 번으로	③ 잘 모르 겠음	⑨ 해당 사항 없음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
2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 가자격을 필수 취득하도록 변경될 경우				×
3 민간(베이비시터) 업체도 국가에 등록하도 록 하여 도우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도 록 변경될 경우				×
4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세-18세) 이용이 보장될 경우				×
5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7 시차출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 될 경우				

- 16-1. 귀하가 계속해서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II.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로직] 문1=④번 또는 문2=④번 응답자

- ⑤ 마형(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⑥ 잘 모름

19. 귀댁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이유가 한 가지인 경우 2순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1순위	2순위

<보기>

- ①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②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③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⑤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힘들어서
 ⑥ 긴급한 때(급작스런 야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⑦ 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20. 귀댁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시간대는 언제 입니까?
 ※ 매 상황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긴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분은 10분 단위 입력 설정
 [로직] 시작 시각=맡기지 않음 선택 시, 종료 시각은 비활성화
 [로직] 모두 맡기지 않음 선택 불가

구분		20-1-1~3 시작 시각 ※ 08시 30분	20-1-4~6. 종료 시각 ※ 20시 00분
1	주중(월~금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2	주말(토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3	휴일(일요일 등)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21. 귀 댁에서 지불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부모 자부담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매월 다른 경우는 최근 3개월 기준 가장 높은 월 평균 이용료를 응답해 주십시오.

() 만원

21-1. 귀 댁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지불하는 이용료는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부담되는 정도를 1~5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② 부담되지 않음 |
| ③ 보통 | ④ 부담됨 |
| ⑤ 매우 부담됨 | |

[로직] Q21에서 0만원 초과인 경우만 응답

22.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의 상황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상황별로 최근 1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빈도							
	① 해당 사항 없음 (발생한 적 없음)	② 1주일에 3~5회	③ 1주일에 1회 정도	④ 한 달에 2~3회	⑤ 한 달에 1회 정도	⑥ 두 달에 1회 정도	⑦ 연간 3~4회 정도	⑧ 연간 1~2회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3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4 주말(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 휴일(일요일 등)에 일해야 하는 경우								

23. 귀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항목마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①	②	③	④	⑤	
2 신속한 서비스 연계	①	②	③	④	⑤	
3 이용비용	①	②	③	④	⑤	
4 총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5 이용시간대	①	②	③	④	⑤	
6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7 서비스 제공 범위	①	②	③	④	⑤	
8 불만 및 민원 대응	①	②	③	④	⑤	
9 서비스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	①	②	③	④	⑤	

- 23-1. [로직] 문19번 ①~②번 응답자
귀하가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불만족 사유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2	신속한 서비스 연계	
3	이용비용	
4	총 이용시간	
5	이용시간대	
6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7	서비스 제공 범위	
8	불만 및 민원 대응	
9	서비스 신뢰도	

- 23-2. 문23번 항목 이외에 귀하가 불만족한 내용이 있습니까?
① 예 023-3 ② 아니오 024

- ### 23-3. 불만족한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24. 귀하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습니다?

※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도,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을지를 가정하여 응답해주세요.

[로직] '해당사항 없음'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

구분	① 중단 / 줄일 의향 있음	② 중단 / 줄일 의향 없음 → 모두 ② 이면 문24-1 번으로	③ 잘 모르겠음	⑨ 해당사항 없음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야간, 새벽, 방학 기간에도 이용 가능)				X

2	민간(베이비시터) 업체도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도우미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경우				X
3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시~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X
4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6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 24-1. 귀하가 계속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25. 정부에서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공 아이돌보미가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이용시간을 늘릴 것이다
 ② 이용시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26. 정부에서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이 줄어들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이용시간을 늘릴 것이다
 ② 이용시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III.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수요

※ 문1=⑤ 또는 문2=⑤번 응답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27. 귀댁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사유를 <보기>에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응답해주십시오.
 ※ 이유가 한 개인 경우는 2순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1순위	2순위

〈보기〉

- ①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아이가 너무 어려서
- ②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할 수 없어서
- ③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④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서(대기가 길어서)
- 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길어서
- ⑥ 자녀 특성(예민한 기질 등)으로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힘들어서
- ⑦ 긴급한 때(급작스런 아근 등) 자녀돌봄이 용이해서
- ⑧ 장시간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부모 또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 ⑨ 다양한 서비스를 원해서(아동돌봄 이외 가사서비스, 영어과외 병행 등)
- ⑩ 기타(구체적으로:)

28. 귀댁에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주된 시간대는 언제 입니까?

※ 매 상황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다른 경우, 가장 긴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평균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분은 10분 단위 입력 설정

[로직] 시작 시각=맡기지 않음 선택 시, 종료 시각은 비활성화

[로직] 모두 맡기지 않음 선택 불가

구분		28-1-1~3 시작 시각 ※ 08시 30분	28-1-4~6 종료 시각 ※ 20시 00분
1	주중(월~금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2	주말(토요일)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3	휴일(일요일 등)	()시 ()분 <input type="checkbox"/> 맡기지 않음	()시 ()분

29. 귀댁에서는 다음 항목의 상황으로 인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상황별로 최근 1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빈도
1	자녀가 아파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시항 없음 (발생한 적 없음) ② 1주일에 3~5회 ③ 1주일에 1회 정도 ④ 한 달에 2~3회 ⑤ 한 달에 1회 정도 ⑥ 두 달에 1회 정도 ⑦ 연간 3~4회 정도 ⑧ 연간 1~2회
2	자녀가 학교에서 등원/등교하지 못한 경우	

2	긴급하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	
3	아간 또는 이른 새벽에 일해야 하는 경우	
4	주말(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경우	
5	휴일(일요일 등)에 일해야 하는 경우	

30.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 다음 각 항목마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①	②	③	④	⑤
2 신속한 서비스 연계	①	②	③	④	⑤
3 이용비용	①	②	③	④	⑤
4 총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5 이용시간대	①	②	③	④	⑤
6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7 서비스 제공 범위	①	②	③	④	⑤
8 불만 및 민원 대응	①	②	③	④	⑤
9 서비스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	①	②	③	④	⑤

30-1. [로직] 문30번 ①~②번 응답자

귀하가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만족한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불만족 사유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2 신속한 서비스 연계	
3 이용비용	
4 총 이용시간	
5 이용시간대	
6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7 서비스 제공 범위	
8 불만 및 민원 대응	
9 서비스 신뢰도	

30-2. 문30번 항목 이외에 귀하가 불만족한 내용이 있습니까?

① 예  Q30-3

② 아니오  Q31

- 30-3. 불만족한 내용을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31. 귀하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줄일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도,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에 변화가 있을지를 가정하여 응답해주십시오.

[로직] '해당사항 없음'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

구분	① 중단 /줄일 의향 있음 →모두 ②이면 문31-1 번으로	② 중단 /줄일 의향 없음	③ 잘 모르겠음	⑨ 해당 사항 없음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돌봄이 필요한 시간 및 일자(야간 또는 새벽, 방학 기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이 변경될 경우				✗
2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 아이돌보미가 국가자격을 필수 취득하도록 변경될 경우				✗
3 긴급한 상황에 자녀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9사~18시) 이용이 보장될 경우				✗
4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될 경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보장될 경우				
6 시차출퇴근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보장될 경우				

- 31-1. 귀하가 계속해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

IV. 전체 응답

[전체 응답가구 응답] (문32~37)

32. 귀 자녀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은 언제 입니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포함하여 시간제보육/아이돌봄서비스/민간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조부모돌봄/기타 돌봄 목적 학원 이용 등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시간을 모두 말씀해주시십시오.
평일,주말,휴일에 구분하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매 요일마다 돌봄이 필요한 시각이 다른 경우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응답합니다.
※ 주말,휴일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필요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로직] 시간과 분은 직접 입력X, 분은 10분 단위 입력 설정

구분		32-1-1~3. 시작 시각 예시) 16시 00분	32-1-4~6. 종료 시각 예시) 20시 30분
1	주중(월~금요일)	()시 ()분	()시 ()분
2	주말(토요일)	()시 ()분	()시 ()분
3	휴일(일요일 등)	()시 ()분	()시 ()분

33. 귀 자녀는 부모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까?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매월 지원되는 현금급여입니다(0~11개월: 100만원 / 12~23개월: 50만원).
① 예 ☞ 문 34-1번으로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로직] 모든 자녀들의 출생연도가 2021년 이상인 경우 자동 선택

- 34-1. 귀댁은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양육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11개월 이하 아동은 매월 100만원 중에서 46만원을 받고(기관이용료 54만원 제외), 1세아는 매월 50만원 중에서 25만원(기관이용료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을 경우 예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세부 항목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⑨ 해당 사항 없음
1.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2.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3.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였다			
4.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5. 예정보다 기관(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늦췄다 /늦추려고 한다			
6.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했다			
7.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를 새롭게 이용하게 되었다			
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을 늘였다			
9. 육아휴직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			
10. 육아휴직 기간을 예정보다 더 늘리게 되었다			

35. 귀 댁에서는 다음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세부 항목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야간/새벽/주말 등)에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자녀를 돌봐주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2.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일시보육)					
3.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하원서비스를 도와주는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의 등하원지원서비스					
4. 민간 육아도우미					

36. 귀하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자녀를 도봐주는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정부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세부 항목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1.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야간/새벽/주말 등)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에게 돌봄인력 지원					
2. 기관(어린이집 등)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게 돌봄인력 지원					
3. 기관을 이용하지만 장시간 이용이 힘든 아동에게 돌봄인력 지원					
4.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가구에서 돌봄인력 지원					
5. 서비스 이용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6. 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 부담액 상한선 규제(예시: 총 이용료 중 부모 자부담 비중 20% 이하)					
7.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 비용지원					

37. 귀댁에서는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다음 사항을 경험하였거나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뿐 아니라 과거 경험을 통틀어 응답해 주십시오.
- ※ 미취업 등으로 상황과 무관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 ※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분이 경험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면 '경험 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① 경험 있음	② 경험 없음	⑧ 해당 사항 없음
1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또는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2 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3 (재)취업 또는 취업준비 시기를 연기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4	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고용상 지위를 변경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정규직 → 계약직/임시직 근로 변경)	①	②	⑧
5	자녀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근로형태를 변경하였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 변경)	①	②	⑧
6	자녀돌봄이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7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어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 또는 포기하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8	자녀돌봄 공백이 우려되어 추가자녀의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고려한 적이 있다	①	②	⑧

IV. 응답자 특성

※ 다음은 귀하 및 귀댁에 관한 문항입니다.

D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연령이 아닌 본인 연령을 응답해 주십시오.

만 ()세

[로직] 범위: 20~70세

DQ2.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3개월 평균 세전 소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200만원 이하 | ② 201만원~300만원 |
| ③ 301만원~400만원 | ④ 401만원~500만원 |
| ⑤ 501만원~600만원 | ⑥ 601만원~700만원 |
| ⑦ 701만원~800만원 | ⑧ 801만원 이상 |

부록 2. 면담조사 질문지1: 수요자용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 면담조사 질문지(부모용) -		
<p>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이번 면담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내양육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한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돌봄을 위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民間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동기, 이용 실태, 계속 이용 의향 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가정내양육에 따른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고 가정내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2025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p>		
<p>조사 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문의 연락처 :</p>		

♣ 면담조사 참여자 정보(※조사업체 작성) → 조사업체 작성

구분(그룹)	응답자 정보(총 19인)		
	일련 번호	자녀 연령/출생순위 (주이용자녀/막내자녀 기준)	부모 근로형태 ①맞벌이가구(전형근로 시간) ②비전형근로가구
[1그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영아	1-1		
	1-2		
	1-3		
	1-4		
[2그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유아	2-1		
	2-2		
	2-3		
	2-4		

구분(그룹)	응답자 정보(총 19인)		
	일련 번호	자녀 연령/출생순위 (주이용자녀/막내자녀 기준)	부모 근로형태 ①맞벌이가구(전형근로 시간) ②비전형근로가구
[3그룹]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영아	3-1		
	3-2		
	3-3		
	3-4		
[4그룹]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유아	4-1		
	4-2		
	4-3		
	4-4		
[5그룹]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5-1		
	5-2		
	5-3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면담조사 질문지(부모용)_사전질문지

[1~2그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1) 아이돌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 이용자녀의 연령 및 출생순위(총 자녀수 포함)
 - 기관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영아) 어린이집 이용 여부/시간제보육시설 인지 및 이용 경험
 (유아)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 (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16:00~) 이용 여부
- 2) 주로 언제 일하십니까? (※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는 각각 응답)
 - 주당 근로시간(평일 기준) 및 출퇴근시각
 -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로 여부: 새벽, 야간, 주말 근로 여부 및 빈도, 근로시간대
- 3)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 이용하십니까?
 - 최근 3개월 이내 총 이용 횟수
 - 가장 최근 기준: 총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
- 4)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해본 적이 있다

② 이용해본 적이 없다

5) 조부모 등 자녀돌봄 지원인력 또는 돌봄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제외)이 있습니까?

①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이 있다

② 도움을 받은 돌봄기관이 있다

③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과 돌봄기관이 있다

④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과 돌봄기관이 없다

6) 직장 등 일터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차출근제

[3~4그룹]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1) 민간 육아도우미를 주로 이용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 이용자녀의 연령, 출생순위(총 자녀수 포함)

- 기관 이용 현황

(영아) 어린이집 이용 여부/시간제보육시설 인지 및 이용 경험

(유아) 어린이집 연장보육(16:00~) (또는) 유치원 방과후과정(16:00~) 이용 여부

2) 주로 언제 일하십니까? (※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는 각각 응답)

- 주당 근로시간(평일 기준) 및 출퇴근시각

-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로 여부: 새벽, 야간, 주말 근로 여부 및 빈도, 근로시간대

3) 민간 육아도우미는 언제 이용하십니까?

- 최근 3개월 이내 총 이용 횟수

- 가장 최근 기준: 총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

4)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②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③ 잘 모른다

5) 조부모 등 자녀돌봄 지원인력 또는 돌봄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제외)이 있습니까?

①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이 있다

② 도움을 받은 돌봄기관이 있다

③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과 돌봄기관이 있다

④ 도움을 받을 지원인력과 돌봄기관이 없다

6) 직장 등 일터에서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차출근제

[5그룹]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 1)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 이용자녀의 연령 및 출생순위(총 자녀수 포함)
- 2) 주로 언제 일하십니까? (※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는 각각 응답)
 - 주당 근로시간(평일 기준) 및 출퇴근시각
 - 비전형적 근로시간 근로 여부: 새벽, 야간, 주말 근로 여부 및 빈도, 근로시간대
- 3)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언제 이용하십니까?
 - 최근 3개월 이내 총 이용 횟수
 - 가장 최근 기준: 총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
- 4)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알고 이용해본 적이 있다
 - ② 알고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
 - ③ 잘 모른다
- 5)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해본 적이 있다
 - ② 이용해본 적은 없다
- 6) 조부모 등 자녀돌봄 지원인력이 있습니까?
 - ① 돌봄지원 인력이 있다
 - ② 돌봄지원 인력이 없다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조사 면담조사 질문지(부모용)_질문지

1. 자녀 및 가구 특성 / 기관 이용 여부 / 부모 근로 특성 및 여건(조사 참여자 확인)
1) 귀댁의 자녀 및 가구 특성은 어떠합니까? - 자녀 특성: 총 자녀수, 서비스 이용자녀의 연령, 출생순위, 기질 등 특성 -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대 / 한부모 가족 여부 등 - 거주지역 특성: 농어촌 지역, 도서 벽지 거주 여부 등
2)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귀 자녀는 다음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이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대(주중/주말) · 연장보육/야간보육(19:30~) 이용 여부 및 이용 가능성 및 미이용 사유 - 유치원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대(주중/주말) · 방과후 과정/아침돌봄(7:00~9:00)/저녁돌봄(19:00~) 이용 여부 및 이용 가능성 및 미이용 사유 - 자녀돌봄 공백 시간대(주중/주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3) 귀댁에는 긴급 상황 등에 귀 자녀를 돌봐주는 지원인력이나 자녀를 맡길 만한 시설(센터 등)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인력 또는 돌봄기관명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발생한 어려움 세부내용
4) 귀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다음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자녀양육을 위해 하루 1~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시차출근제 - 재택근무제 - 이외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직장내 제도

2.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동기 및 이용 실태

※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육아도우미, 시간제보육서비스

1)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어떻게 알고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 (예시) 지인 소개 또는 추천

2) 귀하께서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언급해주세요.

- 해당 사유는 자녀 연령/부모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까?
- 해당 사유는 이용기관의 유형이나 이용 가능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 이외 서비스 이용 사유가 변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 (예시) 조부모가 돌보기 힘들어져서

3) 귀 자녀가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하고 있습니까?

- 최초 이용 시기 및 총 이용기간

4-①)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귀댁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언제 입니까?

- 이용시간대 및 총 시간 / 이용 빈도(상시/일시)
- 주말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대 변화 여부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
 - 기관 이용시간과의 관계: 등원 및 하원시간
 - 기관을 연장하여 이용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이유
 - 해당 시간대 기관 이용 중단 경험 여부 및 해당 사유
 - 해당 시간대 기관 이용으로 변경 계획 여부 및 해당 사유
- (어린이집 미이용가구)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기관 이용 계획 및 해당 서비스 이용 변경 계획

4-②)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 귀 댁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 입니까?
- 이용시간대 및 총 시간/ 이용 빈도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5) 귀댁에서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평균 이용료 및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 월 평균 이용비용(자부담) 및 지불비용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
- 국가(또는 정부)의 비용지원 여부 및 지원 시 해당 비용
- 해당 비용 부담 정도

6)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이나 근무형태(또는 근무시간대)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해당 세부내용 및 현재 개선 내용

3.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애로사항과 개선요구

- 1) 귀하가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두 언급해주십시오.
- 2)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다음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언급해주십시오.
 - 서비스 신청 방식 및 절차(연계 대기시간 포함)
 - 이용시간
 - 서비스 질(돌봄인력의 전문성)
 - 이용비용
 - 사후관리: 민원 시 대응 등
- 3)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서비스 신청 절차 등 전반)
- 4) 귀댁에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전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 해당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시기(이용 시 자녀연령, 부모 근로 상황 등)
 -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단 사유
 - 다른 서비스로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명 및 변경 사유

4. 유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

- 1-①)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
 - 이용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녀를 맡길 수 있다면 이용 중단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있는 경우) 이용 중단 사유
(의향 없는 경우) 해당 사유 및 이용 시 필요 요건
 -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이용기관의 이용시간을 줄이고(이른 하원 등)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까?
(어린이집 미이용가구) 영아자녀
-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양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까?
- 1-②)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가구]**
 -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어린이집 입소를 늦추게 된 것입니까?
(맞는 경우) 해당 세부 내용(기관 이용 예정 시기 변경내용 등) 및 사유
(아닌 경우) 해당 세부 내용

- 2) 귀하는 필요한 시간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있다면 가정내양육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해당 기관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있는 경우) 이용 중단 사유
(의향 없는 경우) 해당 사유 및 이용 시 필요 요건
- 3) 귀하(또는 배우자)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까?
- (의향 있는 경우) 이용 중단 사유
- (의향 없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계속 이용 이유
- 4) 귀댁에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입니까?
(의향 있는 경우)
- 해당 사유 및 계속 이용 예정 기간(이용 계획 자녀 연령 등)
(의향 없는 경우)
- 이용 중단 사유
- 다른 서비스로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명 및 변경 사유
- 5) 귀댁에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대신에 더 선호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비스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십시오.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 아이돌봄서비스/민간 육아도우미
- 조부모 또는 친인
- 기타(구체적으로:)

부록 3. 면담조사 질문지2: 공급자용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현황 및 요구 조사 - 사전질문지(현장전문가용) -				
<p>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 면담은 영유아자녀를 둔 가구의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수요에 주목하고, 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원체계 측면에서 개선 필요사항이나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2025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문의처: 02) 398-7719				

SQ. 기관 유형 및 할당 정보(해당 유형에 표기하고, 추가 정보 작성)

구분 (조사대상 그룹)	서비스 기관(위탁체 유형) / 업체 유형			비고
	유형 구분	해당 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세부 유형 (위탁체 유형)	
1-1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집		※ 예시: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2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직영			
	이외 위탁(건가센터 등)		※ 예시: 건가다가통합센터	
1-3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정보제공업체 /소개업체)	정보제공업체			
	소개업체			

DQ. 응답자 및 기관(업체) 특성(2-1~8번. 필수 작성)

구분		세부 사항	
2-1.	연령	만 ()세	
2-2.	성별	① 남	② 여
2-3.	현 기관/업체 재직 기간	()년 ()개월	
2-4.	유관 분야 총 경력	()년 ()개월	
2-5.	기관 또는 업체 등록 둘봄인력 수 /운영 반수	총 ()명 ※ 시간제보육시설: 시간제보육반 수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조사 시점 기준 등록 아이돌보미 수 ※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 조사 시점 기준 등록 둘봄 제공 인력 수	
2-6.	직원 규모	총 ()명	상근 인력 ()명 비상근 인력()명
2-7.	기관/업체 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2-8.	기관/업체명	()	

- ※ 이하 질문 항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함.
- ※ 귀 기관 및 업체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해당 없음' 표기함.
- ※ 작성 기관유형 표기 문항의 경우는 해당 기관 및 업체만 작성함.

1.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현황

1)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또는 아동은 누구입니까?

- ※ 예시: 어린이집 등 돌봄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늦은 야간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가구
- ※ 수요자 유형이 다양하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유형을 이하 [답변]란에 번호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답변 작성] 서비스 이용가구 특성

1	
2	
3	
4	
5	

2)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 및 이용 추이는 최근 들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경우) ☐ 문1-2)번으로 이동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단의 답변란에 자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

[답변 작성] 서비스 수요자 특성 변화 내용

1	
2	
3	
4	
5	

3)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수요자의 요구는 최근 들어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경우) ☐ 문2번으로 이동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단의 답변 란에 자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

※ 예시: 유아 자녀의 학습지도(영어 과외 등)를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

[답변 작성]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부모 수요 변화 내용

1	
2	
3	
4	
5	

4) 귀 기관(업체)의 운영관리 사항은 변화가 있습니까? 주요 연혁에 관하여 언급해주십시오.

(변화가 없는 경우) ☞ 문1-5)번으로 이동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단의 답변란에 자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

[답변 작성] 서비스 운영관련 주요 연혁 및 배경

1	
2	
3	
4	
5	

5)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내용을 이하 항목별로 자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

구분	세부 운영사항
1. 서비스 제공시간(운영시간)	
2. 서비스 지원내용 및 이용료 산정 방식 (※ 중복지원 금지 기준 포함)	
3. 서비스 신청(매칭) 및 이용(계약) 절차	
4. 서비스 제공인력(육아도우미 포함) 기준 및 관리 (※ 상시인력 유무 및 규모/자격/재교육 등)	
5. 서비스 내용(활동내용) 및 범위	
6. 부모(수요자) 대상 정보 제공 내용 및 방식	
7. 주요 운영관리 사항 (※ 아동안전, 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8. 기관 및 업체 특성 및 강점	

2. 서비스 제공 시 어려움과 개선요구

- 1) 귀 기관(업체)의 서비스 공급 및 운영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기관(업체)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모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필요 시 항목을 구분하여 애로사항 또는 어려움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답변 작성] 서비스 공급 및 운영 시 어려움

1	
2	
3	
4	
5	

- 2) 최근 들어 귀 기관(업체) 운영상 새롭게 제기되거나 심화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 ☐ 문2번으로 이동

(있는 경우)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단의 답변란에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답변 작성] 기관(업체) 운영상 애로사항 및 원인

1	
2	
3	
4	
5	

- 3)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자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기관(업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각 항목별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개선할 점이 없는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작성해주세요.

구분	개선 필요사항
1.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2. 서비스 이용료 및 부담 완화 (중복지원금지 기준 포함)	

3. 서비스 제공 방버 운영시간	
4. 돌봄인력 규모(다양성 포함)	
5. 돌봄인력 자질 (재교육 등 포함)	
6. 지리적 접근성 제고 (집과의 거리 및 하원 지도 등)	
7. 부모(및 돌봄인력) 대상 홍보	
8. 기타	

3) 최근 들어 귀 기관(업체)에 제기되는 수요자 및 돌봄인력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 수요자(이용부모)와 돌봄인력(아이돌보미 등)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해주십시오.

번호	[답변 작성] 민원 또는 불만사항	
	이용 부모	돌봄인력 (보육교사/아이돌보미/육아도우미)
1		
2		
3		
4		
5		

3.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관련 요구

1) 귀하가 보시기에 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지원체계 전반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구분	지원체계 정비 필요사항
1. 지원대상(아동 및 가구 특성 등)	
2. 비용지원 수준(소득기준 등)	
3. 관할 부처(중앙정부) 및 지원 기관 역할 (예시: 광역지원센터 지원 강화)	
4. 이외 지원체계 정비 필요사항	

2) 귀 기관(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보완 및 개선 필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구분	보완 사항 및 개선과제
1	
2	
3	
4	
5	

4.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관련 요구

귀 기관(업체)에서 영유아 가구의 돌봄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유롭게 모두 작성해주십시오.

※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업체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관련 정부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작성해주십시오.

[답변 작성] 정부 지원요구	
1	
2	
3	
4	
5	

부록 4. 부록표

〈부록표 1〉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 내용

단위: 명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 내용	사례수
신청 및 이용 절차	
홈페이지 이용 및 절차 복잡(설명 어려움, 사이트 불안정, 대기 신청방법이 자주 바뀜 등)	35
긴 대기 기간(신청 대기가 길, 소득 유형 판정 기간이 길)	9
번거로움(매달 신청해야 함, 자동 연장되지 않음 등)	9
정보 및 홍보 부족	3
거절되기도 함	2
기타(당일 및 전일 신청 불가, 육아관련사이트가 너무 많아 헷갈림)	2
서비스 연계	
긴 대기 기간(즉시 이용이 어려움, 인원 매칭 느림)	43
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움(신속하게 연계가 안됨)	14
이용자와 사용자 간 연락 지연	2
기타(불친절, 불편, 오류 있음, 제공 서비스가 한정됨)	4
이용 비용	
비용이 높음/이용 비용이 부담됨	17
총 이용시간	
이용 시간이 짧음	22
이용 시간에 제약 있음(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움, 시간 조절 어려움 등)	14
효율적이지 못함	1
이용시간대	
이용 시간대가 제한적(넓지 않음, 시간 제한이 많음)	9
원하는 시간대가 안됨, 시간 맞추기 어려움	9
저녁, 이른 시간, 휴일 이용이 어려움	5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더 많은 아이들을 봐주면 좋겠음	1
특정 시간대(주말 휴일, 저녁 시간)에 비용이 높음	1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전문성 의심 및 자질 부족(아동 별들에 대한 지식 없음,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있음, 도덕성 및 인성 문제, 자격 확인 안 됨, 시간 지키지 않음, 도우미의 육아 방식 불만 등)	43
신뢰할 수 없음	19
도우미 자질 부족	8
도우미마다 편차 있음	3
안전 문제 우려	2
인력풀 적음	2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범위 한정적(식사만 제공, 등하원만 가능, 아이돌봄에만 국한됨)	15

아이돌봄서비스 불만족 내용	사례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원활(공공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할 때 보조 가능하면 좋겠음, 다양한 보육과 놀이, 교육 제공, 연령별 프로그램 제공, 병원 통행 씻겨주기)	10
서비스 제공 범위 불명확하고 모호함	3
질 좋은 놀이시간, 보다 섬세한 서비스 필요함	2
기타(도시락을 써서 보내는 것이 부담됨, 돌봄에 한계 있음 등)	3
불만 및 민원 대응	
신속하지 않은 대응, 대응 미흡	14
민원이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음	8
불친절 및 예의 없음	8
피드백 부족(답변 비전문적 등)	2
전화 연결 어려움	2
직원의 찾은 교체	2
민원 제기 창구 없음	2
기타(형식적임, 무책임함 등)	4
서비스 신뢰도	
신뢰할 수 없음(불안함)	11
돌보미의 자질(위생 관념 등), 전문성 의심됨(돌보미의 짧은 교육 기간)	4
불규칙적인 방문 및 돌보미가 바뀌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육아 일관성 갖기 어려움, 유대감 형성 어려움)	3
인전 우려(아동 폭행 등)	2
신속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음	2
돌보미 마다 편차 있음	1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부록표 2〉 민간 육아도우미 불만족 내용

단위: 명

민간 육아도우미 불만족 내용	사례수
신청 및 이용 절차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10
긴 대기 기간	3
개인적으로 구해야 해서 어려움	2
기타(신속하지 못한 답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등)	8
서비스 연계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잘 되지 않음	7
번거롭고 복잡(문의를 여러 번 해야 가능 등)	4
대기가 길	4
도우미 구하기 어려움	2
기타(개별적으로 구해야 해서 어려움, 정보 공유가 안됨, 다른 대처가 아쉬움 등)	5

민간 육아도우미 불만족 내용		사례수
이용 비용		
비용이 높음/비용이 부담됨		71
아이 둘 이상인 경우 비용 부담됨		3
공공서비스보다 높은 비용		2
정부 지원금이 없음		2
기타(비용이 일괄적이지 않음,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등)		2
총 이용시간		
이용 가능 시간 적음		5
이용 시간 조율 어려움		3
자주 변경됨		2
짧게 이용 원함(등하원 시간)		1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함		1
이용 시간대		
이용 시간대가 다양하지 않음(오후, '17~18시', '오전~낮', '오전 9시~오후 3시 등)		5
아간 또는 늦은 시간대에 이용이 어려움		3
이용 시간 조율 어려움, 탄력적이지 않음		3
돌봄인력의 자질 또는 전문성		
전문성 및 자질, 인성 부족		29
신뢰하기 어려움		15
검증되지 않음(전문성 확인하기 어려움)		8
기타(파곤해함, 연령 높은 돌보미가 옛날 방식을 고집함 등)		2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 한정적(식사 준비 안함, 같이 있어 주는 정도만 함, 부탁해야 해줌 등)		13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없음		4
도우미의 전문성 결여		3
심리적 안정 부분 및 분위기 불만족		2
불만 및 만원 대응		
신속히 해결되지 않음(대응이 느림)		8
만원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음		7
만원 제기가 어려움(불만 제기 시 자녀에게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참음, 연결이 어려움)		6
전문성 결여, 불만 해결에 대한 대처 능력 없음		4
만원 제기할 곳 없음		2
신뢰할 수 없음(만원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		2
기타(반복적인 실수, 서비스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기 운영됨 등)		4
서비스 신뢰도		
자격 검증 어려움		1
사람이 바뀜		1
균일한 서비스 제공 불가		1
연령 높은 도우미의 옛 방식 고집		1

민간 육아도우미 불만족 내용		사례수
기타		
도우미 신원 불확실		1
다양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집안일 하지 않음 등)		1
도우미 역량 및 자질의 개인화/컨디션에 따라 아이돌봄의 질이 달라짐		1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1
소개업체의 서비스 미비		1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가구

〈부록표 3〉 시간제보육서비스 불만족 내용

단위: 명

시간제보육서비스 불만족 내용		사례수
시간대 맞추기 어려움		11
서비스 신청 번거로움(예약 불편, 긴 대기 기간)		9
먼 거리(집 주변 이용이 어려움)		7
전문성 및 시스템적인 부분 신뢰할 수 없음		6
교사의 자질 및 교사와의 소통 불만족		5
자녀가 적응을 잘 못함		5
이용료가 높음		5
이용 시간이 짧음		4
프로그램 부재, 한정된 놀이 컨텐츠		4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지 않음		4
불친절		2
기타		8

주: 기타는 '낯선 환경',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연령 제한', '이용 인원 제한', '집중케어가 어려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있음', '교사가 계속 바뀜', '또래와의 교류 어려움'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부록표 4〉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친인척 돌봄 지속 사유

단위: 명

조부모 돌봄 지속 사유		사례수
신뢰할 수 있음		10
자녀가 원함, 익숙함		6
조부모의 의견(돌보겠다고 함)		2
조부모와의 친밀한 기회 및 추억 제공		2
기타		6

주: 기타는 '비정기적으로 맡겨야 해서',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움', '특별하거나 급한 상황(아이가 아픔)', '시간 사용 용이', '조부모님이 집에 항상 계심',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서'임.

자료: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정내양육지원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방안